연세대학교 대학요람
2019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2019학년도 학사일정표◆◆

2019년		
2월	1(금)	휴·복학 접수시작
	4(월)~6(수)	설연휴
	11(월)~15(금)	2019-1학기 수강신청
	21(목)~27(수)	2019-1학기 등록
	24(일)	졸업예배
	25(월)	학위수여식, 복학접수마감
3월	1(금)	삼일절
	4(월)	개강
	7(목)	교무위원회
	7(목)~11(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13(수)~15(금)	2019-1학기 추가등록
	18(월)	등록금전액반환 일반휴학 접수마감
	25(월)~29(금)	조기졸업신청
4월	3(수)~5(금)	수강철회
	4(목)	교무위원회
	9(화)	학기1/3선
	21(일)	부활절
	22(월)~26(금)	2019-1학기 중간시험
	29(월)~5.3(금)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5월	4.29(월)~3(금)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1(수)	근로자의날
	2(목)	교무위원회
	5(일)	어린이날
	6(월)	대체공휴일

2019년		
5월	8(수)	은퇴교수의 날
	11(토)	창립기념일
	12(일)	부처님오신날
	17(금)	학기2/3선, 등록필자 일반휴학 접수마감
	20(월)	질병휴학 접수시작
6월	3(월)	질병휴학 접수마감
	6(목)	현충일
	9(일)	성령강림절
	10(월)~21(금)	2019-1학기 자율학습 기간 및 기말시험
	13(목)	교무위원회
	24(월)~28(금)	캠퍼스내 복수전공 신청
	28(금)	성적제출마감
8월	1(목)	휴·복학 접수시작
	7(수)~13(화)	2019-2학기 수강신청
	15(목)	광복절
	23(금)~29(목)	2019-2학기 등록
	26(월)	복학접수마감
	30(금)	학위수여식
9월	2(월)	개강
	5(목)	교무위원회
	5(목)~9(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10(화)~16(월)	2019-2학기 추가등록
	12(목)~14(토)	추석연휴
	16(월)	등록금전액반환 일반휴학 접수마감
	23(월)~27(금)	조기졸업신청

2019년		
10월	1(화)~4(금)	수강철회
	3(목)	개천절
	9(수)	한글날
	10(목)	교무위원회, 학기1/3선
	13(일)	연세대감사절
	21(월)~25(금)	2019-2학기 중간시험
	28(월)~11.1(금)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11월	10.28(월)~1(금)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7(목)	교무위원회
	15(금)	학기2/3선, 등록필자 일반휴학 접수마감
	17(일)	추수감사절
	18(월)	질병휴학 접수시작
12월	2(월)	질병휴학 접수마감
	5(목)	성탄절예배, 교무위원회
	9(월)~20(금)	2019-2학기 자율학습 기간 및 기말시험
	24(화)~31(화)	캠퍼스내 복수전공 신청
	25(수)	성탄절
	27(금)	성적제출마감
2020년		
1월	1(수)	신정
	24(금)~27(월)	설연휴(대체공휴일 포함)
2월	3(월)	휴·복학 접수시작
	10(월)~14(금)	2020-1학기 수강신청
	21(금)~27(목)	2020-1학기 등록
	23(일)	졸업예배
	24(월)	학위수여식, 복학접수마감

차 례

연혁 · 캠퍼스

연 혁 ····· 8
세브란스 의과대학 ····· 8
연희대학교 ····· 9
연세대학교 ····· 11
연세대학교 연표 ····· 12
교지의 지리적.역사적 배경 ····· 30
캠퍼스 소개 ····· 31
건물의 소개 ····· 34

정관 및 이사회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 62
이사회 ····· 94
법 인 ····· 95

학사안내

수업연한, 재학연한, 조기졸업 ····· 100
학년도와 학기, 수업과 휴업 ····· 102
재입학, 편입학, 소속변경 ····· 103
휴학, 복학, 퇴학, 제적 ····· 107
교과와 이수 ····· 111
전공, 복수전공(이중·다중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 116
수 강 ····· 123
성적평가 ····· 130
진급 및 졸업 ····· 135
국내외 타 대학에서의 수강 ····· 142
학점인정 ····· 145
기 타 ····· 153

행사와 활동

교내 주요 행사 ····· 158
학생생활 안내 ····· 160
국제처 ····· 165
취업진로지원 ····· 173
국가고시지원 ····· 175
윤리인권위원회 ····· 176
학술정보원 ····· 210
정보통신서비스 안내 ····· 223
대학직장예비군연대 ····· 227
학생군사교육단 ····· 229
체육활동 ····· 231
신앙활동 ····· 235
보건기관 ····· 241
봉사활동 ····· 245
학생건강공제회 ····· 248
총동문회 ····· 253

학생활동 및 장학복지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 258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 ····· 261
학생회관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규 ····· 263
장학금지급규정 ····· 266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 271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세칙 ····· 279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 281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 283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 285

부 록

연세대학교 학칙 ····· 290
학사에 대한 내규 ····· 335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347
2018학년도 재적생 현황 ····· 399

연 혁 · 캠퍼스

연 혁 / 8
세브란스 의과대학 / 8
연희대학교 / 9
연세대학교 / 11
연세대학교 연표 / 12
교지의 지리적 · 역사적 배경 / 30
캠퍼스 소개 / 31
건물의 소개 / 34

연　　혁

연세대학교는 1885년 창립 이래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하여 1957년 1월 5일 발족한 종합대학교이다. 두 기관의 통합은 이미 1928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49년부터는 당시 두 기관의 이사가 서로 교환된 것을 비롯하여 해방 후에는 양교의 교수대표 사이에 통합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같은 해부터 의예과를 연희대학교에서 수학하게 하여 그 수료생을 세브란스 의과대학 본과에 진학하게 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1953년에는 연희대학교 대학원에 의학과 석사과정이 설치되었다. 그 후 두 기관의 이사회는 1955년에 재단법인 연세대학교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으며, 1956년에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정관이 완성됨으로써 1957년 1월 5일 연세대학교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세브란스 의과대학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창　　설　1885년
설 립 자　魚 丕 信　(O. R. Avison)
초대교장　魚 丕 信　(1893년～1934년)
2대 교장　吳 競 善　(1934년～1941년)
3대 교장　李 榮 俊　(1941년～1945년 8월)

세브란스 의과대학

4 대학장　崔　　陳　(1945년　8월~1948년 12월)
5 대학장　李 容 卨　(1948년 12월~1952년 10월)
6 대학장　金 鳴 善　(1952년 10월~1957년　1월)

1884년 궁정어의(宮廷御醫)로 봉사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H. N. Allen 박사에게 1885년 4월 10일 고종황제가 서울 재동(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 제중원(濟衆院 : 초기 이름은 廣惠院)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한 것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효시이며, 1886년 3월 29일 학생 16명(16명의 학생 중 12명만이 본과로 진급하였으며 졸업 후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단이나 군함의 의사로 활약하였다)을 선발하여 개학하니 이것이 곧 연세대학교 역사의 시작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학 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제중원은 캐나다 Toronto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에비슨(O. R. Avison, 魚丕信) 박사가 인계받아 1899년 미국 클리블랜드시의 세브란스(L. H. Severance)로부터 기증받았던

기금으로 1904년 병원을 신축하고 의학 교육기관을 확정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이다. 1908년 배출된 제1회 졸업생 7명에게는 한국 정부로부터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의사면허증이 발급되었다.

1909년 교명을 사립 세브란스의학교로, 1913년에는 사립 세브란스연합의학교라고 칭하였으며, 1917년에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발전하였으나 1942년 일제의 강요로 교명을 아사히의학전문학교(旭醫學專門學校)로 변경하여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였다.

1947년 문교부로부터 6년제의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인가를 얻었으며, 6.25 동란 중에는 피난지(거제도와 원주 등지)에서 피난민을 위한 구호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한편, 1906년 9월 쉴즈(Miss Esther L. Shields)가 세브란스병원 구내에 우수한 간호원 양성전문기관으로 간호학교를 설치하여 1910년 한국 최초의 간호원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68년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승격하였다.

2. 연희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설립년월	1915년 3월	
설 립 자	元 杜 尤	(H. G. Underwood)
초대교장	元 杜 尤	(1915년 3월～1916년 12월)
2대교장	魚 丕 信	(1916년 12월～1934년 6월)
3대교장	元 漢 慶	(1934년 9월～1941년 2월)
4대교장	尹 致 昊	(1941년 2월～1944년 10월)
5대교장	兪 億 兼	(1944년 10월～1945년 12월)
6대교장	白 樂 濬	(1945년 12월～1946년 8월)

연희대학교

초대학장	白 樂 濬	(1946년 8월～1957년 3월)
총장대리	金 允 經	(1947년 9월～1948년 9월)
		(1950년 5월～1953년 3월)

연희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 3월 미국 뉴욕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한 남.북감리교 선교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의 협력을 얻어 서울 Y.M.C.A.에서 Chosen Christian College(문과, 수물과, 상과, 농과, 신과)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개교하였다. 2년 후인 1917년에는 한국 유일의 전문학교인 사립 연희전문학교(문과, 신과, 상과, 수물과, 응용화학과, 농과)로 발족하였고 1923년 3월에 신교육령에 의해 교명이 연희전문학교로 바뀌었다.

연희전문학교는 일제의 가혹한 사상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1938년 4월부터는 일본어, 일본사교육을 강요당하기도 했고 1944년 4월에는 본 대학교를 적산이라는 명목으로

몰수하고 총독부의 관리 하에서 한국인 간부와 교수진을 추방하였으며,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라고 고쳐서 1945년 8.15해방까지 이르렀다.

해방과 함께 미군정이 실시되자 접수위원(백낙준, 유억겸, 이춘호, 김윤경, 이묘묵, 조의설, 김성권)은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의 재산과 운영권을 미 군정청으로부터 인수받아,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회복하였으며 유억겸씨가 교장으로 있다가 1945년 12월 18일 백낙준 박사가 후임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현재의 교지는 1917년 존 언더우드(John T. Underwood)의 기부금으로 구입하였고 찰스 스팀슨(Charles S. M. Stimson)의 기부금으로 스팀슨홀을 건립하여 1920년에 이전한 것이다.

연희전문학교는 창립초기부터 민족정신의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던 해인 1919년부터 시종 한민족의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의 총본산으로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라왔다.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던 백낙준 박사가 종합대학교로의 승격을 목표로 대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한 결과, 1946년 8월 15일 연희대학교로 승격되어 다음과 같이 4학원 11학과의 종합대학교로 인가되었다.

문학원 - 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정치외교과
상학원 - 상학과, 경제학과
이학원 -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
신학원 - 신학과

한편 1949년에는 세브란스 의과대학 예과를 연희대학교에 두었으며, 1950년 연희대학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50년에는 다음과 같이 4대학 17학과로 증설하고 대학원을 신설하였다.

문과대학 - 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정치외교과, 법학과
상경대학 - 상학과, 경제학과
이공대학 -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전기공학과, 공업화학과, 의예과
신과대학 - 신학과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연희대학교는 3개월간 임시 휴교를 단행하였으며 9.28 수도 탈환이후 11월 3일 재등록을 받아 개강하였다. 1.4후퇴로 인하여 연희대학교도 부산으로 피난하게 되어, 1951년 10월 3일 부산 영도에 천막을 치고 개강하는 한편, 1952년 목조 가교사를 낙성하여 계속 강의하다가 서울수복 후 1953년 8월 서울 본교로 환도하여 개강하였으며, 당시의 부산 영도 가교사는 부산 분교, 부산 연세실업초급대학을 거쳐 여학생만을 수용하는 가정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연희대학교는 날로 발전하여 1954년 정법대학을 신설하여 정치외교학과와 법학과를 두었으며, 1955년에는 종교음악의 지도자 배출을 위하여 신과대학에 종교음악과를 신설하였다.

특히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이후 연희대학교는 대학의 운영에서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3. 연세대학교

창립년월일	1957년 5월 제2토요일	
초대총장	白樂濬	(1957년 3월 ~ 1960년 7월)
총장서리	崔鉉培	(1960년 7월 ~ 1960년 8월)
총장서리	元一漢	(1960년 8월 ~ 1960년 12월)
2대총장	高秉幹	(1960년 12월 ~ 1961년 9월)
총장직무대리	張起元	(1961년 9월 ~ 1961년 11월)
3대총장	尹仁駒	(1961년 11월 ~ 1964년 8월)
총장직무대리	趙義卨	(1964년 8월 ~ 1964년 9월)
4대총장	朴大善	(1964년 9월 ~ 1968년 9월)
5대총장	朴大善	(1968년 9월 ~ 1972년 9월)
6대총장	朴大善	(1972년 9월 ~ 1975년 4월)
총장서리	李宇柱	(1975년 4월 ~ 1975년 6월)
7대총장	李宇柱	(1975년 6월 ~ 1979년 6월)
8대총장	李宇柱	(1979년 6월 ~ 1980년 7월)
9대총장	安世熙	(1980년 7월 ~ 1984년 7월)
10대총장	安世熙	(1984년 7월 ~ 1988년 7월)
11대총장	朴煐植	(1988년 8월 ~ 1992년 7월)
12대총장	宋梓	(1992년 8월 ~ 1996년 7월)
13대총장	金炳洙	(1996년 8월 ~ 2000년 7월)
14대총장	金雨植	(2000년 8월 ~ 2004년 2월)
총장직무대행	金重基	(2004년 3월 ~ 2004년 4월)
15대총장	鄭暢泳	(2004년 4월 ~ 2007년 10월)
총장직무대행	尹大熙	(2007년 11월 ~ 2007년 11월)
총장직무대행	池勳商	(2007년 11월 ~ 2008년 2월)
16대총장	金漢中	(2008년 2월 ~ 2012년 1월)
17대총장	鄭甲泳	(2012년 2월 ~ 2016년 1월)
18대총장	金用學	(2016년 2월 ~ 현재)

연세대학교 연표

1885. 4. 10 한국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이 왕립병원으로 개원
4. 23 광혜원, 제중원으로 개칭
1886. 3. 29 제중원에 의학부를 신설하여 경쟁시험으로 학생 16명 선발
1893. 7. 16 에비슨, 제중원의 책임을 맡음
1894. 제중원 운영권이 미 북장로교파선교회로 이관됨
1899. 4 한국 최초의 정규 의학교, 제중원 의학교 설립, 초대 교장에 에비슨 취임
1904. 9. 3 최근대식 신축병원 준공,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명, 세브란스씨로부터 기부금 유치
1908. 6 제1회 졸업생 7명 배출 - 의사면허장 수여
1909. 7 교명을 '사립 세브란스 의학교'로 개칭
1910. 6. 10 제1회 간호학교 졸업생 1명 배출
1913. 북장로회, 북감리회, 캐나다 장로회 등 6교파와 협력 달성, 교명을 '사립 세브란스 연합의학교'로 개칭
1915. 3. 5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를 설립하고 Y.M.C.A에서 개교, 초대교장 원두우, 부교장 에비슨
1916. 12 에비슨 조선기독교대학 제2대 교장으로 선임
1917. 4. 7 '사립 연희전문학교(문과, 신과, 상과, 수물과, 응용화학과, 농과)'인가
5. 14 '재단법인 사립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인가
9 언더우드의 기부금으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의 대지 19만평을 교지로 구입
1919. 3 연희전문학교 1회 졸업생 배출(문과 8명, 상과10명, 수물과 4명)
1920. 3 스팀슨관 준공
1922. 4 '사립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를 폐지하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로 개칭
1923. 3. 26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고치고 설립인가를 다시 받음 - 학칙 일부를 개정
1924. 4 연희학칙 개정 - 수물과 증설, 상과 수업연한을 3년으로
언더우드관 및 아펜젤라관 준공
1927. 3 연희교정에 돌층계 만들어짐
세브란스 교가 제정
1928. 3 핀슨관 준공
1929. 12 연보전 시작됨
1931. 연전 응원가 제정
1932. 3 오긍선, 연전 초대 한국인 부교장에 취임
1933. 5 연전 노천극장 준공
1934. 4 세전 2대교장 오긍선 취임
1934. 9 원한경 연희전문학교 제3대 교장으로 선임
1935. 9. 1.「연전타임스(연세춘추의 전신)」가 월간으로 창간 (한국 최초 대학신문)
1940. 3. 19 연전 수물과를 이과로 개칭
한경관 준공
1941. 2. 25 윤치호, 연희전문학교 제4대 교장으로 선임
1942. 6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명을 '아사히 의학전문학교'로 강제변경
8. 17 연희전문학교를 적산으로 삼아 일제가 강점. 연전 최초 일본인 교장 부임
1943. 11 연전, 마지막 졸업생 68명 배출

1944. 4 연전,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바꿈
1945. 8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로 교명 복구
9 ‘연희전문학교 접수위원회’ 조직
10 유억겸, 연희전문학교 제5대 교장으로 선임됨. 세브란스, 예과 3년, 학부 3년을 두기로 하고 우선 전문학교로 다시 출발하기로 함
11. 6 연전 해방 후 첫 개교
12 백낙준, 연희전문학교 제6대 교장으로 선임
1946. 7. 27 연희대학교 최초의 예과 입학생 모집. 연희대학교 전문부 입학생 모집
8 연희대학교 학칙 제정 인가. 초대 총장 백낙준 취임
4학원, 11개학과 종합대학으로 발족
(문학원 - 국문과, 영문과, 사학과, 철학과, 정치외교과, 상학원 - 상학과, 경제과,
이학원 -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 신학원 - 신학과)
9 연희대학교, 국내 최초로 남녀공학 시작
1947. 8 연희대학교 전문부 제1회 졸업생 배출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승격인가를 받음
1948. 7 세브란스 의예과 제1회 수료와 제1회 의학부 발족
1949. 3 연희대학교 전문부 마지막 졸업, 폐쇄
5. 12 세브란스의대 예과를 연희대학교 이공대학에 설치
12. 1 하버드대학의 연경학사 후원으로 동방학연구소 설치
1950. 5 백낙준 총장, 문교부장관에 취임. 김윤경이 총장대리로 임명
교육과, 법학과, 생물학과, 공업화학과, 전기공학과, 의예과 증설 - 4대학 17과가 됨.
6 대학원 설립
6 6.25사변으로 휴교
1951. 1. 25 거제도에 피난민 구호 병원 개설
1951. 10. 3 연희대, 피난지인 부산 영도에서 개교
1953. 8 연희대, 휴전으로 서울 환도와 학교 복귀 완료
부산에 분교 설치
10. 17 연희극예술연구회 발족
1954. 2. 20 제1회 석사학위 수여식 거행
4. 13 정법대학 신설
8 동방학연구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 연구소의 학술지 「동방학지」 발간
과학관, 도서관, 대강당, 체육관 봉헌
10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건립 시작
1955. 2 신과대학에 종교음악과 신설
3. 23 연희, 세브란스의대, 양교합동을 최종 결정
5. 25 신촌동 현 위치에 세브란스 병원 건물을 착공
7 대학원에 의과 설치를 결정
1956. 3 공업화학과를 화학공학과로 명칭 변경
5. 10 교무회의, 창립기념일을 ‘모교일’로 결정
5. 25 교육관 준공
7. 21 교직원 퇴직 적립급제도 실시
9 각 대학에 과장제 실시
10. 9 동문회, 연희, 세브란스 합동후 교명을 ‘연세’로 건의
10. 16 연희관(과학관) 준공
10. 27 연고 친선 체육대회 개최

12 도서관학과 신설 결정
1957. 1. 5 연희대학교, 세브란스의과대학 통합 → 연세대학교로 출발
2 간호학과 4년제 대학 정규과로 승격(구 세브란스 간호학교)
3. 25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에 백낙준, 부총장에 최현배, 김명선 취임
4. 1 새 배지 패용
10. 9 연세춘추 110호부터 1면을 한글로
11. 23 도서관 준공
1958. 2. 4 워싱턴대학과 경영학 원조조약 체결
3. 3 연세대학교 제1회 학위수여식
4 도서대출증제 실시
5. 9 도서관은 용재관, 교육관은 광복관으로 명명
6. 28 의과대학 신관병실 낙성
10. 22 음영교육연구소(A.V. Center) 설치
백양로 완성
12 경영학과, 건설공학과, 행정학과 신설 인가
1959. 2. 19 부산분교, 실업초급대학으로 발족
4. 1 한국어학당 설립
4. 30 총장 백낙준, 부총장 최현배 유임 결정
10. 1 소아마비 병원 개원식
11. 24 대강당 낙성
1960. 3. 24 연세교육방송 개시
3.26 한국어학당 제1회 졸업
4. 2 새 교기 제정
4. 4 대강당에서 채플 시작
6 성암관 준공
7 총장 서리에 최현배 임명
8. 24 총장 서리에 원일한 임명
10 체육관 완공
1961. 2. 11 제2대 총장, 고병간 취임
5 명예총장에 백낙준 추대
6. 30 명예총장 백낙준 개인장서 기증, 동문배지 제정
8. 30 고대 교무위원회, 연고전 중지를 결정
9. 1 첫「연세대학교 요람」발간
10. 6 총장 직무대리에 장기원 임명
11. 6 제3대 총장, 윤인구 취임
1962. 2. 8 이공대학 이학부, 공학부 분리
3. 24 교목실 신설
6. 5 의대교사, 간호학교 기숙사 및 세브란스병원 신축 봉헌, 서울역전에서 신촌캠퍼스로 이전(미국 China Medical Board 기부금과 주한 미8군 도움으로 1955년 착공)
8. 1 의대 및 병원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의료원 출범
10. 1 연세찬가 제정
12 이공대학 이학부에 체육학과 신설
1963. 1 건설공학과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로 분리
신과대학 종교음악과가 음악대학으로 승격
교회음악과,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신설

3. 23 재단이사장에 강신명 목사 선임
6. 7 '연세실업초급대학' 학칙 변경('연세대학교 부산초급대학'으로 변경)
8 교육관(유억겸 기념관) 준공
10. 7 도서관, 공휴일 개관 발표
10 연고전 재개를 발표
12. 3 연세대학교 부산초급대학이 가정대학으로 개편
1964. 1. 11 교학부총장에 조의설 임명
3 교양학부 신설, 이학부에 지질학과 신설
3. 23 연합신학대학원 설립
9. 11 논지당 뒷숲 '청송대'라 명명
22 제4대 총장, 박대선 취임
10. 19 총무처 신설
1965. 1 지질학과 신설
3. 15 박물관 개관
경영대학원 설립
1966. 2 가정대학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
3. 26 학생처, 교복착용, 흡연금지의 강경책 발표
5 학칙일부 개정(음대 정원 재조정, 교육학과 부전공 인정)
9 인터내셔날 디비젼(International Division) 한국 최초 설치
근로장학금 신설
12. 8 학칙수정으로 교내전과 허용, 상경대학에 응용통계학과, 이공대학에 금속공학과 신설
1967. 3. 10 교육대학원 설립
4. 10 농업개발원 설립
11. 25 치과대 신설, 천문기상학과 신설
12. 7 간호학과, 남학생 입학 허용
천문기상학과, 치의예과 신설
1968. 5 연세학술상 제정 수여
7. 10 제5대 총장에 박대선 재선
30 학생회관 완공
12. 16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상경대학의 상학과가 경영학과로 합치고, 이공대학 이학부에 생화학과, 공학부에 요업공학과, 전자공학과, 식품공학과 신설
1969. 3. 31 '독수리상 건립 위원회' 발족
4. 1 외국어학당 설립
5 경영학교실단 준공
5. 2 푸른샘 개관
9. 29 컴퓨터 센터 설치
11. 10 암센터 개원
12. 17 체육학과 신설
1970. 3 행정대학원 설립
5 독수리상 제막
5. 22 덕소수양관 준공
1971. 3. 24 편입학제 폐지
8. 12 '명예교수 규정' 확정 발표
8. 12 문과대학에 불문, 독문, 사회학과 및 정법대학에 신문방송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인가

1972. 2 본교, 서강대, 이대 대학원 4개학과 학점 교환제도 신설
4. 1 「연세월보」 창간
4. 25 「연세대학교 연보」 창간
6. 23 제6대 총장에 박대선 선임(3선), 산업대학원 신설
9. 21 재단이사장에 이천환 박사 선임
23 영어학당, 외국어학당으로 개칭
12. 11 대학교육개혁안 발표(140학점제, 부전공제, 계열별 모집)
26 가정대학에 아동학과 신설
1973. 3 대학 정문 완성
3. 28 의과대학 신관 준공
8. 30 한국 최초의 '특임 교수직 제도' 시행
9. 13 정문봉헌, 도로포장 개통
12 문과대학에 중어중문학과 신설
1974. 3. 16 치과대학 부속병원인가
8. 8 '75학년도 신입생 입학시험에 예시성적 10% 반영키로 결정
9 유니버시티 채플이 루스채플로 명명되어 봉헌
1975. 3. 20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개원
3 강화지역사회보건원 설치
4. 10 총장서리에 이우주 임명
6. 11 제7대 총장에 이우주 취임
9. 12 연고전 중단 의결
11. 28 백낙준 명예총장 장서 1만여권 기증
1976. 1. 21 졸업논문제 시행세칙 결정
3. 17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교실 개설
8. 30 삼애학교부지 연세대학교에 기증(면적 57,223평)
-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 제14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정
8. 31 음악관 준공
9. 3 '77학년도 입시요강 일부 변경. 실업계 정원 10% 무시험 선발 결정
10. 28 교양학부 해체, 이공대학을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
1977. 1 보건대학원 설립
2. 14 재단법인 '연세암센터' 발족
3 학생지도연구소를 통합 학생상담소 신설. 교양학부 해체, 이공대학 이학부와 공학부가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 승격
6. 25 학생회관 증축 완공
11. 30 국내 최대 천체 망원경 도입
12. 28 의과대학 원주분교 신설
1978. 3. 15 학생회관 무악극장 개관
7. 19 '79학년도 입시에서 문과대학, 이과대학 계열별 모집키로 결정
9. 7 '79학년도 입시요강 대폭개정(본고사, 국, 영, 수 예시 반영률 40%에서 53.1%로 개정)
10. 6 우유가공 실습장 준공
27 제8대 총장에 이우주 연임
10 원주분교, 보건학과 신설
1979. 3. 30 신축 중앙도서관 준공
9. 3 실내수영장 개장
12. 17 천문대 일산관측소 설치

1980. 8. 25 제9대 총장 안세희 취임
9. 2 학도호국단, 학생활동기구로 복귀
18 연고대 실무자 회의, 연고전 개최 않기로 합의
'81학년도 대학 개편, 심리학과, 신과대학에 사회사업학과 신설, 사범대 독립(교육학과, 체육교육과), 정법대는 사회과학대학으로, 법학과가 법과대학으로 승격.
11 공학관 증축 완공
12. 17 삼애수양관 개관
12 연세대학교 천문대 완성
배민수기념관 개관
1981. 1. 8 원주분교, 원주대학으로 승격. 10개학과(의예과, 의학과, 보건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15 배지 도안 바꿈
30 수업시간 변경안 결정(10교시 배정)
3. 2 교련학점 변경(전방 경계훈련 추가)
17 도서관 음악도서실 개관
6. 5 스팀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라관, 사적으로 지정됨
12. 12 동문회, 제1회 연세의 밤 개최
3 학칙 개정 발표(학사경고 3번째에 제적)
1982. 1 신입생 계열별 모집에서 학과별 모집으로 변경
2. 13 연세명일빌딩 봉헌
24 교내 언론기관 편집인 일원화
3. 1 「교내소식」 창간
본관(언더우드관)을 대학본부로 사용하고 문과대학을 인문관(현재 외솔관)으로 신축이전
4 연세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
6. 22 연세매지방송국(YMBS) 개국
10. 5 이과대학에 전산과학과 신설.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는 전자전산기공학과로, 음악대학 종교음악과는 교회음악과로, 사범대학은 교육과학대학으로 변경
원주대학이 원주대학과 원주의과대학으로 분리
원주대학에 국어국문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신설
11 '83학년도부터 수강 예비등록제 실시키로 결정
11. 1 학생회관 1층에 한일은행(우리은행 전신) 간이예금취급소 개설
11. 12 국제학부 강좌를 일반학생들에게도 수강하기로 결정
1983. 2 가정대학 남학생 입학 허용
3. 4 인천산업병원 개원
4. 4 영동세브란스병원 개원
4. 15 세브란스병원 용인 및 광주분원 개원
7. 11 하와이대학과 자매결연
5 남가주대와 자매결연
9. 7 연고대 총장, '83학년도 연고전 취소결정' 공동 발표
9 인터내셔날 디비젼을 국제교육부(Divis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로 확대 개편
1984. 2 과학관 준공
3. 4 원주대 기숙사 완공
6 여름 계절제수업 실시
6. 14 연세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후원회 발족
6. 15 제10대 총장에 안세희 연임

7. 24 연세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회 사무국 신설
8. 16 원주대학 인문관, 자연관, 기숙사, 영빈관 준공
10 원주대학이 문리대학(국문, 영문,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과)과 정경대학(경제, 경영, 행정, 법학과)으로 분리, 공과대학 전자전산기공학과가 전자공학과로 변경
11. 1 11년 만에 학생의 날 부활
12. 1 외국 85개 대학과 학생 교환협정을 맺고 '85년 3월부터 학생교환
1985. 5. 8 창립 10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5. 11 창립 100주년
5. 30 창립 100주년기념 국내순회음악회 실시
7. 31 과학관 옥상에 천문대 돔설치
9. 23 천문대, 핼리혜성의 국내 최초 사진검출 성공
11. 1 국제교육부 부속교육기관으로 편입
11. 6 창립 100주년기념 연세콘서트콰이어 미주지역 순회음악회 실시
12. 20 「연세대학교 백년사」 발간
1986. 1. 13 '86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논술고사 실시
1. 20 '86학년도 제1학년 입학생부터 채플을 교양필수과목으로 결정
5. 2 TELEX설치(YONSEI K29127)
5. 3 제1회 동문의 날
9. 13 산업대학원 부설 산업고위자과정 개설
10. 6 '새 한국어사전 편찬 추진 위원회' 구성
10. 10 용재문고 현판식 거행
10. 30 창립 100주년 기념 연세콘서트콰이어 동남아순회음악회 실시
11. 6 원주의과대학의 보건학과가 보건과학대학(보건행정학과, 환경과학과, 임상병리학과, 재활학과, 의용공학과) 승격
11. 13 음영교육연구소에 비디오도서실 신설
11. 22 매지캠퍼스 노천극장 준공
11. 29 국제학대학원 설립
1987. 3. 1 기획실에 섭외홍보과 신설, 100주년 사무국 업무 인계
3. 25 원주부총장 직제 신설
4. 10 광혜원 복원 및 알렌관 신축 봉헌
4. 30 「연세대학교 규정집」 발간
5. 2 용재 백낙준 박사 동상 제막
5. 8 재활원 신축, 제중관 증축 봉헌
8. 27 원주기독병원 모자보건종합센터 봉헌
12. 19 국제학사 준공
1988. 3. 3 백주년기념관 준공
7. 21 매지캠퍼스 학생회관 준공
8. 10 제11대 총장, 박영식 취임
9. 14 이한열 추모비 건립
12. 14 중국 북경대학교와 교수학생 교류 등 합의
1989. 2 문리대학에 통계학과, 전산학과 및 보건과학대학에 산업보건학과 신설
6 한국.외국어학당이 언어연구교육원으로 변경
한국어사전편찬실 및 아식(ASIC) 설계공동연구소 설치
연세대학교의 학문적 숨결이 담긴 「진리.자유」 계간지 창간
8. 18 원주의과대학 학생기숙사 준공
8 외국 150개 대학과 학생교환 협정 체결

9. 11 소련 동방연구소(소련 과학원 산하)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0. 23 소련 모스크바 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10 문과대학에 노어노문학과 신설. 가정대학이 생활과학대학으로, 식생활학과가 식품영양학과로, 천문기상학과가 천문대기과학과로 명칭 변경. 문리대학에 사학과, 낙농학과 신설. 관리과학대학원 신설
11. 2 무악학사 준공
1990. 4 영동세브란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봉헌
6. 14 학교 심벌마크, 씰, 로고, 레터헤드 표준 제정
8. 13 소련 모스크바대학 및 레닌그라드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9. 1 '교수연구년제'실시
10. 16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명칭 변경
11 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척추센터 봉헌
11. 30 매지캠퍼스 보건관 봉헌
12. 21 언어연구교육원 봉헌. 매지2학사 봉헌
1991. 2. 3 직원해외 연수 실시(제1회)
2. 28 농업개발원 폐원
3. 1 연구처 신설
4. 30 음악대학신관 봉헌
5. 10 심장혈관센터 봉헌
6. 22 암센터신관증축 봉헌
10. 22 공과대학에 전파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교육과학대학에 사회체육과, 문리대학에 철학과, 정경대학에 국제관계학과 신설, 요업공학과가 세라믹공학과로, 의용공학과가 의용전자공학과로 명칭 변경
11. 26 언론홍보대학원 신설
1992. 3 언어연구교육원이 연세어학원으로, 전자계산소가 연세전산원으로 변경
3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 설립
5. 9 연세한글탑 건립
7. 31 공과대학에 도시공학과, 정경대학에 경영정보학과 신설
8. 3 제12대 총장, 송 자 취임
9. 18 용인세브란스병원 증축 봉헌
12 연세발전위원회 출범
1993. 1. 31 광주세브란스분원 폐쇄
3. 1 의료원 책임경영제실시(영동세브란스 분원인 용인세브란스분원을 병원으로 승격.분리 독립운영)
3. 1 광주정신병원을 매입하여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으로 운영
3. 8 의료원 환자의 권리장전 제정 선포
5. 3 원주의과대학 종합관 봉헌
5. 8 동문회관 봉헌
6. 30 (주)연세유업 아산공장 봉헌
7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설립
7. 20 섭외부총장제 신설
8. 18 무악2학사 봉헌
9. 3 공과대학에 산업시스템공학과, 원주의과대학에 간호학과 신설
9. 3 식품공학과가 식품생물공학과로, 낙농학과가 생물자원공학과로 명칭 변경
9. 4 특허법무대학원 신설
10. 19 제1회 배민수 기념강좌 개최

12. 29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봉헌
1994. 3. 7 제2공학관 봉헌
3 신호처리연구센터설립
6. 8 세브란스 건강증진센터개원('96. 2. 1일자로 세브란스건강진단의원으로 개칭)
7. 1 몽골 연세 친선 병원 개원
8. 19 매지3학사 봉헌
8. 31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관 및 주차장 봉헌
9. 16 연세 교정 환경 회복 선언
10. 31 정인보, 최현배, 김윤경, 홍이섭 선생 얼굴상 봉헌
12. 13 전산과학과가 컴퓨터과학과로, 사회사업학과가 사회복지학과로, 의생활학과가 의류환경학과로, 주생활학과가 주거환경학과로, 원주 생물학과가 생명과학과로, 산업보건학과가 산업환경학과로 명칭 변경
1995. 9. 1 신과대학 사회복지학과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로 소속대학 변경
10. 1 '세브란스' 명칭 서비스표 등록
12. 18 새 치과대학치과병원 신축 봉헌
1996. 3. 1 야간 간호학과 3학년 편입생과정 신설
이과대학 컴퓨터과학과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로 소속대학 변경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과가 환경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문과대학 11개학과가 인문학부로, 상경대학 3개학과가 상경계열로, 이과대학 7개학과가 자연과학부로, 공과대학 7개학과가 기계.전자공학부로 2개학과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로, 생활과학대학 4개학과가 생활과학부로 원주 문리.경법.보건과학대학 11개학과가 인문사회계열로, 문리.보건과학대학 12개학과가 자연과학계열로 개편
4. 30 임상의학연구센터 및 연세장례식장 봉헌
5. 30 '연세 21세기 계획' 최종보고서 발간
6. 1 상경관 봉헌
7. 20 '96 교육개혁 박람회' 참가(교육부 주최)
8. 1 13대 총장, 김병수 취임
9. 24 간호대학 신축 봉헌
10. 4 '이.공계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대학' 최종 선정
10. 17 안.이비인후과병원 봉헌
10. 21 '96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 '학생선발분야' 최우수선정
11. 14 '국제 전문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최우수선정
12. 1 발전협력처를 대외협력처로 명칭변경, 기획실 홍보과를 대외협력처로 직제 개편.
1997. 2. 8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방우영 취임
2. 27 「진리.자유」복간
3. 1 문과대학 인문학부(11학과)가 인문학부(8개전공)와 유럽어문학부(3개전공)로, 공과대학 2개학과가 재료공학부로, 교육과학대학 2개학과가 체육계열로, 원주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이 문리대학 인문과학부(4개전공)와 자연과학부(7개전공)로, 정경대학이 경법학부(6개전공)로, 보건과학대학이 보건과학부(7개전공)로 개편, 이과대학 지질학전공이 지구시스템과학전공으로, 천문학전공이 천문우주학 전공으로, 공과대학 식품생물공학과가 생명공학과로 명칭 변경, 원주 환경학전공이 환경과학전공과 환경공학전공으로 세분
(생활환경대학원 설립)
6 정보저장기기 연구센터설립
7. 1 연세의료원 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신설

7. 28 공과대학 제3공학관 봉헌
8. 12 의료원 광혜원 연소 사용결의
9. 1 연구처와 진리.자유편집실을 독립기구로 직제 개편
10. 13 원주의과대학 제2원의학사 의.치.간호대학생기숙사 봉헌
10. 14 '정보통신분야 특성화추진사업단' 설립
12. 8 언어연구교육원의 L.A. 분원인 연세어학당 개원

1998. 3. 1 공과대학 기계.전자공학부 7개전공이 3개전공(전기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정보산업공학전공)으로, 사회과학대학 4개학과가 사회과학계열로, 통합 원주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과 야간 3학년 편입생과정 신설
(경영대학원에서 경제대학원이 분리 독립)
5. 9 무악 3.4학사(의치간호대학생 기숙사 및 고시동.교원숙소) 봉헌
6. 19 미디어아트연구소.연세영상제작센터 개원
8. 24 제2인문관(현재 위당관) 봉헌
9. 18 연세의료원 21세기 발전전략계획(비전 21) 수립을 위한 비전 21위원회와 기획단 및 실무팀 구성
10 준결정 재료단 설립
10. 31 강화지역사회보건원폐쇄
11. 10 「연세한국어사전」 출판
12. 17 상남경영관 봉헌

1999. 2. 1 생활과학대학(삼성관) 봉헌
3. 1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와 건축공학과를 사회환경건축공학부로, 화학공학과와 생명공학과가 화공생명공학부로 통합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의 임상병리학전공이 임상병리학과로, 재활의학전공이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로 독립
특허법무대학원이 법무대학원으로 변경
3 연세공학원 준공
7. 27 사회복지센터.청년문화센터 설치
8. 27 과학영재교육센터 설치
9. 1 학부대학 설립
11. 24 연세의료원 21세기를 향한 비전 선포

2000. 1. 30 연세종합서비스센터 설치
3. 1 서울캠퍼스: 6개 모집단위(인문, 사회, 이학, 공학, 의.치의학, 예.체능계열)로 통합 / 국제학대학원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2개 전문대학원(정보대학원, 영상대학원) 신설
원주캠퍼스: 보건과학대학의 보건과학부 명칭이 보건환경의공학부 3개전공(보건행정학, 의공학, 환경공학)으로 변경
4. 3 통합 행정 정보시스템 가동
4. 10 연세의료원산하 전문진료기관 명칭 앞에 '세브란스' 사용키로 함
5. 13 타임캡슐 백주년기념관 앞에 매설(창립 200주년 기념일인 2085년에 개봉 예정)
'윤동주 기념실' 개원(핀슨관 2층). 연세과학원 봉헌
8. 1 제14대 총장 김우식 취임
9. 27 교육부 교육개혁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10. 23 삼애캠퍼스에 국제규격의 야구장과 축구장 건립

2001. 3. 1 서울캠퍼스: 대학의 모집단위를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신학, 생활과학, 예.체능, 의.치.간계열로 조정
사회복지대학원 신설
원주캠퍼스: 보건.환경.의공학부가 환경.의공학부와 보건행정학과로 조정

4. 12 특성화계획 확정 : 국학진흥연구단, 국제학연구단, IT연구단, CT연구단, NT연구단, 의료 및 의용기술연구단
4. 25 통합형 디지털 도서관 가동
5. 11 제1회 윤동주시문학상 시상식 및 기념강좌 개최
5. 12 UI(University Identity 대학이미지 통합) 확정 발표
5. 25 기여우대제실시계획 발표
10. 22 제1회 언더우드선교상 시상식 및 기념강좌 개최
11 간호대학, 국내 첫 간호대학원 설립

2002. 3. 1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4개 학부 10개 전공을 7개 학부 10개전 공으로 개편하고 학부.전공명칭 변경(기계전자공학부→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산업공학부. 사회환경건축공학부→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축도시공학부, 재료공학부→신소재공학부. 정보산업공학전공→컴퓨터산업공학전공. 금속공학전공→금속시스템공학전공)
원주캠퍼스: 문리대학 디자인학부와 정보기술학부 신설
경법대학 경법학부를 사회과학부, 경영.정보학부, 법학부로 분리
보건과학대학 환경.의공학부를 환경공학부와 의공학부로 분리하고 방사선학과 신설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신설
보건환경대학원 신설
5. 31 세브란스병원 2002 FIFA월드컵 지정병원으로 선정
영동세브란스병원 협력 병원으로 지정
10. 23 의료원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가동
11. 25 글로벌 라운지 개소
경영학과를 상경대학에서 분리하여 경영대학 신설

2003. 1. 13 여성인력개발연구원 설립(대학교부설연구원)
2. 28 김대중도서관 설립(부속기관)
3. 1 국가고시정보센터 설치
3. 5 대학출판문화원 설립(출판부와 진리자유편집실을 산하기관으로 둠)
3. 25 제4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쟁력 향상 대회 학교법인 부문 '디지털 경영대상' 수상
4. 28 자외선 우주관측위성 '갤렉스(GALEX)' 발사(NASA 공동개발)
5. 6 산학협동연구관 봉헌
6. 5 하멜 표류 350주년 기념 '연세대-Leiden대 국제학술대회' 개최
6. 13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 '한국문화학술행사' 개최(L.A.)
6. 18 원주캠퍼스 '첨단 의료기기테크노타워' 준공
6. 19 국가관리연구원 설립
7. 14 학사포탈시스템(portal.yonsei.ac.kr) 개통
8. 15 원주캠퍼스 윤동주백일장 개최
9. 5 원주캠퍼스 연세스포츠센터 봉헌
9. 17 제1회 명예교수의 날 개최
10. 28 언더우드가기념관 개관
11. 3 김대중도서관 개관
12. 4 ~5 리더십센터 제1회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2004. 2. 28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3. 1 사회학과, 문과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변경
원주캠퍼스 경법대학을 정경대학으로 명칭 변경
4. 9 제15대 총장 정창영 취임

5. 8 운동선수 기숙사 봉헌
5 보건대학원 국내 최초로 국제사이버 보건대학(International Cyber University for Health, ICUH) 설치
9. 1 원주 ERP 시스템 시행
10. 26 언더우드가 선교사역 찬하식 개최
11. 30 원주캠퍼스 학생회관 증축 봉헌식
2005. 2. 1 언더우드국제학부 설립
3 전임교원의 복수학과 소속제 도입
3. 18 나노메디컬 국가핵심연구센터 개소
3. 28 신촌.원주 홈페이지 통합 개편
5. 4 세브란스 새병원 봉헌식
5. 9 신학관 봉헌식
5. 11 첨단과학기술연구관 봉헌식
5. 14 창립 120주년 기념식
연세비전 2020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 선포식
5. 18 연세대학교 교수윤리강령 선포
5. 26 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신촌 밸리 선포식 개최
9 특별채용교원 상시지원제도 도입
성적평가 및 재수강 제도 개편, 학사경고자 관리 강화
9. 7 영동세브란스병원 별관 봉헌식
10. 7 연세자원봉사단 발대식
10. 25 보건진료소를 건강센터로 명칭 변경
연구처 산하에 시약센터 설립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신설
관재처 신설 (총무처 설비안전부와 시설부를 분리 독립)
12. 2 창립 120주년 기념 연세-USC 공동 심포지엄 개최
12. 19 미우관 리모델링 완공식
2006. 1. 26 인천시와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
중앙도서관 내 고서과를 국학자료실로 확대 개편
1 의、치、간 세 분야 국가고시 수석 석권
2. 17 삼성관 증축 완공
4. 26 시설처를 관재처로 명칭 변경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보통신처 정보화추진부 신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설추진단 신설
5 인천시와 국제캠퍼스 토지공급계약 체결
5. 13 언더우드가 기념관 재개관
8. 2 (주)YSPC 설립
9. 17 삼애교회 창립예배
배민수기념전시실 재개관
10. 24 기획실 디자인센터를 대외협력처로 이관, 대학출판문화원의 「진리.자유」 발행업무를 대외협력처로 이관
감사실 신설
언더우드국제학부를 언더우드국제대학으로 확대 개편
국제교육교류원을 국제처로 승격
교무처 교육개발센터와 사이버교육지원센터를 통합, 교육개발지원센터로 명칭변경

취업정보실, 상담센터, 여성인력개발연구원, 리더십센터, 국가고시정보센터를 폐지하고 리더십개발원을 신설
대학언론사 신설, 신문방송사 아래에 연세춘추사, 교육방송국, The Yonsei Annals를 두고 각 주간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함

2007. 1. 15 실험동물연구센터 신설
입학관리처에서 입학처로 명칭변경
3. 1 그룹웨어시스템 출범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와 영상대학원을 통합하여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설립
4. 4 Global 5-5-10 사업단 선정(한국학, 화학, 천문우주, 물리, 의생명, 신소재, 전기전자, 기계, 대사질환, 나노메디컬, 노화과학, 의공학)
4. 26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7 세브란스병원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9. 1 종합서비스 센터 내 One Call 서비스팀 신설
여학생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폐소 및 리더십개발원 내 여성커리어개발팀 신설
9. 10 제2회 연세노벨포럼 개최
9. 13 수소스테이션 준공
10. 30 성폭력상담실을 성희롱·성폭력상담실로 변경
11. 21 전자행정업무편람(e-SOP)도입
12. 17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 발표 '2006년도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 논문 게재 수, SCI급 논문 게재 수, 연구비 규모, 산학협력단 자금 규모,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등 주요 부분에서 전국 사립대학 1위

2008. 1. 18 중앙도서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변경
1. 30 세브란스병원 로봇 트레이닝 센터 개소
2. 1 제16대 총장 김한중 취임
3. 26 의료원 종합관 및 장례식장 봉헌식
4. 15 교육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를 스포츠레저학과로 명칭 변경
5. 10 연세.삼성학술정보관 개관
5. 29 연세 재활학교 신축 봉헌식
6. 30 노동조합 창립 제2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7. 9 ~11 QS APPLE 컨퍼런스 개최
9. 1 법학과(계열)를 폐지하고 자유전공 신설
언더우드국제대학-일본 게이오대학-중국 홍콩대학 3-캠퍼스 프로그램 출범
9. 10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2007년도 SCI논문 분석 결과 우리대학교 SCI논문수 세계 96위로 도약
10. 9 영국 '더타임스'지의 2008년 세계 대학 평가에서 우리대학교 203위 기록(국내 사립종합대학 1위)
11. 14 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개장식
11. 26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기공식
11. 29 원주캠퍼스 창립 30주년 기념식
12. 2 사회복지대학원 산하 자원봉사센터 개소
12. 17 2008 과학기술창의상 수상
12. 18 경영대학, AACSB-International 경영교육 국제인증 획득

2009. 1. 6 광복관별관 준공
1. 7 동서문제연구원 내 EU센터 개소

2. 20 등록금 카드납부 실시
3. 1 영동세브란스병원 명칭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변경
사회교육원 명칭 평생교육원으로 변경
3 동서문제연구원 발행 저널 Global Economic Review, 국내 최초 SSCI에 등재
4. 1 원주캠퍼스 대학본부, 미래관, 청연학사 봉헌식
5. 22 한국어학당 창립50주년 기념식
6. 1 행정 효율화를 위한 팀제 시행(본교)
8. 13 원주캠퍼스 박경리 선생 문학비 건립
8. 15 LA 연세어학당 South Baylor대학 건물로 이전 개원
9. 1 학교 중국어 대표 홈페이지 오픈
9. 24 국방 피탐지 감소기술 특화연구센터 개소
10. 8 영국 '더타임스'지 2009년 세계 대학 평가 151위
10. 15 학교 정문 담장 개방 및 녹화 사업 준공
11. 2 GS칼텍스 산학협력관 봉헌식
12. 1 쇼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2010. 1. 1 학교 전국 대표 전화번호(1599-1885) 서비스 시행
3. 3 국제캠퍼스 봉헌식
3. 8 유진하이마트 어린이집 준공
3. 9 의과대학 교수동 봉헌
3. 19 SK국제학사 준공
4. 9 광혜원.제중원 개원 125주년 및 에비슨 탄생 150주년 기념식 개최
4. 28 Jan Peter 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 명예문학박사 수여
5. 6 외솔 최현배 선생 부조상 제막식
5. 7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 개소식
5. 8 연세 창립 125주년 기념식
5. 12 연세-UC 버클리 로스쿨 복수학위제 도입
5. 14 원주캠퍼스 비전 2020+ 선포식 개최
6. 17 영빈관 봉헌식
8. 25 IT명품인재양성사업 선정
9 영국 QS 세계 대학 평가 142위
10. 7 간호사 배출 100주년 기념행사
10 경영전문대학원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선정 세계 100대 EMBA 71위 기록
11. 5 원주기독병원 50년사 출간
12. 1 학교 새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로 변경
12. 2 학술정보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대학도서관 평가 1위(최우수 도서관 선정)
2011. 3. 1 국제캠퍼스 교육원 직제 신설
3. 2 국제캠퍼스 정규학위과정(약학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시작
3. 9 원주캠퍼스 프라운호퍼 의료기기 공동연구센터 개소
3. 18 2011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종합대상 수상
3. 23 국제캠퍼스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개소
4. 20 창업센터, 창업지원단으로 조직 개편 및 개소
5. 31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설립
8. 19 HPAIR 2011 Asia Conference 개최
8. 27 용재관 사용 기관 이전 (교육과학대학 교육학부는 종합관(현 교육과학관)으로, 체육교육학과는 체육교육관으로, 교육연구소는 아펜젤러관으로, 대학출판문화원은 무악학사로 이전)

9. 2 교원양성기관 평가 전국 1위 기록
9. 4 QS 세계대학평가 129위 기록
9. 28 연희전문학교 교기 61년만에 반환
9. 30 국제캠퍼스 2단계 공사 착공
10. 4 중앙도서관, 체육관 리모델링 완료 및 개관
10. 9 출판문화원, 외솔 영인본 전집 발간
11. 9 제10차 한-일 밀레니엄 포럼 국제캠퍼스 개최
2012. 1. 18 자연과학연구원, 생명시스템연구원 개소
2. 7 제17대 정갑영 총장 취임식
3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국제대학 아시아학부 및 테크노아트학부 신설
3. 21 한국어학당 200회 졸업식 및 기념전시회
3. 23 동서문제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4 원주캠퍼스 무감독 시험 시행
4. 5 스포츠센터 봉헌식 및 체육관과 독수리상 새단장 기념식
5. 12 창립 127주년 기념식, 연세 '제3의 창학' 비전 선포
5. 17 윤리경영담당관직 신설
5. 24 연세-게이오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 및 연세도쿄센터 개소
6. 8 국제캠퍼스에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개소
8. 13 윤동주 시인 육필원고 및 유품 연세대에 기증
8. 31 스포츠센터를 스포츠과학관으로 명칭 변경
9. 1 비서실(비서팀)을 총장실(미래전략팀)로 명칭 변경
평생교육원을 미래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성희롱·성폭력상담실과 여학생센터를 성평등센터로 통합
국제처 국제교육센터 신설
학부대학에 RC교육원 신설 (국제캠퍼스 교육원 폐지)
9. 10 2012 QS 세계대학평가 112위 기록
9. 12 백양로건설사업본부 신설
10. 8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 전체 3위, 종합대학 1위 기록
10. 12 용재관 해체 및 철거
12. 13 항공전략연구원 개소
2013. 1. 4 미래융합연구원 개소
1. 16 故 손보기 교수 소장 국보급 삼국유사 고판본 수증
1. 24 원주캠퍼스 노천극장, '강원도 경관 우수건축물' 선정
2. 1 원주기독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명칭 변경
2. 27 윤동주 시인 육필유고 및 유품 수증
윤동주기념관 현판식 (핀슨홀)
2. 28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LA분원 폐지
3 2012 네이처 출판 지수(NPI) 국내 1위
3. 2 국제캠퍼스 RC(Residential College) 교육 시작
4. 3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리모델링 완료, '백양콘서트홀'로 개관
4. 4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학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
앤드류 해밀튼 영국 옥스퍼드대 총장에게 명예이학박사학위 수여
4. 10 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봉헌
4. 11 명예특임교수제도 신설
4. 22 국제캠퍼스 1-2A단계 봉헌식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진리관 A.B.C.D, 지혜관B, 크리스틴채플)

4. 26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김석수 이사장 취임
5. 7 3-캠퍼스(연세대, 일본 게이오대, 중국 홍콩대) 동아시아학 컨소시엄 협약 체결
5. 11 창립 128주년 기념식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기공식
5. 22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개소
5. 23 강남세브란스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5. 24 원주캠퍼스 창립 35주년 기념식
6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16위
7. 1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7. 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 개시
7. 10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와 전략적 동반자 협약 체결
9 2013 QS 세계대학평가 114위
9. 1 관재처를 시설처로 명칭 변경
리더십센터를 동서문제연구원 산하로 편입
9. 13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AAHRPP) 전면재인증 획득
9. 18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환태평양대학협회) 가입
9. 23 음악대학 A동 리모델링 재개관
10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 2013 대학평가 세계 190위
10. 15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에 '연세제네바센터(Yonsei Geneva Center)' 개소
10. 25 국제캠퍼스 크리스틴채플 봉헌식
11. 8 도산 안창호 선생 명예졸업증서 수여
11. 15 공자아카데미(延世大學孔子學院) 개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미감병원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
종합교실단(종학관)을 교육과학관으로 명칭 변경
11. 19 국제캠퍼스 '포스코 그린빌딩' 개관식
12. 26 국내 최초 국제동계대학(WAY : Winter Abroad at Yonsei) 프로그램 개설
2014. 1. 11 글로벌인재학부설립준비위원회 설치
1. 15 고 원일한 박사 10주기 추모 예식
3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과학공학부 및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신설
3. 3 새 U.I.(University Identity) 시행
3. 18 제네바대학 연세 센터 개소
4. 3 국제캠퍼스 1-2B단계 봉헌식 (제2기숙사, 지혜관C, 데크주차장)
4. 14 연세암병원 개원
4. 29 대학평의원회 설치
5. 10 창립 129주년 기념식
제중학사·법현학사 재건축 기공식
5. 29 원주의과대학 간호학부 20주년 기념식
6. 2 영국 FutureLearn과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 협약 체결
6. 10 미국 국립발명가협회(NAI) 발표, 미국특허 보유 세계 100대 대학 선정
6. 14 경영대학 부속 경영교육혁신센터 신설
6. 16 과학관 증축 및 입면개선 공사 기공식
6. 17 원주캠퍼스 라돈프리하우스 봉헌식
6. 19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 2014 아시아 대학평가 종합 17위
9. 1 Open & Smart Education 위원회 설치
9. 4 금호아트홀 착공식
9. 16 QS 2014 세계대학평가 세계 106위
Coursera와 콘텐츠제공 협약 체결

11. 11 우정원 기숙사 준공식
11. 20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가입
2015. 1. 1 중국연구원, 바른ICT연구소 신설
국제캠퍼스 글로벌인재학부, GIT 신설
3. 3 GIT 제1회 입학식
4. 8 백양로 재창조 사업 조경 식수 기념 행사
4. 10 제중원-세브란스 130주년 기념행사
4. 22 국제캠퍼스 디자인 팩토리 코리아(Design Factory Korea) 개관
4. 27 국내 최초 글로벌 MOOC 플랫폼 Future-Learn 온라인 공개강좌 개설
4. 29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RC체험행사 개최
4. 30 IBS 기초과학연구단 운영지원 협약식
5. 9 연세창립 130주년 기념식
5. 21 최첨단 안전캠퍼스 보안 시스템 Y-Safe 개통
5. 22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 및 기념식
5. 30 상경·경영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식
6. 4 제중학사·법현학사 재건축 착공식
7. 29 제1공학관 남북윙 봉헌식
8 백양로 재창조 사업 후원자 2만명 돌파
8 새로운 수강신청 제도 Y-CES 성공적 도입
8. 3 심장혈관병원, 100번째 심장 이식 성공
8. 31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식
9. 1 S-Campus 서비스 오픈
9 제50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대 합격자 배출
9. 17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래센터 봉헌식
9. 21 경영관 신축 봉헌식
9. 21 공과대학 타워동 착공식
9 로이터(Reuters) 선정 세계혁신대학 36위
10. 7 백양로 재창조 봉헌식
10 연세 MBA 프로그램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평가 45위 선정
11. 6 연세치의학 100주년 기념식
11. 11 미국 에모리대학과 전략적 파트너 협정 체결
11. 16 이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식
11 제57회 사법시험 최다 합격자 배출
2016. 2. 1 제18대 김용학 총장 취임
3 차세대 기가 와이파이 캠퍼스 구축 완료
3. 22 칭다오 세브란스 병원 건립 합자계약 체결
4 국제캠퍼스에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글로벌 공동 연구소(GRL-FYK) 개소
5. 13 연세 창의공간 선포식
5. 14 연세창업대상 제정
5. 14 교훈석(진리자유석) 백양로 이전
5. 17 연세우유 4,000억원 중국 수출 계약 체결
7. 26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개소식
8 세계 100대 미국 특허 보유대학 50위 랭크
8 글로벌 무선 로밍 서비스 '에듀롬' 오픈
8 백양누리, 녹색건축물 인증심사 최우수등급 획득
8. 31 로이터 선정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9위 랭크

9. 9 Y-IBS관 착공식
10. 12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10 .25 삼애교회 창립 10주년 행사 개최
10. 31 원주캠퍼스,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선정
2017. 1. 5 연희대학교, 세브란스의과대학 통합 60주년
1. 18 제중-법현학사 봉헌식
2 창립 132년만의 학위가운 디자인 개선
2. 18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허동수 이사장 취임
4. 8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 기념식
4. 29 교육대학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5. 13 제4공학관 봉헌식 개최
창의공간 Y-Valley 개소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및 부조 동판 설치(2016 윤동주, 2017 이태준)
5. 30 원주의과대학 새기숙사 증축공사 기공식
6 대학교부설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 설립
6. 5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식 및 연세의료복합단지 MOU 체결식
6. 30 Adobe와 '디지털 교육혁신 기반의 다자간 산학협력협약' 체결
9 연세-고려 양교 공동강의 최초 개설
9. 23 정기연고전 사상 첫 5전 전승
9. 25 글로벌사회공헌원 개원식 및 반기문 명예원장 취임식
10. 18 세브란스 병원,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11. 22 대학원 권리장전 및 명예선언문 선포
12. 5 연세우유, 유업계 최초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12. 13 2017 대한민국 사립종합대학교 사회책임지수 1위 랭크
12. 21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 교육 · 연구 중심대학' 지정
2018. 2. 1 직제 개편으로 미래전략실 및 고등교육혁신원 신설
2. 7 글로벌 지속가능포럼 개최
2. 27 국제캠퍼스 YSLI(Yonsei SL BIGEN Institue) 착공식
3. 29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식
5. 11 언더우드가기념관 재개관식 및 IBS관 봉헌식
5. 12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및 부조 동판 설치(2018 현봉학)
5. 18 원주캠퍼스 창립 40주년 기념식
7. 2 중국 칭다오 세브란스병원 착공식
9. 1 글로벌인재대학 단과대학 승격
9. 12 구글 북스 파트너십 계약체결식
10. 15 웹메일 시스템, 클라우드 메일 전환
10. 17 KT와 '세계 최초 5G 상용망 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 2. 13 UNFPA(유엔인구기금) 한국 사무소 개소
2. 21 마하트마 간디 흉상 제막식
2. 26 연세스타트업스쿨 창업경진대회 개최

캠 퍼 스

1. 교지(校地)의 지리적·역사적 배경

가. 지리적 배경

연세대학교는 서울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6km 지점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소재하고 있다. 신촌로터리에서 북쪽 무악산을 바라보며 5분쯤 걸어 들어가면 연세의 관문인 백양로에 닿게 된다. 여기서 잠깐 무악의 줄기를 살펴보면, 오른편에 영조(英祖)의 후궁 영빈 이씨(映嬪李氏)의 원묘(園墓)인 수경원(綏慶園)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무악의 동맥이요, 그 서쪽으로 길게 뻗친 서맥이 있는데, 그 사이에 푸른 언덕이 관악을 바라보며 길게 뻗쳐서 있으니, 이곳이 곧 무악의 명당이며, 정종 때 세운 연희궁(衍禧宮)의 궁터로서 만여 평에 달하는 유서 깊은 대야평(大野坪)으로 겨레의 배움터인 연세대학교의 교지이다. '연세의 노래'첫 머리에도 나와 있듯이 "관악산 바라보며 무악에 둘려, 유유히 굽이치는 한강을 안고, 푸르고 맑은 정기 하늘까지 뻗치는, 연세 숲에 우뚝 솟은 학문의 전당" 이것이 연세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배경의 묘사이다.

나. 역사적 배경

무악(毋岳) : 무악주산론(毋岳主山論)의 제청이 태조 2년 하륜(河崙)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장되자, 태조는 그의 3년에 무악을 친히 간심(看審)하였다. 또한 태조 2년에 다시 무악으로 행행(行幸)까지 하였으나, 여러 중신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악천도론(毋岳遷都論)이 좌절되고 말았다. 도성 밖 15리의 무악산 자락에는 정종이 왕위를 태종에게 선양한 후 머물던 별궁이 위치한다. 세종2년 부왕인 태종을 위해 이곳 무악 남록(南麓)의 명당을 잊지 못하고 서이궁(西離宮)을 중건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연희궁으로 개칭하였다.

특히, 무악의 영봉(靈峰)들은 인조(仁祖)때의 이괄(李适)의 난을 결정적으로 패퇴시켜 반란을 평정한 곳이기도 하다. 6.25동란 때 자유 수호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여 승리를 가져온 '연희 고지'도 무악에 속한다.

연희궁(衍禧宮) : 연세대학교 현 교지의 일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연희궁 터는 무악 명당의 핵심지로서, 연희궁은 세종 2년(1420년)에 태종 상왕(上王)의 하명에 따라 지어진 시어궁(時御宮)으로 태종이 태상왕(太上王)으로 존숭(尊崇)되어 피방(避方)하던 이궁(離宮) 곧 서이궁(西離宮)역할을 했다. 서이궁이 연희궁으로 궁호를 받게 된 것은 태종이 돌아가신 후 세종 7년 때의 일이며, 세종은 그 다음 해인 1426년에 연희궁을 수리하고 왕비와 함께 이어(移御)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연희궁은 세종 10년 이후에는 과수원으로 꾸며져 이용과물의 증산장으로 이용된 일도 있으며, 세조 원년(1455년)까지도 건재했다. 연희궁은 성종 시대에 와서는 상전서잠실

(桑田西蠶室)로 변하였다(岱版:幢 傭齋叢話). 그러나 연산군 시대에 와서는 다시 수축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수경원(綏慶園) : 무악 남쪽 동맥의 기슭, 연세대학교 입구의 바른쪽에 자리잡은 원묘의 일대 가 수경원이다. 이곳은 즉위에 앞서 무고(誣告)로 뒤주에 갇혀 굶어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思悼世子 : 장조왕[莊祖王]莊獻世子)의 어머니이신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의 원묘이다.

대야평(大野坪) : 현재의 교지 일대를 대야평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수경원에 세워진 영빈 이씨의 원묘 앞의 묘비에서 유래되었다. 그 묘비의 일절에 이 묘를 양주 연희궁 대야동(楊州衍禧宮 大野洞)에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일대가 대야평이라고 불리웠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현재 본 대학교의 교지를 대야평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역사에 나타나는 고사는 무수히 많다. 대야평을 가로 질러 흘러내리는 작은 내(川)를 창내(倉川)라 부르는데 이는 광흥창(廣興倉)이란 조세 받던 미곡창(米穀倉)이 서강에 있던 터요, 그곳에 공민왕 사당도 있었다 한다. 또한 당인리 앞산을 와우산(臥牛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산형(山形)이 소가 누워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며, 그 일대에도 양화진에 얽힌 사실(史實)이 남아있다.

2. 캠퍼스 소개

가. 서울캠퍼스

아름다운 송림으로 둘러싸인 30만여 평의 방대한 대지인 현 교지를 가로 지른 길이 곧 백양로로 연세를 모교로 삼는 모든 사람들이 사색하던 길이요, 신화의 길이며 역사를 남겨놓은 자국이 아로 새겨진 길이다. 이 길을 따라 올라 가노라면 오른편으로는 현대식 건물로 5만여 평에 달하는 연세의료원, 백주년기념관, 수경원, 루스채플을 지나 음악대학, 학생회관, 대강당, 노천극장, 청송대가 있으며, 왼편엔 공학원, 공과대학, 중앙도서관, 연세.삼성학술정보관, 체육관, 체육교육관, 스포츠과학관, 과학원, 과학관, 백양관, 광복관이 서로 대치를 이루고 서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윽고 “뉴욕에 있는 우리 겨레로부터 부쳐줌” 계단 앞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계단을 오르면 우아한 모습의 건물 세 개가 있다. 앞의 것이 언더우드관(사적276호)이요, 왼편이 스팀슨관(사적275호), 오른편이 아펜젤러관(사적277호)이다. 그 가운데 아름답게 단장된 교정의 한 가운데에는 이 학원의 창설자이며 대 연세의 초석을 이룬 언더우드 박사의 동상이 서 있다. 스팀슨관 뒤편 언덕 위 왼편에는 한경관과 핀슨관이 나란히 서 있고, 그 뒤로 신학관이 동향을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다. 계속하여 언더우드관을 향해 가면 그 뒤에 다시 같은 모양의 석조 건물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연희관이고, 그 오른쪽이 성암관, 왼편쪽이 유억겸기념관이며, 그 뒤로 대우관이 있다. 유억겸기념관 뒤편 오른쪽에는 빌링슬리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뒷산 중턱에는 교육과학관과 외솔관, 위당관이 서 있다. 성암관 뒷길을 따라 동문 방향으로 가면 우측에 새천년관, 국제학사, SK국제학사, 언어연구교육원, 제중학사, 법현학사가 있고, 대우관 뒤편 고개를 넘어 북문 방향으로 가면 무악학사(학생기숙사) 5개동이 쾌적한 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캠퍼스 안의 주요한 곳을 소개하면,

언더우드 동상 : 이 동상은 1928년 4월 24일 연희학원의 우애회(友愛會, 한국인 직원모임)와 일반 사회인사의 협동으로 세웠으나, 왜정 말기 그네들의 손에 빼앗기고 해방 후 동문과 사회인사의 손으로 1948년 10월 16일 두 번째의 동상을 세웠으며, 6.25동란으로 공산군에 의해 파괴된 것을 1955년 4월 22일 연희가 창립된 지 40주년 되는 날 다시 세 번째로 세웠다.

독수리상 : 연세의 표상인 독수리를 캠퍼스 안에 세우려는 학생들의 염원이 실행에 옮겨져 학생들 스스로 700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 건립한 독수리상은 창립 85주년 기념일인 1970년 5월 9일에 제막식을 가졌다. 독수리상의 규모를 보면 총 높이 12.3m로 8.5m의 사각탑신위에 청동으로 만든 2.5톤의 독수리가 세워졌는데, 독수리의 높이는 2.6m, 폭은 5.2m이며, 후면에 총학생회의 건립취지문이 새겨져 있고 네 귀퉁이에는 진리와 자유 수호에 이바지할 연세인의 상이 조각되어 있다. 2012년에 노후된 탑신과 기단 및 연세인의 상을 화강석으로 교체하였고, 기존의 연세인의 상은 원주캠퍼스, 국제캠퍼스, 원주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나누어 보관하였다.

노천극장 : 연세만이 자랑하는 자연의 성역으로 1932년 Dr. Miller 교수에 의하여 설계되어 1933년 5월 준공되었으며, 이 공사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 전원이 각각 하루씩 작업을 도왔다. 대강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곳은 연희의 정신을 길러주고 마음을 가꾸어 주던 곳으로 그 유서가 깊다. 이후 1957년 여름에 보수공사를 거쳐 보수되었으며, 현재의 노천극장은 동문들의 성금을 모아 1999년 5월 준공된 초현대식 건물로 성금을 낸 동문들의 이름이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백양로(白楊路) : 지금도 백양로라고 불리지만, 원래 백양로는 1930년경 만들어진 연희의 관문으로 백양목(白楊木)이 도로 좌우로 울창하였으나, 1960년 4월에 나무의 수명이 다 되어서 베어 버리고, 노폭 22미터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도로 양쪽에는 은행나무를 심었으며,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녹색지대를 설치하였다. 2015년 차없는 백양로 조성을 위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은 보행자 전용으로 전환하였고 기존의 은행나무에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추가하고 잔디밭을 조성하여 통행과 교류 및 문화의 공간으로 확장했으며, 지하를 개발하여 차량은 지하로만 통행하도록 하였다.

연세 한글탑 : 한글은 우리 겨레얼의 상징이요 우리문화 창조의 힘이다. 일찍이 연세는 진리와 자유의 이념 아래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말과 글을 갈고 지키고 폄으로써 나라사랑과 학문의 정신을 드높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이러한 연세의 정신적 전통을 기리고 이를 이어받아 더욱 다져서 온누리에 위대한 한글의 슬기와 연세의 이상이 넘치도록 힘쓸 것을 다짐하는 뜻으로 1992년 5월 9일 이 탑을 세웠다.

윤동주 시비 : 윤동주는 민족의 수난기였던 1917년 독립운동의 거점 북간도 명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고, 1938년 봄 연희동산을 찾아 1941년에 문과를 마쳤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며 항일독립운동을 펼치던 중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모진 형벌로 29세의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가 이 동산을 거닐며 지은 시들은 암흑기 민족문학의 마지막 등불로서 겨레의 가슴을 울렸으며, 그 영향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1968년 11월 3일 그를 따르고 아끼는 학생, 친지, 동문, 동학들이 정성을 모아 핀슨관 앞 작은 언덕에 그의 시 한수를 새겨 시비를 세웠다.

국학자 4인 얼굴상(위당, 외솔, 한결, 홍이섭 선생) : 일제의 압제 속에서 스러져 가는 민족

정신을 소생시키기 위해 몸 바쳐 국학 연구의 토대를 닦아 그 부흥에 앞장섰던 위당 정인보, 외솔 최현배, 한결 김윤경, 홍이섭 선생은 겨레의 스승이요, 연세인에게 바른 학문의 길을 밝히는 빛이다. 이 네 분 선생의 학문적 열의와 겨레 사랑의 정신을 받들고자 1994년 10월 31일 얼굴상을 봉헌하였다. 위당의 얼굴상은 위당관 좌측 입구, 외솔은 외솔관 앞 화단, 한결은 노천극장 입구에 세워졌으며, 홍이섭 선생의 얼굴상은 외솔관 정문 앞 화단에 위치해 있다.

나. 원주캠퍼스

원주에서 남쪽(충주방향)으로 10km 지점에 멀리 치악의 연봉을 바라보면서 백운산의 산자락이 펼쳐진 곳에 이르면, 붉게 양각된 캠퍼스 건물이 침엽상록림과 어우러져 수려한 풍치를 매지호수에 드리운 채 나타난다.

교문을 지나 교내로 들어서면 왼편으로는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환경친화기술센터, 매지학사, 세연학사, 청연학사, 연세플라자가, 앞으로는 언덕 위에 현운재와 라돈프리하우스가 보이고 옆으로는 무궁화동산, 스포츠센터와 매지호의 수면 위에 물새들이 노닐고 있다.

가을이면 선명한 황금색으로 물드는 은행나무 가로수의 긴 진입로가 끝나는 곳에 옹기종기 모인 건물들이 있으니, 대학교회와 대학본부 건물을 시작으로 바로 앞에 학생회관과 도서관이 마주보고 있으며, 도서관 뒤로는 미래관, 그 위쪽 좌측에 청송관과 정의관, 우측에 창조관, 그 뒤편에 학이 양날개를 편 형상을 한 백운관이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반긴다.

캠퍼스 한 가운데 너른 잔디밭을 등에 지고 내려다보이는 백운산의 바람꽃이 내리비친 매지호 풍경과 어우러진 둘레길, 그리고 노천극장 데크와 잔디 계단 건너편에서는 거북섬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고 그 위를 선회하는 백로들의 유유한 비상과 청아한 울음소리는 마음 자락에 그윽한 기재를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다. 국제캠퍼스

연세대학교 창립 125주년이 되는 2010년 3월 부분 개교한 국제캠퍼스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학술연구, 첨단기술의 중심지인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20분 거리의 인천국제공항, 10분 거리의 인천신항만과 최첨단 컨벤션 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는 국제화와 첨단연구, 프리미엄 교육이라는 국제캠퍼스의 세 가지 비전을 실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18만 6천 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 위에 2014년 1-2단계 캠퍼스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서 연면적 9만 3천 평 규모로 23개동의 최신식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총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송도학사가 캠퍼스 외곽에 자리잡고 있고, 한 가운데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을 중심으로, 종합강의동인 자유관 A,B, 진리관 A,B,C,D가 위치하고 있다. 국제캠퍼스의 생활, 문화, 행정 중심 공간인 종합관과 지혜관 A,B,C, 크리스틴채플이 캠퍼스 중심축에 자리잡고 있고, 국제캠퍼스기념관과 파워플랜트, 저에너지친환경실험주택, 포스코그린빌딩이 각기 이색적이고 세련된 미를 자랑하며 서 있다.

캠퍼스 전체를 아우르는 첨단 인테리어는 그 품격과 위용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하며, 쌍방향 멀티미디어 강의 시스템, 전 구역 일괄통제가 가능한 캠퍼스 관리 시스템 등 최첨단 IT 인프라시설과 어디서나 무선 랜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강의실을 구축하여 공간적, 기능적으로도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건물 내부의 중앙정원, 옥상정원 등

캠퍼스 곳곳에 조성된 녹색 휴게공간과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 동선 배치는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줄 것이다.

라. 삼애캠퍼스

배민수 목사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부흥을 위한 대표적 교육자로서, 삼애정신(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일 사랑)을 바탕으로 1967년 일산에 삼애농업기술학원을 설립하고 초대원장을 역임하였다. 배민수 목사 타계(1968년) 후 부인 최순옥 여사가 학교운영에 직접 헌신하다가, 1976년 8월 30일 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과 법인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연세대학교는 고 배민수 목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에 배민수기념관(지하1층, 지상2층)과 천문대(지상2층)를 건립하였고, 2000년 12월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축구장과 야구장)하였다. 또한, 배민수 목사 부부, 모친, 장모 등 가족묘소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배민수 목사 추도예배 및 기념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6년 9월에는 초교파 교회인 삼애교회를 창립하고, 배민수기념전시실과 배민수기념자료실을 개관하였다.

3. 건물의 소개

가. 서울캠퍼스

본　교

경 영 관

경영관은 옛 용재관 부지에 지하3층, 지상 6층의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면적 835평에 연면적 6,090평으로 2013년 11월 27일 기공하여 2015년 9월 21일 준공하였다. 경영관은 주변의 녹지와 조화를 이룬 친환경 그린 건축물을 지향하였고,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태양열과 지열 등의 친환경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옛 용재관의 외관을 살려 용재관 타워를 외관 디자인에 반영했고, 건물 주변의 진달래동산을 복원하였다. 용재홀을 포함하여 경영대학 강의실과 교수실, 세미나실,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 학 관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6,560평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인 과학관은 학교법인의 지원과 독일복음전도회를 통한 독일정부의 원조금으로 1982년 3월 25일 착공하여 1984년 2월 20일에 완공되었다. 이후 건물 노후와 연구공간 확보 필요로 인하여 2014년 10월 14일 외벽 환경개선 공사와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15년 9월 14일 봉헌하였는데, 증축동은 기존 과

학관 후면에 연건평 1,259평, 지상 6층 규모로 증축되어 과학관 전체 연면적은 7,740평으로 확장되었다.

과학관에는 이과대학의 학과와 자연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이학분야 주요 연구시설이 입주하여 자연과학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 학 원

지하3층, 지상4층 연건평 4,208평으로 2000년 7월에 완공된 과학원에는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과, 생화학과와 이과대학 일부 학과가 교육 및 연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생명시스템연구원 등 생명과학분야 주요 연구시설과 이학 분야의 연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광 복 관(光復館)

(구)광복관은 미 제5공군에서 기증한 대부분의 건축 자재와 우리 대학교의 공동 노력으로 1956년 5월에 완성된 벽돌조 3층 현대식 건물이었으며, 1958년 연세대학교 제2회 창립기념식전에서 광복관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일제하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연희를 지켜온 분들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이미 고인이셨던 유억겸, 이춘호, 이묘목, 홍승국, 최현배 교수와 납치인사인 정인보, 이순탁 교수 그리고 명예총장이셨던 백낙준 박사를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하여 동문의 모금과 우리 대학교의 공동 노력으로 2000년 5월 재건축을 시작하여 2002년 1월 15일 봉헌식을 올렸다.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587평으로 재건축된 광복관은 현재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무대학원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월 연면적 612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광복관 별관을 준공하였으며, 이 건물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모의법정,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강의실로 이용되고 있다.

광 혜 원(廣惠院)

1885년 4월 10일 광혜원(서울, 재동 소재)의 개설과 함께 연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광혜원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렌(N. H. Allen, 安蓮)이 조선왕조의 고종의 위촉으로 개원한 왕립병원이었다. 이곳에서는 진료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을 선발해서 서양 의술의 학습도 이루어졌다. 광혜원은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었을 뿐 아니라 최초로 서양 의술을 교습한 교육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광혜원은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광혜원은 1987년 4월 연세역사의 뜰(수경원)에 옛 모습대로 복원하여 연세대학교 역사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연세사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 학 관(제1공학관, 제2공학관, 제3공학관, 제4공학관)

축구장으로 사용하던 자리에 위치한 제1공학관은 독일복음전도회 중앙회를 통하여 독일정부의 원조금과 재단보조금으로 당초 설계계획상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설계, 1970년 8월 착공 1973. 3월 31일 연건평 1,854평의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 완공하였고, 1979년 2월 28일 증축공사를 착공 1980년 11월에 준공되어 연건평 5,734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되었으며, 1987년 9월 다시 증축공사를 착공, 연면적 6,400평이 되었다. 2014년 6월에는 연건평 1,452평, 지상 6층 규모로 남북윙 증축을 착공하여 2015년 7월 준공하였으며, 이로써 제1공학관의 연면적은 8,691평으로 확장되었다.

공과대학의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제2공학관은 1992년 4월 착

공하여 1994년 3월 연건평 4,424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완공되었다. 공과대학 건축공학과가 설계하고 (주)대우에서 시공하여 공과대학 일부 학과가 사용하고 있다. 제2공학관의 건축에는 (주)금호, 아남산업(주), 동양그룹, 기아자동차(주), 연강학술재단, 현대그룹, 한화그룹, 무역협회 등 주요기업체 및 단체들의 기부금과 공과대학 동문, 산업대학원 동우회, 학부형들의 성금이 큰 공헌을 하였다.

제3공학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건평 3,596평의 규모로 1997년 8월 준공되었으며 늘어나는 공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2개층 876평을 증축하여 제3공학관은 지하 2층, 지상 7층 총 4,472평 규모가 되었다. 제3공학관 신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학관은 3개동에 총 15,296평의 매머드 교육.연구 공간이 갖추어져 그동안의 교육공간 부족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강의실 및 연구소의 환경개선에 기여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2017년 2월 제4공학관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어, 4,800여평 규모의 강의실, 연구실 등이 조성되었다.

공 학 원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복합 산학협동 연구단지인 공학원은 본교의 산학협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국내 유수 기업들(풀무원, 대우자동차, 삼성전자, LG그룹, 현대전자, 한국통신, 세풍)과 본교간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8월 18일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1999년 4월 8일 건물을 준공, 1999년 5월 6일에 개원한 공학원은 지상 4층, 지하5층, 연면적 20,216평의 건물로서 본교의 관문에 위치하여 그 미려한 모습을 자랑하며, 또한 공과대학과 포스코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산학협동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한다.

공학원내에는 10여개의 산업체 연구소와 14개의 학교 연구소,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창업센터, 학교 행정기관으로는 학술정보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24시간 학술 및 연구 활동이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강당, 세미나실, 영상회의실과 은행, 식당, 복지매장 등의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교육과학관

철근콘크리트 6층 건물의 방대한 교육과학관은 1970년 8월 10일에 착공 1972년 1월 15일에 완공되어 종합교실단으로 사용되었다. 1994년 400평이 증축되어 연건평 2,113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 'T'자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늘어났으며, 외부 기둥은 화강석 테라죠 붙이기, 외부벽은 테라죠판을 붙였다. 1996년 8월 한총련 학생들의 점거 및 방화로 약 2년간 사용을 못하다가 동문 및 연세구성원들의 성금으로 전면 개보수 하였으며 현재 학부대학, 교육과학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2003년 6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여 연면적은 2,154평이 되었고, 2013년 11월에 교육과학관으로 건물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제학사

국제학사는 국제학대학원과 국제교육센터, 한국어학당 등에서 학위과정 또는 학문교류를 목적으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및 교포학생들에게 숙식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외국에 파견될 본교 교환학생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 로서 국제적 상호이해 도모 및 실제적 문화교류 증진을 꾀하고자, (주)대우가 1987년 4월 16일 시공하여 1987년 12월 9

일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58.30평의 규모를 갖춘 현대식 건물이며, 내부시설로는 학생용 침실 120실(수용인원 240명)과 각층마다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실이 2개씩 있다. 지하층에는 체육실과 세탁실 등 학생들이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논 지 당(論志堂)

1956년에 건축한 28평(벽돌조)의 건물에 기예실습실 및 휴게실을 확장하기 위하여 1963년 9월 43.7평을 같은 구조로 증축하여 71.7평이 되었다. 2004년 5월 건물전체의 개보수와 정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세미나실, 여학생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구) 농업개발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생활개선과 농촌문화 개발을 위한 낙농업 경영의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진흥시킬 역군양성을 목적으로 1967년 4월에 본 농업개발원을 설립하였다. 연희동 산 10번지의 임야 34,000평에 자리 잡은 농업개발원은 1968년 9월에 원생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침실 7개실, 부속실 5개실을 갖춘 건평 86.4평의 벽돌조 1동을, 1976년 8월에 2층 86.8평을 증축하였으며 1969년 11월에 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동(조적조 50평)을 추가로 지어 사용하였다. 원주매지캠퍼스 문리대학에 낙농과가 설립됨으로 인하여 1991년 2월에 농업개발원이 해체되어 현재는 공학 관련 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대 강 당

대강당은 1958년 12월에 건평 768.96평, 연건평 1,587.82평인 철근콘크리트 4층 규모로 2,300여석의 좌석을 갖춘 건물로 준공되었다. 강당은 주로 채플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기념행사와 문화행사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일부 공간은 학생동아리와 관재처 설비안전부에서 사용하고 있다. 2005년에 전반적인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내부구조, 무대장치, 음향기기, 조명 등이 현대화되었다. 현재 좌석수는 총 1,685석(1층 1,174석, 2층 204석, 3층 307석)이다.

대우관(김우중기념관)

연희관 뒤에 위치한 대우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본관은 지하3층, 지상6층으로, 별관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과 3대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각 연구실과 강의실에 LAN 시설이 완비된 최신 건물로 총 연건평(지하주차장 4,000평 포함) 10,104평 규모로 지어졌다.

본관 지하와 1층은 강의실로 2층 이상은 연구실, 행정실, 대학원 강의실로 쓰이며 별관은 2017년 12월 언더우드국제대학 이전에 따라 강의실 및 연구실 등으로 주로 사용하고 CPA고시반이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1996년 6월1일 완공된 대우관, 김우중기념관은 당시 상경대학 동문회장이었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및 상경대학 동문들의 기부금을 모아 건립한 건물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우관, 김우중기념관으로 명명되었고 상경대학,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경제대학원에서 사용하다가 2015년 경영관을 신축하면서 상경대학, 경제대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루스채플(Luce Chapel)

이 건물은 미국에 있는 루스 재단 기부금과 학교 보조금으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지붕은 철골 특수 캔트레버트러스로 건평 329.9평, 연건평 463.16평을 1973년 8월에 착공 1974년 9월에 준공되었다. 내부는 예배실, 교목실장실, 교목실, 사무실 기타 18실이며 건물의 명칭은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루스채플이라 명명하였다.

루스채플은 2006년 4월 1일부터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11월 14일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489m2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증축공사를 완공하였다. 내부는 강의실, 연구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증축공간은 원일한 박사를 기념하여 원일한 홀이라 명명하였다.

무악학사

무악학사는 학생기숙사로서 교내 북문 쪽(연희동 산 10-1번지) 산자락에 대규모 기숙사촌을 형성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기숙사 주변이 산림과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 항상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

무악 1, 2, 3, 4학사(생활관)는 학부생 및 본 대학원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이며, 4개 학사를 일컬어 '생활관'이라 한다. 무악5학사는 5개부 운동선수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이고, 무악6학사는 대학원생 중심 기숙사인 우정원(宇庭園) 기숙사이다. 무악1학사는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6,937.5m2(2,098.59평)의 건물로서 1989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50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무악2학사는 1학사와 같은 규모와 형태의 건물로 1993년 8월에 완공되었고, 수용인원은 500여명이다. 무악3학사는 연건평 2,851평의 지하 2층, 지상 5층의 의료원동으로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1998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의.치.간 3개 대학 학생(간호사 포함) 5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무악4학사는 연건평 2,712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1998년 5월에 완공되었으며, A동은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276명을 수용할 수 있고, B동은 다양한 아파트형 숙소 70실로 외국인 교원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구조로서 건물 외벽이 붉은 벽돌로 주변의 넓은 녹지와 미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부시설은 독서실, 세미나실, 특강실, 컴퓨터실, 예배실, 기도실, 복사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샤워실, 식당, 매점 등이 있어 기숙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악5학사는 연건평 1,951평의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로 2004년 5월에 완공되었으며, 5개 운동부 선수들이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재활치료실, 공동목욕실, 식당 등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하층은 연구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4년 10월 완공된 무악6학사는 ㈜부영주택에서 100억원 상당의 건물 기부를 통해 연면적 2,000평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건물을 기부한 ㈜부영주택 대표 이중근 회장의 호를 빌어 우정원(宇庭園)이라 명명하고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미 우 관(美友館)

미우학사는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회에서 기증한 5만 불로 1972년 6월에 세워진 건물로 이를 기념하고 아름다운 벗을 사귀는 집이라는 뜻으로 미우학사로 명명 사용되어 오다가 1979년 10월 31일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의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건평 270.13평, 연건평 627평의 규모로 증축 완공되어 여학생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1993년 무악2학사 준공 후 축구부, 빙구부 등의 운동선수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며, 2004년 무악5학사(운동선수기숙사)가 준공되어 운동선수들이 무악5학사로 이전한 뒤, 2005년 12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거친 후 미래교육원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미우관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백 양 관(白楊館)

백양관은 우리 대학교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경영학의 이론을 연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여 안으로는 참신하고 능동적인 학풍을 진작하며 밖으로는 국가 경제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한 것이다.

백양관은 1967년 4월 19일에 기공하여 1차 공사로 1,894평의 건물은 1969년 5월 10일에 준공하였으며, 1970년 8월에 본 건물 남쪽에 732평을 증축하여 이를 1971년 5월 8일에 완공하였다. 3차 공사는 1982년 4월에 본 건물 북쪽에 447.07평을 증축하여 1982년 12월 21일에 완공하였다.

그 후 입학관리처의 입시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전면부 2층에 1개층 163평을 증축하여 2005년 8월 말에 완공하였다.

백양관은 건평 1,034.54평, 연건평 3,236평으로서 경영학교실단이라는 이름으로 상경대학과 경영대학원이 사용하였으나, 상경관의 완공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학부대학 및 교양교육공간, 총무처, 시설처, 국제처, 연구처, 산학협력단 등의 행정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백 양 누 리

백양누리는 백양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소통과 융합, 문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따라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5년 10월 준공되었다. 백양로를 따라 길이 400여 미터에 걸쳐 지하 두 개 층, 연건평 17,770평 규모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완성된 백양누리는 지하 1층에 각종 편의시설과 라운지, 회의 공간, 강의 공간, 금호아트홀, 주차장을 갖추었고, 지하 2층은 전체가 주차장으로 조성되었다. 지하 공간이지만, 밝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곳곳에 선큰 공간을 배치했고, 지상과 지하가 연결될 수 있도록 11개소의 계단실과 5개소의 엘리베이터, 학생회관 앞에 1개소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다. 지하 공간은 중앙도서관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학원 및 암병원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백양누리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연세인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금호아트홀은 총넓이 1,700평, 390석 규모의 클래식 연주 홀로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기부로 건립되었다.

백주년기념관

본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영원한 연세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 기념관은 동문, 교직원, 사회유지, 학부모, 재학생 등 많은 분들의 뜻과 정성으로 세워진 것이다.

1986년 8월에 착공하여 1988년 2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연건평 3,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 4층으로 우아하고 현대적인 건물로서 박물관과 콘서트홀 및 입학처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입학처는 2011년 10월 옥상에 215평의 공간을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에는 별도로 입학상담실이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은 10개소의 전시실과 11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강당 1개소가 있고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8개소가 있다. 약 9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콘서트홀은 2013년 국내 최고의 음향 수준을 갖춘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객석과 휴식을 고려한 넓은 로비가 있고 각 층마다 휴게실을 두었다.

법현학사

법과대학 동창회에서 후배들의 고시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건립운동을 시작하여 동창회 모금과 기성회 보조금으로 1975년 11월 1일에 완공하였고 1979년 5월 1일 지하 1층, 지상 3층의 증축공사를 착공 동년 11월 1일 완공된 연건평 348평의 건물로서 학생용 침실 39실(수용인원 78명)과 식당 휴게실 각방에 에어컨 설치 등을 갖추고, 엄격한 선발고사를 통한 입사, 철저한 내무생활, 저렴한 사비를 원칙으로 운영해왔고, 2003년 2학기부터는 여학생도 선발하여 운영되었다. 2016년 12월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하여 총 189실에 376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로 재단장 하였다.

본관(本館, Underwood Hall)

이 건물은 1924년에 본 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의 창설자이며 초대 교장이었던 원두우(元杜尤) 박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형제인 존 언더우드 씨의 기부금으로 지은 것이다.

건평 209.74평, 연건평 876.38평인 이 4층의 석조 건물은 문과대학에서 사용하여 오다가 1982년 3월부터 대학 본부 건물로 미래전략실, 기획처, 교무처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재 사적 276호로 지정되어 있다.

빌링슬리관(Billingsley Hall)

유억겸기념관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빌링슬리관은 1968년 4월 15일에 착공하여 동년 10월 30일에 완성한 건물로서 건평 182.11평에 연건평 654.91평의 석조 3층 건물로서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와 학교 재단의 재정원조로 건립된 것으로 생활과학대학이 사용해오다가 1999년 생활과학관을 신축하여 이전한 후 지금은 언론홍보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산학협동관

산학협동관은 산학협동을 목적으로 한국전력이 건축비를 지원하여 2003년 4월에 준공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2,703평으로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154KV 연대변전소이며, 지상3층 이상은 연구공간으로 차세대융복합에너지물질특화연구센터, 그린솔리잉크연구단, 신약개발연구센터 등의 연구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상남경영관

상남경영관은 기업체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자문 사업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남경영원이 있는 건물이다.

1998년 12월에 준공한 이 건물은 1층에는 식당(수용인원 130명) 및 소규모 연회실, 오크룸(평면식 강의실/수용인원 43명), 파인룸(계단식 강의실/수용인원 63명)이 있으며, 2층에는 로즈우드룸(화상회의 가능, 계단식 강의실/수용인원 68명), 사이프러스룸(계단식 강의실/수용인원 75명), 메이플룸(계단식 강의실/수용인원 63명), 월넛룸(평면강의실/수용인원 41명)과 분임토의가 가능한 6개의 토의실(수용인원 6명)이 있다. 그리고 3층에는 정보검색이 가능한 전자도서관과 원탁회의실 및 행정실이 위치해 있으며 4층~5층에는 총 39개의 객실과 소규모의

식사 또는 연회가 가능한 브라운라운지가 있다. 또한 6층에는 소규모 연회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스카이라운지 A(15명 수용), B(50명 수용)등이 위치한 총 7개 층의 최첨단의 IBS 교육설비를 갖춘 Executive Program 전용강의실과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새천년관(New Millennium Hall)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약 148억 원의 공사비(국고 70억, 내부대응자금 70억)를 들여 건설한 새천년관은 1997년 5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 5월 13일 준공되었다. 새천년관은 1,700여 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4,300평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7층의 건물로 강의실 14실, 세미나실 15실,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 국제회의실, 가상도서관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언어연구교육원, 동서문제연구원, 국제학연구소, 현대한국학연구소 등 국제학 관련 기관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 상호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21세기 국제화시대에 세계화 전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활과학관(삼성관)

생활과학관은 1999년 2월 1일에 완공된 건물로 연건평 3,042평으로 지하1층, 지상6층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로 중앙 집중식 냉난방시설과 LAN시설이 완비된 현대식 건물이다. 이 건물은 삼성그룹, 교수, 동문 등이 기금을 모아 건립한 건물로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대학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세미나, 전시회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이순홀이 있다. 계속되는 공간 수요의 충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6년 2월 지상 7층에 1개층 386평을 증축하여 생활과학관은 총 3,428평의 교육.연구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성 암 관(聖岩館)

1960년 6월에 건평 150.32평 연면적 450.94평의 2층 석조건물로서 사업가 하원준 씨가 함안 농장 기금의 일부를 희사한 기부금에 의하여 건립된 것으로서, 하원준 씨의 “성암재단”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암관이라고 부르며, 1987년에 개수공사를 하여 국제학대학원, 국제교육부가 사용되어 오다가 새천년기념관이 완공됨에 따라 이전하고 전반적인 내부공사를 한 후 2001년 3월부터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이 사용하고 있다.

스팀슨관(Stimson Hall)

이 건물은 1920년 완성되었으며, 건평 131.75평, 연건평 414.56평의 석조 2층 건물로서 연세 캠퍼스에 최초로 세워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스팀슨 씨(Charles M. Stimson)의 기부금으로 지은 것으로, 1981년 9월 25일 문화재 사적 275호로 지정되었다.

스포츠과학관

스포츠과학관은 연세 구성원을 위한 복지시설과 체육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심신단련을 통한 종합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2010년 12월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2월 완공되었다. 기존 검도관이 있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956.97평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장애인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겸용 승강기를 설치했다. 주요시설로 구기장, 휘트니스센터,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에어로빅실, 체조(펜싱)장, 강의실, 실험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원두우 신학관

1964년 12월에 준공된 연합신학대학원(국제선교협의회에서 기증한 사업기금으로 세워진 2층 석조콘크리트건물)이 노후되어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동문, 교수 등이 모은 기부금과 학교 지원으로 2003년 1월에 재건축을 시작하여 2005년 4월에 완공되었다. 지하4층과 지상4층에 연면적 3,001평으로 재건축된 신학관은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사용하고 있다. 2016년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건물 명칭은 신학관에서 원두우 신학관으로 변경되었다.

아펜젤러관(Appenzeller Hall)

미국 매사추세츠 피츠월드의 제일감리교회에 의한 기부금으로 1924년에 준공된 아펜젤러관은 현재 사회복지대학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건평 131.34평, 연건평 471.59평의 석조 3층 건물로 문화재 사적 277호로 지정되어 있다.

알렌관(Allen Hall)

연세창립 100주년의 일환으로 1986년 5월 기존의 영빈관 건물을 철거 후 현대식 건물로, 건평 318.2평, 연면적 500.94평으로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1987년 4월에 준공하여 개관하였다. 시설로는 무악홀 등 8개의 중.소규모의 회의실과 7개의 침실 등이 있으며, 명칭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이었던 광혜원을 설립한 알렌 박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알렌관이라 명명하였다.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은 부속교육기관으로 1974년 아동과 관련된 연구와 실습을 위한 장으로 설립되었다. 본관 건물은 노후된 생활관을 철거하고 2002년 10월에 연건평 488,73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준공되었다. 소강당, 휴게실, 교육공간, 관찰실, 어린이도서실 등이 있으며, 취학 전 어린이의 교육과 연구, 상담을 하고 있다. 연구동은 1974년 12월에 준공된 연건평 122평의 2층 건물로서 어린이교육공간, 관찰실, 아동.가족상담센터가 있다.

언더우드가(家) 기념관

언더우드가(家) 기념관은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인 H. G. Underwood(원두우) 선교사와 우리나라의 근대교육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던 그 가족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들이 기거하였던 연희동 사택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기념관 내부는 설립자의 정신과 그 일가의 헌신을 기억하고 후세에 알리고자 1930년대 당시의 사택 내부의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되었으며, 언더우드가의 사진 및 서적 등을 중심으로 전시하여 2003년 10월 28일 개관하였다.

2006년 5월 13일에는 원일한 박사 소장의 언더우드가 유품, 미공개 사진, 관련서적과 영상자료 등을 보완하고 '언더우드의 삶', '한국과 언더우드', '문헌자료실'로 확대 재구성하여 1층 전실을 언더우드가 기념관으로 재개관하였다.

2018년 5월 11일에는 2016년 11월 지하 보일러실 과열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복원함과 동시에 전시실을 개편하여 보다 새롭게 단장된 기념관으로 재개관하였다.

언어연구교육원

언어연구교육원 건물은 1989년 12월에 착공하여 연건평 2,540평,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1991년 12월에 완공되어 한국어학당과 외국어학당이 사용하여 오다가 지금은 한국어학당과 미래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언어연구교육원은 부속기관으로 1959년 4월 1일 외국인 선교사와 외교관 등에게 한국의 언어와 역사문화를 가르치고 이해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어학당'이 모체이다.

연세 · 삼성 학술정보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은 2005년 5월 14일 착공하여 2008년 5월 10일 완공하였으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33,428.25㎡(10,112평)의 규모이다. 주차대수는 옥내가 155대, 옥외가 7대이며. 연세ㆍ삼성 학술정보관은 21세기 디지털 정보 환경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학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중앙도서관과의 미적 조화와 연계성 및 이용자 동선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편리한 공간구성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특히 최첨단 IT 인프라 시설을 완비하고 도서관 전 지역에 무선랜을 설치하여 건물내 어디에서나 전자정보에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건축하였다. 또한 고품격 인테리어와 자연 채광의 실내 조경 등 쾌적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연구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도서관내 어느 공간에서나 서가 배치가 가능하도록 견고한 하중으로 설계하고 보존서고에는 밀집서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서수장 능력을 높임으로써 미래의 공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연 희 관(延禧館, Yonhi Hall)

연희관은 1956년 10월에 미 제5공군과 본 대학교에 의해서 지어진 건평 423.80평, 연건평 2,014.65평의 방대한 건물로 현재 사회과학대학과 행정대학원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연희관은 이 건물을 세우는데 도와준 미국의 원조, 협력 정신을 체득하여 세계평화와 자유 정의의 실현을 위하고 과학 교육으로 문화 창조, 진리의 거화(巨火)를 밝힌 선배들의 유풍선양(遺風宣揚)을 기념하고 진리 자유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연희관이라 부르게 된 것은 1957년 "연희"와 "세브란스"가 통합될 때 "연희"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외 솔 관

외솔관은 인문과학에 대한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당으로서 주로 교수의 연구 기능에 중심을 두고 설계하였다.

이 건물은 교육과학관과 앞뒤로 나란히 하여 수업과 연구의 기능적인 효과를 안배하여 하나의 교실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2,414.5평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석조건물로서, 1981년 5월 9일에 착공하여 1982년 3월에 완공하고, 현재 문과대학, 인문학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다. 그 후 학생자치공간 및 학습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1991년 3월 인문관과 종합교실단 사이의 연결복도 옥상에 136평을 증축하였다. 평생을 한글운동에 헌신한 외솔 최현배 선생을 기리어 2001년 건물의 명칭을 인문관에서 외솔관으로 변경하였다.

위 당 관(爲堂館)

위당관은 시위사태로 파괴된 종합관의 교육시설과 연구자원들을 복구하기 위하여 1996년 8월부터 1997년 8월까지 1년간 동문, 학부모, 교직원, 대학(원)생, 기업체, 일반인(사회단체) 및 정부로부터 피해복구 성금을 모아 지은 건물이다.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2,532평의 건물로서 1997년 5월 29일에 착공하여 1998년 8월 24일에 준공되었다. 문과대학의 일부 학과와 국학연구원, 언어정보연구원, 문과대학 학술잡지실 및 무악서당 등이 있다. 민족사관 정립과 국학 진흥에 헌신한 위당 정인보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1년 건물의 명칭을 제2인문관에서 위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에는 6층 일부(100.26평)를 증축하여 교육 및 연구공간을 확장하였다.

유억겸기념관(兪億兼紀念館)

성암관 맞은편에 위치한 유억겸 기념관은 건평 169.4평, 연건평 628.90평의 석조 콘크리트의 4층 건물로서 1963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우리 대학교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던 고 유억겸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유억겸기념관으로 명명하였다.

이 건물은 교양학부가 1971년 8월 종합교실단으로 이전하기까지 사용하였고 지금은 심리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다.

유진어린이집

유진어린이집은 2008년 3월 착공하여 2010년 3월 8일에 완공한 연건평 558평,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직장 보육시설로서 유진그룹으로부터 기증 받았다. 아동의 연령별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보육실 공간을 구성하였고, 영유아의 건강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최첨단 설비를 갖추었다. 1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교직원, 연구원 및 대학원생 자녀를 위한 보육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음 악 관

음악대학 구관은 1976년 8월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06평의 규모로서 건축되었으며, 제2차 공사는 1982년 4월에 지상 4층 건물로 256.01평을 증축하여 이를 1982년 12월 20일에 완공하였다. 이로서 동 건물은 건평 300.01평, 연건평 1,062평으로서 강의실, 관현악실, 오페라실, 교수실, 레슨실, 연습실, 행정지원실, 휴게실이 있다.

이 건물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로운 조형미를 살린 외관과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대학의 전용건물인 만큼, 음향효과와 관제에 그 특징을 두고 있다. 피아노실은 음향조정을 위하여 5각형의 방음벽으로 처리되었고, 특별교실인 관현악실과 오페라 연습실은 방대한 음향처리를 위해 2, 3층을 터서 음향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조절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 전면에는 루바를 설치하여 음향을 차단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음악대학 신관은 충분한 학습공간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409.9평의 건물로 기존 건물 옆에 1989년 12월에 착공하여 1991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관객 3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을 가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여 연면적 220평이 증축되었고, 2013년 8월 음악대학 구관을 전면 리모델링하였

으며, 2013년 11월 건물 명칭을 음악관 A, B로 변경하였다.

중앙도서관

'연세 백년을 향한 마스터 플랜'에 따라 1977년 5월에 착공 1979년 3월 30일에 준공을 본 중앙도서관은 오늘의 연세교육에 부과된 사명과 책임을 수행하려는 의지의 표상이며 연세학문의 발전과 문화창조의 원천이다.

본 도서관은 4,747평의 대지 위에 열람인원 4,600석, 장서소장능력 100만권을 목표로 세워진 연면적 5,210평의 건물로 1992년 증축되어 연면적은 5,856평으로 늘어났다. 지상 5층, 지하 1층,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민간건축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화강석 석조건물이다. 특별히 미국 AID자금 1백만 불을 무상원조 받아 도서관내 컴퓨터시설비, 냉난방 기계설치비 일부 및 도서관내의 모든 비품을 마련하였다. 2010년도에는 6개월에 걸쳐 노후된 시설과 냉난방 및 환기 공조시스템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 동선 확대, IT 환경 조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중앙도서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였다.

체 육 관

건평 500평 연건평 799.51평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드리.힌지(Three Hinge)식 아치식 건물로 1960년 11월에 완공되었다. 농구, 배구, 레스링 및 권투 등의 경기장과 1,21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부 공간은 체육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했었다, 제반 시설이 노후되어 2010년 12월부터 리모델링을 하여 2011년 10월 4일 사용을 다시 개시했다. 전면부의 진입계단이 사라졌으며 유리 벽면이 설치되어 쾌적한 외관을 갖췄고, 커튼 월, 지붕의 흡음 데크 판넬, 벽체의 폴리메탈 판넬 등이 시공됐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84.48㎡(902.8평) 규모의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했다.

체육교육관

체육계열학과와 전 연세인의 체육복지시설로 활용되는 이 건물은 1978년 11월 24일 착공 1979년 8월 20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이다. 실용면적 715.47평 입체면적 1,024.72평에 기존 체육시설과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의 동선을 최대한으로 원활히 살려 배치되어 있으며, 수영장, 체력측정실, 강의실, 체조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천 문 대

천체현상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1980년 설립된 우리 대학교 천문대는 교내관측소(과학관7층: Cave 40cm 반사망원경), 일산관측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Goto 61cm 반사망원경), 해외관측소(남아프리카공화국 서덜랜드: 50cm 광시야탐사망원경. 대만옥산천문대: 50cm 광시야탐사망원경) 등 3곳의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연구관

대운동장 북측에 위치한 첨단과학기술연구관은 우리 대학교의 과학기술연구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연건평 3,470평, 지하3층, 지상3층의 규모로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2005년 2월에 완공되었고, 2010년 2월 3개 층을 증축하여 연건평 1,200평의 규모를 갖추었다. 공동기기원, 나노메디칼국가핵심연구센터, World Class University사업단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핀 슨 관(Pinson Hall)

1922년에 건립된 건평 84.09평, 연건평 224.15평의 3층 석조건물로서 이 건물의 건립을 위하여 자금 모금에 공헌이 큰 핀슨 박사를 기념하여 핀슨 홀이라 부른다. 처음에는 남학생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나, 그 후 신과대학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한때 종교 음악관 전용으로 사용되고, 법인사무처에서도 사용하였으나, 2018년 12월 14일 법인사무처가 법인본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여 현재는 윤동주기념실로 사용되고 있다. 민족시인이자 연희전문을 졸업한 윤동주가 재학시절 기거하던 기숙사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윤동주기념사업회는 2000년 5월 2층 1실을 윤동주기념실로 정비하여 개관하였다.

학 군 단

전 학생에 대한 정부의 군사교육 실시령에 따라 교육부 기금 및 연세대학교 건물 기금으로 1971년 6월에 세워진 건물이다. 대운동장에서 재활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2층으로 건평 135.63평, 연건평 261.31평의 건물을 준공하였다. 2차 공사는 1982년 4월에 별도 지하 1층 건물로 142.83평을 증축하여 이를 1983년 12월 20일에 완공하였다. 이로써 동 건물은 건평 135.67평 연건평 404.14평의 규모에 단장실, 교관실, 행정실, 자치회실, 피복 창고, 교재 창고 등 모두 32개 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회관

학생회관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구조로 외벽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벽을 설치한 기독교 건축양식인 고딕양식을 현대화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68년 7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198평을 건축하였고, 1976년 10월에 지하층 확장 및 3, 4층, 연건평 1,131평의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1977년 7월에 준공하였고, 1968년 8월에 지하층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1987년 3월에 준공 개관하므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422.9평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복지처 등 학생 지원 행정부서와 총학생회 등 학생 자치시설, 무악극장, 합창연습실 등이 있으며 학생식당, 우체국, 서점, 문구점 등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대단위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다.

1989년 8월에 학생식당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연면적 588㎡(177평)의 700석 규모의 식당을 1989년 10월에 완공하였으며, 연이어 1990년 9월에 학생식당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연면적 912㎡(276평)의 주방시설을 갖춘 700석 규모의 식당을 1991년 3월에 준공하여 학생복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경 관(漢慶館)

1940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연희전문학교 제3대 교장이었던 원한경 박사의 이름을 붙여 한경관이라 부른다. 건평 130평, 연건평 307평인 석조 2층의 이 건물은 교직원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GS칼텍스 산학협력관

GS칼텍스 산학협력관은 GS칼텍스㈜의 지원으로 대운동장 서쪽에 연면적 1,405평,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축되었다. 2008년 2월 15일에 착공하여 2009년 11월 2일에 준공된 본 건물은 신에너지, 나노공학 분야 연구동으로 건축되어 교수 연구실, 실험실 및 세미나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자동제어 기계설비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설비인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갖추고 있다.

IBS관

IBS관은 나노의학연구단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외부연구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융합기초과학연구소 설립을 위해 마련된 최첨단 연구건물이다.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4,311㎡ 규모로 건축되었다. 2016년 12월 14일에 착공하여 2018년 2월 27일에 준공된 본 건물은 연구자 중심, 협업 유도, 창의 증진을 핵심 철학으로 설계되었으며, 장벽 없는 연구소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분리형 설계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불투명한 벽들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하는 등 공간적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SK 국제학사

SK국제학사는 연건평 7,039평,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외국인 전용 기숙사로 2008년 4월 착공하여 2010년 3월 19일에 완공하였다. 기숙사의 규모는 1인실 187실, 2인실 197실, 장애인실 4실, 3인 가족실 20실로 총 408실, 645명을 수용할 수 있고, 외국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과 넓은 주차장, 첨단 자동제어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SK주식회사에서 일부 공사비를 기증하여 SK 국제학사라 명명하였다.

(교외건물)

김대중도서관

국내 최초의 Presidential Library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구 아태평화재단으로부터 마포구 동교동 소재 토지와 건물, 관련 자료를 수증 받아 2003년 2월 25일자로 설립되었다. 공식적인 개관식은 같은 해 11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사장과 총장, 외교사절 40여명을 포함한 국내외 귀빈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대중도서관은 400여 평의 대지에 지상5층, 지하 3층의 총 1,500여 평 규모로 건축되었고 1~2층에 도서관, 3~5층에 통일연구원, 현대한국학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연구실이 있으며, 지하1층에는 컨벤션홀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에는 1만 6천여 권의 장서와 자료실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의 자료를 열람, 전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 분야 등 관련분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하고 국제적 협력의 기능을 수행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덕소수양관

덕소수양관은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세미나 및 워크숍 등

을 개최하는 장소로 쓰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교육대학원의 출자로 덕소교육용지(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도곡리 산 164번지)에 1969년 9월 24일 착공하여 1970년 5월 16일에 준공되었다.

우 남 관(雩南館)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대지 및 임야 2,100평과 건평 97평의 건물을 1996년 8월 최송옥, 최병설 남매가 이승만 박사 및 한국현대사 연구를 위해 기증하였다. 자하문 밖 바위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 건물에는 현대식 석조건물인 본채와 고풍의 전통 가옥인 대원군 다실이라는 정자와 2단의 넓은 정원이 있다. 이 건물은 기증자 최송옥씨를 기념하기 위하여 송암관이라 불렀으나, 2002년 10월 우남 이승만 박사를 기리기 위해 우남관이라 새로이 명명하였다. 현재 국제학대학원 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가 사용하고 있다.

연세의료원(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의료원은 대지 1,222,789㎡, 연면적 649,334㎡ 규모로서, 대지 858,628㎡ 규모의 신촌지역에는 의과대학(연면적 43,314㎡-신/구관, 지하강의실, 임상의학연구센터, 러들로 교수동 및 의학도서관), 치과대학(연면적 17,181㎡), 간호대학(연면적 7,078㎡), 의대기숙사(30,084㎡) 등의 교육시설, 세브란스병원(연면적 188,812㎡(본관 171,490㎡, 제중관 17,322㎡)), 연세암병원(연면적 105,800㎡), 광혜관(연면적 11,996㎡), 재활병원(연면적 14,361㎡), 심장혈관병원(연면적 18,654㎡), 안.이비인후과병원(연면적 6,067㎡), 어린이병원(연면적 12,526㎡), 치과대학병원(연면적 17,306㎡) 등의 진료시설, 종합관(연면적 35,912㎡),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40,229㎡)가 있다.

신촌 외 지역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대지 68,070㎡, 연면적 105,425㎡-강남 의생명연구센터, 행정복지동, 비자검진센터, 미래의학연구센터 포함), 용인세브란스병원(대지 37,380㎡, 연면적 9,742㎡)이 있다.

의과대학

의과대학은 지상 5층, 연면적 9,491㎡ 규모의 본관과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652㎡ 규모의 신관, 그리고 연면적 2,277㎡ 규모의 강의동 및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1962년 6월 5일에 완공하고 2003년 11월 28일에 신관 및 강의동을 증축하였다. 건물에는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학습공동체(L/C), 이러닝센터, 강당 및 휴게실 등이 있다.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은 지상 5층, 연면적 4,292㎡ 규모의 건물로서 1973년 2월 6일에 완공하고 1993년 1월에 신관을 증축하였다. 건물에는 510석의 열람석(376석의 24시간 학생자율학습실 포함)과 컴퓨터실 등이 있다.

임상의학연구센터

임상의학연구센터는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13,770㎡ 규모의 건물로서 1993년 9월 25일에 착공하여 1996년 3월 24일 완공하였다. 건물에는 연구 활동을 위한 실험실, 세포배양실, Imaging Center 및 공용 장비실 등이 있다.

의학실기교육원

의학실기교육원은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임상실기교육센터, 지상 1층은 수술해부교육센터가 있다.

가. 임상실기교육센터

임상실기교육센터는 813㎡ 규모의 건물로서 2009년 9월 개소하였다. 센터에는 12개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room,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room과 4개 Simulation room, 세미나실, 회의실, 교육실, 술기실습실 등이 있으며, 4학년 임상실습 환경개선을 위하여 임상의학연구센터 1층에 약 153.3㎡ 규모로 OSCE 전용 실습실(4실)을 확장하였다.

나. 수술해부교육센터

수술해부교육센터는 472.3㎡ 규모의 건물로서 2010년 3월 개소하였다. 센터에는 수술실과 동일한 시설을 갖춘 제1, 2실습실, 미세현미경실습실과, 회의실 및 갱의실이 있으며, C-arm, 3D 영상장비, 정맥인식출입통제시스템과 3대의 CCTV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러들로 교수동

러들로 교수동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831㎡ 규모의 건물로서 2010년 1월 31일 완공하였다. 건물에는 교수, 부교수실(1인실 45개실), 조교수실(2인실 57개실), 강사실(185인 1개실), 세미나실 및 휴게실이 있으며 출입통제시스템과 CCTV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는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40,229㎡ 규모의 건물로서 2010년 8월에 착공하여 2013년 2월 완공하였다. 지상층에는 203석 규모의 유일한 홀, 실험실, 공용장비실과 이미징센터, 전기생리실, BAS실, FACS실 등의 각종 Core facility가 있으며, 지하 3, 4층에는 소형·중대형 동물실, 동물이미징센터 및 생물안전3등급 실험시설(BL-3) 등이 있다.

의과대학 기숙사(제중학사)

제중학사는 1974년에 개사하여 2018년 철거 될 때까지 약 40여년 동안 의과대학 학생들의 보금자리이자 인재의 산실로 사용되었다.

옛 제중학사의 건물이 노후 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기숙사 건물의 필요성에 따라 인근 법현학사와 함께 본교와 의료원이 힘을 합쳐 재건축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에 새 제중학사가 준공되었다.

지하3층, 지상 7층, 연면적 30,084㎡ (9,116평) 규모의 건물로서 총 302실에 최대 604명을 수용하게 되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의과대학 학생들의 개사가 시작되었다.

새 제중학사에는 2인 1실 사생실 외에, 스터디룸,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라운지, 커뮤니티룸을 비롯해서 편의점 및 카페베이커리 등 각종 편의시설이 운영 중이다.

치과대학

치과대학은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7,181㎡ 규모의 건물로서 1996년 5월에 완공하고

2004년 4월에 증축하였다. 건물에는 임상시뮬레이션 및 양방향 교육시스템 등 기초 및 임상 전단계 실습실, 첨단 AV시스템을 갖춘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이외에 휘트니스센터, 휴게실, e-library 등이 있다.

간호대학

간호대학은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7,078㎡ 규모의 건물로서 1996년 8월 31일에 완공하였다. 건물에는 강의실, 김모임간호학연구소, 간호교육혁신센터, JBI센터, WHO협력센터 이외에 세미나실, 학생휴게실, 컴퓨터강의실, 탐구관 등이 있다.

세브란스병원(본관)

세브란스병원 본관은 연면적 171,490㎡,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건물로서 2000년 7월에 착공하여 2005년 4월에 완공하였다. 건물 1층~3층에는 응급진료센터, 중앙멸균실, 편의시설, 국제진료센터, 우리라운지, 케어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4층~6층에는 외래진료실, 영상의학과 촬영실, 채혈실, 세브란스라운지, 로봇내시경수술센터, 수술실 및 은명대강당 등이 있고 7층~20층에는 입원실, 중환자실, VIP병동, VIP 건강증진센터 등이 있다. 병원 부속인 제중관은 연면적 17,322㎡ 규모로 지하 2층~지상 5층에는 임상시험센터, 체력단련실, 행정시설, 의사실 등이 있다.

로봇내시경수술센터

로봇내시경수술센터 내 트레이닝센터는 2008년 1월 30일 세브란스병원 제중관 1층에 로봇수술 교육센터로 개소한 이후, 2013년 3월 25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건물 지하 3층으로 확장 이전하였고 회의실과 실습용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트레이닝용 다빈치 로봇 1대, 시뮬레이터 1대, 복강경 장비 4대, 복강경 연습용 키트 1개를 갖추고 있다.

연세암병원

연세암병원은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105,800㎡ 규모의 건물로서 1969년 국내 최초 암센터로 시작하여 2014년 4월 연세암병원으로 새롭게 개원하였다. 건물 지하 1~3층에는 각종 편의시설, 식당, 진단검사의학과, 영양팀, 서암강당 등이 있으며 1층은 방사선종양학과, 2층은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채혈실, 심전도실 등이 있다. 3층~5층에는 13대 암센터 외래진료실 및 검사실, 6층에는 수술실이 있으며 7층은 식당, 힐링가든, 예배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9층~15층에는 입원실, 중환자실, 단기관찰실, RI병실 등이 있다.

광혜관

광혜관은 지하 3층, 지상5층, 연면적 11,996㎡ 규모의 舊암센터 건물로서 1969년 11월 10일에 완공하였다. 2014년 연세암병원 신축으로 주요시설이 이전하여 암센터에서 광혜관으로 건물 명칭을 변경하였고 산학융복합의료센터, 교수실, 입원실, 의사실 등이 있다.

재활병원

재활병원은 1987년 5월 8일 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8,248㎡ 건물로 연세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신축되었고, 2011년 3월 4개층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여 현재 지하1층, 지상 10층 연면적 14,361㎡ 규모로 대학병원 내 최초의 재활병원이며, 최고의 재활병원이다. 1~2층에는

외래환자를 위한 진료실, 수치료, 성인외래 통증/작업/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실이, 3층에는 소아를 위한 물리/작업치료실이, 4층에는 소아병동, 6층에는 로봇재활치료센터, 성인작업치료, 뇌자극치료, 충격파치료실이 있으며, 7~8층에는 성인입원병동, 9층에는 성인입원운동물리치료실, 성인입원통증치료실, 근골격운동치료실, 100병동 환자를 위한 통합치료실이 있으며, 10층에는 VIP 입원실이 있어, 최첨단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심장혈관병원

국내 첫 심장혈관질환 전문센터로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9,075㎡ 규모로 1991년 5월 10일 개원한 이래 꾸준한 진료인프라 및 첨단 치료장비 도입을 확대해 왔다.

2011년 5월에 별관 증축 및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그리고, 2017년에는 심전도실(EKG), 운동부하(TMT), 홀터 및 심박동기클리닉 등 기존에 산재된 검사실을 인접한 광혜관으로 모으는 통합 심장검사실을 신설하였다. 2019년 1월 현재 165개의 일반병상과 49개 특수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층은 외래진료실을, 3~6층은 중재시술실과 강당,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교수실을, 7~10층은 입원병동을 배치하고 있다.

안·이비인후과병원

안·이비인후과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067㎡ 규모의 건물로서 1996년 10월 17일 구 치과대학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원하였다. 건물 지하 2층~지하 1층에는 청파호성춘기념 강당, 수술실, 회복실 등이 있으며 1층~4층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실 및 검사실과 이비인후과 교수실 등이 있다.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2,526㎡ 규모의 건물로서 2006년 6월 15일에 세브란스병원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개원하였으며, 이후 2016년 6월 추가적으로 외래 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환아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지하 1층에는 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놀이치료실이 있으며, 1~2층과 제중관 1~3층 일부에는 외래 진료실과 검사실 등이 있고, 3~10층은 입원실,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신생아실, 분만실, 사무실 등이 있다.

치과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은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7,306㎡ 규모의 건물로서 1995년 12월 18일에 완공하였으며, 2014년 6월 2일 리모델링하였다. 건물 1층에는 통합치의학과 및 원내생진료실 등이 있으며 2~7층에는 진료실, 일일입원실, 특수클리닉, 교수실 및 강당 등이 있다.

종합관

종합관은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35,912㎡ 규모의 건물로서 2006년 3월 착공하여 2008년 3월에 완공하였다. 건물 2층~6층에는 우리라운지, 직원복지시설, 보건대학원, 회의실, 강의실 및 행정시설 등이 있으며 1층~지하 3층의 장례식장에는 17개의 빈소, 비지니스룸, VIP 접객실, 가족실, 응접실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1)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49,682㎡ 규모의 본관(2동/3동)과 지하 3

층, 지상 9층, 연면적 37,090㎡ 규모의 별관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1989년 11월에 현 본관 3동을, 2005년 9월에 별관을 증축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본관을 리모델링하였다. 본관 건물 지하1층~3층에는 진료실, 심장검사실, 수술실 등이 있으며 4층~8층에는 임상시험센터, 입원실 등이 있다. 별관 건물 지하1층~3층에는 척추병원, 치과병원, 암병원의 3개 병원이 있으며 4층~9층에는 건강검진센터, 입원실, 회의실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생명연구센터(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7)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생명연구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2,794㎡ 규모의 건물로서 2010년 11월에 개소하였다. 건물 지상 1층~7층에는 108개의 실험벤치와 세포배양실, 전임상 실험실 및 실험동물 사육실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행정복지동(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3길 29)

강남세브란스병원 행정복지동은 지상 5층, 연면적 605㎡ 규모의 건물로서 2016년 4월에 개소하였다. 건물 지상 1층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2~5층에는 행정사무실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는 지하2층, 지상 7층, 연면적 3,271㎡ 규모의 건물로서 2016년 5월에 개소하였다. 건물 지상 1층~7층에는 비자검진센터, 임상연구관리실, 행정사무실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미래의학연구센터(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3길 20)

강남세브란스병원 미래의학연구센터는 지하 5층, 지상 5층, 연면적 11,982㎡ 규모의 건물로서 2017년 1월에 준공하였다. 건물 지상 1층~5층에는 교수연구실, 회의실 등이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25)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742㎡ 규모의 건물로서 1992년 9월 증축되었고 2010년 6월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2016년 9월 응급실 및 음압병실 141㎡ 증축하였고, 2017년 4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중에 있다. 건물은 지하1층에는 식당, 장례식장 등이 있으며 1층~2층에는 외래 진료실, 수술실 ,검사실, 3층~5층에는 입원실 등이 있다.

나. 원주캠퍼스

대학교회/대학본부

대학교회/대학본부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002평의 건물로서, 이 건물에는 대예배실, 소예배실, 교목실, 기도실, 대학교회 사무실, 교목연구실, 원주부총장실, 기획부, 대외협력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재무부, 교무부, 입학관리부, 회의실이 있다.

도 서 관

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2,527평의 건물로서 1994년에 준공되었다. 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보존서고, 일반열람실, 세미나실, 북카페가 있고 1층에는 일반열람실, 세미나실,

원주학술정보원의 정보통신팀과 문헌정보팀 행정실이 있고, 2층에는 멀티미디어실, 자료열람실, 세미나실 등이 있고, 3층에는 자료열람실 및 대출/반납실이 있고 4층에는 단행본, 세미나실이 있고, 5층에는 귀중본자료실, 학술정보교육실 및 세미나실이 있다.

창 조 관

창조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4,184평의 건물로서, 이 건물에는 과학기술대학 자연과학부(수학, 물리학, 화학및의화학, 정보통계학), 응용과학부(패키징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보건행정학과가 상주하며 교육연구시설, 기초과학연구소, 및 과학기술대학 행정실이 있다.

청 송 관

청송관은 지상 5층, 연건평 3,137평의 건물로서, 이 건물에는 인문예술대학 인문과학부(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역사문화학, 철학), 디자인예술학부(산업디자인학, 시각디자인학, 디지털아트학)가 상주하며 교육연구시설, 근대한국학연구소 및 인문예술대학 행정실이 있다.

백 운 관

백운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2,959평의 건물로서 이 건물에는 환경공학부(환경공학, 친환경에너지공학), 의공학부(의용전자공학, 재활공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및 방사선학이 상주하며, 교육연구시설, 의공학연구소, 보건과학연구소, 환경과학기술연구소, 보건과학대학 행정실이 있다.

정 의 관

정의관은 지상 5층, 연건평 2,826평의 건물로서 1996년에 준공되었다. 이 건물에는 사회과학부(경제학, 글로벌행정학, 국제관계학) 및 경영학부(경영학)가 상주하며, 교육연구시설, 지역발전연구소, 정경대학 행정실 및 대강당이 있다. 특히 1,516석의 대강당은 교육, 채플, 공연,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다.

미 래 관

미래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3,368평의 건물로써, 이 건물에는 원주연구처/원주산학협력단 사무국, 세미나실 및 생명과학기술학부(생명과학, 응용생명과학), 임상병리학과가 상주하며 연구 및 강의동이 있다.

학생회관

학생회관은 지상 4층, 연건평 2,522평의 건물로서 이 건물에는 학생복지처, 인재개발원, 대학일자리센터, C-Lounge, 장애학생 휴게실, 건강공제회, 건강관리센터가 있으며, 학생자치 활동을 위하여 총학생회, 연세매지방송국, 연세춘추사, 동아리연합회, 각종 동아리방, 전시실, 에코소극장, 여학생 휴게실 등이 있다. 또한 복지시설로는 학생식당, 푸드코트, I-Lounge, 편의점, 커피 및 음료전문점, 열쇠 및 구두 수선점, 통학버스 사무실, 음악감상실 등이 있다.

매지 1학사

매지 1학사는 남학생 기숙사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828평의 건물로서, 200개의

룸, 세미나실, 컴퓨터실, 독서실, 기도실, 휴게실, 세탁실, 간이조리실, 에어컨 및 층별 공동 세면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매지 2학사

매지 2학사는 여학생 기숙사로 지하1층, 지상 4층, 연건평 1,629평의 건물로서, 187개의 룸과, 세미나실 2개, 독서실, 휴게실, 컴퓨터실, 기도실, 세탁실, 간이조리실, 에어컨 및 층별 공동 세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매지 3학사

매지 3학사는 층간 구분된 남ㆍ여학생 기숙사로 지상4층, 연건평 890평의 건물이다. 100개의 룸과, 휴게실, 세탁실 2개, 세미나실 3개, 컴퓨터실, 독서실, 간이조리실, 에어컨 및 층별 공동 세면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연 1학사

남학생 기숙사로 지상 5층, 연건평 1,024평의 건물로서, 130개의 룸, 개별 욕실, 화장실, 냉난방 및 세미나실 2개, 독서실 2개, 인터넷카페, 층별 휴게실, 간이조리실 3개, 세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연 2학사

남학생 기숙사로 지상 5층, 연건평 1,448평의 건물로서, 157개의 룸, 개별 욕실, 화장실, 냉난방 및 장애인실 4개, 기도실, 독서실 2개, 층별 휴게실, 간이조리실 3개, 세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연 3학사

여학생 기숙사로 지상 6층, 연건평 2,357평의 건물로서, 261개의 룸, 개별 욕실, 화장실, 냉난방 및 장애인실 5개, 다목적실, 기도실, 독서실 8개, 층별 휴게실, 전산실, 간이조리실 10개, 세탁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청연학사

청연학사는 지하1층, 지상7층의 연건평 4,677평의 건물로서, 원주생활관 행정팀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304개의 룸, 세미나실 6개, 세탁실, 휴게실, 독서실, 기도실 등이 있다.

연세플라자

연세플라자(8,611.86㎡)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1년 4월에 종합적인 학생복지센터로 건립되었다. 연세플라자 3층에는 국제교육원 행정팀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3,4층에 걸쳐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1층에는 제과점, 까페, 토스트점, 편의점, 서점, 은행, 안경점, 복사점, 빨래방, 생과일점, 우편실 및 문구/팬시잡화점이 있고, 2층에는 푸드코트, 중식당, 치킨/피자점과 세미나실 등의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어 학생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건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글플라자

이글플라자는 연세플라자와 매지3학가 사이에 위치한 지상2층의 건물로서, 1층에는 평생교육 실습실과 3개의 강의실, 체형교정실이 있으며, 2층에는 상담코칭센터가 2017년 7월에 이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코칭센터는 개인상담실 4실과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심리안정과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2,600평으로 2003년 9월 준공되어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의 스포츠센터로서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소체육관, 수영장, 샤워실,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및 골프연습장 등이 있다. 2010년 92평을 증축하여 학교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 운 재

현운재는 백운산과 매지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4년 준공과 2011년 지상 4층, 연건평 962평으로 증축하여 객실 45개, 라운지 및 식당이 등이 있다.

원주의료원

【원주의과대학】

의 학 관

1978년 6월 현 교사를 기공하여 다음해인 1979년 6월 연면적 7,004㎡의 4층(지상 3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완공되어 의학과와 보건학과 학생들을 수용해 오다가 학생수의 증원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지상 10층, 지하1층) 중 제 2단계 사업으로서 1981년 2월 4, 5층(연면적 3,904㎡)을 증축하여 현재의 연면적 10,910㎡의 6층(지상 5층, 지하 1층)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983년 원주의과대학으로 승격과 1986년 보건학과의 보건과학대학 승격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1991년 보건과학대학이 매지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원주의과대학의 교수연구실, 각종 연구시설, 학부 및 대학원 강의실, 학생회실, 학생동아리방, 학생휴게 라운지 및 대학과 병원의 사무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진 리 관

1991년 6월에 기공되어 1993년 5월 완공된 원주의과대학 진리관은 현 원주의대 본관 교사 우측 뒤편에 연면적 3,665㎡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완공되었다. 2004년 1월 증축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230㎡ 규모의 건물로 변모하였다.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계단강의실 4개, 일반강의실 4개, 자유열람실 2개, 교수연구실, 회의실, PBL실, 진료역량개발센터가 조성되었다. 특히, 진료역량개발센터는 총 279.09㎡ 규모로 Simulation Room, Technical Room과 촬영시설이 구비된 Monitor Room 및 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술기모형을 이용해 각종 임상술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술기능력 배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의학도서관

1983년 3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으로 승격과 동시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도서실로 명명 되었으며, 1993년 3월 의학관에서 진리관으로 이전하였다. 2011년 의학도서관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면적 2,131㎡ 규모로서 1층에는 문헌정보실, 2층에는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3~4층에는 338석규모의 자유열람실이 있다.

루 가 홀

1993년 5월 연면적 625㎡ 400여석 규모의 강당으로 준공되었다. 첨단음향설비 시스템, 대형 액정비젼, 무대조명이 설치되어있으며 채플, 학술강연, 동아리공연 및 각종 교내.외 행사 및 발표회장소로 사용 되고 있다.

학생기숙사

제1원의학사는 1989년 8월에 완공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써 연면적 3,387㎡의 공간에 2인 1실로 240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제 2원의학사는 1997년 10월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651㎡의 공간에 2인 1실, 4인 1실로 운영하며, 3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2017년 5월 착공한 새 기숙사는 연면적 5,840㎡의 공간에 2인 1실로 288명을 수용할 수 있고, 2019년 3월에 운영할 예정에 있다. 각 시설은 냉.난방 시설은 물론, 휴게실, 식당, 세탁실, 매점, 체력단련실, 조리실 등의 복지시설과 별도의 공부방 및 컨퍼런스 룸 등을 갖추어 대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일산사료전시관

일산사료 전시관은 원주 지역의 기독교 복음·의료 선교를 위하여 미국 북감리회가 1918년에 건립하였다. 지상 2층(옥탑), 지하 1층의 건축 면적은 113㎡, 높이 6.44m이다. 구조는 벽돌을 화란식으로 쌓은 조적조이며, 층간 바닥 및 지붕은 목조이다. 1927년까지 선교사 사택이었고, 1928년 ~ 1940년까지 성경 공부방, 신도 숙소, 유치원, 의무교육자 수양회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후에 외부 강사 휴게실, 학장·병원장 사택 등으로 활용되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산산료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원주 기독교 선교의 발상지이자 서구식 의료, 교육, 생활, 건축 등 근대문명의 유입 통로였던 원주시 일산동 일대에 세워졌던 많은 서구식 건축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2017년 12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쥬디기념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설립자인 쥬디 목사의 이름을 딴 쥬디기념관(신관, 연면적 29,768㎡)은 지하1층, 지상11층 건물로 1994년 2월 모자보건센터 상층부 6개 층을 증축함으로써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쥬디관 지하 1층에는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가 위치해 있으며, 1층에는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건강증진센터,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등이 위치해 있다. 2층에는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류마티스내과, 22병동, 27병동

이 위치해 있고, 3층에는 수술실과 외과중환자실,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이 위치해 있으며, 5층부터 11층까지는 병동, 인공신장실, 신경외과중환자실, 내과중환자실이 위치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모례리관)

모례리관(권역응급의료센터, 연면적 8,753㎡)은 2002년 착공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응급센터로 국내 응급의학에 대한 선두 주자 역할을 해왔으며, 임상특성화센터 개소 등 증축을 거듭하여 2007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지하 1층에는 감마나이프센터, 1층과 2층에는 응급실과 응급중환자실이 위치해 있으며, 3층에 소화기병센터, 5층에 56병동, 6층에 심장혈관센터, 7층에 응급병동이 위치해있고 옥상에는 헬리패드가 설치되어있다.

권역외상센터

'2012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장기손상,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이다.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4년 9월 완공한 권역외상센터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공식 지정 받았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 4,638.06㎡(1,403평) / 건축면적 : 1,055.86㎡ (319평) / 높이 : 13.7m) 규모이며, 외상처치구역, 소생실, 수술실, 외상병동(40병상), 외상중환자실(20병상),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외래센터

'원주의료원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착공된 외래센터는 기존 노후화된 외래진료공간을 개선하고 원스톱 통합진료서비스를 통해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2015년 7월 오픈 하였다. 외래센터는 연면적 14,541㎡(지하1층, 지상 6층)의 규모로써, 1층에는 중앙로비와 안내센터, 입원지원센터와 진료협력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2층~6층까지 외래 진료실과 부속검사실이 위치해 있고, 7층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회의실, 예배실 및 전산정보팀, 의무기록팀 등이 위치해 있다.

문창모기념관

초대 병원장인 문창모 박사를 기념하기위해 명명된 문창모기념관은 연면적 6,170㎡에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지하1층은 진단검사의학과, 지상1층은 치과와 영상의학과, 2층은 치과, 3층은 재활병동과 물리치료실, 교수연구실 등이 위치해 있다.

후 생 관

내원객들의 편의시설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1990년 착공하여 1991년 완공된 후생관은 원주의료원 재창조사업'을 통해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2015년 7월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후생관 내에는 직원식당과 푸드코트, 신협, 편의점 및 각종 임대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옥상에는 내원객을 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있다.

다. 국제캠퍼스

자유관 A

자유관 A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278평의 건물로 45개의 강의실과 3개의 컴퓨터실, 전공 교수연구실들이 있다. 이 건물의 1층에는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고려한 로비와 전시실 및 157명 규모의 대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2층에는 유엔 직속 기구인 UNOSD(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가 들어서 있다. 또한, 4층에는 글로벌인재대학이 6층에는 학부대학 및 RC교육원이 있어 학생들의 학사 관리 및 수업지원을 해 주고 있다.

자유관 B

자유관 B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042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위한 각종 학부실험실이 마련되어 있다. 1층에는 연구실험실과 기자재준비실, 화상회의가 가능한 240명 규모의 대강의실과 강연, 연회, 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에 활용 가능한 이벤트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다. 2~3층에는 물리.생물 과목을 위한 실험실, 기기실, 세미나실, 4층은 제네바대학 연세센터, 교수연구실, 5층~6층은 생물, 화학실험실과 세미나실로 이루어져 첨단 교육 및 연구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의 디자인인텔리전스전공이 2018학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종 합 관

종합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182평의 건물로서 각종 문화체육행사 장소 및 행정본부로 활용되고 있다. 1층에는 237평 규모의 피트니스센터, 2층에는 음악실 외에도 다목적운동실, 요가실, 스쿼시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남.녀 샤워실과 탈의실을 완비하여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3층에는 채플 및 각종 행사,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미술실, 산학협력단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4층에 총장실, 국제캠퍼스 부총장실, 종합행정센터, YSP추진단 등 각종 행정기관이 있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961평의 건물로 2013년 4월에 오픈했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은 국제캠퍼스의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및 학습을 지원하는 국제캠퍼스 학문의 요람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출입구 및 커뮤니티 PC, 사물함 등이 위치한 로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 멀티미디어 자료실과 3층 그룹스터디룸, 4층은 창의열람실로 구성되어 있다. 5.6층 자료 열람실 및 서가 등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7층에는 컨퍼런스룸, 세미나실, 카페 등이 들어서 다양한 행사 및 국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지하1층 옆 Y-플라자에는 식당, 커피숍, 편의점, 문구점, 미용실, 안경점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과 학생들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벤처센터가 입점해 있다.

지혜관 A,B,C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어진 지혜관 A는 지상 2층, 연면적 222평 규모의 전면 유리 건물로 건강센터, 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학생 지원 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학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혜관 B는 지상 1층, 연면적 70평 규모로 약학대학

고시지원실로 사용되고 있다. 지혜관 C는 지상 1층, 연면적 102평 규모로 디자인팩토리코리아(Design Factory Korea) 프로토타이핑샵으로 이용되고 있다.

진리관 A,B,C,D

진리관 A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20평으로 393석의 대규모 계단식 강의실과 각종 세미나실이 있으며 5층에는 교수연구실이 있다.

진리관 B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00평으로 언더우드국제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 활동과 수업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진리관B에는 우리대학과 핀란드 알토대학이 손을 잡고 국내 최초로 핀란드식 창의교육플랫폼인 디자인팩토리코리아(Design Factory Korea)를 만들어 사용 중에 있다.

진리관 C는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3,300평으로 글로벌융합기술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다. 글로벌융합기술원의 연구를 위한 각종 실험실습실·보조실이 있으며, 또한 각층에 교수연구실이 배치되어 학생들의 연구를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진리관D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20평의 약학대학이 들어서 있는 건물로 약학도서관과 실습약국, 각종 실험실 등이 있다. 또한, 진리관D에는 종합약학연구소가 들어 서 있으며, 2018학년도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바이오헬스 분야 지역거점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송도학사 A, B, C, D, E, F, G

국제캠퍼스에서는 생활과 학업이 하나가 되는 Residential College system을 도입,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스포츠, 외국어,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계획에 걸맞게 지어진 국제캠퍼스 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 A,B,C 3개동과 최고 13층 규모의 건물 D,E,F,G 4개동, 총 7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A,B,C동은 2,400명, D,E,F,G동은 2,9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기숙사 객실에는 개별 냉난방과 화장실, 샤워실이 완비되어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과 고급 가구를 구비하여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크리스틴 채플(C.S Kang Chapel)

지상 1층, 연면적 176평으로 연세대학교 건학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선교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다.

저에너지 친환경실험주택(Green Home Plus)

저에너지 친환경실험주택은 지상 4층, 연면적 563평으로, 1층에는 글로벌교육원, 2~4층에는 실험용 공동주택 5세대가 있으며 교원숙소로 사용 중에 있다.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하여 산·학·연 합동으로 추진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의 연구 성과물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공동주택에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기술을 적용하여 건축한 모델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포스코 그린빌딩(POSCO Green Building)

포스코 그린빌딩은 포스코에서 200억원을 출연 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600평 규모로 건축된 친환경 빌딩이다. 지상 1층에는 프라운호퍼연구소(GRL-FYK), 전시실, 공동주택

기준모델, 세미나실, 1층 중층 및 2층에는 에너지 절감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공동주택, 모듈러 주택 등이 들어서 있다, 지상 3·4층에는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 연구실 및 기타 연구실이 있으며, 태양광, 지열 등 110여종의 친환경 기술을 적용 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건축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국제캠퍼스 기념관(International Campus Memorial Hall)

국제캠퍼스 기념관은 지상 4층, 연면적 382평으로 건축된 국제캠퍼스의 건립과 발전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지상 1층에는 국제캠퍼스 홍보전시실이, 2층·3층·4층에는 전시 및 영상실, 경사전시공간, 사무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파워플랜트(Maintenance Center)

파워플랜트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749평 규모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전기실, 방재실, 네크워크, UPS실, 소화가스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제캠퍼스의 전기 및 난방공급, 각종 유·무선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하는 곳이다.

라. 삼애캠퍼스

배민수기념관(현 삼애교회)

우리나라 농촌운동의 선구자이며,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고 배민수 목사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이 기념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건평 120.17평, 연건평 236.24평으로 1980년 12월 준공되었다. 2006년에는 본 기념관을 예배실, 친교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삼애교회로 전면 재정비하였으며, 2층 1실을 배민수기념전시실로 새롭게 조성하여 2006년 9월 17일 삼애교회 창립 및 배민수기념전시실로 재개관하였다.

청소년 체육시설

삼애캠퍼스 내 청소년 체육시설은 2000년 2월부터 9월까지의 공사를 통해 총면적 39,264평에 축구·럭비 겸용구장(105m×75m)과 야구장(외야 좌우측 거리 95m, 센터거리 110m)이 국제규격의 경기장으로 조성되어있다. 부대시설로는 선수휴게실과 스프링클러, 보조경기장 및 이동식 백네트(야구장)가 설치되어 있다.

천 문 대

삼애캠퍼스 주변은 서울근교에서 자연을 관측하고 연구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1979년 12월 천문학과를 주축으로 지상 2층, 연면적 98.41평의 연세대학교 천문대 일산관측소(Goto 61cm 반사망원경)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실습장 및 인근지역 학교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관 및 이사회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 62
이사회 / 94
법 인 / 95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1957. 1. 5. 제정
1964. 4.14. 조직변경 개정
2017.10.26. 제 98차 개정
2018. 1.18. 제 99차 개정
2018. 4.26. 제 100차 개정
2018. 7.12. 제 101차 개정
2018.10.25. 제 102차 개정
2019. 1.22. 제 10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둔다. <개정 2013.10.31.>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관할청에 보고한다. 다만, 제1조, 제25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및 본 조의 단서는 변경할 수 없다. <본문개정 2008.11.20., 2012.10.23.>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재단법인 세브란스 의과대학 및 원주기독병원이 소유하였던 재산은 별도 회계로써 이를 경리한다. 공동 사용되는 운영비의 비율 및 특히 지정함이 없이 추가되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추가된 재산의 소속과 용도는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③ 이 법인이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을 받거나 기부금을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증 또는 기부자로부터 용도의 지정이 있을 때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본재산은 수익용이라 할지라도 매도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다른 재산으로 대체 충당하여 원본소비를 하지 않는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12.10.23.>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의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총장이 집행한다. <개정 2012.10.23., 2014.2.7.>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2008.11.20.>

제13조 ~ **제17조** 삭제 <2008.11.20.>

제18조 ~ **제21조** 삭제 <1986.12.9.>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개정 2008.11.20.>

② 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개정 2008.11.20.>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20.>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총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4.23., 개정 2012.10.23.>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기독교계 2인
2. 연세대학교 동문회 2인
3. 총장(예겸이사) 1인
4. 사회유지 4인
5. 개방이사 3인

[전문 개정 2011.11.1.]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개정 2006.2.24.>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의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24조의3(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24조의4(추천감사의 선임)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인사(이하 "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및 감사와 이 법인에 소속되는 전임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하며,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2.25., 2008.11.20.>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0.2.25.>

④ 이 법인에서 봉급을 받는 자는 이사 또는 감사가 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11.>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0.2.25.>

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개정 2000.2.25., 2013.10.3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08.11.20.>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2.24.>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및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6조의2 삭제 <2005.9.15.>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 법인과 관계가 있는 자가 이 법인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국외로 여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이사가 될 수 있다. 다만, 명예이사는 이사 수에 산입하지 않고 표결권도 없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을 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을 한다.

⑤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한다.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6.>
5. 총장 및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대학교의 교원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이 법인에 합병 또는 기증에 따른 지정된 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2.25.>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0.23.>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1.20.>

제35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사립학교법시행령」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업
2. 창고금융업
3. 축산업 및 임산업
4. 의료용품 도매업, 물품매도 확약서(OFFER) 발행업
5. 공원묘지 및 영현봉안사업
6.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개정 2011.11.1.>
7. 장례식장 영업 <신설 1995.10.13.>
8. 학원운영업 <신설 2003.11.20.>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개정 2003.11.20.>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과 주소)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개정 2007.4.9., 2012.10.23., 2014.4.29.>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개정 2014.2.7., 2014.4.29.>
2. 연세대학교 봉래빌딩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개정 2014.2.7., 2014.4.29.>
3. 연세대학교 명일빌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18 <개정 2014.2.7., 2014.4.29.>
4. 연세대학교 익스텐션학원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70 <개정 2011.3.15., 2014.4.29.>
5.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29 <개정 2000.11.13., 2014.2.7., 2014.4.29.>
6.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29 <개정 2011.11.1., 2014.2.7., 2014.4.29.>
7. 연세대학교 덕소공원묘지 : 경기도 양주군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849번길 126 <개정 2014.2.7., 2014.4.29.>
8. 주식회사 연세유업 :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음봉로 829 <개정 2014.4.29.>
9.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설 1995.10.13., 개정 2014.2.7., 2014.4.29.>
10.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신설 1998.3.24., 개정 2011.3.15., 2014.2.7.., 2014.4.29.>
11. 연세대학교 연세샘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설 1995.10.13., 개정 2014.2.7., 2014.4.29.>
12. 주식회사 와이에스피시(YSPC)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개정 2002.2.7., 2014.4.29.>
13.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신설 2000.11.13., 개정 2006.2.24., 2014.2.7., 2014.4.29., 2017.7.11.>
14.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25 <신설 2000.11.13., 개정 2014.2.7., 2014.4.29.>
15.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용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65 <신설 2002.2.7., 개정 2014.2.7., 2014.4.29.>
16. 연세대학교 ELP학원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70 <개정 2004.3.30., 2014.2.7., 2014.4.29.>
17. 연세대학교 대신빌딩 :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65 <신설 2011.3.15., 개정 2014.2.7., 2014.4.29.>
18. 연세대학교 강서빌딩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0길 8 <신설 2017.2.3., 개정 2017.10.26.>
19. 주식회사 에스브이에스피씨(SVSPC)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설 2017.7.11., 개정 2017.10.26.>

제38조 삭제 <2014.4.29.>
제39조 삭제 <2014.4.29.>

제5장 해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20.>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 기독교 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 <개정 2008.11.20.>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11.20.>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개정 2018.4.26.>

제43조(임명)

①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선임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한다. <신설 2000.2.25., 개정 2011.11.1>

③ 총장을 제외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11.11.1., 2018.4.26.>

1. 근무 기간
   가. 교 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10.23.>
2. 급여 : 제49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근무 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의3과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의3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은 제43조의3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부총장, 의료원장(원주의료원장 포함), 연구본부장, 학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7.15., 2018.1.18.>

⑤ 총장을 제외한 교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8.4.26.>

⑥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용하며, 임용·재임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0.23.>

제43조의2(비전임교원)

① 총장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객원교수,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학연교수, 겸임교수, 임상교수, 외국어어학강사 및 기타 별도로 정한 비전임교원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11.16., 2012.10.23., 2013.10.31., 2015.10.29.>

② 제1항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2.11.16., 2013.10.31.> [제목 개정 2002.11.16., 2013.10.31.]

제43조의3(교원인사규정)

① 교원의 임명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4.26.>

② 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장이 대학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본조 신설 2002.11.16.]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18.4.26.>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7.21.>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국내외의 타 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를 목적으로 출장하게 된 때 <개정 2012.10.23.>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3.10.31.>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8.11.20., 2012.10.23., 2017.2.3.>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신설 2016.7.19.>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8.11.20.>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2013.10.31.>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13.10.31.>

11. 이 정관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때 <신설 2006.2.24., 개정 2013.10.31.>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2.3.>

13. 기타 임명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신설 2012.10.23., 개정 2013.10.31., 2017.2.3., 2018.4.26.>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따로 정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20.>

6의2. 제44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7.19.>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31.>
8.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10.31.>
9. 제4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10.31.>
10. 제4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06.2.24., 개정 2013.10.31.>
11. 제4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7.2.3.>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개정 2015.7.21.>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24.>

③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는 제49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1.16.>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1.16.>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16.7.19.>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6.7.1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6.7.19.>

⑤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목 개정 2002.11.16.]

제48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명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4.26.>

[본조 신설 2016.7.19.]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되,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11.16., 2013.10.31.>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16., 2012.10.23.>

제50조의2(명예퇴직 수당) 명예퇴직 수당 지급제도 실시여부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되,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제50조의3(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개정 2002.11.16.>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교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1.16.>

[제목 개정 2002.11.16.]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11.16.>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명하고자 할 때의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3., 2018.4.26.>
2. 총장이 부총장, 의료원장(원주의료원장 포함), 연구본부장, 대학원장,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7.15., 2018.1.18.>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목 개정 2002.11.16]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원주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대학원장, 미래전략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그리고 총장이 지명하는 4명의 교수로 조직한다. <개정 2003.2.20., 2015.2.10., 2016.7.19., 2018.1.18.>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2.11.16.>

[제목 개정 2002.11.16.]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02.11.16.>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개정 2002. 11.16.>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2. 11.16.>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 개정 2002.11.16.]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2.11.16.>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1.16.>

[제목 개정 2002.11.16.]

제56조 ~ **제58조** 삭제 <2002.11.16.>

제2절 징계 <개정 2002.11.16.>

제5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 신설 2002.11.16.]

[종전 제59조는 제59조의2로 이동 <2002.11.16.>]

제59조의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의 징계사건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7.19.>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6.7.19.>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4인 <신설 2016.7.19.>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신설 2016.7.19.>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④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7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9조에서 이동 <2002.11.16.>]

[제목 개정 2016.7.19.]

제60조 삭제 <1991.6.10.>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7.19.>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26.>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5., 2018.4.26.>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20., 2012.10.23., 2015.7.21., 2018.7.12.>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7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6.7.19.]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삭제 1991. 11. 25.>

제69조 ~ **제82조** 삭제 <1991.11.25.>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별정직, 일반직, 시설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5.9.15., 2017.4.2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7.2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7.21.>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사무직원이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15., 2017.4.25.>

③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5.9.15.>

제84조(임용)

①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교의 사무직원(부속병원의 직원을 포함한다)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5.9.15., 2013.10.31.>

제85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15.>

제86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되, 대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는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9.15., 2013.10.31.>

제87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15.>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사무직원의 징계의 사유 및 종류는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9.15., 2013.10.31.>

② 법인 사무직원의 징계처분은 이사장이 시행하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이사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9.15., 2013.10.31.>

③ 파면, 해임을 제외한 대학교 사무직원의 징계처분은 총장이 시행하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총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단, 의료원, 원주캠퍼스, 원주의료원, 산학협력단, 원주산학협력단의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각각 의료원장, 원주부총장, 원주의료원장, 산학협력단장, 원주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0.31.>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법인본부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법인본부장을 두며, 법인본부장 산하에 법인사무처, 수익사업처를 두고, 법인의 감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을 둔다. 법인본부장은 별정직으로 보하고 실장 및 처장은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6.6.23., 2018.7.12., 2019.1.22.>

② 이 정관 제37조 각 호의 수익사업체는 수익사업처장의 관장 하에 두고, 각 수익사업체의 장은 차장 이상으로 보한다. 단, 같은 조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의 수익사업체는 연세우유사업처장의 관장 하에 두고, 같은 조 제12호, 제19호의 수익사업체는 법인사무처장의 관장 하에 둔다. <개정 2016.6.23., 2017.10.26.>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와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10.28.]

제2절 대학교

제90조(총장)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원주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을 두며, 교수로 보한다. <개정 2000.11.13., 2016.2.26.>

④ 제3항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된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15.>

1. 교학부총장 : 교무, 학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9.>
2. 의무부총장 : 의료원에 관한 사항
3. 원주부총장 : 원주캠퍼스(원주의료원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10.7.15.>

4. 행정.대외부총장 : 일반행정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00.11.13.>
5. 국제캠퍼스부총장 : 국제캠퍼스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26.>

⑤ 총장 유고시에는 교학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1.13.>

제90조의2(미래전략실) 총장과 부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중장기 전략수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미래전략실을 두고, 실장은 교수, 부교수, 국장으로 보한다.

[전문 개정 2012.10.23., 2018.1.18.]

제90조의3(본부장)

① 대학교에 부총장급으로 연구본부장을 두며, 교수로 보한다.

② 제1항의 본부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명에 따라 연구, 창업, 산학협력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8.>

[본조 삭제 2008.10.28.] [본조 신설 2016.7.19.]

제90조의4 (총장직속기구)

① 총장직속기구로서 Y-IBS과학원, 윤리인권위원회, 글로벌사회공헌원, 고등교육혁신원, 융합과학기술원을 둔다. <개정 2018.1.18., 2018.10.25.>

② 제1항의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0.29.] [전문 개정 2017.4.25.]

제90조의5(교육조직)

① 대학교에 대학, 대학원, 부속 교육기관을 둔다.

② 대학, 대학원, 부속 교육기관의 설립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7.15.]

제91조(학장, 대학원장)

① 각 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본부행정조직)

① 대학교에 교목실,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연구처, 총무처, 시설처, 학술정보원, 대외협력처, 국제처(이하 이 조에서 "본부행정조직"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31., 2018.1.18.>

② 각 본부행정조직에 실장, 처장 또는 원장을 두며,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③ 각 본부행정조직에 실장, 처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 부처장, 또는 부원장을 두며, 각 부실장, 부처장, 또는 부원장은 교수, 부교수, 국장으로 보한다.

④ 각 본부행정조직에 팀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교수, 부교수로 보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7.15.]

제92조의2(국제캠퍼스 행정조직)

① 국제캠퍼스 사업추진, 행정지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학교에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를 둔다. <개정 2012.10.23., 2016.2.26.>

② 삭제 <2012.10.23.>

③ 국제캠퍼스 행정조직의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2.15.>
[전문 개정 2010.7.15.]
[제목 개정 2011.2.15.]

제93조(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조직)

① 일반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및 각 대학에 행정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원주의과대학은 제96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02.5.18., 2004.12.24., 2010.7.15.>

② 각 대학원의 부원장 및 각 대학의 부학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행정팀장은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5.18., 2004.12.24., 2010.7.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0.7.15.]

제94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5.>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 및 보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5.>

제95조 삭제 <2008.10.28.>

제96조(의료원)

① 연세대학교 산하 보건, 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행정을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

② 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두고, 의무부총장이 겸직한다.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의료원에 원목실, 감사실, 기획조정실, 의료정보실, 사무처, 의과학연구처, 국제처, 대외협력처, 제중원보건개발원, 미래전략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원 본부행정조직"이라 한다)을 두며, 부속기관으로 의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3.10.31., 2015.2.10., 2016.10.27., 2017.4.25.>

④ 의료원 본부행정조직에는 실장, 처장 또는 원장을 두고, 의학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직원으로 보한다. 단,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은 교원 또는 원목으로 보한다. <개정 2015.2.10, 2016.10.27.>

⑤ 의료원 본부행정조직에는 실장, 처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 부처장, 부원장, 소장, 국장 또는 단장을 두며,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31., 2015.2.10., 2016.10.27.>

⑥ 의료원 본부행정조직 및 부속기관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6.>

⑦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병원을 두고, 각 병원에 전문진료기관 및 의원을 두되, 신촌지역의 의과대학 부속 대표병원은 세브란스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14.2.7.>

1.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 전문진료기관 : 재활병원, 심장혈관병원, 안·이비인후과병원, 어린이병원 <개정 2014.2.7.>
나. 의원 : 체크업의원, 체크업치과의원 <개정 2015.12.17., 2018.4.26.>
2.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가. 전문진료기관 : 척추병원, 치과병원, 암병원, 심뇌혈관병원 <개정 2016.2.26.>
3. 치과대학 치과대학병원
4.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5. 삭제 <2015.4.28.>
6. 의과대학 연세암병원 <신설 2014.2.7.>

⑧ 병원, 전문진료기관, 의원에는 병원장, 원장, 소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⑨ 병원, 전문진료기관, 의원의 장을 보좌하는 부원장, 진료부장, 부소장, 부실장,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직원으로 보한다.

⑩ 병원, 전문진료기관, 의원에 진료부서, 진료지원부서, 행정부서를 두며, 진료부서의 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진료지원부서 및 행정부서의 장은 교원 또는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단, 병원 원목실장은 원목으로 보한다.<개정 2017.10.26.>

⑪ 진료부서, 진료지원부서의 장을 보좌하는 부실장, 차장,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 또는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6.>

⑫ 제4항 내지 제11항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의료원 규정으로 따로 정하되,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사업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2.3.>

[전문 개정 2010.7.15.]

제96조의2(원주캠퍼스)

① 대학교 산하 원주지역의 대학 및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기 위하여 원주캠퍼스 조직을 둔다.

② 원주부총장은 총장의 명을 받고 원주캠퍼스의 행정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③ 원주캠퍼스 행정조직으로 원주교목실, 원주기획처, 원주교무처, 입학홍보처, 원주학생복지처, 원주연구처, 원주총무처를 두고, 각 행정조직에 실장, 처장을 둔다. <개정 2012.2.7.>

④ 각 행정조직의 실장, 처장은 교수, 부교수로 보하되, 원주총무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⑤ 각 행정조직에 실장,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⑥ 각 행정조직에 부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교수, 부교수로 보한다.

⑦ 원주캠퍼스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⑧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7.15.]

제96조의3(원주의료원)

① 원주캠퍼스 산하 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행정을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원주의료원을 둔다.
② 원주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의료원장을 두고 원주부총장으로부터 위임된 원주의료원의 행정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주의료원에 감사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실, 원목실, 의과학연구처, 행정국(이하 이 조에서 "원주의료원 본부행정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11.1., 2016.2.26., 2017.2.3., 2019.1.22.>
④ 원주의료원 본부행정조직에는 실장, 처장, 국장을 두고,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단, 원목실장은 교원 또는 원목으로 보한다.<개정 2019.1.22.>
⑤ 원주의료원 본부행정조직에는 실장, 처장,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1.22.>
⑥ 원주의료원 본부행정조직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1.22.>
⑦ 대학에 간호학부와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팀장은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1.22.>
⑧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의학도서관, 중앙연구실, 의사학자료실과 각 센터를 두며, 각 실장 및 소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1.11.1., 2013.10.31.>
⑨ 원주의료원에 원주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둔다.<개정 2013.2.5.>
⑩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원장 및 진료부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3.2.5.>
⑪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는 적정진료관리실을 두고 실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각 행정부서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11.1., 2013.2.5., 2019.1.22.>
⑫ 진료각과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료지원부서로 교육수련부, 간호국 및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진료부서의 각 부장 및 과장은 교수, 부교수로 보하고 행정부서 및 진료지원부서의 부장, 국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부설기관으로 각 센터를 두며, 센터에 소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11.1.>
⑬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7.15.]

제96조의4(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7.>
② 산학협력단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5.>
③ 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04.2.14.]

제3절 대학평의원회 <신설 2008.11.20.>

제96조의5(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

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96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학생 및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9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0.>

1. 교원 6인
2. 직원 3인
3. 학생 3인
4. 동문 3인
5. 학부모 2인 <신설 2015.2.10.>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개정 2015.2.10.>

[본조 신설 2008.11.20.]

제96조의7(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96조의8(평의원회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96조의6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 평의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96조의9(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08.11.20.]

제96조의10(평의원회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4절 정원 <개정 2008.11.20>

제97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의 사무직원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5., 2017.2.3.>

제8장 보칙

제9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조선일보에 공고한다.

제9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1957년 1월 5일)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	백 낙 준(白 樂 濬)	이사	유 형 기(柳 瀅 基)
동	이 원 철(李 源 喆)	동	에드와드 디 베이커(Edward D. Baker)
동	김 용 우(金 用 雨)	동	전 필 순(全 弼 淳)
동	에드와드 아담스(Edward Adams)	동	김 광 우(金 光 祐)
동	챨스 에이 싸우어(Charles A. Sauer)	동	권 연 호(權 連 鎬)
동	이 용 설(李 容 卨)	동	사무엘 에취 모펠(Samuel Hugh Moffett)
동	원 일 한(元 一 漢)	동	켄네스 스칼(Kenneth Scott)
동	김 명 선(金 鳴 善)	동	조 중 환(曺 重 煥)
동	윌리암 이 쇼(William E. Shaw)	동	파울 에스 크레인(Paul S. Crane)
동	김 상 권(金 尙 權)	동	최 재 유(崔 在 裕)
동	에프 제이 머리(F. J. Murray)	동	박 용 래(朴 容 來)
동	정 기 섭(鄭 起 燮)	동	전 희 철(田 熙 哲)
동	안 광 국(安 光 國)	동	헬넨 피 매켄지(Helen P. Mackenzie)
동	발바라 모쓰(Barbara Moss)		
감사	김 영 찬(金 永 燦)	감사	안 동 원(安 東 源)

부칙

① (당초시행일) 이 정관은 1957년 1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정관은 1964년 4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③ (예외규정) 본 정관 시행당시(1957년 1월 5일) 재직 중인 총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있다.

④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및 변경금지 조항) 본 정관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⑤ (세칙의 규정)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1965. 11. 4. 시행)

부칙

① 이 정관은 197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및 제5조 및 제44조 중 개정된 사항에 대한 시행은 인가일로부터 한다.

부칙(1975. 10. 29. 시행)

부칙(1976. 3. 19.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정관 제4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③ (직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직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1980. 2. 13. 시행)

부칙(1980. 3. 28.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 재직중인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3. 11. 22. 시행)

부칙(1984. 6. 12. 시행)

부칙(1984. 12. 8. 시행)

부칙(1985. 5. 22.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1987. 3. 25.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재단법인 연세대학교가 설치 경영하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소아재활원 국민학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특수학교에 대한 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학교에 대한 명칭 변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소아재활원 국민학교를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로 한다.

부칙(1988. 4. 7. 시행)

부칙(1989. 4. 4. 시행)

부칙(1989. 11. 24. 시행)

부칙(1990. 5. 28.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1991. 11. 25. 시행)
부칙(1992. 3. 13. 시행)
부칙(1992. 5. 23. 시행)
부칙(1992. 11. 23. 시행)
부칙(1993. 6. 17. 시행)
부칙(1993. 9. 6. 시행)
부칙(1993. 12. 7. 시행)
부칙(1994. 2. 25. 시행)
부칙(1994. 8. 31. 시행)
부칙(1994. 11. 8. 시행)
부칙(1995. 2. 22. 시행)
부칙(1995. 10. 13. 시행)
부칙(1996. 3. 1. 시행)
부칙(1997. 7. 23. 시행)
부칙(1997. 11. 11. 시행)
부칙(1998. 3. 24. 시행)
부칙(1998. 11. 13. 시행)
부칙(1999. 5. 21. 시행)
부칙(1999. 11. 26. 시행)
부칙(2000. 2. 25. 시행)
부칙(2000. 5. 30. 시행)
부칙(2000. 11. 13.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연세대학교 재활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칙(2001. 5. 16. 시행)

부칙(2001. 8. 18. 시행)

부칙(2002. 2. 7. 시행)

부칙(2002. 5. 18. 시행)

부칙(2002. 8. 8.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조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43조 제3항은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4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수 : 정년
2. 부교수 : 7년
3. 조교수, 전임강사 : 2년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계약임용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부교수의 근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으로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신청에 따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고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종료일 2월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다만,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2003. 5. 15. 시행)

부칙(2003. 8. 11. 시행)

부칙(2003. 11. 20. 시행)

부칙(2004. 2. 14. 시행)

부칙(2004. 3. 30.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제23조 제3항 신설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총장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5. 29. 시행)
부칙(2004.12. 24. 시행)

부칙(2005. 3. 15. 시행)

부칙(2005. 5. 20. 시행)

부칙(2005. 8. 16.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이사는 2006년 2월 28일까지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2005. 11. 23. 시행)

부칙(2006. 2. 24. 시행)

부칙(2006. 6. 14. 시행)

부칙(2006. 8. 28. 시행)

부칙(2007. 4. 9. 시행)

부칙(2007. 7. 24 시행)

부칙(2007. 10. 30 시행)

부칙(2008. 1. 18 시행)

부칙(2008. 10. 28. 시행)

부칙(2008. 11. 20. 시행)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 및 제5항, 제52조 제1항 제2호는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4794).

② (특수학교 운영규정 및 인사규칙) 재활학교 운영과 사무기구의 설치 및 교직원의 임면(신규임용·근속승진·대우직원선발·휴직·복직·명예퇴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운영규정 및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 기간제 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명의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부칙(2010. 10. 28. 시행)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4호, 제10호, 제17호, 제38조 제4호, 제10호, 제17호는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제도과-461).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은 제17대 총장부터 적용한다.
② (임원 선임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재활학교장 임면등) 재활학교 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재임중인 재활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재활학교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개정 정관(제96조의2 제3항 및 제96조의4 제1항)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6항, 제43조의2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제90조의2 개정사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3 제9항부터 제11항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조, 제25조 제6항, 제38조 각 호, 제43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6호,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45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9조, 제84조 제3항, 제86조, 제8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제1호 나목, 제96조의3 제8항)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1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8.>
②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 조치) 2012년 10월 23일 개정된 제43조 제6항의 시행일은 시간강

사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일(2014년 1월 1일)과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9조 제3항, 제37조, 제38조)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 제7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강사에 관한 경과 조치) 2012년 10월 23일 개정된 제43조 제6항의 시행일은 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일(2016년 1월 1일)과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37조, 제38조, 제39조)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① 이 개정 정관(제53조제1항, 제96조의6,별표5)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정관(제96조제7항제5호)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정관(제96조 제3항부터 제5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4.28.>

부칙

(시행일)이 개정 정관(별표4)은 201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4조 제1호, 제47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66조의 2)는 2015년 3월 27일부터 소급한 것으로 본다.

③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 제6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개정 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제43조의 2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설은 2015년 3월 1일부터, 학연교수 신설은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90조의 4)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90조 제3항, 제4항 제5호, 제92조의 2 제1항,제96조 제7항 제2호, 제96조의 3 제3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 정관(별표5)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개정 정관(제89조 제1항, 제2항)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4조 제7호의2, 제45조 제6호의2)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8조 제2항 제2호・제3호, 제48조 제4항・제7항, 제48조의 2)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③ (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7호의2, 제45조 제6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⑤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2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53조 제1항, 제90조 제4항 제1호, 제90조의3)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⑦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59조의2, 제64조 제2항, 제67조의2)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⑧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⑦항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9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이 개정 정관(제96조 제3항·제4항·제5항)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37조, 제44조, 제45조 제11호, 제96조 제12항은 2017년 2월 3일부터, 제96조의3 제3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이 개정 정관 중 제97조, 별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4. 25.)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의4는 2017년 4월 25일부터, 제96조 제3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37조 제13호·제19호)은 201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6.)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37조 제18호·제19호, 제89조 제2항, 제96조 제6항·제10항·제11항)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18.)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별표 제5호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제43조 제4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90조의2, 제90조의3 제2항, 제92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제90조의4 제1항 개정규정은 201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26.)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31조 제2항 제5호, 제6장 제1절 제1관의 제목, 제43조의 제목 및 동조 제3항 · 제5항, 제43조의3 제1항, 제44조의 본문 및 동조 제13호, 제48조의2 제2항, 제50조의2, 제52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2항 · 제3항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제96조 제7항 제1호 제나목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2.)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66조의2, 제89조 제1항)은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사유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 개정 규정은 2018. 4. 17.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18. 10. 25.)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90조의4 제1항)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22.)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89조 제1항 · 제2항, 제96조의 제3항 내지 제7항 · 제11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 회

이사회 임원

(2019. 3. 1 현재)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이 사 장	허 동 수	2017. 2.18 ~ 2020. 4.3 (이사 임기 2016. 4.4 ~ 2020. 4.3)	
이 사	이 성 희	2017. 5.24 ~ 2021. 5.23	
〃	서 중 석	2018.10.29 ~ 2022.10.28	
〃	박 삼 구	2017. 2.18 ~ 2021. 2.17	
〃	박 창 일	2016. 8. 9 ~ 2020. 8. 8	
〃	김 용 학	2016. 2. 1 ~ 2020. 1.31	
〃	김 용 순	2017. 4.12 ~ 2021. 4.11	
〃	원 한 석	2017. 5.24 ~ 2021. 5.23	
〃	설 준 희	2018.10.29 ~ 2022.10.28	
〃	서 경 배	2018.10.29 ~ 2022.10.28	개방이사
〃	이 건 춘	2018.10.29 ~ 2022.10.28	개방이사
〃	양 일 선	2018.11.18 ~ 2022.11.17	개방이사
감 사	박 상 용	2018. 5.29 ~ 2020. 5.28	
〃	김 학 수	2018. 8.29 ~ 2020. 8.28	추천감사, 공인회계사

법 인

- 법인은 이사회 운영 업무와 각종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관리를 비롯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설치학교인 연세대학교의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수익사업을 개발 ·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총괄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법인에 법인사무처(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재정운영팀), 수익사업처(사업개발팀, 재산관리팀 및 10개의 수익사업체)와 연세유업(연세우유/연세생활건강)을, 그리고 이사장 직속으로 감사실(감사팀)을 설치 · 운영하고 있음

■ 법인본부장 손영기

□ 법인사무처

- 기획조정팀 이사회 관련 업무, 발전기획, 산하기관 조정 업무, 규정 관리, 법무
- 행정지원팀 법인 직원 인사관리, 문서 및 인장 관련 업무, 총무
- 재정운영팀 예산, 결산 및 자금관리, 세무(재산세 외)

□ 수익사업처

- 사업개발팀 수익사업체 관리 및 운영지원, 신규 수익사업 개발
- 재산관리팀 기본재산 관리, 재산세 세무,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업무, 상표권 관리
- 수익사업체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은 중구 통일로 10에 위치한 (구)세브란스병원 부지에 1993년 12월 29일 최첨단 임대빌딩으로 준공되어 사무실 및 상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음 (대지면적 : 10,443㎡ . 건축면적 : 4,008㎡ . 연면적 : 108,863㎡)

2. 연세대학교 봉래빌딩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은 1984년 6월 중구 봉래동(칠패로 36)에 연면적 20,742㎡(대지면적 : 2,822㎡)의 임대빌딩으로 준공되어 사무실 및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3. 연세대학교 명일빌딩

연세대학교 명일빌딩은 1982년 3월 강동구 명일동(양재대로 1618)에 본관 등 총 4개동(연면적 : 6,658㎡)으로 준공되어 사무실 및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4. 연세대학교 대신빌딩

연세대학교 대신빌딩은 2011년 10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동문 앞에 연면적 2,499㎡(대지면적 : 664㎡)의 임대빌딩으로 준공되어 사무실 및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5. 연세대학교 강서빌딩

연세대학교 강서빌딩은 2017년 6월 강서구 방화동(방화대로50길 8)에 연면적 7,463.28㎡(대지면적 : 2,459.4㎡)의 임대빌딩으로 준공되어 물류창고 용도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6.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1993년 5월에 건물을 준공(6,906㎡)한 뒤, 2005년 8월에 지하층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7,421㎡), 2011년 4월 동문슈퍼 철거 후 화단 조성 및 2층 주차장 진입도로를 확장하였고, 8월에는 전층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였으며, 결혼예식, 일반행사 및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7.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996년 5월 세브란스병원 내에 법인 직영 장례식장으로 개소하였으며, 2008년 5월 연면적 10,909㎡, 빈소 17실, 안치실 32실 규모로 의료원 종합관 내에 새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빈소(828㎡)와 최고의 편의 시설(객실, 비즈니스센터, 무인조의금시스템 등)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

8.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1998년 3월 강남세브란스병원 내에 빈소 6실, 안치실 10실로 개소되었으며, 2007년 8월 대형빈소 및 빈소내 각종 편의시설 관련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빈소 5실, 안치실 10실을 운영하고 있음

9.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2006년 4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지상 4층 건물(연면적 : 4,175㎡)에 빈소 9실, 안치실 18실로 개소하였으며, 2011년 8월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빈소 6실, 안치실 18실 및 원주 최고의 편의시설(샤워실, 객실, 빈소안내시스템 등)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

10.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용품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용품은 서대문구 대신동에 2002년 3월 1일자로 설치되었으며, 연세의료원 산하의 모든 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진료재료를 구매.공급하는 수익사업체로 취급품목은 15,260여종(품목별 규격 포함)에 달함

□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연세우유/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1962년 6월 미국의 헤퍼 프로젝트로부터 젖소 10두를 기증받아 시작된 연세우유는 1972년 2월부터 우유를 시판하기 시작한 후 1978년 3월 법인 수익사업체로 전환되었으며, 1993년 6월에 아산공장을 준공(대지면적 : 64,789㎡ . 공장건축면적 : 14,795㎡) 하여 최신 자동시스템과 일 320톤의 원유처리능력을 구축하였음. 현재 전제품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획득하였고, 전국에 271여개의 우유대리점과 71여개의 두유대리점 영업판매망을 갖추고 있음. 국내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 판매로는 중국, 미국 등 16개국에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2017년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함.

또한 연세생활건강은 2011년 12월 1일 출범한 수익사업체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류와 일반식품류 등의 다양한 생활건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

- 제품
- 우유류 : 연세 전용목장우유, 저온살균 목장우유, 유기농 목장우유 등
- 발효유류 : 세브란스 위락, 세브란스 오메가3, 세요, 키짱 요구르트 등
- 과즙음료 : 스위플(사과·오렌지·레드오렌지) 3종, 굿모닝 야채 등
- 두유류 : 우리콩두유, 약콩365, 고소한 아몬드&잣 두유, 고소한 검은콩&고칼슘 두유 등
- 건강기능식품류 : 제중원 남기새(홍삼), 제중원 프리미엄 홍삼진, 연세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미엄 등
- 일반식품류 : 연세백세생식, 건강즙(배도라지, 자색양배추, 석류, 레드비트, 마카핫개) 5종

■ 감사실

- 감사팀 법인 및 산하기관 감사(정기·특별·수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학 사 안 내

수업연한, 재학연한, 조기졸업 / 100
학년도와 학기, 수업과 휴업 / 102
재입학, 편입학, 소속변경 / 103
휴학, 복학, 퇴학, 제적 / 107
교과와 이수 / 111
전공, 복수전공(이중 · 다중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 116
수 강 / 123
성적평가 / 130
진급 및 졸업 / 135
국내외 타 대학에서의 수강 / 142
학점인정 / 145
기 타 / 153

연세대학교 학사안내

(학칙, 내규, 시행세칙은 부록에 수록함)

Ⅰ. 수업연한, 재학연한, 조기졸업

1.1. 수업연한

1) 의미

①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표준 재학기간

② 수업연한 이내에는 수강학점수와 관계없이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함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수업연한 이내라도 학점당 등록을 할 수 있음

③ 수업연한 충족 이전에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조기졸업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수업연한동안 등록하여 수학하여야 함

2) 모집단위별 수업연한

① 일반적인 학사과정 수업연한: 학부대학 재학기간을 포함 4년(8학기)
※ 학부대학의 재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별도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학생
- 건축학(5년제) 교육과정 이수학생: 5년(10학기)
- 의예과·치의예과·야간 간호학과 및 보건과학부의 야간 3학년 편입생: 2년

3)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31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학칙 4조①항

1.2. 재학연한

1) 의미

① 학사과정 이수를 위하여 재학할 수 있는 최대 수학기간(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② 재학연한 내에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함

2) 모집단위별 재학연한

① 일반적인 재학연한: 아래 별도 적용 대상 학생 이외의 모든 신입생은 6년(12학기)

② 별도의 재학연한을 적용받는 학생
- 건축학(5년제) 교육과정: 7.5년(15학기)
- 의예과·치의예과·야간 간호학과 및 보건과학부의 야간 3학년 편입생: 3년(6학기)
- 편입학생: 입학 후 우리대학에서 수학하여야 하는 연한의 1.5배

3) 재학연한 예외 적용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②항4호에서 정한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연한을 적용받지 않음

②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재학기간을 최대 15학기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연장 승인할 수 있음

③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재입학생은 제적 전 재학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학생은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4) 관련 규정: 학칙 5조

1.3. 조기졸업

1) 조기졸업의 의미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학위취득을 위한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성적 평량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자신의 뜻에 따라 1~2학기를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조기졸업 신청 자격

① 조기졸업자의 성적 제한

-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학기간 성적이 누적 평량평균 3.75/4.3이상인 경우 수업연한을 두 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음
- 글로벌융합공학부 학생: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학기간 성적이 누적 평량평균 3.3/4.3이상인 경우 수업연한을 두 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음

② 조기졸업자에 대한 평량평균 환산 기준

- 계절제 수업을 포함한 수강한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
- 단, 대학원 교과목 및 P/NP 평가과목은 제외함

3) 조기졸업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① 건축학(5년제), 의예과, 치의예과, 야간간호학과 및 보건과학과 3학년 편입생

② 일반편입생 및 학사편입생, 단 약학과 학생은 조기졸업 가능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 조기졸업 신청

① 신청기간: 조기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개강 2주 후 지정된 날짜

② 신청방법: 조기졸업신청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제출

5)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26조, 학칙4조②항,③항, 학칙 52조, 학사에관한내규 40조~41조

Ⅱ. 학년도와 학기, 수업과 휴업

2.1. 학년도와 학기

1)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 학기

① 정규학기

-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단, 2학기는 2주 이내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음

② 계절제 수업

- 방학 중 계절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계절제 수업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계절제 수업 단위의 휴.복학도 불가함

3)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20조, 학칙 6조~7조

2.2. 수업 및 휴업

1) 수업일수

① 법정 수업시수: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

② 수업일정: 우리대학은 아래와 같이 한 학기 16주의 수업을 운영하며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업: 1~7주, 9~14주
- 평가: 중간시험 8주, 자율학습 및 기말시험: 15~16주

2) 휴업일

① 정기휴업: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요일, 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국정공휴일

② 임시휴업: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2주의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 가능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실험.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수업시간

① 1교시는 오전 9시에 시작하며 매 교시마다 50분 수업과 10분 휴식으로 진행됨

② 수업시간표에 "수3,금3,4"로 표시된 수업은 수요일 11:00~11:50까지와 금요일 11:00~12:50까지 수업을 뜻함

4)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11조, 학칙 8조~9조, 학칙 41조

Ⅲ. 재입학, 편입학, 소속변경

3.1. 재입학

1) 공통 사항

① 의미

- 제적생이 제적 전 재학한 동일 학년으로 입학함
- 재입학 후에는 제적 전까지 우리대학에서 수학한 재학기간, 이수학점, 성적 및 경고사항 등 모두 유효함

② 지원자격

-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
- 제적 전 재적했던 학과로만 재입학 가능
- **재입학은 1회만 허가**함
  - -재입학 허가 후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또는 재입학 후 다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음
- 재입학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
  - -학력부실(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학기초과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도 성적불량 제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일하게 제한함)
  - -국내 타 대학에 이중 등록하여 제적된 학생
  - -징계에 의해 제적된 학생
  - -재입학 학생 중 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학생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기간 중 중도에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

③ 제출서류: 재입학신청서, 청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학적증명서, 서약서

④ 재입학 후 교과목 이수요건

- 입학당시 학과(모집단위)별 이수요건 적용
- 필수과목의 폐강 등 입학 당시 교과이수요건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과에서 지정한 요건을 따름

2) 재입학 일반전형

① 지원자격: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또는 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

② 심사방법

- 1단계: 지원자격 심사(교무처)
- 2단계: 학과(학부,계열,전공) 심사
- 3단계: 해당 대학 심사

3) 재입학 특별전형

① 지원자격

- 편입학(일반, 학사, 군위탁) 학생으로 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학생
- 소속변경자로 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학생

- 성적불량제적생(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학생에 한함)
- 자원퇴학생
- 학기초과제적생

② 심사방법
- 1단계: 지원자격 심사(교무처)
- 2단계: 소속대학.학과 심사(대학별 심의위원회)
- 3단계: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교무처)

4) 재입학자의 등록 및 재학연한

① 등록: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수속비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학기초과 제적자에 대한 재학연한 적용 특례: 학기초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입학 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6학기(편입생은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5) 학력부실(성적불량) 제적자에 대한 학사경고 적용

① 학력부실(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후 1회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함

② 재학연한 초과를 이유로 제적된 학생이라도 학력부실(성적불량) 제적 요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①항의 제한을 같이 적용함

6)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29조의2, 학칙 21조, 재입학시행세칙

3.2. 일반편입학

1) 지원자격, 정원 및 편입학 전형

① 지원자격: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 또는 법령상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정원: 1,2학년 정원 결원 범위 내

③ 편입학전형
- 필답고사, 면접고사 및 서류평가를 원칙으로 함
- 예체능계열 학과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2) 교과 이수요건

① 신입생과 동일한 이수요건 적용

② 다만, 채플의 경우 3학년 편입학생은 2P로 이수의무를 경감함

③ RC교육 이수의무가 없음

3) 학점인정

① 학점인정 범위
- 3학년 편입학생은 63~70학점(대학별 졸업이수학점의 1/2) 이내
- 전공별로 교양 및 전공학점 인정 상한을 둘 수 있음
-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의 학점은 최대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학점인정 범위 이내라도,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D+”(우리대학 기준) 이하인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② 과목 인정 기준

- 본인의 필수졸업요건인 과목만 인정받을 수 있음
- 교과목 인정 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에서 개설한 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만 인정함
- 전적대학에서 채플을 이수한 경우 1학기 이수(1P)를 인정받을 수 있음

③ 학점인정절차

-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인정원 작성(양식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비치,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인정과목 입력하여 출력)
- 인정받을 교과목에 대한 승인: 교양과목은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부대학장(학부대학장 날인은 학부대학 행정팀에 문의), 전공과목은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해당 학과(부)장 승인을 받음
- 승인 날인을 받은 학점인정원과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제출

4) 복수전공 선택

일반편입학생도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지원할 수 있음

※ 단, 소속변경은 불가

5)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조기졸업의 제한

① 수업연한: 3학년 편입학생은 최소 4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함

② 재학연한: 3학년 편입학생은 최대 6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음

③ 조기졸업: 편입학생은 조기졸업할 수 없음, 단 약학과 학생은 예외로 함.

6)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29조, 학칙 17조, 일반편입학시행세칙

3.3. 학사편입학

1) 지원자격 및 정원

①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② 정원: 3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이면서 해당 학과(학부) 입학정원의 10% 이내

2) 학사편입학 제한: 의학과 및 치의학과, 약학과는 학사편입학을 제한

3) 선발방법: 필답고사, 서류평가 및 면접

4) 교과이수 요건

① 해당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학점 이상을 필수로 최소 58학점 이상 이수

- 학과별 최소전공이수학점이 58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58학점을 초과하여 지정된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② 교양

- 채플: 2학기 이상 “P”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
- 채플 이외의 타 교양과목에 대한 이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학과에 따라 계열기초 또는 필수교양 등 전공이수에 필요한 기초과목에 대한 이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RC교육 이수의무가 없음

5)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조기졸업의 제한

① 수업연한: 최소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② 재학연한: 6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음

③ 조기졸업: 편입학생은 조기졸업할 수 없음

6) 학사편입학 학생의 복수전공 제한

① 학사편입 학생은 단일전공만 선택할 수 있으며, 캠퍼스내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지원할 수 없음

② 부전공은 제한하지 않음

7)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29조, 학칙 19조, 학사편입학시행세칙

3.4. 소속변경

1) 지원자격

① 3학기 이상 수료자부터 3학년까지(6학기 이수 전까지) 1회에 한해 허용. 동아시아국제학부로의 소속변경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 휴학생도 지원할 수 있으나, 6학기 이수를 완료한 후에는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없음

②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전공배정자에 한하여 전공으로만 소속변경을 허용함

③ 예·체능계열 입학자는 소속변경을 할 수 없음

④ 일반학부(전공)·계열·학과 학생은 예·체능계열, 의과·치과·간호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모든 학과, 보건과학과(야간)로는 소속변경할 수 없음

⑤ 타대학에서 글로벌인재학부로의 소속변경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초중고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에 한하여 선발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 글로벌인재학부에서 타대학으로 소속변경 가능한 인원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함

⑥ 보건행정, 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과로의 소속변경은 2학년까지의 모집단위 입학정원 결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

⑦ 주·야간간 소속변경은 정원 결원범위 내에서만 허용

2) 정원

① 캠퍼스내 소속변경

- 당초입학생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10% 이내에서 선발
- 단, 교육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0% 이내에서 선발

② 캠퍼스간 소속변경

- 전공배정 후 입학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한하여 허용
- 1,2학년 제적인원의 20%이내에서 허용

3) 소속변경 지원 전 소속전공과목 이수 요건

①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소속변경 지원 전까지 소속학과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단,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소속학과에 반드시 문의)

②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시기

① 캠퍼스내 소속변경: 중간고사 이후 지정된 기간

② 캠퍼스간 소속변경: 12월(연 1회 실시)

5) 심사

① 지원서류

- 캠퍼스내 소속변경: 소속변경 지원사유 및 학업계획서를 연세포탈에서 입력
- 캠퍼스간 소속변경: 소속변경 지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소속변경 사유서(소정양식), 소속변경 후 학업계획서(소정양식), 소정의 전형료

② 심사 단계

- 1차 소속학과 심사: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이수요건 충족여부 심사
- 2차 지원학과 심사: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 가능) 실시

6) 소속변경 후 교과과정 이수: 전입한 학부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7)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29조③항, 학칙 23조~28조, 소속변경시행세칙

Ⅳ. 휴학, 복학, 퇴학, 제적

4.1. 휴학 및 복학

1) 휴학 구분 및 사유

① 일반휴학: 질병, 가사, 임신·출산·육아, 창업·창업준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학

- 학생은 질병, 가사, 임신·출산·육아, 창업·창업준비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휴학을 명할 수 있음

② 입대휴학: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입대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2) 휴학 신청 기간

미등록자의 휴학

개강 후 14일이 경과하면,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만 휴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학을 계획하는 학생은 지정된 휴학신청기간을 지켜 불필요한 등록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휴학
- 학기 시작 1개월 전부터 휴학 신청 가능
- 등록자의 학기 중 휴학
  - 일반휴학은 학기 2/3선까지만 신청 가능
  - 단, 질병, 임신·출산·육아, 천재지변, 또는 법적조치에 의한 경우 증빙서류 또는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의의 진단서와 건강센터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말시험 시작 1주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②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발급일부터 입영일까지 휴학 신청 가능
- 학기 2/3선 이후 입대휴학: 입영 1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휴학 신청 가능

3) 휴학신청의 제한

① 신입생, 편입생, 학사편입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 등은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과(야간), 원주의과대학 간호학사 학위특별과정(야간)은 제외함

②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음

4)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생은 편입 후 재학연한의 1/2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 단, 입대휴학 기간은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② 재적 중 국가고시 합격자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휴학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하여야 할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연수원 교육기간만큼 휴학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③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 중 질병치료를 위해 청원한 경우 대학장의 제청과 총장의 승인이 있으면 일반휴학 기간을 1학기간 연장할 수 있음(최대 2회 이내)

④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⑤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한 학생 가운데 학기 2/3선 전 입대휴학 학생은 해당 학기를 입대휴학기간으로 처리하며(휴학연한에 포함하지 않음), 2/3선 후 입대휴학 학생은 해당 학기를 일반휴학으로 처리함

⑥ 입대휴학 시 휴학접수일과 입영일 중 앞선 날짜를 휴학일로 함. 단, 학기 2/3선 이후 입대휴학자는 입영일을 휴학일로 함

⑦ 휴학연한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함

5) 휴학절차

①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휴학신청(단,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창업준비 휴학은 방문 제출)

② 휴학신청 시 제출서류

- 입대휴학: 입영통지서를 연세포탈서비스에 등재
- 질병휴학: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의의 진단서와 건강센터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으로 제출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 및 출산의 경우 진단서,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으로 제출
- 창업: 창업휴학신청서, 창업실적보고서, 1년 내 등록한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으로 제출
- 창업준비: 창업준비휴학신청서, 창업계획서 등을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으로 제출

6)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

①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수업료 전액 반환(미등록 휴학 가능)

② 학기 개시 후 15일 ~ 30일: 5/6반환

③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2/3반환

④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1/2반환

⑤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 반환 없음

7) 휴학자의 성적 처리

① 일반휴학학생 및 학기 2/3선 전 입대휴학학생: 당해 학기 수강신청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보며 성적처리를 하지 않음

② 학기 2/3선 이후(학기 2/3선 해당일 포함) 입대휴학자: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이 있어야 함.

8) 복학

① 복학신청 시기

- 입대휴학자는 제대일을 포함한 2개 학기까지는 입대휴학으로 간주되나, 그 후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휴학연한이 남은 경우)하여야 함
- 학기시작 1개월 전부터 학기 시작 전까지 정해진 기간

② 복학신청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복학 신청
- 입대휴학자의 경우 전역증 사본 앞·뒷면,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연세포탈서비스에 등재

9) 휴학의 취소

① 입대휴학의 취소

-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학생은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취소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하여야 함
- 귀향조치를 받고도 입대휴학을 취소하지 않고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함

② 일반휴학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10) 관련규정: 학칙 29조~33조, 학사에관한내규 35조~37조, 39조

4.2. 자원퇴학 및 제적

1) 자원퇴학

① 절차
- 자원퇴학신청원(학사지원팀에 비치) 작성
- 지도교수(담당 학사지도교수) 및 학과장, 대학장 확인 날인
- 학술정보원(도서관)에서 대여 도서 반납 확인. 재학 중인 경우 재무회계팀 및 장학팀에서 등록금 관련 내용 확인
-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신청원 제출
- 자원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자원퇴학원 제출 1주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② 자원퇴학 시 등록금 반환 기준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 ~ 30일: 5/6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2/3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1/2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자원퇴학 학생은 등록금 반환 없음

③ 자원퇴학 학생에 대한 성적처리
- 자원퇴학 학생은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봄
- 단, 기말시험 종료일 이후 자원퇴학할 경우 해당학기 이수학점과 성적을 모두 인정함

2) 제적

① 제적 사유
-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은 경우(9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재학연한 내에 졸업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 국내 타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 본인 사망 시

② 등록금 반환 제한: 제적의 이유로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3) 관련 규정: 학칙 34조~35조, 학사에관한내규 38조

Ⅴ. 교과와 이수

5.1. 교과목 구분

1) 교양이수요건

① 교양 영역별 이수요건

가) 2019학번 이후 입학생 기준

- 교양기초: 채플(0.5학점×4회=2학점), 글쓰기(3학점), 영어(2학점×2과목=4학점), 기독교의이해(3학점)
- 대학교양(24학점)
  - -문학과예술, 인간과역사, 언어와표현, 가치와윤리, 국가와사회, 지역과세계, 논리와수리, 자연과우주, 생명과환경, 정보와기술의 10개 영역 중 8개 영역 이상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대학·학과별로 대학교양영역에서 특정 과목에 대한 이수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각 대학별 교과과정 참조)
- Residential Education 이수의무
  - -국제캠퍼스에서 1학년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은 1년 동안 국제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대학·학과별로 지정된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기숙형 교육 이수 의무

구분		RC 이수요건				합계
		졸업요건			RC 자기주도활동	
		사회참여	**RC 101**	**소계**		
2019 RC 이수대상 전체		**1학점**	**1학점**	**2학점**	1학점	3학점
예외	체육계열	**1학점**	**1학점**	**2학점**	0.5학점	2.5학점

나) 2019학번 이후 외국인전형(의대,치대,간호대,UIC제외) 입학생 및 글로벌인재대학 입학생 기준

- 교양기초: 채플(0.5학점×4회=2학점), 영어(3학점×2과목=6학점), 기독교의이해(3학점)
- GLC 대학교양(9학점. 단, 이과, 공과, 생명시스템대학은 6학점 이수)
  - -대학·학과별로 대학교양영역에서 특정 과목에 대한 이수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각 대학별 교과과정 참조)
- Residential Education 이수의무
  - -국제캠퍼스에서 1학년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은 1년 동안 국제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대학·학과별로 지정된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기숙형 교육 이수 의무

RC 이수요건				합계
졸업요건			RC 자기주도활동	
사회참여	RC 101	소계		
×	1학점	1학점	1학점	2학점

※ 체육계열 입학생은 RC 자기주도활동은 0.5학점임

② 대학영어 학점취득 특별시험

대학영어 과목에 대하여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고, 총 4학점 이내에서 학점 취득을 인정할 수 있음

단, 2019학번 이후 외국인전형(의대,치대,간호대,UIC제외) 입학생 및 글로벌인재대학 소속 입학생의 경우, 학점취득 인정은 해당하지 않음

③ 전공기초-대학교양 교차인정

- 학과별 전공분야 기초과목 중 2과목(6학점) 이내에서 대학교양 교차인정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사전에 지정된 과목에 한함)
- 전공기초-대학교양 교차인정과목 수강 시 두 영역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졸업이수학점에는 한 번만 인정함
  - -예) 경영학과 학생이 회계원리(1)(3학점) 과목을 이수할 경우 전공기초와 대학교양(논리와수리) 영역으로 모두 인정되나, 졸업이수학점에는 3학점으로만 인정함

2) 전공: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① 단일전공자

-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학점(최소 48학점) 이상을 이수함
- 최소 60학점 이상의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과에서 정한 심화전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화전공을 부여할 수 있음

② 이중.다중전공자

- 각 전공별로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 외부기관 교육인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중.다중전공자의 전공이수학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교직, 일반선택(평생교육사과정, 타과 전공) 등

4) 관련규정: 학칙 36조~37조, 39조, 학사에관한내규 9조~16조의1, 32조

5.2. 교과목 이수요건

1) 2019학번 졸업이수학점

대 학	졸업이수학점	대 학	졸업이수학점
문과대학	135학점	음악대학	140학점
상경대학	126학점	생활과학대학	126학점
경영대학	126학점	교육과학대학	126학점

대 학		졸업이수학점
이과대학		135학점
공과대학	일반학과.학부	140학점
	글로벌융합공학부	126학점
	건축학(5년제)	166학점
생명시스템 대학	시스템생물학.생화학	135학점
	생명공학	140학점
신과대학		135학점
사회과학대학		126학점

대 학		졸업이수학점
언더우드 국제대학	UD(LSBT제외)·ASD·TAD·ISSD	126학점
	LSBT전공·ISED	135학점
의과대학	의예과	76학점
	의학과	160학점
치과대학	치의예과	76학점
	치의학과	160학점
간호대학		126학점
글로벌인재대학		126학점
약학대학		151학점

2) 대학·학과별로 지정된 교양 및 전공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심화과목 이수요건: 3000.4000단위 과목 중 최소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모집단위 및 입학구분별로 차이를 둘 수 있음

대 학	3000.4000단위 이수 요건		비고
문과대학	45학점 이상 이수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음
상경대학	45학점 이상 이수		3학년 일반편입/학사편입/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는 30학점 이상
경영대학	45학점 이상 이수		편입자(3학년 일반편입자 및 학사편입자) 및 졸업예정 복수전공자는 30학점 이상
이과대학	45학점 이상 이수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음. 단, 대기과학과는 전공 이수기준 있음. 학과 졸업요건 확인
공과대학	45학점 이상 이수		학사편입/졸업예정 복수전공자는 3000·4000단위 이수의무 면제
생명시스템대학	45학점 이상 이수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음
신과대학	45학점 이상 이수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이 3000, 4000단위 이수학점의 합계. 학사편입/졸업예정 복수전공자는 27학점 이상
사회과학대학	45학점 이상 이수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음
음악대학	적용 면제		
생활과학대학	단일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타 전공을 제외한 자기전공의 3000-4000단위를 36학점 이상 이수(일반편입, 학사편입,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포함)
	복수 전공	45학점 이상 이수	타전공 포함하여 45학점 이상 이수
교육과학대학	45학점 이상 이수		체육교육학, 스포츠응용산업학은 적용 면제
언더우드국제대학	적용 면제		

대 학	3000.4000단위 이수 요건	비고
글로벌인재대학	45학점 이상 이수	- 2018학번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단, 문화미디어전공생은 학번에 상관없이 3000~4000단위를 45학점 이상 이수 -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음
약학대학	적용 면제	

4) 관련 규정: 학칙 38조, 학사에관한내규 31조

5.3. 학점

1) 학점당 수업시수: 1학점당 학기당 15시간 이상. 실험·실습·체육 등은 학기당 30시간 이상

2) 학점취득특별시험: 공통기초·필수교양 일부 과목에서는 학점인정 특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① 영어: 신입생 대상 영어진단평가에서 상위 15%는 고급대학영어 과목에서 해당과목의 학점취득을 인정(외부 공인시험성적 제출자를 포함, 외부공인시험 성적기준은 별도로 정함)

3) 외부 학점 인정

① 외부 기관 취득학점 인정 상한: 재학 중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우리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음(학칙 제37조의2)

② 외부 기관 취득학점 인정 대상: 아래 경우에 한하여, 모집단위별.사례별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

- 국내외 교환대학에서 교환학생 신분으로 이수한 학점
- 방문학생 또는 유학생 신분으로 해외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입학 전 AP 또는 UP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 모집단위별로 인정여부가 다름

4) 관련 규정: 학칙 8조, 학칙 37조의2

5.4. 학점인정 특별 프로그램

1) 사회봉사

① 학점인정취지

학생의 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학이 사전 승인한 봉사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함

② 봉사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기준

-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비정치성 단체에 제공하는 댓가를 지급받지 않는 봉사활동으로 한정함
- 봉사활동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중 '사회봉사

'(UCI2001, 기초교육 자율선택에 개설, 1학점으로 개설) 과목을 수강신청함

- 사전 기본교육 2시간, 8~15주(총 30시간, 계절제수업은 5~8주)의 봉사활동, 기말 평가교육 2시간 등, 총 34시간 이상을 이행할 때 학점이 부여됨
-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타 교과목(인턴십, 현장실습, 상담실습 등)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음

③ 사회봉사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 사회봉사는 학기당 수강신청 허용 학점(최대학점) 외로 수강할 수 있음. 단, 계절제수업에는 학기별 최대이수학점인 7학점 제한 내에서 선택할 수 있음
- 학기별 1강좌만 수강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총 4회(4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음
- 사회봉사 시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NP”를 받은 학생에게는 추후 사회봉사학점 신청을 불허하며, 사회봉사 교과는 수강철회도 허용하지 않음. 단,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졸업예정자는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사회봉사 교과를 수강할 수 없음

④ 성적평가

- 사회봉사 교과목은 “P/NP”로 평가
- 성적평가 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NP”로 평가함
  - -사전 기본교육(사회봉사 프로그램 시작 첫 주 교육)에 불참한 경우
  - -사전 허락 없이 실습에 2회(4시간) 이상 불참한 경우
  - -실습 기관단체 지도자가 자원봉사 결과를 A,B,C,F 중 "F"로 평가한 경우
  - -실습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담당교수가 주재하는 기말 평가교육에 불참한 경우

⑤ 관련 규정: 사회봉사학점인정시행세칙

2) 현장실습 및 인턴십

① 개념

- 대학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현장 또는 관련기관과 소정의 협약에 따라 최소 160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

②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단,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과목은 휴학생도 수강할 수 있음
  - -졸업예정자는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교과를 수강할 수 없음

③ 학점 인정 및 성적 부여

- 인정학점
  - -160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기간에 따라 전공.일반선택 학점으로 최대 15학점(4개월: 12학점)까지 인정
  - -중도포기 시 학점인정기준

기간	학기개시 1/3선 전 중도해지자	학기개시 1/3선 ~ 2개월 미만	2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4개월미만	4개월이상 5개월미만
5개월 프로그램 인정학점	0	4	6	8	10
4개월 프로그램 인정학점	0	4	6	8	-

- 성적평가: P/NP로 평가함

④ 주요 현장실습 프로그램

- 산학협동현장실습
  - -정규학기 중 4~5개월 과정으로 운영
  - -계절제수업 중 1개월(160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
  - -문의처: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2123-6675~6676)
- 글로벌 인턴십: 정규학기 중 국외에서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
  - -지원자격
    3, 4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 휴학생 지원 불가)
    평량평균 3.0 이상, TOEFL 550점(CBT 213점) 또는 TOEIC 750점 이상(현지기업에서 인턴업무가 가능한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 요구)
    졸업학기(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이수(인턴 파견 학기가 4학년 2학기가 되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글로벌인턴십 관련 문의처: 국제처(2123-6493, sap@yonsei.ac.kr)

⑤ 관련 규정: 현장실습학점인정시행세칙

Ⅵ. 전공, 복수전공(이중 · 다중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6.1. 신촌캠퍼스 전공승인(진입)

1) 2010학번 이후 입학학생

① 전공결정 입학자

- 1학년은 공통기초/교양기초(기독교의이해, 글쓰기, 영어)를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신입생은 1학년 과정에서 공통기초/교양기초(기독교의이해, 글쓰기, 영어) 10학점을 이수하면 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됨
- 단, 2019학번 이후 외국인전형(의대,치대,간호대,UIC제외) 입학생은 신입생 1학년 과정에서 기독교의이해, GLC영어(영어 능력에 따라 면제 가능), GLC중급한국어(혹은 TOPIK 4급 이상 취득) 과목을 이수하면 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됨

② 전공 미결정 입학자

- 건축공학과 입학생의 전공신청 전 과목 이수 요건: 공통기초/교양기초 10학점(기

독교의 이해, 글쓰기, 영어)

- 건축공학과 전공신청 방법: 지정된 전공신청 기간 내에 연세포탈시스템에서 전공을 신청
- 2019학번 이후 글로벌인재대학, 건축공학(외국인전형에 한함) 입학생은 기독교의 이해, GLC영어(영어 능력에 따라 면제 가능), GLC중급한국어(혹은 TOPIK 4급 이상 취득)

2) **2009년 이전 입학자**: 입학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공승인을 받아야함

3) **관련 규정**: 전공배정에관한내규

6.2. 원주캠퍼스 전공승인

1) 학부별 전공신청 시기

대학	학부	제1전공	2중/다중(연계)전공
인문예술대학	인문과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디자인예술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자연과학부, 응용과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생명과학기술학부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선택안함	2학년 2학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학부	EAST ASIA International College(EIC)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언더우드학부 및 아시아학부만 가능)

2) **전공승인 기준**: 학업계획서, 적성검사결과서, 특정과목 성적, 면접, 전공에서 정한 자료와 자격요건 등

6.3. 재학생의 복수전공

1) 일반 요건

① 복수전공의 개념

- 재학 중 1전공과 함께 2전공을 추가로 이수하여 졸업 시 두 가지 전공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한 장의 학위증에 두 가지 전공 및 학위를 표기
- 캠퍼스내 및 캠퍼스간 복수전공으로 구분함

② 복수전공 제한 학과(전공)

- 다음의 각 학과(전공)는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음
  - 글로벌융합공학부, 건축학(5년제), 음악대학 모든 학과, 의학.치의학.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과학과(야간)

-교육학과 및 체육교육학과에 대한 복수/다중전공은 정원의 결원범위 내에서만 허용함

- 타대학 학생은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의 모든 학과를 지원할 수 없음
- 학사편입자는 복수전공을 지원할 수 없음

③ 입학년도별 복수전공 허용범위

-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 1전공 승인 후 지원 가능. 타 계열로도 지원할 수 있음
-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
  - -1996년 입학자: 동일 대학 내
  - -1997년~1999년 입학자: 동일 계열 내
- 캠퍼스간 복수전공
  - -소속대학 소재지 캠퍼스에 없는 전공에 한하여 타 캠퍼스에서 복수전공 신청 가능
  - -신촌-국제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캠퍼스내 복수전공으로 봄

④ 복수전공 신청 시기

-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 학과별 입학자의 경우 3학기 이수 후부터, 학부(계열) 입학자의 경우 전공을 승인받은 이후부터 졸업 직전학기까지 지원 가능
- 1999년 이전 입학자
  - -신촌캠퍼스 학생: 2학년 말에 전공을 정하고 3학년 1학기부터 복수전공 지원 가능
  - -원주캠퍼스 학생: 1학년 말에 전공을 정하고 2학년 1학기부터 복수전공 지원 가능

⑤ 선발방법

- 2전공 신청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과 서류 및 면접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선발
- 예체능계 학과(전공)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비율은 학과별로 정함

※ 3전공 이수는 사전 승인절차를 두지 않으며,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공을 승인함

⑥ 복수전공자의 교과이수

- 최소 36학점 이상 복수전공학과에서 지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 시 두 전공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한 전공에서만 인정하며, 다른 전공에서 중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이 1전공의 교차인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대 6학점까지 두 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중복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졸업이수학점에는 1회만 인정함(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
- 전공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필수교양” 과목 중에서 2과목(6학점) 이내에서 추가로 필수이수 지정할 수 있음

⑦ 복수전공의 취소

- 복수전공을 승인받아 이수 도중 포기하는 경우에는 졸업직전학기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신촌: 학사지원팀, 원주: 교무부)
- 취소한 복수전공은 다시 신청할 수 없음

⑧ 복수전공자의 학위

- 복수전공승인자는 졸업하기 위해서 각 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전공과 2전공 중 어느 한 전공이라도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음

2) 캠퍼스내 복수전공

① 자격 및 정원

- 신청 자격: 1전공 승인자 중 졸업 직전학기까지 신청 가능
- 선발 인원: 선발인원은 지원인원의 50%와 지원학과 정원의 30% 가운데 적은 수 이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②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6·12월 중 지정된 기간에 연세포탈시스템을 통해 신청

3) 캠퍼스간 복수전공

① 자격 및 정원

- 자격: 원주(서울)캠퍼스 학생이 자신이 소속된 캠퍼스에 설치되지 않은 동일계열(인문/자연)의 전공을 서울(원주)캠퍼스에서 제2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선발가능인원: 약간명

원주↔서울캠퍼스간 2중(다중)전공이 가능한 학과 및 전공

원주캠퍼스	신촌캠퍼스		원주캠퍼스	신촌캠퍼스	
대학	대학	학과(전공)	대학	대학	학과(전공)
	문과대학	중어중문학전공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천문우주학전공
		심리학전공			대기과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생화학전공
인문예술대학		노어노문학전공	인문예술대학		생명공학전공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정경대학	신과대학	신학과	정경대학		전기전자공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컴퓨터과학전공
과학기술대학		언론홍보영상학과	과학기술대학		산업공학전공
		사회복지학과			건설환경공학전공
보건과학대학		사회학과	보건과학대학		도시공학전공
		문화인류학과			건축공학전공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의류환경전공			화공생명공학전공
		식품영양전공			

원주캠퍼스	신촌캠퍼스		원주캠퍼스	신촌캠퍼스	
대학	대학	학과(전공)	대학	대학	학과(전공)
		실내건축전공 생활디자인전공			
			동아시아국제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아시아학부
					테크노아트학부

연계전공이 가능한 전공

서울캠퍼스	한국및동아시아학(한국학), 한국및동아시아학(중국학), 한국및동아시아학(일본학), 한국및동아시아학(동아시아학), 유럽지역학, 미국학, 디지털예술학, 외교통상학, 인지과학, 벤처학, 리더십, 비교문학, 문화비평학, 과학기술과사회
원주캠퍼스	벤처창업학, 국제통상학, 융합디자인학, 의료기기인허가, 의료산업, 금융

②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6월.12월 중 지정된 기간

③ 복수전공자의 교과이수

- 캠퍼스간 복수전공을 승인받은 학생은 소속캠퍼스 이외의 캠퍼스에서는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목만 이수 가능. 단, 계절제수업에는 제한 없음
- 캠퍼스간 복수전공자가 자신의 소속 캠퍼스 이외의 캠퍼스에서 이수한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제외한 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단, 복수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교양과목 이수는 인정됨

3)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19조, 학칙 40조, 전공에관한시행세칙, 원주캠퍼스전공에관한내규

6.4.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1) 개념

1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가 3학기 또는 그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복수전공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2) 자격 및 정원

① 지원 자격: 우리대학교 졸업예정자

② 정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③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의 제한

- 학사편입학생은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지원할 수 없음
- 건축학(5년제), 글로벌융합공학부, 음악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선발하지 않음

3) 지원시기, 신청방법, 전형방법

① 지원시기: 6월.12월 중 지정된 기간

② 신청방법: 학사지원팀에 지원서 제출

- 복수전공 지원서(소정양식) 1부
- 학과장 및 대학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포함
- 학업계획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지정된 전형료

③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구술시험

4) 복수전공자의 교과이수

① 복수전공학과에서 지정한 전공이수학점을 필수로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이수학점이 51학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5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여야 함

② 학과에서는 필요한 과목을 지정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음

5) 수업연한: 최소 3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6) 재학연한: 제1전공 및 복수전공 기간을 합산하여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3학년 일반편입생의 경우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7) 휴학연한: 재학연한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8) 학위 수여

① 복수전공 이수 완료 시 1전공과 2전공의 학위를 동시 수여

② 학위기는 2개가 수여되나 학위등록번호는 동일함

9)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중도포기자 및 제적생의 학적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이수하다 중도에 자퇴하거나 미등록·미복학·성적불량·학기초과로 제적되는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이전 학번에 대하여 졸업 처리가 되며, 졸업생 신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함(졸업 처리되는 이전 학번으로의 복수전공,부전공 등의 반영도 불가함)

10) 관련규정: 학칙40조, 복수전공시행세칙

6.5. 연계전공

1) 개설취지

① 학과단위의 고립된 학문체계를 넘은 학문과 학문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고를 장려함으로써 다변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양성

② 다양한 학문적 선택권에 대한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 학과 단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융합 학문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

2) 지원자격 및 정원

① 지원자격

- 1996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1전공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3학기 이수 후부터 졸업직전학기까지 신청 가능

-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정원 제한: 없음

3) 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신청 시기: 6·12월 중 지정된 기간

② 신청 방법: 연세포탈시스템을 통해 신청

4) 연계전공 교과이수

① 교과이수 지도: 연계전공 이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과목을 선택

② 최소전공이수학점: 전공기초과목을 포함 36학점 이상 취득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연계전공간, 전공-교양간 중복인정하지 않음

④ 연계전공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요청과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학부대학과목을 제한적으로 연계전공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⑤ 연계전공은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계속 개설여부를 결정하므로, 학생이 이수 도중이라도 폐지될 수 있음에 유의

5) 연계전공 취소

연계전공을 이수하다 중지할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연계전공 취소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

6) 학위수여

① 연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연계전공 책임교수 승인을 받은 '연계전공 졸업예비승인 신청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② 연계전공에서 지정한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연계전공 졸업사정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연계전공이 표기된 연계학사(Bachelor of Interdisciplinary Studies)의 학위를 수여함

7) 관련 규정: 학칙 40조, 연계전공에관한시행세칙

6.6. 부전공

1) 개념: 타 학문 및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주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에서 지정된 필수과목을 포함 21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부전공의 자격을 부여함

2) 자격 및 정원

① 의학계열.약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를 부전공 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의 학과는 해당 대학 소속의 학생들만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음

② 부전공은 정원 제한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에 따라서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3) 신청 시기 및 선발방법

①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졸업신청 시 부전공 자격을 신청함(사전 승인 절차 없음)

② 단, 예체능계열학과의 경우 부전공자격 부여를 위하여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4) 교과 및 학점이수

① 부전공 학점: 부전공 학과에서 지정하는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21학점 이상을 이수. 단,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은 별도로 정함

②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실험실습비 부담

실험실습 또는 실기과목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부담함

6) 관련 규정: 학칙 40조, 학사에관한내규 34조, 부전공시행세칙

Ⅶ. 수강

7.1. 캠퍼스간 교차 수강 제한

1) 교차수강 제한 원칙

① 학생은 소속대학 소재지 캠퍼스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② 정규학기 중에는 신촌-원주캠퍼스 간, 국제-원주캠퍼스 간 교차 수강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2) 교차수강 제한의 예외

① 이중전공 및 연계전공을 허가받은 학생과 계절제 수업에서는 소속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음

② 신촌-국제캠퍼스간 교차수강 제한 예외

- 신촌-국제캠퍼스간은 원칙적으로 교차수강을 제한하지 않음
- 그러나, 국제캠퍼스에서 RC교육을 이수하는 1학년 학생은 신촌캠퍼스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3) 관련 규정: 학사에관한내규 16조②항

7.2. 수강신청 절차

1) 수강신청기간

① 1차 수강신청: 2·8월 중 지정된 기간

② 수강변경: 개강 후 3일간 지정된 기간

2) 수강지도

① 학생은 소속학과 학과장(학부대학생은 담당 학사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음

② 수강지도를 받더라도 수강신청은 학생 자신의 책임임

3)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 전 상담 의무

① 1회, 2회 학사경고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님께 학사지도를 받은 후, 확인을 받은 상담원과 설문지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4) 수강신청 방법

①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함

② 지정된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5) 관련 규정: 학칙 42조, 학사에관한내규 3조

7.3. 학기당 수강학점

1) 정규학기 수강학점: 일반적으로 졸업이수학점이 126학점인 대학은 학기당 18학점, 135학점 이상인 대학은 학기당 19학점까지 수강 가능

대 학	수강학점
상경대학(상경계열), 경영대학(경영계열), 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대학(생활과학계열), 교육과학대학(교육,체육계열), 간호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및 HASS계열 2~4학년), 글로벌인재대학	1～18
문과대학(인문계열), 이과대학(이학계열), 공과대학(공학계열), 생명시스템대학(생명시스템계열), 신과대학(신학계열), 음악대학, 자유전공, 언더우드국제대학(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및 HASS계열 1학년, 언더우드학부(공학) 및 ISE계열 1~4학년)	1～19
의예·치의예과·약학대학,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1～24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1～24

① 단, 채플, 사회봉사, 사회참여, RA리더십, RC자기주도활동, 주니어세미나, 글로벌세미나 과목 등의 수강 학점은 예외로 함

②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라도 재학생은 정규학기에 최소 1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단, 채플 이수요건만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한하여 채플만 수강할 수 있음)

③ 재수강과목도 위 학기당 수강학점 제한 내로 포함됨

2) 학점초과신청

① 능력별 학점취득

- 직전학기 성적이 평량평균 3.75이상이면 3학점 초과수강 가능
- 예외: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능력별 학점초과신청을 할 수 없음
  - -직전학기에 교과목을 철회한 학생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
  -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
  - -글로벌융합공학부,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학생

② 졸업예정자 중 졸업학점 1학점 미달자는 수강신청 전 학사지원팀에 학점초과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1학점을 초과신청할 수 있음

③ 공통기초 및 필수교양과목 이수를 면제받은 1학년 학생은 당해학기 면제과목에 상응

하는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음

3) 수강학점에 따른 장학금·우등생 선발 자격 제한

① 장학금 신청 제한: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만 교내 장학금 신청 가능함

② 우등생 대상 제한

- 직전학기 최소 15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최)우등상 및 우수상 시상 대상에 포함됨
- 단,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 학생은 최소 18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최)우등상 및 우수상 시상 대상에 포함

4) 정규학기 이외 학점 취득

① 계절제수업 수강학점: 7학점 이내

② 예비신입생의 체험학습 이수학점: 6학점 이내

5) 한국어연수의무자에 대한 수강학점 제한: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인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 의무연수 대상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수강학점을 제한함. 단, 외국어로 진행되는 과목은 예외로 함.

① 1급 수료: 학기당 3학점 수강 가능, 한국어학당 연수 선택 가능

② 2급 수료: 학기당 6학점 수강 가능, 한국어학당 연수 선택 가능

③ 3급 수료: 학기당 9학점 수강 가능, 한국어학당 연수 선택 가능

④ 4급 수료: 학기당 12학점 수강 가능, 한국어학당 연수 선택 가능

⑤ 5급 수료: 일반학생과 동일

⑦ 의예.치의예과 학생은 한국어능력별 수강신청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함

⑧ 글로벌인재대학 학생의 한국어능력별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6) 대학원 교과목 수강

① 수강자격: 3.4학년 학생. 단 건축학(5년제) 교육과정 이수자는 4.5학년 학생

② 대학원 과목 수강학점 제한: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학점 내에서 한 학기 6학점 이내, 총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③ 대학원 과목 학점 인정: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중복인정은 안됨.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학생은 대학원 이수학점으로만 인정함

④ 대학원과목의 성적 처리: 대학원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하지 않음(학부 이수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기별 (최)우등상.우수상 및 (최)우등졸업 선발시에는 포함하여 계산함)

7) 관련 규정: 학칙 43조, 학사에관한내규 4조, 7조, 8조

7.4.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수강철회

1)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 중에 수강신청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② 수업담당교수가 출석부에 기록했다고 수강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과 수강변경은 반드시 학생 자신이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처리하여야 함 (YSCEC 청강은 수강신청내역이 아님)

③ 연세포탈시스템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점과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2) 수강철회

① 수강철회 기간: 개강 4주 후 지정된 기간

② 수강철회 시 유의사항

-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에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수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신청 이후 반드시 철회결과를 확인하여야함
- 수강철회 후에도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을 하여야 하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음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음. 단, 2008학년도 이전 철회과목은 성적증명서의 성적란에 "W"(Withdrawn)로 표기되며, 동일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도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음

③ 수강철회에 따른 제한

- 학기별 (최)우등상.우수상 및 (최)우등졸업 대상에서 제외
- 능력별 학점초과신청(직전학기 성적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경우 3학점 초과신청) 대상에서 제외

3) 관련 규정: 학사에관한내규 17조～18조

7.5. 재수강

1) 개념

① 동일과목(교과내용, 학정번호, 교과목명 및 학점이 동일한 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과 성적만 인정하는 제도

② 재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동일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학점에 포함
- 평량평균을 환산할 때는 재수강으로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먼저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계산에서 제외됨

대체와 재수강

- 대체: 폐강 등 부득이한 이유로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 타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체과목을 수강하여도 이전 취득 성적에는 변동이 없음
- 재수강: 이미 수강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였을 때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과 성적만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수강 결과로 이전 취득 평량평균이 재계산됨

2) 동일과목의 정의

① 교과내용, 학정번호, 교과목명 및 학점이 동일한 과목

② 교과내용과 교과목명이 동일하나 학점이 변경된 경우 학점수가 상향된 경우에만 재

수강할 수 있음

③ 교과내용은 동일하나 학정번호 또는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 개설학과 학과장(또는 학부장)이 지정하고 교무처장이 승인한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음

④ 교과과정변경으로 폐강된 과목, 교과목명은 동일하지만 교과내용·학정번호·과목종별이 다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음

3) 재수강 제한

① 2013학번 이후 입학자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총 3회 이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음
- 재수강 시 취득가능한 성적은 최고 A0로 제한함
- F(또는 NP)의 성적을 취득한 필수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나, 평량평균 환산 시에는 이전 F의 성적을 포함함

② 2005~2012학번

- 이전 수강해서 취득한 성적이 C+이하(C+～F학점)인 과목만 재수강 가능
- 재수강 시 취득가능한 성적은 최고 A0로 제한함
- 재수강 대상과목 및 취득성적 제한에 대한 예외: 2005년～2007년 사이에 입학한 학생은 아래 제한된 횟수 이내에서 B-이상(B-～A+)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제한된 기회를 활용한 경우 취득 성적을 제한하지 않음(A+까지 취득할 수 있음)

  -2005학번 4회, 2006학번 3회, 2007학번 2회
- 성적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직전학기 수강과목은 계절제수업에 재수강할 수 없음

③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 재수강할 수 있는 성적이나 횟수, 취득성적을 제한하지 않음

4) 재수강으로 인한 평량평균 변경 시 학사경고의 효력

재수강으로 평량평균이 상향되더라도 해당 학기에 대한 학사경고는 삭제되지 않음(유효함)

5) 관련 규정: 학사에관한내규 3조④항, 24조2, 재수강시행세칙

7.6. 계절제 수업

1) 수강 자격

① 서울 및 원주캠퍼스 소속 모든 재적학생(휴학생 포함)

② 국내교환협정대학 소속 학생으로 소속대학과 우리대학에서 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

2) 수강 범위

① 단일 캠퍼스에서 수강 원칙

- 소속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촌, 국제, 원주캠퍼스 어느 곳에서나 수강할 수 있으나, 세 캠퍼스 중 한 캠퍼스에서만 수강이 가능하며, 동일 기간 내에서 복수의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는 없음
- 다만, 수업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강좌에 대한 교차수강은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이수학점: 학기당 최대 7학점 이내. 단, 채플은 최대 신청 허용 학점을 초과할 수 있음

③ 계절제 수업에 개설하는 사회봉사 과목은 졸업학기에 수강할 수 없음

3) 수강신청 및 변경

① 수강신청 기간: 하계 계절제 수업은 5월 중, 동계 계절제 수업은 11월 중

② 수강변경 기간: 하계 계절제 수업은 5월 중, 동계 계절제 수업은 11월 중

4) 수강 취소

① 수강료 납부

- 등록기간: 하계 계절제 수업은 6월 중, 동계 계절제 수업은 12월 중
- 계절제 수업 수강학생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책정된 별도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
- 국제하계대학 및 국제동계대학 개설과목 수강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책정함
-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절제 수업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② 수강 취소

- 계절제 수업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수강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다만, 계절제 수업 등록 후 수업 2/3선 경과 전에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수강 취소 절차: 취소요청서와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제출
- 수강 취소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 기준
  - 개강 전일까지 취소: 수강료 전액
  - 개강 후 1/3선 경과 전 취소: 수강료의 2/3
  - 개강 후 2/3선 경과 전 취소: 수강료의 1/2
  - 개강 후 2/3선 경과 후: 취소할 수 없음

5) 학점인정

① 성적평가

- 2004학년도 이후 입학 학생: 계절제수업에 이수한 과목도 정규학기 이수과목과 동일하게 졸업학점 및 평량평균 계산에 포함됨
- 2003학년도 이전 입학 학생: 계절제수업에 수강한 과목은 취득학점만 인정되며 평량평균에는 산입되지 않음
- 입학시기에 관계없이 계절제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기별 (최)우등.우수상 시상, 능력별 학점초과신청 및 학사경고 학생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졸업예정자의 계절제수업 수강

- 졸업예정자도 졸업직전 계절제수업에 수강하여 당해년도 졸업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단 '현장실습'(또는 인턴십) 및 '사회봉사' 교과목은 졸업예정자는 수강할 수 없음
- 단, 휴학자의 경우 계절제수업에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정규학기에 등록하여 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신청이 가능(휴학 중에는 졸업할 수 없음)

6) **관련 규정**: 학칙 7조②항, 43조③항, 학사에관한내규 16조②항, 28조,
계절제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7.7.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1) **개념**: 우수한 학부생을 학문 후속세대로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부과정 수학 시 학기당 이수학점에 여유를 부여하여 대학원(석사.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조기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지원자격
- 4학기(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학생
- 지원학기까지 전체 평량평균이 3.3/4.3(3.0/4.0)이상인 학생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지원 제한
- 전공승인을 받지 않은 학부대학 소속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일반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과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3) **신청 시기 및 선발 방법**

① 신청 시기: 5학기 개시 직전 지정된 기간(1월 또는 7월) 1회만 지원 가능

② 선발 방법: 학부성적, 학업 및 연구계획서,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서류심사만으로 평가)

4)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에 대한 특전**

① 학기당 수강학점 확대: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는 학부과정 재학 중(8학기까지) 학기당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② 대학원 입학전형 면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합격한 학생은 추후 별도의 대학원 입학시험 없이 학부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③ 수업연한 단축
-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부과정은 1년, 석사 및 박사과정은 각 1학기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④ 대학원 장학금 지원
- 대학원 입학 후에 성적과 학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매학기 일정수의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
- 장학금 지원기간: 석사과정은 최대 3학기, 통합과정은 최대 5학기동안 장학금 지급

5)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 자격 유지 조건**

① 매학기 평량평균 3.3/4.3(3.0/4.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②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 중 중도 포기할 경우 대학원 교과목 학점을 학부 취득 학점으로 변경할 수 없음

6) **관련 규정**: 학칙 4조③항, 학칙 40조의2, 학칙 43조①항,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 통합)연계과정에관한시행세칙

Ⅷ. 성적평가

8.1. 출석의무

1) **출석의무**: 한 학기 실제수업시간의 1/3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F'의 성적을 부여)

2) **출석인정**

① 출석인정 사유: 가족 사망의 경우

② 출석인정 기간

- 부모: 5일
- 조부모 및 외조부모: 2일
- 형제자매: 1일

3) **여학생의 생리결석**: 생리증후군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담당교수가 판단하여 결정함

① 생리결석은 학기당 최대 5일, 1회 2일 이내에서만 허용. 생리결석을 사용한 학생은 3주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② 생리결석계는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③ 생리결석계는 채플이나 시험에는 인정되지 않음

4) 체육특기자에 대해 별도로 인정되는 공결(훈련, 대회 등)을 포함한 결석일수는 수업일수 1/2 을 넘지 않아야 함

5) 조기취업 및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 온라인교육의 이수 또는 레포트 및 과제물의 제출 등을 수행하여야 함

6) **관련 규정**: 학칙 44조, 학사에관한내규 22조의1③항, 학사에관한내규 22조2

8.2. 성적평가 원칙

1)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① 평가시기: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② 평가방법

-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 논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평가는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함
-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음

2) 성적 및 평점

① 성적별 평점: 학점이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이 13등급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등급	평점	평어	등급	평점	평어
A+	4.3	수	C+	2.3	양
A0	4.0		C0	2.0	
A-	3.7		C-	1.7	
B+	3.3	우	D+	1.3	가
B0	3.0		D0	1.0	
B-	2.7		D-	0.7	
			F	0	낙

② 학점이 없는 과목은 “P” 또는 “NP”로 평가함. 단, 학점이 있는 과목이라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P/NP”로 평가할 수 있음

3) 평량평균의 계산

① 평량평균 환산 대상: 아래 과목을 제외한 수강한 모든 교과목

- P/NP로 평가되는 교과목
- 철회한 교과목
- 대학원 교과목

② 평량평균 환산 방법: 아래와 같이 평량평균을 산출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2009학년도까지의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삭함)

$$\frac{\text{(평량평균환산대상 교과목 학점} \times \text{성적평점) 합계}}{\text{평량평균환산대상 교과목 학점 계}}$$

4) 성적평가 방식

① 우리대학의 성적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P/NP평가로 구분하고 있음

②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교과목은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수강인원	성적	비율
21명 이상	A+, A0, A-	35% 이내
	B+, B0, B-	35% 이내

수강인원	성적	비율
20명 이하	A+, A0, A-	40% 이내
	B+, B0, B-	50% 이내

③ 상대평가인 교과목이더라도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는 절대평가임

④ 동일한 교과목을 2인 이상의 교수가 분반하여 강의하는 경우 여러 분반을 통합하여 성적평가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5) 관련 규정: 학칙 45조, 학사에관한내규 19조~20조, 27조, 29조, 성적평가시행세칙

8.3. 휴학자, 퇴학자, 징계받은자, 시험불응자의 성적

1) 휴학자

① 일반휴학자와 학기 2/3선 전 입대휴학자는 모든 수강 내역을 취소함(성적평가 대상

이 아님)

② 학기 2/3선 후 입대휴학자: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음(담당교수 재량)

2) 자원퇴학생

①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 자원퇴학생: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② 학기말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원퇴학한 학생: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

3) 징계 받은 자의 성적

① 학기말시험 종료 이전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수강신청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봄

② 시험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시험부정행위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해당 교과목 시험 이후의 교과목은 모두 "철회"로 처리함

4) 시험불응자의 성적

① 한 학기 두 차례의 시험(중간,기말) 중 그 한차례를 정당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중간/기말 시험의 80%를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② 시험불응원 제출 시한 및 증빙서류

- 시험불응원 제출 시한: 해당 시험 개시 일주일 전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 시험불응 시 증빙서류
  - -질병으로 인한 경우: 우리대학교 건강센터에서 발행한 진단서
  -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진단서
  - -기타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5) 관련 규정: 학사에관한내규 21조, 25조

8.4. 부정행위

1)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① 학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② 타인의 글, 생각 등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절하는 행위

③ 학업과 관련된 작업에서 자료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④ 이상과 같이 학생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와 이를 시도하는 것까지 포함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성적처리

①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음

②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부정행위를 한 당해 교과목은 "F"로, 그 이후 시험이 치러지는 다른 교과목들은 모두 "철회"로 처리

③ 졸업생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것이 판명되면 졸업을 취소함

3) 관련 규정: 학칙 46조, 학칙 54조, 학사에관한내규 26조

8.5. 성적확인 및 정정

1) 성적확인 제출 및 확인

① 성적제출

- 성적제출 기간: 기말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
- 성적제출 시 결석수가 강의실시시수의 1/3 이상이면 “F”의 성적을 부여

② 성적확인

- 성적확인 기간: 기말시험 종료 1주일 후부터 1주일간
- 성적확인 방법: 연세포탈서비스에서 개인별 성적 확인
- 성적확인 전 “강의정보 공유를 위한 설문” 응답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
  -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수강한 과목 모두에 대한 “강의정보 공유를 위한 설문”에 응답하여야만, 성적확인 기간 중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음
  - -한 과목이라도 “강의정보 공유를 위한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음

2) 성적 정정

① 정정 사유

- 기재착오, 합산착오, 누락 등 담당교수가 성적 제출에 착오를 범한 경우에 한함
- 재시험, 보충과제 제출 등의 사유로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음

② 성적 정정 가능 기간

- 학기말고사 종료 후 4주 이내(졸업예정자는 3주 이내)
- 단, 계절제수업의 경우 수업 종료 후 2주 이내(졸업예정자는 정정할 수 없음)

3) 관련 규정: 학사에관한내규 22조의 1, 23조~24조

8.6. 학업 성취도에 따른 상벌

1) 학사경고 및 제적

① 학사경고(학칙 48조)

- 학기별 평량평균이 1.75(4.30만점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가 주어짐
- **수강학점이 적거나 학기초과자도 학사경고는 동일하게 적용**됨
- 의과대학.치과대학.원주의과대학 학생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② 성적불량 제적

- 학사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함
- 졸업예정자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적을 우선 적용함

졸업예정자의 학사경고

- 초과학기 수학학생이 1학점만 수강하여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하여도 학사경고가 주어짐
- 위 학사경고를 받은 초과학기 수학 학생이 이전에 2회의 학사경고를 받았다면,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다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으며, 학력부실(성적불량)으로 제적함

③ 학사경고 또는 성적불량제적 예외 적용자

-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육 의무연수기간 중에 받은 학사경고는 성적불량제적 적용 학기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한국어 의무연수기간은 4급 미만(3급 수료)에 한정함
  - 학사경고 면제 적용학기는 입학학기부터 최초 3학기 이내에 한정함
- 성적불량 제적 예외: 학칙 제2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는 성적불량제적 적용에서 예외

④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

- 3회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지원 가능
-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후 재입학 한 학생이 다시 1회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함

2) 학업성취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 (최)우등상, 우수상, (최)우등졸업

① 시상기준 (우등생 표창에 관한 내규)

- 최우등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4.0/4.3(3.7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1% 이내
- 우등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3% 이내
- 우수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10% 이내
- 최우등졸업생: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4.0/4.3(3.75/4.0) 이상이며, 대학별 상위 1% 이내
- 우등졸업생: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상위 3% 이내
- 동점자는 모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4.3만점 기준자와 4.0만점 기준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선발

② 시상 제외 대상자

- 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시상 제한
  - -해당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 미만('99년 이전 입학자 및 인문예술대학·정경대학·과학기술대학·보건과학대학 1학년은 18학점 미만)인 학생
  - -학기초과학생
  - -해당 학기에 NP의 평가를 받은 학생, 해당 학기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

- 최우등졸업, 우등졸업 제한
  - 당초입학생이 아닌 일반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 군위탁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 소속변경학생 (단, 약학대학 편입생은 제외)
  - 학기초과학생,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수강철회 학생, 징계를 받은 학생

3) 시상 및 징계에 대한 기록

(최)우등생, 우수생, (최)우등졸업생 및 징계는 학적부에 기록함

4) 관련 규정: 학칙 48조, 학사에관한내규 8조, 20조②항, 30조 우등생표창에관한내규

Ⅸ. 진급 및 졸업

9.1. 진급기준

1) 수료증명에서의 학년별 진급 기준

① 1학년 수료: 졸업학점의 1/4 이상

② 2학년 수료: 졸업학점의 2/4 이상

③ 3학년 수료: 졸업학점의 3/4 이상

2) 이수 학기별 학년 진급

위 학년별 진급 기준은 수료증명 발급에만 적용하며, 수강신청.등록 등 일반적인 학사운영은 학생의 재학 학기수에 따라 학년진급을 적용함

3) 관련 규정: 학칙 47조

9.2. 졸업의 요건

1) 재학 및 졸업신청 의무

① 졸업신청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재학하여야 하며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함 (**휴학자는 졸업할 수 없음**)

②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졸업신청을 하여야 함

2)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여 이수한 학생

①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이수한 학생. 단, 건축학(5년제) 교과과정 이수자는 5년(10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이수한 학생

② 조기졸업대상자는 제외

③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는 7학기 이상 이수

④ 편입학, 학사편입학, 위탁학생의 경우 지정된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⑤ 전공배정자(무전공으로 졸업할 수 없음)

3) 각 대학별 졸업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세부 내역은 대학.학과별 교과과정 부분 참조)

① 총 졸업학점

- 최소 126～140학점 이상의 대학에서 정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 약학대학은 151학점, 건축학(5년제) 교과과정 이수자는 최소 16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② 교양: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교양이수학점 이수
- 채플: 4개 학기 이상 “P”를 받은 학생. 3학년 편입생 및 군위탁생은 2학기 이상 채플을 이수하여야 하며, 약학과 편입생은 4학기 동안 채플을 이수하여야 함
- 공통기초 12학점(14학번까지는 10학점)
- 필수교양 24학점 이상 이수
- 국제캠퍼스 RC교육 이수자는 해당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과목

③ 전공: 각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학생
- 단일전공자: 최소 48학점 이상 학과에서 지정한 학점
- 복수전공/다중전공자: 최소 36학점 이상의 전공별로 지정한 학점
- 복수전공 승인자는 두 전공의 전공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4) **학사학위수료 요건:**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여 이수하고 소속대학, 학과별로 지정된 교양 및 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① 수료신청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재학하여야 함(휴학자는 수료할 수 없음)

② 수료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수료신청을 하여야 함

③ 졸업심사를 통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된 수료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기 학위수여일(2월 말/8월 말) 기준으로 '학사학위수료' 학적을 부여함(재학상태로 환원 불가)

④ 수료의 기간은 재학 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의 범위로 한정하며, 재학연한이 종료되는 마지막 학기에는 자동으로 졸업 처리됨

⑤ 수료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졸업신청을 하면 정해진 학위수여일에 졸업할 수 있음

⑥ 수료자는 최우등,우등 졸업상의 대상에서 제외됨

5) **졸업의 시기**: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함

6) **관련 규정**: 학칙 51조～54조의 2, 학사에관한내규 31조～33조의 1

9.3.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1) **졸업인증 요건의 구분**: 외국어인증, 정보인증의 2개 분야로 구분

2) **적용 대상**: 아래 학생을 제외한 원주캠퍼스 재학생 전체

① 보건과학과(야간)

② 졸업인증위원회에서 졸업인증제 적용을 면제한 자

3) **대학(학과)별 졸업인증 요건**: [별표 1]의 원주캠퍼스 졸업인증 요건 참조

4) **인증절차**

① 신청시기: 3학년부터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외국어인증-국제교육원, 정보인증-사회교육개발원

5) **졸업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졸업인증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

② 수료증을 수여받은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단, 국제교육원 및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할 수 있음

6) 졸업인증위원회

①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위원회"를 두고 졸업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② 위원회 구성: 원주교무처장(위원장),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인문예술대학 영어영문학과장,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국제교육원장, 사회교육개발원장(이상 당연직 위원), 그 외 원주교무처장이 추천하는 약간명의 교수

[별표 1.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요건]

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교양영어 4개 학기를 이수하고(단, 편입생은 면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외국어 졸업인증을 부여한다.

① 교양영어 4개 학기 평량평균을 A- 이상 취득한 자

② 대학 입학 후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전공별로 외국어 졸업인증 요건으로 정한 다음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대학	학부 및 학과	TOEFL PBT (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New TEPS)	DELF (불)	ZDaF (독)	JPT (일)	JLPT (일)	HSK (중)	TOPIK
인문예술대학	모든 학부 및 학과 (영어영문학 제외)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4급 (외국인 중 선택자만 해당)
	영어영문학과	550 (79)	760	level6 140점	IM2	680 (374)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과학기술대학	모든 학부 및 학과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정경대학	경제학과 글로벌행정학과 법학과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국제관계학과 경영학부	550 (79)	760	level6 140점	IM2	680 (374)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보건과학대학	모든 학부 및 학과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대학	학부 및 학과	TOEFL PBT (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New TEPS)	DELF (불)	ZDaF (독)	JPT (일)	JLPT (일)	HSK (중)	TOPIK
글로벌엘리트학부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4급 (외국인 중 선택자만 해당
모든 편입생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대 학	학부 및 학과	JPT (일)	JLPT (일)	HSK (중)	TORFL (러)	TOPIK (한국어)
동아시아국제학부		500	N3	4급 195점 이상	기본	4급 (외국인 중 선택자만 해당)

③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성적 B- 이상을 취득한 자.(07학번 이후~)

*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외국어 교양과목표(표 1)

과목명	학점	비고
교양초급영어회화 / 교양중급영어회화 시사영어(1),(2) / TOEFL / TOEIC 고등영문법 / 교양초급영작문 / 교양중급영작문 일본어(1),(2) / 독일어(1),(2) / 불어(1),(2) / 중국어(1),(2) / 러시아어(1),(2) 초급 토플 리스닝 & 스피킹 / 중급 토플 리스닝 & 스피킹 / 인터뷰 & 프리젠테이션스킬 / 비지니스작문 / 기초 TOEIC SPEAKING	각 3학점	

2.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소속된 전공/학과(부)에 부여된 등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하는 해당 대체인정강좌를 이수한 자에게 정보졸업인증을 부여한다

(1) 자격증

① 소속된 전공/학과(학부)에 부여된 등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등급별 정보인증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	등급	시행기관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OCP-DBA OCP-Developer SCJP, SCJD, SCNA CCNA, CCIE, CCNP MCP 중 2개 MCSE MCDBA MCSD MCAD MCAP 중 2개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Oracle Oracle SUN Cisco Microsoft Microsoft Microsoft Microsoft Microsoft Microsoft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정보처리산업기사 e-TEST Professionals 1급 PCT 850이상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MCP 중 1개 ACA Adobe Dreamweaver CS3 ACA Adobe Flash CS3 ACA Adobe Photoshop CS3 Extended AutoCAD 2급 MOS 2007 Master	2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Microsoft Adobe Adobe Adobe 한국 ATC협회 Microsoft
컴퓨터활용능력 1급 e-TEST Professionals 2급 PCT 650점 이상 IPCT 1급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MOS 2007 중 2개 (단, Word Expert, Excel Expert, Access, Powerpoint, Outlook 중 택2)	3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교육 SW진흥센터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Microsoft

③ 등급별 전공/학과(부)는 다음과 같다.

등급	대학	전공/학과(부)
1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2	과학기술대학	자연과학부, 응용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정경대학	경영학부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임상병리학과, 보건행정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등급	대학	전공/학과(부)
3	인문예술대학	인문과학부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동아시아 국제학부	동아시아 국제학부

④ 디자인예술학부 소속 학생은 다음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디자인예술학부 편입생 포함)

자격증	시행기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ACE	Adobe
Macromedia Flash Developer	Macromedia
Macromedia Dreamweaver Developer	Macromedia
AutoCAD 2급	한국ATC협회
ACA Adobe Dreamweaver CS3	Adobe
ACA Adobe Flash CS3	Adobe
ACA Adobe Photoshop CS3 Extended	Adobe

(2) 대체인정

① 자격증 취득에 의한 정보졸업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하는 대체인정강좌를 수료하면 정보졸업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대체인정강좌는 소속된 전공/학과(부)에 해당되는 등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대체인정강좌를 수료하여야 한다.

③ 등급별 대체인정강좌는 다음과 같다.

등급	대체인정강좌
1	- Visual C++, Visual C#, Visual Basic, C++, C# , Java, 정보처리기사, Oracle, Windows Server 중 1개 강좌 - MCP 과정 중 2개 강좌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1등급 강좌
2	- 웹프로그래밍, 홈페이지제작, 프레젠테이션 실무활용기술, Excel VBA, 엑셀 실무활용기술, SPSS, Photoshop, Illustrator, FLASH 중 1개 강좌 - MCP 과정 중 1개 강좌 - Excel, Powerpoint, Access, Word 중 2개 강좌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2등급 강좌
3	- Excel, Powerpoint, Access, Word 중 1개 강좌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3등급 강좌
디자인 예술학부	-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Indesign, After Effects, AutoCAD, 3D MAX, Rhino 3D, FLASH, MayaComplete, Web Design 중 1개 강좌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디자인학부 대체인정강좌

④ 대체인정강좌 수료를 위해서는 출석일수 7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평가시험에서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Ⅹ. 국내외 타 대학에서의 수강

10.1. 국내대학 교환학생

1) 개념

재학생이 사전 승인을 받아 국내 교환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 성적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대학의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국내교환대학 수학 지원 자격

① 5학기~7학기 재학생. 단, 서강대、이화여대지원자는 서울캠퍼스 3학기~7학기 재학생. 계절제수업에는 휴학생도 지원 가능

② 지원 직전학기까지의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③ 8학기 재학생(조기졸업예정자는 6~7학기 재학생)부터는 교환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음

3) 교류 정원: 정규학기에는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

4) 교환학생 지원 및 수강신청

① 교환학생 지원

- 지원자는 국내대학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학교마다 지원서 마감일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

② 수강신청

- 대학별 수학 안내 참조(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이수학점: 우리대학의 수강학점과 통산하며, 우리대학 이수학점 제한을 동일 적용함. 단, 교환대학에서만 수학할 경우 능력별 학점초과신청은 적용되지 않음. 계절제수업은 최대 7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

③ 수학취소

- 학점교환 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의 수강변경기간 이전에 "국내대학 교환학생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대학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
- 국내교환대학에서의 수학을 취소한 학생은 본교 수강변경기간 종료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함

5) 수학기간

① 한 학기 단위로 파견. 정규 1.2학기 및 계절제수업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② 총 학점 인정 범위(졸업학점의 1/4)내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음

6) 교과목 이수, 학점·성적 인정

① 정규학기에는 우리대학과 국내교환대학의 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으나, 계절

제수업에는 우리대학 또는 교환대학의 한 캠퍼스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②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교환대학에서 다시 이수해서는 안됨

③ 국내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환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의 재수강은 교환대학에서만 가능

④ 교양기초, 대학교양 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 함(교환대학 이수과목으로 대체인정할 수 없음)

⑤ 국내교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원칙적으로 "일반선택"으로만 인정함. 단, 아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전공 또는 교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전공과목으로 인정
  - -교환대학에서 수학하기 전에 소속 전공 학과장께 과목대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함
  - -해당 학과는 대체지정 내용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함
  - -학생의 파견 수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대체과목 인정원"을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제출
- 교직과목(교직이론영역에 한함):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과장 확인을 받은 "대체과목 인정원"을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제출

⑥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우리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동일한 원칙으로 성적에 반영(평량평균 환산에 포함)

7) 등록

① 정규학기: 등록금을 본교(소속대학)에 납부

② 계절제 수업: 국내교환대학(수학대학)의 수강료를 납부(해당대학에 직접 등록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8)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23조, 학칙제 37조의2, 국내대학교환학생에대한시행세칙

10.2. 외국대학에서의 수학

1) 구분: 우리대학에서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수학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구분함

① 교환학생(ESP, Exchange Student Program): 학교(또는 기관) 간 교환협정에 의해 파견되는 학생으로,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에서 수학함(단, 기숙사비, 생활비, 보험비 등은 파견대학 기준으로 학생이 파견대학에 직접 납부)

② 방문학생(VSP, Visiting Student Program): 교환학생 이외 자격으로 교무처장이 승인하여 파견되는 학생, 우리대학과 파견대학의 등록금을 각 대학에 모두 납부하고 이수학기와 학점을 모두 인정받음

③ 유학생(SAP, Study Abroad Program): 교환학생 이외 자격으로 교무처장이 승인하여 파견되는 학생, 우리대학을 휴학하고 파견대학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며, 이수학점만 인정받음

④ 연수생: 교무처장이 승인한 외국대학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으로 SAP와 같이 취득학점만 인정하고 학기는 인정하지 않음

2) 지원 자격

①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재학한 학생(교환학생은 1년 이상 재학한 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제외(최종학기는 본교에 재학하여야 함)

② 직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00/4.00(4.30) 이상인 학생(교환학생 및 1학기 이상 외국대학 수학자에 한함)

③ TOEFL에서 아래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교환학생 및 1학기 이상 외국대학 수학자에 한함)

- 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계열 : PBT 520, CBT 190, iBT 68점 이상
- 인문사회계열: PBT 550, CBT 213, iBT 79점 이상

④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⑤ 의예과 및 치의예과 4학기 학생은 진급심사 종료 전까지 학점인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후 1학기 일반휴학에 동의하는 학생에 한함

3) 지원 절차 및 시기

구분		교환학생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시기	정규학기	국제처에서 정한 기간 이내	정규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계절제 수업	해당없음	계절제수업 개시 2개월 전까지
지원서류		국제처에서 지정한 소정의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2. 입학허가서(연수허가서) 3. 수학계획서 4. 지도교수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지원서류 제출처		국제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4) 수학기간

① 해외 교류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음
※ Quarter제 대학에서는 1년 단위 수학을 원칙으로 함

② 교환학생 및 VSP학생은 해외 교류대학에서 수학 중 휴학할 수 없음

5) 취득학점 및 학기 인정

구분	교환학생 방문학생	유학생	연수생
학기 인정	인정함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구분		교환학생 방문학생	유학생	연수생
인정 학점	2개 학기*	졸업학점의 1/4이내(단,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5 이내)		3학점 이내
	1개 학기*	졸업학점의 1/8이내(단,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10 이내)		
	계절제 수업	7학점 이내		
해외대학 취득성적 환산		해외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평량평균 환산에서 제외함		

* Semester 학기제를 채택하는 대학 기준이며, Quarter제 학기를 채용하는 대학은 위 기준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의 2/3만 인정함

6) 관련 규정: 학칙 37조의2,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XI. 학점인정

11.1. 학점인정의 기본 원칙

1) 학점인정범위

① 재학 중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우리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통산하여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학칙 제37조의2)

② 편입생은 타 기관에서 이수한 교과 중 우리대학에서 필요한 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학칙 49조)

2) 과목인정과 학점인정

① 일반적으로 학점인정과 과목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학점 또는 과목 중 하나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과목(교양기초, 대학교양, (복수.부)전공과목)에 대해서만 과목을 인정하며, 졸업에 불필요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교환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함

② 학점만 인정하는 경우

- 교환학생 또는 편입생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일반적으로 일반선택 영역으로 학점만 인정

③ 과목만 인정: 주로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또는 학사편입생의 경우 적용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또는 학사편입생이 제1전공(전적대학) 재학 중 복수전공.편입학과의 필수과목을 수강하여, 해당 과목 이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이수학점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목인정을 거쳐 과목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과목인정만 받은 학생은 복수전공.학사편입 후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은 하향되지 않음

  -예) 경영학과로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 제1전공 이수 시 회

계원리(1),(2)를 수강하여 과목을 인정받은 경우, 이 학생은 복수전공 중 회계원리(1),(2)를 이수할 의무는 면제받으나,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졸업이수학점 51학점 이수의무는 변동이 없음

3) 학점·과목인정 기준

① 타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이 우리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과 교과내용이 거의 유사할 경우에 책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체 인정함

② 타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에 개설된 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만 대체 인정함. 단, 우리대학에서 개설된 과목보다 학점이 낮은 경우, 내용이 연계된 두 과목의 학점을 합하여 우리대학에서 개설된 과목과 같거나 더 높을 경우에는 대체인정할 수 있음

※ 타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 개설과목의 학점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서 이수한 한 과목을 우리대학에서 두 과목 이상으로 대체인정할 수 없음

③ 타 기관에서 취득한 성적이 "D+"이하(D+ 포함, 우리대학 기준) 또는 NonPass인 과목은 학점.과목 모두 인정하지 않음. 단 2012학년도부터 파견된 교환학생의 경우 성적이 "F"인 경우에만 학점.과목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Pass인 경우 학점단위가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학점.과목 모두 인정함

4) 취득 성적 및 학점의 표기

① 해외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편입 전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인정 시, 교과목과 학점을 인정하더라도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대학의 평량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cf. 국내대학 교환학생의 경우 이수과목과 성적을 모두 인정하며,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함

② 성적증명서에는

- 교환학생의 경우: 파견학기, 인정학점, 파견기간, 파견대학명만 기재: 예) "2019-1학기 UCLA 교환학생 15학점 인정"
- 편입학생의 경우: 인정학기와 인정학점만 기재: 예) "3학년 편입 63학점 인정"

11.2. 학점인정 절차

1) 인정교과 선택

교환대학/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우리대학의 졸업학점이수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받을 과목 선정

2) 학점인정원 작성 및 제출

① 교환학생의 경우

- 국제처 국제팀 또는 파견을 주관한 대학(학과) 사무실에서 성적증명서 도착여부 확인 및 인정학점 상한 확인
- '전공 및 학부대학과목 인정원'에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작성
- 교과목인정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음

-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제출: 인정원 및 성적증명서 원본

② 편입학생의 경우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 학적 → 인정학점입력 메뉴)에서 인정받고자하는 과목을 입력
- '전공 및 학부대학과목 인정원' 출력, 전적대학의 성적표를 첨부
- 교과목 인정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음
-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제출

3) **교과목 인정 승인 절차**: 아래와 같이 과목별 담당교수의 승인 후 학부대학장 또는 해당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받음

① 전공과목: 담당교수 ⇒ 학과장. 단, 우리대학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과목은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음

② 복수전공(이중전공) 및 연계전공과목: 담당 교수 ⇒ 복수전공(이중전공) 학과장 및 연계전공 책임교수

③ 부전공과목: 담당교수

④ 교양기초·대학교양과목: 담당교수(단, 영어처럼 분반이 많은 교과목의 경우에는 교양과목 주임교수) ⇒ 학부대학장(학부대학 행정팀 문의)

4) **학점인정원 제출 기한**

① 입학.파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② 지정된 기간 내에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나 장학금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5) **학점인정원 제출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

① 학점인정원 제출 전 본인보관용 인정원 사본을 만들어 보관할 것

② 인정받을 과목이 없어도 학점인정원에 "인정과목 없음"으로 기록하고 학과장 확인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최종 승인여부 확인**: 서류 제출일로부터 약 1주일 후 연세포탈서비스 성적메뉴에서 확인

11.3. 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학점인정 범위>

편입구분	일반편입		학사편입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인정학점	32~35학점 인정 졸업학점의 1/4 이내	63~70학점 인정 졸업학점의 1/2 이내	학점인정 없음
과목인정	필수졸업요건 과목만 인정		과목인정 가능 단, 과목인정을 받더라도 우리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총 학점

편입구분		일반편입		학사편입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58학점 이상)은 변동 없음
채플	우리대학 의무이수횟수	3학년 편입생: 2회(2P) 2학년 편입생: 3회(3P)		2회(2P)
	과목인정	전적대학에서 채플을 이수한 경우 교목실의 확인을 통해 1회(1P)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전공인정범위: 교양·전공 각 영역별 학점인정범위는 학과(전공)별로 달리 적용

11.4. 교환·유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1) 학점인정 범위

① 수학 기간별 인정학점(수학 기간은 최대 1년)

이수학기	교환학생.유학생	연수생
2개 학기	졸업학점의 1/4이내(단,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5 이내)	3학점 이내
1개 학기	졸업학점의 1/8이내(단,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10 이내)	
계절제수업	7학점 이내	

※ Semester학기제를 채택하는 대학 기준이며, Quarter제 학기를 채용하는 대학은 위 기준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의 2/3만 인정함

② 계절제수업 수학학점인정

- 해외대학 파견 전 계절제수업 수학에 대하여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기간 중 파견된 동일대학 또는 타 대학에서 계절제수업을 자비로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방문/SAP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정학점 이내에서만 인정
- 국제처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계절제수업의 경우는 학사지원팀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제처 신청 절차로 갈음함
- 학점인정 예시

사 례	최대 인정학점
St. Cloud State University 교환학생 1학기 + 동일대학 계절제수업 이수, 계절제수업 학점인정에 대해 학사지원팀에 유학생 신청서류 제출하는 경우	졸업학점의 1/8 + 7학점

사 례	최대 인정학점
St. Cloud State University 교환학생 1학기 + 동일대학 계절제수업 이수, 계절제수업 학점인정에 대해 학사지원팀에 유학생 신청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졸업학점의 1/8, 계절제수업 이수학점은 교환학생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St. Cloud State University 교환학생 1학기 + UCLA Summer Session (국제처 신청), 계절제수업 학점인정에 대해 학사지원팀에 유학생 신청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졸업학점의 1/8 + 7학점
St. Cloud State University 교환학생 1학기 + 타 대학 계절제수업 이수, 계절제수업 학점인정에 대해 학사지원팀에 유학생 신청서류 제출하는 경우	졸업학점의 1/8 + 7학점
St. Cloud State University 교환학생 1학기 + 타 대학 계절제수업 이수, 계절제수업 학점인정에 대해 학사지원팀에 유학생 신청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졸업학점의 1/8, 계절제수업 이수학점은 인정 불가

11.5. 입학 전 선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1) 체험학습 및 대학과목선이수과정(UP) 수강 학생

① 체험학습 및 대학과목선이수과정(UP)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총 6학점 이내

② 체험학습 및 UP에서 취득한 성적에 대한 인정

- 체험학습 및 UP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함(AP는 평량평균환산에 포함하지 않음)
- 체험학습 및 UP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전공 승인 시 기준이 되는 과목인 경우, 전공 승인 시 해당 성적을 반영함
- 체험학습 및 UP에서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않으며, 학점초과신청 대상에서 제외
- 체험학습 및 UP 이수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2) 언더우드국제대학 입학자 이외의 학생에 대한 AP학점 인정

학생의 소속 대학·학과	AP 강좌		점수	인정 교과목	인정학점
경제학부	Economics	Economics: Micro		ECO1001 경제학입문	3
		Economics: Macro			
응용통계학과	Statistics		4	STA1001 통계학입문	학점은 불인정

학생의 소속 대학·학과	AP 강좌	점수	인정 교과목	인정학점
공과대학	Biology	4	BIO1011 공학생물학및실험(1)	3
	Calculus AB	4	MAT1011 공학수학(1)	3
	Calculus BC	4	MAT1012 공학수학(2)	3
	Chemistry	4	CHE1011 공학화학및실험(1)	3
	Computer Science A	4	ENG1108 공학정보처리	3
			CSI2100 컴퓨터프로그래밍	
	Physics B	4	PHY1011 공학물리학및실험(1)	3
	Physics C	4	PHY1012 공학물리학및실험(2)	3

3) 언더우드국제대학 입학자의 AP학점 인정

① 인정학점 상한: 최대 9학점 이내 단, 전공은 6학점 이내에 한함

② 언더우드국제대학생은 AP, IB학점 인정과 체험학습 수강 등 입학 전 수학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통산하여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AP학점 및 과목 인정 기준

AP Exam		Score	UIC Course Exemption	Awarding Credits	
Art History		5		-	
Biology		5	BIO1001 General Biology and Laboratory I	3	
Calculus	Calculus AB (or AB subscore)	5		-	3
	Calculus BC	5	MAT1001 Calculus and Vector Analysis I	3	
Chemistry		5	CHE1001 General Chemistry and Laboratory I	3	
Computer Science	A	5		-	
	AB	5		-	
Economics	Economics: Micro	5	ECO1103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3	
	Economics: Macro	5	ECO1104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3	
English	Literature	5	CLC0001 AP: English Literature	3	3
	Language	-		-	
Environmental Science		-		-	
French	Literature	5	CLC0002 AP: French Literature	3	3 Max.
	Language	5	UIC0002 AP: French Language	3	
German Language		5	UIC0003 AP: German Language	3	

AP Exam		Score	UIC Course Exemption	Awarding Credits	
Government & Politics	Comparative	-		-	
	United States	4	POL1002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3	
History	European	5	UIC0004 AP: European History	3	
	American	5	UIC0005 AP: American History	3	
	World	5	UIC0006 AP: World History	3	
Human Geography		-		-	
Latin	Literature	5	CLC0003 AP: Latin Literature	3	3 Max.
	Vergil	5	UIC0007 AP: Latin Vergil	3	
Music Theory		-		-	
Physics	B	4	PHY1001 General Physics and Laboratory I	3	3 Max.
	C(Mechanics)	5	For those who completed both courses: General Physics and Laboratory I	3	
	C(Electricity & Magnetism)	5			
Psychology		5	UIC0009 AP: Psychology	3	
Spanish	Literature	5	CLC0004 AP: Spanish Literature	3	3 Max.
	Language	5	UIC0008 AP: Spanish Language	3	
Statistics		4	STA1001 Introduction to Statistics	3	

※ AP에 대한 학점인정 규정은 연단위로 변경될 수 있음

※ 중등학교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은 AP교과에 대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4) 언더우드국제대학 입학자의 IB Diploma 학점 인정

① 인정학점 상한: 최대 9학점 이내 단, 전공은 6학점 이내에 한함

② 언더우드국제대학생은 AP, IB학점 인정과 체험학습 수강 등 입학 전 수학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통산하여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IBDL Subject 학점 및 과목 인정 기준

IBDL Subject		Level	Score	UIC Course Exemption	Awarding Credits
Group	Subject				
Group1: Language A1	Language A: Literature	HL	6 or Above	CLC0001 AP: English Literature	3
Group2: Second Language	Language B-Chinese	HL		IB: Chinese Language	3
	Language B-Japanese	HL		IB: Japanese Language	3

IBDL Subject		Level	Score	UIC Course Exemption	Awarding Credits
Group	Subject				
Group2: Second Language	Language B-Spanish	HL	6 or Above	UIC0008 AP: Spanish Language	3
	Latin or Classical Greek	HL		CLC0003 AP: Latin Literature	3
	Language B-French	HL		UIC0002 AP: French Language	3
Group3: Individuals & Society	Economics	HL		ECO1103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3
	Global Politics	HL		POL1002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3
	History	HL		UIC0006 AP: World History	3
	Philosophy	HL		IB: Philosophy	3
	Psychology	HL		UIC0009 AP: Psychology	3
Group4: Sciences	Biology	HL		BIO1001 General Biology and Laboratory I	3
	Chemistry	HL		CHE1001 General Chemistry and Laboratory I	3
	Physics	HL		PHY1001 General Physics and Laboratory I	3
Group5: Mathematics & Computer Sciences	Mathematics	HL		MAT1001 Calculus and Vector Analysis I	3
Group6: The Arts	Visual Arts	HL		IB: The Arts	3
	Film	HL			3
	Music	HL			3

※ IB에 대한 학점인정 규정은 연단위로 변경될 수 있음

5) 한국어학당 이수자의 학점 인정

① 대상: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면서 우리학교 입학 전 또는 1,2학년 재학 중에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소정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자

② 인정 범위: 6학점 이내

③ 인정기준: 과정이수요건 및 과목이수요건을 모두 충족

- 과정이수 요건: 한국어학당 정규과정 5급 또는 6급 이수자
- 과목이수 요건: 과정이수 당해 학기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구조의 이해” 또는 “한국문학의 이해”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이수자

④ 기타: 글로벌인재대학의 경우 글로벌인재대학장이 총장 및 교무처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6) 관련 규정: 학사에관한내규 16조, 입학전취득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Ⅻ. 기타

12.1. 등록

1) 등록금 납부 의무

① 등록기간

- 본 등록기간: 매 학기 개시 전 8일간 지정된 기간
- 추가등록기간: 수강변경기간 후 5일간 수납
- 신입생: 입학 전 60일 이내에 지정된 기간

② 등록고지

- 등록고지는 연세포탈시스템 공지 및 이메일 고지를 원칙으로 함
- 서면고지를 원하는 학생은 별도 신청하여야 함

③ 등록금 납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함
- 학기 개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휴학(일반휴학, 의병휴학 및 입대휴학 모두 포함)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

2) 입학금

① 입학금 납부 대상: 입학(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학생은 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

② 입학금의 감면: 아래 대상자에게는 입학금을 감면함

- 학부과정 입학자 중 학칙 제51조(졸업의 요건)에 의거 졸업한 자가 재입학할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
-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및 제3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시행세칙에 따라 재입학할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

3) 등록금 분납

① 분납신청

- 정해진 기간에 연세포탈시스템에서 분납신청서를 작성, 재무·회계팀의 승인을 얻음
- 계절제수업과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는 분납신청대상에서 제외

② 차수별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분납을 신청한 학생은 각 차수별로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 각 차수별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제적함

4) 학기초과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의 등록금 납부

① 학기초과자의 기준: 수업연한(8개학기. 단, 공과대학 건축학교육과정은 10개학기, 2학년 편입생은 6개학기,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은 3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기초과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학점별 등록금을 납부함. 단, 채플 학점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

- 1학점 ~ 3학점: 1/6 납부
- 4학점 ~ 6학점: 1/3 납부
- 7학점 ~ 9학점: 1/2 납부
- 10학점 이상: 전액 납부
- 1학점 미만(Pass/Non-Pass 과목 수강자): 별도 내규에 따름

③ 등록방법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과목 확정 후 재무회계팀에서 별도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등록금을 납부

5) 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미등록자 휴학기간 포함):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 ~ 30일: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반환 없음

② 반환 예외: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③ 등록금 분납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의 휴학.자퇴 시 등록금 정산

- 분납이나 분납연기를 신청하고 등록금 일부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거나 자원퇴학하는 경우, 기간별 금액 공제 후 납부금액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환하여야 함

6) 관련 규정: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83호), 학칙 66조~70조의2, 학사에관한내규 2조, 등록제도운영에관한시행세칙

12.2.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1)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방법: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아래 담당부서로 제출

신촌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팀, 원주캠퍼스: 교무부

2) 기재사항 정정 증빙서류

① 개명 또는 주민번호 변경: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 단, 변경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국적변경: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기타 국적 취득 또는 포기 사실증명서(국적변

경자는 정정원에 국제처 확인을 받아야 함)

3) **관련 규정**: 학사에관한내규 42조

12.3. 특별학생

1) **정의**: 외국대학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외국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우리대학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학하는 학생
2) **입학지원**: 우리대학에서 수학을 희망하는 외국대학 학생은 국제처에 입학원서, 성적증명서 및 추천서를 제출
3) **특별학생의 수업연한**: 특별학생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함
4) **특별학생에 대한 규정**: 특별학생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우리대학교 학칙을 적용
5) **관련 규정**: 학칙 55조~57조

행사와 활동

교내 주요 행사 / 158
학생생활 안내 / 160
국제처 / 165
취업진로지원 / 173
국가고시지원 / 175
윤리인권위원회 / 176
학술정보원 / 210
정보통신서비스 안내 / 223
대학직장예비군연대 / 227
학생군사교육단 / 229
체육활동 / 231
신앙활동 / 235
보건기관 / 241
봉사활동 / 245
학생건강공제회 / 248
총동문회 / 253

1. 교내 주요 행사

가. 일반적 행사

1) 창립기념일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은 우리 대학교 창립기념일이다. 1957년에 43년의 역사를 가진 연희대학교와 53년의 전통을 지닌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되어 연세대학교로 발족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 기념식 : 창립기념식은 재학생, 교직원 및 동문과 학부모 그리고 내외 귀빈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대한 기념행사를 통하여 연세의 발전을 찬양하고 이 학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약하는 날이다. 특히, 이 행사에는 연세를 위하여 헌신한 공로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업을 추모하는 특별한 기념행사를 주제로 삼게 되어 큰 뜻을 가지게 된다.

• 학부재상봉 행사 : 학부 졸업 25주년·50주년을 기념하여 195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Homecoming 행사이다. 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본 행사를 통해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학창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며 동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학교와 재상봉 동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사로 매년 2,0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는 교내 최대 규모의 동문행사이다.

2) 연세사회참여활동

우리대학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3C 구성요소 중 하나인 Christianity(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섬김과 봉사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또한 교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조직화, 체계화하여 국내외 섬김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다.

3) 신입생 지도 · 교육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지도행사는 일련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대학의 교육철학과 정신을 이해하고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지적인 성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실제적 자기평가, 자아 존중감 증대, 명확한 가치 확립, 리더십 개발, 건강한 행동, 의미 있는 상호관계, 성인으로서의 독립심, 사회적 책임감, 공동체 정신, 생산적인 라이프 스타일, 다양성의 이해 등을 목표로 운영한다.

신입생 지도·교육 프로그램명	내 용
신입생 진단평가	대학영어 과목의 수준별 학습을 위한 평가
입학 전 학사지도	대학 첫 학기의 수강신청과 학업계획지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 동아리의 학생자치 프로그램 및 학교자원 소개
RC 오리엔테이션	신입생을 위하여 Residential College의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함, 신입생들이 잘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설명하고, 담당RA를 만나 학교생활과 기숙사의 공동체 생활요령을 배움
신입생 설문조사	신입생의 대학에 대한 인식과 진로 계획에 대한 설문 조사

정기적으로 신입생들의 지도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시대 상황과 학생들의 의식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입생 지도의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

4) 학위수여식

매년 2월 학위수여식은 각 대학(원)의 특성에 맞추어 각각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거행되며 8월에는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수여식이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식장에는 내빈, 학부모, 동문,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의식에 따라 총장 주재로 식이 거행되는데, 이 식에서는 형설의 공을 쌓고 연세인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그들의 노력을 찬양하며 대한민국 교육법과 본 대학교 학칙에 의거 그 학위에 부수되고 모든 영광과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진로를 축복한다. 특히 졸업생을 위한 총장의 훈사는 졸업생들에게 깊은 교훈과 감명을 주게 된다.

5) 음악대학 정기공연

음악대학이 주관하는 중요한 정기공연 행사는 매학기 개최하는 관현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연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교향악연주회>와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의 협연으로 이루어지는 <협주곡의 밤>, 관악·타악기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심포니 윈드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있다.

성악과가 주관하는 종합예술의 대표적 장르인 오페라 공연은 오디션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국내의 대표적인 오페라 전용 극장에서 개최한다. 합창 공연으로는 100명 이상 되는 대 합창으로 “심포닉 콰이어”가 있으며 우리 대학의 자랑인 “콘서트 콰이어”가 국내와 국외 연주를 기획 공연한다. 또한 졸업 연주회는 졸업 예정자들이 출연하여 4년간 연마한 실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공개 연주로 졸업예정자들에게는 필수로 거쳐야 되는 연주회이다.

음악대학은 이러한 정기적인 연주회를 통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연주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대학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 연·고대 친선경기

한국의 체육계에 있어서 가장 오랜 전통과 의의를 갖고 개최되는 이 친선경기는 양

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 및 연고자가 함께 모여 평소에 기른 정신, 학풍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두 대학교가 친선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큰 체육행사이다.

이 경기는 가을의 체육 시즌을 택하며, 출전 종목은 축구, 농구, 야구, 럭비 및 아이스하키 5개 종목이며 참가 선수의 자격은 (1) 등록된 재학생으로 (2)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 교외 운동단체의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이며 (4) 제대 복교자는 복교 후 6개월 이상 재학한자로 규정한다.

나. 정기적인 종교행사

1) 졸업예배

형설의 공을 쌓고 연세대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로써,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이 참석하여 졸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졸업식 직전 일요일에 루스채플에서 예배를 드린다.

2) 고난주간/부활절예배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모든 교직원이 함께 나누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를 드린다.

3) 창립기념예배

우리대학교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선각자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창립기념일이 있는 달에는 창립기념예배를 드린다.

4) 연세대 감사절예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보내며 추수감사예배를 드린다.

5) 성탄절예배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로써 음악대학의 콘서트 콰이어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준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2. 학생생활 안내

가. 학생증 발급에 관한 안내

학생증(ID카드)은 본 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기능 외에 도서대출, 교내시설 출입, 은행현금카드, 전자출결, 전자화폐,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학생증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준수사항

가) 입학수속(편입생 포함)을 마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고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나)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 학생증은 졸업 때까지 사용하게 되며,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시 학생증은 효력이 정지된다.

라) 학생증은 위 기능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다.

마)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우리은행 고객상담실(전화:1500-9955)로 분실신고 후 학생증 금융기능정지를 요청(금융기능을 학생증에 연동한 경우에 한함)하고, 연세포탈의 학생증 발급 메뉴에서도 바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 학생증이 분실 혹은 훼손되었을 때에는 연세포탈에서 학생증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수령지로 지정한 캠퍼스 내 우리은행에서 받는다.

2) 학생증 발급절차

가) 신입생 및 편입생

(1) 신청 및 접수 :

(가) 1단계: 학생증 신규발급을 원하는 학생은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생증 발급 → “학생증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한다.

(나) 2단계: 우리은행 위비뱅크 앱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 대학생ID카드 발급 메뉴를 통해 학생증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 기타: 신청기간 이후에는 연세포탈의 ‘학생증 발급’ 메뉴에서 신청한다.

(라) 상세 일정은 매학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입생 학생증 발급 안내를 참고한다.

(2) 학생증 교부 : 학생증은 우리은행 연세금융센터/국제캠퍼스 출장소에서 교부하며, 수령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발급

(1) 학생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연세포탈의 학생증 발급 메뉴에서 분실/훼손 신고를 한 후 재발급 신청한다. 우리은행계좌연동이 된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우리은행 고객상담실(전화:1500-9955)에도 분실 신고해야 한다.

(2)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 시스템 → 학생증 발급 → 분실/훼손 관리 → 분실/훼손 신고 → 등록 → 학생증/신분증 관리 → 학생증 신청

(3) 재발급 된 학생증은 온라인 접수 후 7일 내외로 수령지로 지정한 캠퍼스 내 우리은행에서 받는다.

나. 증명서 발급

1) 학부 · 대학원 증명서

학교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사 관련 증명서를 발행한다.

가) 발행명의 및 장소

학사관련 증명서는 교무처장 명의로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행한다.

(예외: 의과•치과•간호대학 제 증명서 중 전산처리 안된 서류는 해당 대학 사무팀)

나) 종류

졸업, 성적, 학적부, 재학, 휴학, 재적, 수료, 졸업예정, 학위수여(예정), 법학과목 학점 취득, 장학(비)수혜증명 등

다) 수수료

(1) 무료: 연세포탈의 '인터넷 증명서' 메뉴에서 출력 시(2017. 3. 1. 시행)

(2) 유료: 학교 무인증명발급기 / 종합서비스센터 창구 / 주민센터 팩스민원 (어디서나 민원) / 우체국 민원우편

라) 발급 절차

(1) 신청하면 전산으로 발행번호를 부여하여 발급 교부한다.

(2) 국문증명서에는 교무처장 직인, 영문증명서에는 교무처장 영문서명이 날인된다. 봉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격봉투에 입봉한 후 국문증명서는 봉투 뒷면 상·하단 이음매 중앙에 직인을 날인한다. 영문증명서는 봉투 뒷면 상단 이음매 중앙에 영문서명 날인 후 압인한다. 출력한 증명서에는 직인/서명을 이중으로 날인하지 아니한다.

마) 발급방식

(1) 교내 발급

종합서비스센터 창구(신분증 필수, 위임하는 경우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수) 및 무인증명발급기(이용자 계정: 연세포탈 서비스 계정과 동일) 발급

(2) 기타 발급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의 '인터넷 증명서' 메뉴에서 즉시 발급 혹은 우편증명발급으로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민원서비스 '어디서나 민원'(구 팩스민원 - 전국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용가능)에서 신청하여 가까운/지정한 주민센터에서 팩스 증명서 수령
- 우체국 민원우편

2) 교직원 증명서

다음의 교직원 증명서를 총장(영문증명은 교무처장/총무처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

의로 종합서비스센터와 연세포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발급한다.

가) 발급대상 및 증명

구분 \ 종류		재직 증명	경력 증명	강의 경력	퇴직 증명	원천 징수 영수증**	갑근세 납입 영수증**
신촌 국제 원주 캠퍼스	교원*	○	○	○	○	○	○
	직원	○	○		○	○	○
산학 협력단	연구교수	○	○		○		
	연구원	○	○		○		
	직원	○	○		○		

* 교원: 전임, 비전임, 시간강사

** 산학협력단의 원천징수/갑근세납입영수증은 산학협력단에서 발급

※ 의료원 교직원의 제 증명서는 의료원 인사팀(☎ 2228-1288)에서 발급

※ 원주 산학협력단 교직원의 제 증명서는 원주산학협력단 인사총무팀 (☎ 033-760-5262)에서 발급

나) 발급방법

(1) 인터넷

- 재직/경력/강의경력/퇴직증명서: 연세포탈서비스(교직원 계정 로그인) → IT학사서비스 → 인터넷 증명서 → 인터넷즉시발급 클릭
- 원천징수영수증/갑근세납입영수증: 연세포탈서비스(교직원 계정 로그인) → 행정정보시스템 → ERP 행정업무 → 인사/급여 → 급여관리

(2) 창구: 신분증 필수, 위임 시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수

창구 위치: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B-134호[이무헌 홀])

(월~금, 09:00~17:20, TEL. 02-2123-3200~5)

다. 장학금 및 학자금 안내

1) 장학금 안내

2017년 신촌캠퍼스 학부(의치간 포함)의 장학금 지급액은 약 589억원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은 약 41%이다.

2) 장학금의 종류

• 연세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자 중 일정 소득분위 이하인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40이상인 자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대학 배정 장학금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이상인 재학생 중에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와 성적이 우수한 자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장학금 신청은 기말고사 이후에 연세포탈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연세포탈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다.
- 연세 특별 장학금
  매 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표된 사항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보훈 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성적에 관계없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북한이탈 주민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학생에게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반액은 국가보훈처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국가고시 장학금
  재적 중 5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합격자와 공인회계사, 변리사 최종 합격자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봉사 장학금
  총학생회 및 학생 자치 기구에서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학교 발전(학생 활동)에 기여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평화 장학금
  대학언론사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 신문방송편집인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총학생회생협 장학금
  생활 협동조합에서 매 학기 출자하는 장학금으로서 생협 출자를 한 학생으로 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생협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우수 선수 장학금
  우수한 체육선수 중 체육위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체육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연세 복지 장학금
  교직원 직계 자녀로 학업성적이 2.00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근로 장학금
  매 학기 장학팀에서 선발되고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한마음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한마음장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차상위 계층까지 수혜요건을 유지하면 매학기 등록금 전액(첫 학기 입학금 포함)과 교재비를 지급하는 장학금

이다.

- 기금 장학금
  본교 동문, 개인 독지가의 기부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기탁자의 뜻에 따라 해당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교외 장학금
  본 대학교의 추천이나, 교외 장학 재단에서 지정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3) 학자금 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구의욕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온라인(www.kosaf.go.kr)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대출승인 후 등록금이 학교로 이체 된다.

3. 국제처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가. 설립 배경 및 경과

국제처의 모체인 국제교육교류원은 1960년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진출하면서 우리 문화에 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위해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발족된 기관이다. 이후 국내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및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제화 경쟁이 가속화되어 2007년 2월 국제교육교류원을 전격 개편하여 학교 본부 기관으로서 새롭게 국제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2012년 9월에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 비학위과정 교육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영어강의 확대, 교육과정 개선 장단기 계획 수립 등 수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환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국제교육센터를 신설하였다. 2018년 3월, 외국인 학생 입학 확대를 도모하고 외국인 교원,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팀, 외국인지원팀, 국제입학팀으로 재편되었다.

국제교류팀은 국제화 전략사업 기획 및 추진, 국제 컨소시엄 가입 및 운영, 학술협정 체결 및 관리, 국제 의전 및 행사, 국제프로그램 홍보, 정규학기 Outbound/ Inbound 학생 파견, Inbound 교환·방문학생 교육, 국제하계대학, 국제동계대학, 기타 특별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지원팀은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서비스, 외국인 유학생 총괄 관리 및 장학금 업무, 글로벌라운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입학팀은 학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연혁

1966년 9월 1일: International Division 첫 발족
1982년 11월 12일: 국제학부 강좌를 일반학생들에게도 개방 결정
1983년 9월 9일: 국제교육부(Divis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로 개칭
1985년 6월 21일: 국제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Session) 개설
1985년 11일 1일: 부속교육기관에 편입
2000년 10월 26일: 국제교육교류부(Divis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 and Exchange)로 개칭
2002년 11월 22일: 글로벌라운지 개소
2002년 7월 8일: 자비해외유학프로그램(Study Abroad Program) 개설
2004년 9월 1일: 국제교육교류원(영문명칭은 동일)으로 승격
2007년 2월 1일: 국제처(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로 승격되어 국제교류과와 국제지원과를 둠
2007년 3월 22일: 국제화전략기획위원회 발족
2007년 9월 19일: 글로벌라운지 리모델링 완공
2008년 7월 9일-12일: 제4차 QS APPLE (Asia-Pacific Professional Leaders in Education) 컨퍼런스 개최
2009년 6월 15일: 국제처 팀제 운영(국제교류팀, 국제지원팀)
2012년 9월 1일: 국제교육센터 신설
2013년 9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팀, 국제교육센터)
2013년 12월 26일: 국제동계대학(Winter Abroad at Yonsei) 개설
2014년 3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전략TF팀, 국제팀. 국제교육센터)
2016년 3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팀, 국제교육센터)
2017년 4월 8일: 글로벌라운지 백양누리 내로 이전
2018년 3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교류팀, 외국인지원팀, 국제입학팀)

다. 주요업무

1) 국제교류팀

가) 국제화 전략사업 기획 및 추진

(1) 국제 컨소시엄 가입 및 운영

· 최근 고등교육 국제교류의 동향이 양자간 학생교환에서 연구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네트워크 협력으로 옮아감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는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EARU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와 같은 국제대학협회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일본 게이오대학, 중국 홍콩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3-캠퍼스 비교동아시아학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2) 전략적 파트너십

· 지역별 우수 대학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네트워크 다차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월 현재, 스위스 제네바대학, 호주 시드니대학, 미국 에모리대학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나) 국제 의전 및 행사

외국 정부 및 교육관계자와 외국 대학 방문객에 대한 의전을 담당한다. 또한 외국 주요 인사의 교내 특강 등 국제행사를 지원한다.

다) 국제처 프로그램 홍보

매년 교환대학 및 주요 해외대학을 대상으로 국제처 영문 브로셔를 제작하여 국제 의전 및 행사시 본교 국제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홍보 책자와 함께 배부하고 있다. 또한, 국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프로그램 안내 및 학교소식 업데이트 등 해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 학술교류 및 학생 교환 협정 관리

(1) 개요: 해외기관과의 1:1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

(2) 협정 체결 현황: 2018년 1월 현재 70개국 600여개 해외대학/기관

마) 국제회의 및 해외유학 박람회 참가

APAIE (Asia 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AFSA (National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visers;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EAIE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등의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국제 교육 담당자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우리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주요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관 해외유학 박람회의 교내 관련 부서의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바) 교내 해외교류 사무소 관리

교내 해외교류 사무소인 UCEAP, CIEE, 일본 게이오대학의 '연세도쿄센터', 스위스 제네바대학의 '제네바연세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사) Incoming 교환학생 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Program)

(1) 개요

·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정규학기 과정에 참여하여 학점 취득

· 이 경우 등록금은 소속 학교에 납부

· 대학간 연락, 입학허가서 및 비자서류 발급, 입국 이후의 학사업무 등 담당

(2) 규모

· 2018학년도 기준 1,500명

(3) 지원자격

· 원 소속대학 학부 1년이상 수료, 대학원 1학기 이상 수료
· 전 학년 평량평균 2.5/4.0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TOEFL PBT 550점(CBT 213, IBT 79) 이상 또는 한국어 강의 수강이 가능할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

아) Outgoing 교환학생 파견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Program)

(1) 개요
· 우리 학교 학생이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수업료는 우리 학교에 납부하고, 수업은 외국대학 (Host University)에서 수강하여 학기와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2) 규모
· 협정 체결 기관 수: 71개국 700여개 기관(2018년 7월 기준)
· 교환학생 파견 규모 : 750여명(2018학년도)

(3) 지원자격
· 전공에 상관없이 평량평균 3.0/4.3(백분율 기준 86점) 이상의 학점
· 토플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으로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IBT성적 79점, 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계열의 경우 IBT성적 68점, 대학원생의 경우 IBT성적 100점 이상 취득한 자
· 비영어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은 해당 언어 구사 능력을 본교 언어학과에서 평가받아야 함

(4) 여름·겨울방학 단기 해외교환학생파견프로그램
· 해외 우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학년도 여름방학부터 운영
· 파견대학: 영국 King's College London, 스위스 University of Geneva, 호주 Deakin University 등

자) Outgoing 방문학생 프로그램 (Visiting Student Program)

(1) 개요
· 해외 우수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정 기간 동안 외국대학에 파견되어 학기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본교와 파견대학 모두에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함.
· 파견 장려를 위해 우리 대학은 등록금의 일부를 VSP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파견 대학에는 일반 학생보다 저렴한 수업료로 수학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우리 대학에서 최소 2개 학기를 수료한 학부생
· 지원 직전학기까지의 전학년 평량평균 3.0/4.3(백분율 86점) 이상
· TOEFL IBT 79(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지원자는 68) 이상, 파견대학별 어학 능력 조건 충족

(3) 파견대학
· American Univ., St. Cloud State Univ.,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Univ. of North Alabama, Univ. of Alberta, Univ. of Nottingham, Study Abroad Foundation (SAF), King's College London (파견대학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차) 자비해외유학 프로그램 (Study Abroad Program)

(1) 개요

· 교무처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 일정 조건을 갖춘 학생을 파견하여 그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학점을 취득하고 학교가 이를 인정하는 제도(학기는 불인정)

(2) 지원자격

· 학점: 3.0/4.3(백분율 기준 86점)

· 어학능력: IBT성적 79점, 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계열의 경우 IBT성적 68점 이상(정규학기 수학자에 한함)

·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졸업예정자는 제외(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함)

·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파견대학

·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다음 대학(기관)들과 프로그램을 운영

- 정규학기: American Univ., ISEP Direct, San Diego State Univ., Univ. of Nottingham, St. Cloud State Univ.,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Study Abroad Foundation (SAF), King's College London

카)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Global Internship Program)

(1) 개요

· 국제 비즈니스 실무 경험, 어학능력 향상 및 외국 문화 체험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와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

· 한 학기 동안의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 후 우리 대학에서 학기와 학점 인정 가능

(2) 지원자격

· 3, 4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

· 전 학년 평량평균 3.0/4.3(백분율 86점) 이상

· TOEFL iBT 79 또는 TOEIC 790점 이상(현지 기업에서 인턴 업무가 가능할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 요구)

(3) 파견기관

· 정규학기: The Washington Center(미국)

· 겨울방학: Korindo Group(인도네시아)

타) 국내 및 해외 장학금

미래에셋 장학금을 비롯하여, 일본 문부과학성 장학금, ASEM-DUO 장학금, GKS 우수교환학생 장학금, Top 20 Scholarship, 신흥국 장학금, 글로벌리더 장학금, 기타 해외기관 및 대학교와 관련된 장학금 등에 대한 안내, 선발, 지급, 추

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파) Incoming 교환학생 교육 담당

(1) 개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정규학기 학사 운영

(2) 운영

· 1학기 또는 1년 과정으로 본교 학사일정과 동일

· 최소 9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수강 가능

·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별도의 영어수업 및 한국어 위탁과정 개설·운영

· 학부 및 일반대학원, 국제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영어강좌 수강 가능

· 학적자료 관리 업무

하) Incoming 방문학생 선발 및 교육 담당

(1) 개요

· 외국대학 재학생이 연세대학교 정규학기에 참여하여 학점 취득

· 학생 소속교와의 협정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은 비교환학생(방문학생)으로 지원가능하며, 등록금은 연세대학교에 납부

(2) 입학자격

· 외국대학 학부 1년 이상,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전체 평량평균이 4.0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

(3) 제출서류

· 온라인 지원서

· 여권 사본, 공식 성적증명서, 학습 계획서

· 보험가입 확인서

· 어학증명서(영어 또는 한국어)

(4) 기타 교육과정 운영은 교환학생과 동일

거) 국제하계대학 (Yonsei International Summer School)

(1) 개요

· 여름방학 4주 또는 6주 동안 외국대학 재학생 및 본교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비학위 프로그램

· 개설과목

- 한국학, 동아시아학, 인문학, 경제.경영학, 국제정치학, 한국어 등 7개 분야 약 100개 과목

- Corporate Internship 및 Research Internship Program

· 수강학점: 최소 6학점, 최대 9학점 (별도 협정교 학생은 12학점까지 가능)

(2) 입학자격

· 외국대학 재학생 혹은 외국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 제출서류

· 온라인 지원서

· 성적증명서 원본 혹은 외국 대학 입학 허가서 원본(외국 대학 입학 허가서

는 고등학교 3학년생만 해당)

너) 국제동계대학 (Winter Abroad at Yonsei)

(1) 개요

· 겨울방학 3주간 두 세션(총6주)으로 외국대학 재학생 및 본교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비학위 프로그램

· 개설과목: 한국학, 경제·경영학, 심리학 등 총 20여 과목 개설

· 수강학점: 세션 별 최소 3학점, 최대 4학점

(2) 입학자격

· 외국대학 재학생 혹은 외국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 제출서류

· 온라인 지원서

· 성적증명서 원본 혹은 외국 대학 입학 허가서 원본(외국 대학 입학 허가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만 해당)

더) 특별프로그램

(1) 개요

· 외국 대학 및 기관의 의뢰를 통해 진행되는 맞춤식 프로그램

· 한국어 교육, 교양 강좌,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설

· 양교간의 인적, 문화 교류에 중점

(2) 운영 실적

· 미 St. Olaf College, 일 Keio University, Hosei University 등

2) 외국인지원팀

가)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지원

(1) 외국인 교원 지원

외국인 교원의 출입국업무(사증발급 및 체류)와 신임교원의 초기정착을 지원한다. 신임교원의 입국 시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급, 주거 확보, 항공료 지급 등을 돕는다. 매년, 외국인 교원의 소속감 고취와 교원 간 네트워킹을 위해 “International Scholars’ Day”를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 교원 교류프로그램인 Harvard-Yenching 프로그램과 United Board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미국 Indiana University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외국인 학생 지원

학부 정규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교환학생, 어학연수생 등)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 업무를 총괄한다.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지원, 장학금 지급, 의료보험 가입, 취업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고, 매 학기 학점이수 및 출결 현황과 각종 학적변동사항을 수시로 법무부에 보고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친목 및 네트워크 활성을 위해 국가별 유학생회 등의 커뮤

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운영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총괄 담당한다. 2019년 1학기 현재, 학부 83명, 대학원 101명이 재학 중이다.

다)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생 사업 운영

2009년부터 말레이시아 정부가 파견하는 국비장학생 사업을 총괄한다. 매학기 장학금 지급, 수학 상황 보고, 학사 및 생활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학기 현재, 학부 24명이 재학 중이다.

라) 글로벌라운지 운영

2002년 11월에 문을 연 글로벌라운지는 본교에 수학 중인 외국인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 학술과 문화의 교류장소이다. 2017년 4월 백양누리로 이전했다. 국제처 산하 학생자치기구인 Yonsei Global, Mentors Club과 Foreign Student Union 등 외국인 유학생회의 교류활동 장소로도 활용하며, 교내 국제행사에도 대관한다.

마) 교육국제화역량인증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본교 총괄부서로서 학부, 대학원, 어학당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인증 심사에 대응한다. 인증 결과는 3년 간 유효하지만, 매년 정량지표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본교는 2019학년도 현재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서 외국인 출입국 업무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9년에 신규인증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3) 국제입학팀

가) 입학 전형

(1) 외국인 전형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학부 3월 입학과 9월 입학 신입생, 편입생을 선발하며, 정부초청 장학생을 선발한다.

(2) 재외국민(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학부 3월 입학과 9월 입학 신입생, 편입생을 선발한다.

(3) 전형 상담

·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전화나 방문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국인 전형과 재외국민 전형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나) 홍보

(1)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 해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박람회 및 고등학교 설명회를 참가하여 외국인 전형을 소개하고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2) 해외 우수 고교와 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외국인 전형 홍보 및 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우수 고등학교, 중국, 베트남

등의 유학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3) 국내외 고등학교 대상 홍보

· 우리대학교를 방문하는 해외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 진행 및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4. 취업진로지원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은 다양한 커리어 개발을 통하여 취업역량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 취업역량아카데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직업진로, 직무역량, 실전취업, 취업멘토링 등의 내용으로 아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여 향후 프로그램 계획 시 반영한다. 신청은 경력개발시스템(http://career.yonsei.ac.kr)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한다.

1) 취업특강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 인사를 초빙하여 채용동향, 기업분석, 채용 전형 단계별 대비 전략 등의 강의를 제공한다.

2) 핵심직무역량스쿨

직무 기반 채용으로 채용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전략기획, 인사조직, 영업마케팅, 금융투자, 광고홍보 등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고 직무별 최신이론과 현장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연 2회 실시한다.

3) 커리어빌딩아카데미

재학생들의 핵심역량,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진단, 개발하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함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학기에 2~3회 실시한다.

4) 모의직무적성검사 및 집중교육

추리능력, 수리능력 등 다양한 영역별로 강의를 제공하여 각 영역별 문제유형을 익히고 실전문제 풀이를 통하여 기업별로 상이한 직무적성검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별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교육한 것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한다.

5) 실전 모의면접

실제 대기업 면접과 유사한 실전! 모의면접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인성/역량면접, 프레젠테이션면접, 토론면접으로 구성된다.

6) 입사서류 One Day 워크숍

상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시즌에 대비하여 서류전형에 대비한 입사서류 준비 워크숍을 진행하여 개인별로 특성화된 입사서류를 완성하도록 돕는다.

나. 취업시스템 기반

1) 경력개발시스템

취업을 준비하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채용공고 및 아르바이트 공고, 과외정보, 취업팀교육, 취업자료, 동영상강의, 멘토링, 공모전 및 각종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다. 주소는 http://career.yonsei.ac.kr 이며, 학사포털과 동일한 ID 및 PW로 로그인할 수 있다.

2) 취업률 통계조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졸업자의 취업통계 정보를 학교별로 조사하여 사회 및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 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학생 등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취업률은 대학별로 공표되므로, 우리대학의 홍보 및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채용

1) 취업박람회

매년 9월 초에 2~3일간의 일정으로 백양누리에서 약 100개의 기업 채용부스에서 구직정보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요령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 기업채용상담 및 설명회 개최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기업은 구인을 위해 서로 만나는 시간이며, 연중 상시 교내 학생회관 2층 취업광장 및 공대 강당, 공학원 대강당, 백주년기념관 등 주요기업들의 채용상담과 회사설명회가 진행된다.

3) 추천채용시스템

추천채용을 원하는 학생은 경력개발시스템의 추천채용에서 기업을 확인한 후 추천채용 지원하기를 통하여 지원한다. 또한 취업플래너에서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돕는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천채용희망을 등록하면 추천 채용지원자 검색시스템에 의해 추천대상자가 검색되어 추천 기회를 받을 수 있다.

4) 멘토링시스템

경력개발시스템을 통해 관심 기업에 재직 중인 동문 멘토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력개발시스템을 통해 해당 멘토에게 질문을 보내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프라인에서도 '취업멘토링올스타'라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링이 진행된다.

5) 재직동문간담회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에게 취업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을 위한 간담회을 개최한다.

6) 아르바이트 관리

경력개발시스템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는 각종 아르바이트 공고가 게시되므로, 내용 확인 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5. 국가고시지원

국가고시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국가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및 변리사시험 등]를 준비하는 재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 특강 및 모의고사 실시

각 고시와 관련하여 1차, 2차, 3차 시험을 대비한 특강을 시기별.단계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저명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실시하며, 각 국가고시별로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시험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나. 국가고시 합격자 1:1 상담

국가고시 준비 단계부터 합격 시까지 해당 국가고시 합격자와의 1:1 상담을 통하여 수험생활을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지속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 무악4학사(국가고시동) 입사생 선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 일정조건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국가고시동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수험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 국가고시 관련정보 수집 및 제공

국가고시에 관련된 정보, 합격자 수, 각 고시반 현황 등 고시와 관련된 대ㆍ내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1) 각 국가고시별로 핸드북 제작 및 배포
2) 국가고시 설명회를 실시하여 최근 합격자들을 통해 최신 정보 제공
3) 국가고시에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배포(홈페이지와 책자를 이용)

마. 각 대학 고시실 예산 및 행정지원

단과대학별 고시실에 대한 각종 물적 지원(도서, 고시답안지 등)을 하고 있다.

6.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인권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구로 윤리센터와 인권센터, 성평등센터, 심리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2019년 3월에 직제를 개편하였다.

가. 윤리센터

- 홈페이지 주소: clean.yonsei.ac.kr
- 위 치: 백양관 S202호 (☎02-2123-2116~2117)
- e-mail: clean@yonsei.ac.kr

윤리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교육 및 직무윤리를 확립하고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1) 윤리기본규정의 교육·상담,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윤리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 및 직무윤리, 부정청탁방지를 위하여 청탁금지법을 교직원 대상으로 한 학기 2회씩 상반기, 후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윤리기본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교직원의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 혹은 부정청탁을 인지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를 접수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급기관 및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직접요구 할 수 있다. 자료를 취급하는 자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안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3) 기타 그 밖의 윤리위반행위에 있어 합리적인 직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조사 및 관리, 감독을 한다.

윤리센터 신고·접수·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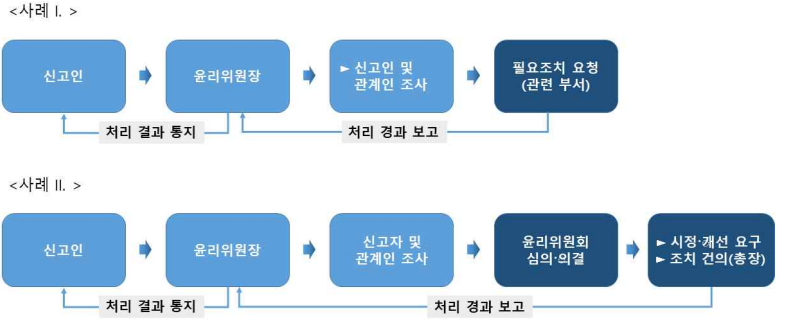

윤리기본규정

제정일: 2010.07.09
개정일: 2018.08.16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02-2123-21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기본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윤리적 도덕성의 결여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각종 불미스러운 결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그 밖의 학교 구성원들(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08.16.>

제3조 (성실한 직무수행) 교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제4조 (품위유지 등)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성폭력·폭행 기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의 성폭행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외에는「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및 그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8.08.16.>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및 교육윤리, 직무윤리, 성폭력 문제 등에 관해 따로 개별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은 이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8.16.>

제2장 연구 윤리 준수

제6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 ① 교직원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의 2 (교직원과 학생의 윤리위반 행위금지) ① 교직원은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거나 지도를 받는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강의와 지도의 본분을 벗어나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조 신설 2018.08.16.]

제3장 실험 윤리

제7조 (생명 윤리 및 동물 실험 윤리 준수) ① 교직원은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윤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윤리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및「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직무 윤리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8조 (차별대우 금지)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알선·청탁 금지)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의 공정

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교직원에게 소개
2. 알선 또는 청탁

제10조 ① 누구든지 연세대학교 교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교직원의 임용·승봉·승진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교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을 고려하여 업무나 인력의 재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교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교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제12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연세대학교 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 (이권개입 등 금지)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 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금품 수수의 제한)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회통념상의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교직원은 학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교직원은 학교의 교육, 연구, 사무용을 포함한 일체의 유형적 재산과 직무발명 결과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무형적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교직원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

매 등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연세대학교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정보·재무의 투명한 관리

제18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정보의 누설 금지)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관계의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언론 및 일반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연구비·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학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투명한 회계관리) 교직원은 회계서류 기타 재무 관련 서류를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인권위원장 등

제23조 (윤리인권위원장)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7.08.01.>

1. 이 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이 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조사 및 관리·감독

② 윤리인권위원장은 2년의 임기로 총장이 임명하며, 관련 업무는 다른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총장의 지휘를 받는다.<개정 2017.08.01.>

③ 윤리인권위원장의 업무 보좌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08.01.>

제24조 (윤리인권위원회) ① 윤리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윤리인권위원장, 미래전략실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이상 당연직 위원)과, 2년 임기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인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회의는 필요시 윤리인권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개정 2017.08.01., 2018.3.14]

제25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신고, 청원한 사항
2.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통보한 감사 내용 중 총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3. 연구 및 교육윤리, 직무윤리, 성폭력 등에 관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개정 2018.08.16.>
4. 그 밖에 윤리규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개정 2018.08.1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8.16.>

제26조 (윤리센터) 윤리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윤리센터를 둔다. <개정 2018.08.16.>

제6장 위반행위의 신고

제27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인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윤리인권위원장은 지체 없이 교내 관련 행정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18.08.16.>

② 교내 관련 행정부서는 윤리인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신고사항의 처리 경과를 윤리인권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윤리인권위원장은 행정부서의 신고사항 처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윤리인권위원장은 담당기관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요청하기에 앞서 신고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신고자 또는 해당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08.01.]

제28조 (조사 및 조치) ① 윤리인권위원장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급 기관 및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8.01.>

②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를 취급하는 자와 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안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8.08.16.>

③ 윤리인권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당사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정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7.08.01.>

④ 윤리인권위원장은 윤리센터의 처리결과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08.16.>

제29조 (관계기관의 협조) 윤리인권위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각 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교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8.01.>

제30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1조 (윤리규정의 운영) ① 총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이 규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항 개정, 제23조 제3항, 제23조의 2, 제23조의 3 신설)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포함 전면개정)은 201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5장 제목변경,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3항, 제29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4조 제2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5조, 제2장 표제, 제6조의 2, 제3장 표제, 제4장 표제,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나. 인권센터

- 홈페이지 주소 : humanrights.yonsei.ac.kr
- 위 치: 백양관 S202호 (☎02-2123-2116~2117)
- e-mail: humanrights@yonsei.ac.kr

인권센터는 연세인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체의 회복·통합과 정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7년 설립되었다.

1)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안의 해결
인권침해 문제와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를 직접 보호조치하거나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며 나아가 관계부서에 권고나 의견을 표명 한다.

2)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인권에 관한 국내외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을 조사하고 인권침해의 유형이나 판단기

준,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연구하며, 이를 활용하여 학내 인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학부과목에 인권강좌를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행사 및 인권관련행사를 기획, 진행한다.

인권센터 신고·접수·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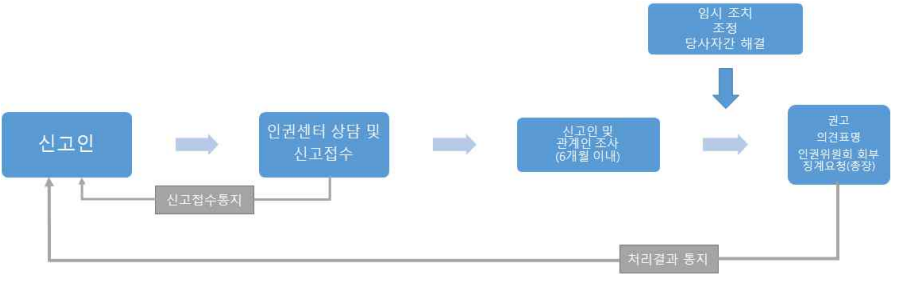

인권센터 규정

제정일: 2017.08.01
개정일: 2018.08.16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6.>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08.16.>
6.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과 성폭력을 제외한다.
7.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상담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제2조 제11호의 당사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제4조 (조직)
인권센터는 본교 총장직속기구인 윤리인권위원회에 두며, 인권센터에는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심리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을 둔다.

제5조 (업무)
인권센터는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심리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의 업무를 인권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학내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인권센터장)
①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인권상담소)
인권상담소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들을 처리하고 인권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인권침해 문제와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과 조사
2.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4.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5.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계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6.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연구와 실시
7.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성평등상담소)

① 성평등상담소는 학내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비롯하여 성차에 근거한 차별행위 문제를 처리하고 교내 성평등 문화 확립을 위한 행정전반을 담당한다.

② 성평등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및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심리상담소)

① 심리상담소는 학생들의 심리검사와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심리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심리상담소 규정」및 시행세칙, 관련 내규로 정한다.

제10조 (장애학생지원실)

①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성평등상담소장, 심리상담소장, 장애학생지원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상담소의 운영 및 평가
2. 학내의 인권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에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사안이 중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 또는 인권상담소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
6. 기본운영방안 및 인권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개폐 발의

제12조 (조정자문위원회)<삭제 2018.08.16.>

제13조 (신고)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④ 인권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 2018.08.16.>

제14조 (신고의 접수)

①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접수서를 작성한 이후에,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08.16.>

제15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3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신고인이 기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각하에 대한 불복)<삭제 2018.08.16.>

제17조 (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개정 2018.08.16.>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임시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따라서 피신고인의 무죄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기본적이고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제18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당사자 등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④ <삭제 2018.08.16.>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의 방법)

①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인권위원회의 구성<제목개정 2017.11.07.>)

① 윤리인권위원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윤리인권위원장, 센터장, 인권상담소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인권위원장은 윤리인권위원장이 담당하며, 센터장은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개정 2018.08.16., 2017.11.0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윤리인권위원장이 위촉하되, 제4호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직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8.16.>

제21조 (인권위원회의 임무<제목개정 2017.11.07.>)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1.07.>
1. 인권상담소의 사건 조사에 대한 심의
2.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제1호의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보충조사의 요청

제22조 (인권위원 등의 제척<개정 2017.11.07.>)
위원,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개정 2017.11.07.>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23조 (인권위원 등의 기피<제목개정 2017.11.07.>)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07.>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인권위원 등의 회피<제목개정 2017.11.07.>)
위원 등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 (인권위원의 교체<제목개정 2017.11.07.>)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11.07.>

제26조 (인권위원회의 회의<제목개정 2017.11.07.>)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에는 인권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평등상담소장, 심리상담소장, 장애학생지원실장은 인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인권위원장 및 센터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11.07.]

제27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당사자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인권상담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31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조정절차)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08.16.>

③ <삭제 2018.08.16.>

④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31조 (구제조치 등)

① 인권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인권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인권위원장 및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권위원장 및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11.07.]

제32조 (징계의 요청)

인권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07.>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7조 또는 제31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든지 인권상담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제33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② 징계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는 재심 신청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07.>

제34조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인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개정 2017.11.07.>

제35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정보이용)

인권센터는 보유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교육 및 연구적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 (비밀유지)

① 센터장, 각 상담소장, 운영위원, 인권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 각 상담소장, 운영위원, 인권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개정 2017.11.07.]

제38조 (기관간협조)

① 인권센터와 그 산하의 기관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내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8.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권센터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

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2017.11.0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0조 제1항, 제21조부터 제26조, 제31조부터 제34조, 제37조)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8.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5호부터 제13호,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 성평등센터

- 홈페이지 주소 : equity.yonsei.ac.kr
- 위 치: 신촌캠퍼스/논지당(☎02-2123-2118, 2137)
  국제캠퍼스/자유관B(매주 수요일/ 방문자에게 상담실 위치 개별 안내)
- e-mail : helper@yonsei.ac.kr(상담)
  genderedu@yonsei.ac.kr(교육)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가) 성평등 인식 향상 교육

학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평등한 관점을 기를 수 있는 특강. 성인지 워크숍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 성평등 문화 조성 프로그램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성차별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은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또래상담가' 양성 등 특화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다) 폭력예방교육(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2019년 현재 각급 공공단체의 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다. 관련 법령과 제도에 근거하여 온라인 교육, 대면 교육, 성폭력 예방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학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성희롱 · 성폭력 상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은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상담 및 해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밖에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 정착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학생 자치 활동 자문 및 소규모 교육을 운영하고, 학내 모든 구성원이 성별·성적지향에 관계없이 동등한 학습권과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충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가) 상담 및 사건 처리

(1) 상담 지원

우리 대학의 성폭력 예방 규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 구성원이 적용대상이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성차별), 불법촬영,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 다양한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치유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연계한다. 상담은 전화, e-mail, 대면을 통해 할 수 있다.

(2) 사건 처리

학내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신고하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처리한다. 사건 신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제 3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가 방문/전화/서면(e-메일 포함)으로 접수되면 신고인 보호조치를 취한 후, <연세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절차로 처리한다. ① 양측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중재하는 경우와 ②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로 나뉜다. 직접 신고가 아닌 제보를 통해 성평등센터가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당사자 소속 기관에 성폭력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의 결과 성폭력여부를 판단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 자체 조치를 내리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사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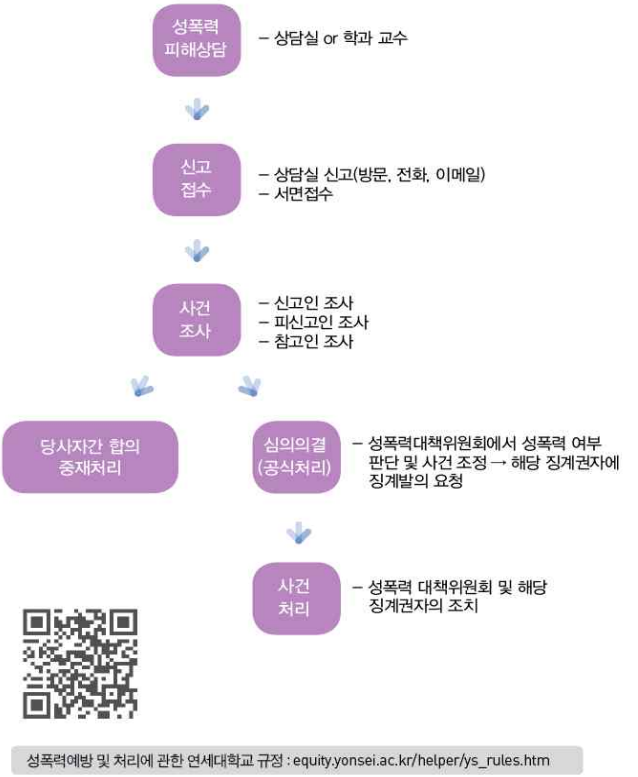

나) 가해자 교육

성폭력사건 가해자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건재발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사건 및 가해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일: 2018.08.06
제정일: 2000.10.10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02-2123-21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학생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17.08.01., 2007. 12. 2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적용범위에는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학생 등이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개정 2018.08.16., 2017.08.01.>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신고인이 조사기간 중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행위를 하지

말아야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고인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발의할 수 있다. <신설 2018.08.16.>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제목개정 2017.08.01., 2013.08.30>

제6조 (설치)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내에 성평등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8.01., 2013.08.30, 2010.06.07, 2007.12.21.>

제7조 (구성) 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개정 2017.08.01., 2013.08.30>

② 상담소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08.01., 2013.08.30>

제8조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8.01., 2013.08.30>

1.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3.08.30>
2.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개정 2013.08.30>
3.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5.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개정 2013.08.30>
6.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8.30>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인권센터장, 상담소장, 대학원부원장, RC 교육원장, 교무처장, 총무처장으로 하고, 추천직위원은 교수위원 4인(젠더 관련 전공교수 1인 포함),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 시 당연직 위원 중 학생복지처장, 대학원부원장, RC 교육원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추천직위원(교수, 직원, 학생)은 해당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8.08.16., 2017.08.01., 2014.09.01, 2013.08.30, 2010.12.01, 2010.06.07, 2007.12.21>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④ 위원회는 성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 등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
⑤ 위원회 내에 집행소위원회 및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8.16.>
⑥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 수를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개정 2017.08.01.>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개정 2013.08.30>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 결정 <신설 2013.08.30>
6. 그밖의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개정 2018.08.16.>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소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8.01.,2013.08.30>
② 성폭력 사건 처리 회의(이하 “사건처리“)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각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건처리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성폭력대책위원회 조치 및 징계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2013.08.30, 2007. 12. 21.>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정기회의 및 사건처리 이외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08.16.>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소는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1., 2013.08.30>
②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상담소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7.08.01.,2013.08.30>
③ <삭제>
④ 상담소는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식 신고

가 없더라도 상담소에서 인지하게 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8.08.16., 2017.08.01, 2014.09.01, 2013.8.30.>

⑤ 제4항의 경우 위원장은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08.01.,2014.09.01.>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 상담소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2017.08.01.,2013.08.30.>

제15조의 2(재심의) ① 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집행소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집행소위원회에서 재심의 개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고 재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④ 재심의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들과 위원장이 새로이 추천한(젠더 관련 전공 교수 1인 포함) 4명의 교수위원(직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노조위원장이 새로이 추천한 3명의 직원,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가 새로이 추천한 각 1명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재심의 특별위원회 개회 및 의결 기준은 제13조 제2항과 같이 한다.

[조 신설 2018.08.16.]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삭제 <2015.02.27.>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 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7조 (경비) 상담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8.01., 2013.08.30>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삭제 2007. 12. 21.>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2장 제1절, 제6조, 제10조 제1항, 제 13조,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0조 제1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절,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조,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12조 제1호, 제5호(신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제5항(신설))은 2014. 09. 01.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2항 제1호 삭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제2조 제2항, 제3조, 제2장 제1절 제목변경,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5조 제4항, 제17조)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4항, 제8조 제6호 및 제8호,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12조 제6호,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제15조의 2)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2018.08.16
제정일: 2001.03.15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02-2123-2118)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18조에 의거하여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제2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의 학칙을 적용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범위에는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포함)에서 일하는 모든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 등이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8.08.16., 2017.08.01.,2013.09.13>

제3조 ()
<삭제 2013.09.13>

제4조 (전문상담원의 자격)
성평등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의 전문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8.16., 2017.08.01.>

①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 <호번호 개정 2018.08.16.>
② 성폭력 상담 현장경험이 있는 자 <호번호 개정 2018.08.16.>
③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의사소통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등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 <호번호 개정 2018.08.16.>

[본조 개정 2013.09.13]

제5조 (전문상담원의 수)
상담소에는 약간 명의 전문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08.16., 2017.08.01, 2013.09.13>

제6조 (성폭력 예방교육)

①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학기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3.09.13>
   1. 성폭력 정의
   2.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성평등기준 <개정 2018.08.16.>
   3.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6.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규정 제10조의 당연직 위원 8인, 교수평의회가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성평등상담소 소장(이하 "소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총장이 임명한 젠더 관련 전공교수 1인,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

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개정 2018.08.16., 2017.08.01., 2013.09.13>

② <삭제 2018.08.16., 개정 2017.08.01.>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8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07.12.21.>

② <삭제 2007.12.21.>

③ <삭제 2013.09.13.>

④ <삭제 2018.08.16., 신설 2013.09.13.>

제9조 (특별위원회)

①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3.09.13>

②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서 위임된 업무 및 성폭력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장, 인권센터장, 상담소장으로구성된 집행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8.16., 신설 2017.8.1., 2014.7.14>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집행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14>

③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개정 2014.7.14>

제11조 (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 상담소는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개정 2017.08.01, 2013.09.13>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동성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이 추천하는 동성의 객원 전문상담원이 참여한다. <개정 2013.09.13, 2010. 6. 7.>

③ 전문상담원은 상담시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전문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상담소는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피신고인,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08.01., 2013.09.13>

⑥ 소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9.13>

⑦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동일한 수업을 수강하거나 RC의 같은 하우스에 기거하는 등 긴급하게 피해자 학습권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이전이라도, 집행소위원회가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학과 등 관련 부서에 요

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8.01., 신설 2014.7.14>

⑧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2014.7.14, 2013.09.13.>

제12조 (성폭력사건의 심의ㆍ의결)

① <삭제 2007. 12. 21.>

② 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3.09.13>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참고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9.13>

④ 심의ㆍ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ㆍ의결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3>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신고인, 피해자 및 피신고인을 의미함),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개정 2013.09.13>

⑦ <삭제 2013.09.13>

⑧ 제6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제13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2.16.>

③ <삭제 2015.12.16.>

④ 위원회는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의 경위와 처벌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전 연세구성원에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5.12.16., 2013.09.13>

⑤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은 상담소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8.01., 2013.09.13>

⑥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⑨ 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⑩ 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를 할 수 있다.

⑪ <삭제 2018.08.16.>

제14조 (재심의) <삭제 2018.08.16.>

제15조 (기록 및 자료보존 등)

① 상담소는 성폭력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② 상담소는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개정 2013.09.13>

③ 모든 기록은 상담소에서 보관한다. <신설 2016.12.29.>

④ 사건 당사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본조개정 2017.08.01.]

제16조 (전문상담원의 교육·훈련)

상담소는 규정 제8조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원의 교육·훈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8.01., 신설2016.12.29.>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삭제 2007. 12. 21.>

(3)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삭제>, 제12조 제1항<삭제>,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삭제),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삭제), 제4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삭제),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제1항(신설),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7항(신설) 및 제8항)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 제2항, 제3항) 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해당조항 삭제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 제4항)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7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제16조)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

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항, 제7항, 제13조 제5항, 제15조, 제16조)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8항, 제13조 제11항, 제14조)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라. 심리상담센터

- 홈페이지 주소: http://counsel.yonsei.ac.kr
- 위 치: 신촌캠퍼스/백양관 N408호 (☎02-2123-6688)
  국제캠퍼스/지혜관 A동 201호 (☎032-749-2070)
- e-mail: 신촌/counsel@yonsei.ac.kr
  국제/counselyic@yonsei.ac.kr

가) 개인상담

전문 상담자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과정으로 진로, 대인관계, 적응 및 정서문제, 가족관계, 이성문제 등을 다룰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먼저 접수 상담을 받고, 이후 개별 상담자와 연결되어 개인 상담이 진행된다.

나) 집단상담

전문 상담자의 지도 아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대화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자기이해, 의사소통훈련, 진로 탐색, 대인관계 향상 등의 주제를 다룬다. 주제와 일정은 매 학기 학교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참가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매 학기 집단상담 안내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다) 심리검사

여러가지 심리 검사를 통해 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심리 검사에는 성격 및 적응과 관련된 기질 및 성격검사(TCI, (주)마음사랑), 다면적 인성검사(MMPI-2, (주)마음사랑), 문장완성검사(SCT)가 있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대인관계문제 검사(KIIP, 학지사), 진로 및 적성과 관련된 진로탐색검사(U&I 진로탐색검사, 연우심리연구소)가 있다. 센터를 방문하여 심리 검사를 신청하고, 심리 검사를 실시한 후 해석 상담이 진행된다.

라) 사이코드라마

매년 1회 심리극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이코드라마를 실시한다. 사이코드라마는 개인이 가진 심리적 어려움을 드라마 기법을 활용하여 직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 치료 과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학교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마) 정신건강 세미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들 - 스트레스, 이성관계, 자살위기, 건강한 삶 등을 중심으로 매년 1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구체적 일정은 학교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바) 이용 방법

신촌/ 직접 방문(백양관 N 408호), 혹은 전화 신청(☎ 02-2123-6688)을 통해 상담이나 심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리검사를 원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해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접수면접을 받은 후 일정 시간 대기 후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상담 및 검사의 비용은 무료이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국제/ 직접방문(지혜관A동 201호), 이메일(counselyic@yonsei.ac.kr) 또는 전화 (☎ 032-749-2070)를 통해 상담이나 심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마. 장애학생지원센터

- 홈페이지 주소 : web.yonsei.ac.kr/ablecenter
- 위 치: 신촌캠퍼스/학생회관 203호(☎ 02-2123-3633. 3634)
  국제캠퍼스/지혜관A 101호(☎ 032-749-3633. 3634)
- e-mail : ablecenter@yonsei.ac.kr

지원대상 및 이용시설

가) 지원대상

(1)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
재학 중 장애를 진단받은 장애학생
* 단, 특정 지원제도는 학적부에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등록 절차는 장애학생지원 담당자 상담과 장애학생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진행하였으나, 2019년 3월 이후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2) 교·강사: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의 교.강사

나) 이용시설

(1) 장애학생 휴게공간 : 장애학생들이 공강시간에 휴게에 이용하는 시설
- 위 치 :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B11-18호(장애인권위원회실) / 위당관 118-1호
  국제캠퍼스 진리관 A동 103-1호

(2) 장애학생전용열람실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장애학생 전용열람실

• 위 치 :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6층

다) 지원제도

(1) 학업지원
수강신청지원(우선수강신청제도 운영), 강의대필, 교육속기, 이동/활동보조, 교재제작(스캔/타이핑), 대독, 튜터링, 기자재대여, 편의지원요청메일발송, 학점등록제

(2) 생활지원
시설개선지원, 기숙사 배정지원 및 장애학생전용객실 운영, 장애학생전용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주차요금할인

(3) 기타 지원
- 장학금지원 : 대학배정장학금 자격요건 조정, 외부장학금 연계
- 타 기관 연계 : 도서관이용 지원, 심리상담소 연계, 멘토링, 취업팀 연계

지원제도 신청 및 처리 절차

가) 지원제도 신청

장애학생 및 교·강사는 지원제도를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 또는 대표메일로 신청한 후, 센터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지원 사항을 확정한다. 단, 타 부서 연계 등이 필요한 안건은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의 심의·이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나) 지원제도 처리 절차

주체	장애학생 교·강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교육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
단계	지원제도 신청	지원 상담	지원 심의·의결	지원 연계·제공
세부 내용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대표메일 신청·접수	센터 담당자 상담	타 부서 연계 필요사항 심의·의결	담당자 상담 및 위원회 심의·의결 기반하여 지원제도 연계·제공

장애인식개선

가) 장애인식개선 교육

신입생, 교직원 및 신임교원, RC교육원 RA 등을 대상으로 매 학기 구성원 맞춤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나) 장애인식개선 자료개발 및 보급

우리 대학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식개선 책자 및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16.04.11
개정일: 2017.08.01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02-2123-363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7조의 2에 따라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본교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 및 원주캠퍼스 소속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장애학생교육위원회)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본교 장애학생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을 따른다.

제4조 (장애학생지원실<제목개정 2017.08.01.>)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에 장애학생지원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08.01.>

제5조 (담당업무) ① 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담당한다.<개정 2017.08.01.>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시설·설비 확충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지원실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1.>

제6조 (조직) 지원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실에 실장과 행정인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08.01.>

제7조 (실장<제목개정 2017.08.01.>) ① 실장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 실장은 지원실의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본조개정 2017.08.01.]

제8조 (교수·학습 지원) 지원실은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8.01.>

1. 장애학생 교수·학습 편의지원 안내문 발송
2. 학업수행 및 대학생활 지원 도우미 연계
3.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확보 및 지원
4. 그밖에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편의지원 사항 <개정 2017.08.01.>

제9조 (시설·설비 지원 등) 지원실은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 시설·설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8.01.>

1.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2. 교내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조사 및 안내

제10조 (상담 등) 지원실은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 및 대학생활과 진로·취업을 위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8.01.>

제11조 (지원신청)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지원실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실은 제1항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08.01.]

제12조 (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교직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및 경과조치)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5호를 제4호로 오기수정, 제9조, 제10조, 제11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

제정일: 2003.12.29
개정일: 2018.03.14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02-2123-3633)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1.>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시설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지원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7.08.01.>
4.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11.>
5. 장애학생 교육 및 지원과 관련된 그밖에 사항 <호번호변경 2016.04.11.>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8.01.>

② 위원장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8.01.>

1.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부원장, 생활관장,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소장, RC교육원장, 인권센터장, 장애학생지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08.01., 2014.09.01., 2013.08.02., 2010.07.01., 2018.3.14>
2.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 <개정 2016.04.11.>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센터 센터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8.01.>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장애학생교육 실무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8.01, 2016.04.11., 2010.07.01>

1. 학교측 위원: 장애학생지원실장, 기획처 부처장, 교무처 부처장, 학생복지처 부처장, 시설처 건축팀장, 장애학생지원실 선임직원 <개정 2017.08.01., 2016.04.11., 2010.07.01, 2009. 6.1., 2018.3.14>
2. 학생측 위원: 총학생회장, 장애학생 대표 2인<개정 2016.04.11., 2014.09.01.>

제6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 및 실무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7.08.01., 2010.07.01, 2009. 6.1.>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10조)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은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2호)은 2014.09.01.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호, 제5호,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3조 제3호, 제4조 제2항, 제3항, 제5조 제2항 제1호, 제10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7. 학술정보원

가. 개요

1915년 연희전문학교의 창설과 더불어 역사를 시작한 학술정보원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하며 대학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학술정보원은 현재 220만여 책의 장서와 17,000여 종의 연속간행물, 75,000여 종의 전자저널, 507,000여 종의 전자책 및 200여 종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대학의 글로벌 명문 교육과 세계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정보, 인프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 국내 최초로 도서관 전산화 토털시스템을 가동하였고, 1999년 웹기반 학술정보시스템, 2001년 통합형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05년에는 디지털콘텐츠 연계 기능이 강화된 전자도서관시스템을 오픈하였다. 2010년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로 전 장서를 대상으로 한 900MHz UHF 대역의 RFID 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S-Campus 프로젝트'를 통해 학술정보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하였고, 통합검색 인터페이스, 모바일 좌석배정, 모바일 학생증 도입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 기존 중앙도서관 건물과 연결하여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을 신축함으로써 연면적 약 53,600㎡(약 16,200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도서관이 되었다.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은 최첨단 IT시설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다양한 용도별 맞춤 연구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풍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까지 선보이며 국내외 도서관에 미래 도서관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대학의 글로벌 명문 교육과 세계 수준의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처와 직제를 통합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학교의 학술정보·정보통신 서비스와 행정·학사 시스템 및 IT 인프라를 총괄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또한, 1979년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연세인들에게 더욱 쾌적한 열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명문 교육을 지향하며 설립된 국제캠퍼스에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을 2013년에 개관하여 프리미엄 학습지원 및 RC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학생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 250평의 공간에 협업이 가능한 150석의 가변형 테이블, 대형 LED 디스플레이, 강연 무대, 창업팀 전용 부스 등으로 구성된 Y-Valley를 구축하여 자유로운 토론 및 창의적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의 미래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로 3D 프린팅·스캐닝 및 IoT 실습 등이 가능한 Makerspace를 독립 공간에 구성하여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자정보박람회, 베스트셀러 작가 초청 저자와의 대화, 옥상정원영화제, 연구력 강화 워크숍 등 연세인의 학술정보 활용능력 제고 및 학습·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 최초의 근대 대학도서관으로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 오는 동안 장서, 시설, 서비스,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도서관계를 선도해 온 학술정보원은 2013년에 한국도서관협회가 수여하는 제45회 한국도서관상을, 2016년에는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유통 부문 기여도 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여 교육부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나. 자료와 시설현황

1) 자료현황

학술정보원은 교수의 연구 및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도서, 고서, 비도서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다. 자세한 자료종별 소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3월 1일 기준)

구분	단행본	비도서	학위논문	고서	연속간행물	전자저널	전자책	학술DB
국내	1,057,068책	60,781책	227,182책	64,432책	11,167종	8,106종	37,460종	45종
국외	729,552책	58,256책	2,196책	26,468책	5,781종	66,714종	469,179종	153종
소계	1,786,620책	119,037책	229,378책	90,900책	16,948종	74,820종	506,639종	198종
총계	2,225,935책				16,948종	74,820종	506,639종	198종

2) 시설현황

면적 및 열람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3월 1일 기준)

구분	면적		열람석		
	㎡	평	자료열람석	일반열람석	합 계
중앙도서관	19,359.24	5,856.17	599	1,932	2,531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법학도서관 포함)	34,236.96	10,356.67	744	2,021	2,765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1,175.00	3,380.44	280	874	1,154
음악도서관	454.88	137.60	46	12	58

구분	면적		열람석		
	㎡	평	자료열람석	일반열람석	합 계
합 계	65,226.08	19,730.88	1,669	4,839	6,508

중앙도서관 및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의 층별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도서관

B1	솟을샘(매점), 소담샘(PC이용), 본뜰샘(복사실), 사물함, 책갈피(도서관 학생자치회)
1F	24시열람실(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무인도서반납기/전자결제시스템, Privileges Office, Library Concierge
2F	인문자료실(대출/반납데스크, 복사코너)
3F	사회·역사자료실
4F	과학기술자료실(학위논문, 특수자료실, 장애학생열람실, 세미나룸, 복사코너)
5F	국학자료실(고문헌서고, 용재문고실, 우남사료실, 루즈벨트도서실, 개인문고실, 교수열람실), 대학원열람실(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유료사물함
6F	1열람실/2열람실(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가온마루(PC이용), 가온뜰(휴게공간), 세미나룸, 늘라온(남/여 휴게실), 유료사물함

나)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B2	주차장
B1	주차장, 보존서고
1F	Y-Valley, Makerspace, 전시실, 보존서고
2F	Information Commons, Y-DEC, IT Help Desk
3F	멀티미디어센터(미디어감상실, 미디어제작실, 멀티미디어교육실), 프리젠테이션룸
4F	대열람실(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남/여 휴게실
5F	Research Commons(학술정보서비스데스크, 교수열람실, 세미나룸, 복사코너), 도담샘(수유실)
6F	법학도서관(대출/반납데스크, 장기원기념실, 세미나룸, 복사코너)
7F	장기원국제회의실, 바른ICT연구소, 미래융합연구원, 법학연구원, 국가관리연구원, 사무실(학술정보원장실, 학술정보부원장실)
8F	옥상정원, 카페

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B1	커뮤니티라운지(Creative Talks, 아트갤러리, 커뮤니티 PC, IT Help Desk)
1F	Information Commons(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 무인도서반납기)
2F	멀티미디어센터(미디어감상실, 미디어제작실, 미디어편집실, Cinema Room)
3F	협업 파크(그룹스터디룸, 학술정보교육실, PC 익스프레스 구역)
4F	창의열람실(학술정보상담데스크, 지식인의 창, 사색소파 팡세)
5F	자료열람실, 캐럴, 그룹스터디룸
6F	자료열람실, 캐럴, 장애학생열람실
7F	국제회의실, 세미나룸, 카페, 테라스라운지

다. 도서관 이용

1) 개관시간

중앙도서관		학기중		방학중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B1	소담샘	07:00～23:00			
1F	24시열람실	24시간 개방			
2F	인문자료실	09:00～21:00	09:00～17:00	09:00～20:00	09:00～17:00
3F	사회·역사자료실				
4F	과학기술자료실				
5F	국학자료실	09:00～17:00	-	09:00～17:00	-
5F	대학원열람실	06:00～23:00			
6F	1열람실	24시간 개방		06:00～23:00	
6F	2열람실	06:00～23:00		-	
6F	가온마루	24시간 개방			

※ 3층 사회·역사자료실은 2층 또는 4층 자료실의 내부계단을 통해 출입 가능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학기중		방학중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1F	Y-Valley	08:00～23:00			
1F	Makerspace	09:00～18:00	-	09:00～18:00	-
2F	Information Commons	09:00～21:00	09:00～17:00	09:00～20:00	09:00～17:00
3F	멀티미디어센터				
4F	대열람실	08:00～23:00			
5F	Research Commons	09:00～21:00	09:00～17:00	09:00～20:00	09:00～17:00
6F	법학도서관				
8F	옥상정원	09:00～20:00	09:00～16:00	09:00～17:00	-

※ 자료열람실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실하며, 일반열람실은 연중 개방함

분관		학기중		방학중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구분	언더우드기념도서관 (국제캠퍼스)	08:30～24:00	09:00～18:00	09:00～18:00	-
	법학도서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6층)	09:00～21:00	09:00～17:00	09:00～20:00	09:00～17:00
	음악도서관 (음악대학 신관)	09:00～18:00	-	09:00～18:00	-

2) 열람실 안내 - 중앙도서관 및 연세 · 삼성 학술정보관

가) Y-Valley, Makerspace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에 위치한 Y-Valley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하면서 미래형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창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Idea Commons, Makerspace, Media Wall, Idea Pum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Makerspace에서는 3D프린터, 3D스캐너 및 각종 공작도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D 모델링/프린팅, IoT, VR, Data Technology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업지원단과 연계하여 각종 교육 및 창업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 Information Commons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2층과 스텝 형태의 열린 공간에 위치한 Information Commons는 컴퓨터를 집중 배치한 학술정보 공유의 광장으로, 16개의 협업부스, 438석 규모의 학술정보검색, 과제수행, 인터넷 검색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노트북 이용 및 스캔을 할 수 있는 좌석과 듀얼 모니터가 설치된 2인용 좌석, 장애학생 전용석이 구비되어 있다.

다) 멀티미디어센터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3층에 위치한 멀티미디어센터는 학술, 문화, 예술, 다큐멘터리, 영화, 어학 등 다양한 주제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VOD/DVD, Blu-ray/DVD/VHS, 어학/오디오 코너로 구성된 총 198석의 멀티미디어 열람석이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직접 촬영, 음향작업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제작실과 멀티미디어 편집용 장비가 갖추어진 전용 좌석 및 편집실이 있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다. 40석 규모의 미디어감상실은 영화나 영상자료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강의용으로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고, A/V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2개의 프레젠테이션룸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라) 가온마루, 소담샘

중앙도서관 6층과 지하 1층에는 인터넷 PC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다. 6층 가온마루에서는 전자신문, 유료사물함, 세미나룸 등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 1층 소담샘에서는 복사실과 스마트 TV를 이용할 수 있다.

마) 인문자료실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에는 총류, 철학, 종교, 어학, 문학 분야의 단행본 도서와 함께 연세필독도서와 사서추천도서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 인문자료실의 서비스데스크에서는 자료의 대출/반납 및 예약도서 대출, 강의 교재로 지정된 지정도서의 대출/반납, 비소장 자료에 대한 원문복사서비스 및 국내외 타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 사회·역사자료실

중앙도서관 3층 사회·역사자료실에는 사회과학, 역사, 경영, 예술 분야의 단행본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기증도서 컬렉션(김대중, 김석득, 마광수, 유완, 이규태, 이석호, 임철규, 정창영, 최종욱, 최호진)을 이용할 수 있다.

사) 과학기술자료실

중앙도서관 4층의 과학기술자료실에는 순수과학, 응용과학 분야의 단행본 도서 및 연세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이 소장되어 있으며, 북한 관련 특수자료, 대만한학자원센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수학술도서, 교수저서, 윤동주 시문학자료 컬렉션, 취업도서 컬렉션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국회전자도서관 전용 PC와 스캐너, 세미나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 국학자료실

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한 국학자료실에는 귀중고서를 포함한 약 10만여 책의 고서와 구한말~일제시대에 발행된 신서귀중본, 기독교 관계 고문헌, 마이크로폼

자료, 개인문고 등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국내 유일본 및 희귀본 등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다수 보존하고 있어 국학 연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국학자료실 내에는 루즈벨트 도서실과 우남사료실, 용재문고를 비롯한 개인문고, 교수열람실이 갖추어져 있다. 루즈벨트 도서실에는 루즈벨트 재단에서 기증한 루즈벨트 시대의 미국 연구와 대통령학, 장애인 재활교육에 관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우남사료실에는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관련 문서들을 수장, 전시하고 있다. 국학자료실 내의 모든 자료는 관외로 대출되지 않으며, 자료예약 신청 후 열람할 수 있다.

자) Research Commons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5층에 위치한 Research Commons에는 전 주제 분야의 학술지와 참고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국내외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 PC,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전용 PC, 경영/경제 DB 전용 PC, 세미나룸, 교수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자료실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복사를 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사서와의 상담을 통해 학술정보 활용 및 교육, 연구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열람실 안내 – 언더우드기념도서관

가)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 Information Commons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은 주출입구가 있는 메인 로비이다. 도서관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와 다양한 IT 장비를 통해 정보검색, 공유가 가능한 Information Commons가 위치해 있다.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에서는 자료(일반도서, 예약도서, 지정도서, 신촌캠퍼스 배송도서)의 대출/반납, 상호대차, 문헌복사, 연체료 처리, 학술정보원 이용안내 등 학술정보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Information Commons는 MAC, PC, 복합기 등 고성능 IT 장비들을 이용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IT 복합공간이다. 또한 여기에는 도서관 시설, 공지사항, 이용방법 등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Library Information과 주요 일간지와 영자신문을 지면 형태 그대로 볼 수 있는 Touchable Digital Newspaper가 있다.

나) 멀티미디어센터

언더우드기념도서관 2층에 위치해 있는 멀티미디어센터에는 다양한 주제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자료를 직접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개가제 자료실이다. RC생활을 하는 국제캠퍼스 학생들을 위하여 특정 컬렉션에 대하여는 1박 2일 관외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열람석과 PC석, 6~9인의 그룹이 모여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Cinema Room이 있으며,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38석 규모의 최신 극장시설인 미디어감상실과 음악 감상 부스, IPTV 시청 부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무비

/포토 스튜디오 및 오디오 부스, 편집 장비를 갖춘 미디어제작실과 편집실(1/2인용)이 있으며, 지하 1층 IT Help Desk에서는 3D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 창의열람실

4층의 창의열람실은 일반적인 자료열람실과는 달리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 사서들이 자료를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기획전시하고, 여러 형태의 소파와 테이블 등을 통해 다양하고 자유로운 열람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열람실이다. 온 몸을 감싸는 반구형 공간에 들어가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보거나 사색할 수 있는 소파인 '팡세(Pensees)',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한반도소파 등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공간이다. 소장자료로는 신간도서, 기본강의도서, 사서추천도서, 교양영어 교재, RC추천도서, 글로벌융합공학부 연구도서, 한국문학번역도서, 여행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참고도서 등이 있다. 학술정보상담데스크에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대해 상담하고 조사방법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자료열람실

5층 및 6층에 위치한 자료열람실은 창의열람실에 있는 자료 외의 모든 일반도서와 국제캠퍼스 소속 학과와 관련된 주제분야의 학위논문이 있다.

4) 자료의 조직과 검색

가) 자료의 조직

학술정보원 소장 자료는 기본적으로 '듀이 십진 분류표(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2판에 의거해 분류,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 및 동양 관계 주제 분야의 자료는 듀이 십진 분류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부분 수정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별도 전개표'에 따라 분류된다.

나) 자료의 검색

학술정보원 검색시스템에서는 브라우저나 기기의 종류에 상관 없이 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다.

검색메뉴는 총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통합검색」탭에서는 도서관이 소장하거나 구독하고 있는 모든 인쇄/전자 자원을 통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검색결과는 6개의 카테고리(책/멀티미디어, 전자책, 저널/데이터베이스, 학술지논문, 국내외학위논문, 사이트내 검색)로 나누어 보여주며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더 많은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소장자료」검색에서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인쇄자원(도서, 학술지) 및 비디오, 컴퓨터파일, 악보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전자자료」검색에서는 학술정보원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 뿐만 아니라 구독하지 않는 전자자료까지 모두 검색할 수 있다. 소장자료의 경우 검색결과 화면에서 자료의 대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학술지논문 검색결과에서 "온라인 Full Text"를 클릭하면 온라인 원문파일을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문헌의 경우 홈페이지 상단「Service」메뉴의 원문복사 신청을 통해 문헌을 입수할 수 있다. 검색창 하단에는 각 자료유형별로 브라우징/검색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 도서의 대출 및 반납

가) 대출책수와 기간

구 분		대출책수	대출기간
학 부 생		15책	15일
대학원생	석사	30책	30일
	박사	40책	30일
연구원		30책	30일
시간강사		40책	60일
직원		30책	60일
교원		100책	90일
명예회원		15책	30일
회원제-동문회원		7책	15일
회원제-졸업생 연회원		7책	15일
회원제-일반회원		7책	15일

※ 휴학생은 도서대출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책수와 기간은 재학생과 동일

나) 대출•반납 절차

(1)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를 학술정보원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하고 대출상황을 확인한다.

(2) 대출가능한 도서는 직접 서가에서 찾아 이용자 ID카드와 함께 대출데스크에 제시하여 대출하거나 자료실 내 무인대출기에서 할 수 있으며, 연체도서 또는

미납 연체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할 수 없다.

(3) 대출한 도서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다) 대출연장 및 예약

(1)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의 반납예정일 이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 신청은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My Library”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연장하려는 도서가 이미 예약되었거나 이용자에게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연장을 할 수 없다. 연장기간은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장되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가 이미 대출되었을 경우에는 학술정보원 검색시스템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한 도서가 도착하면 신촌캠퍼스는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 서비스 데스크,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 데스크 서가에 3일간(도착일 포함) 보관된다.

라) 연체료 부과 및 변상

(1) 대출한 도서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체도서 1책 당 1일 100원(단, 음악대학 도서실 및 멀티미디어센터의 관내 열람 자료는 1시간 1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재학생은 대출이 정지되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모든 증명서류의 발급이 중지된다.

(2) 대출한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촌캠퍼스는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 서비스 데스크,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 데스크에 신고한 후 동일도서 또는 유사도서로 변상해야 한다.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술정보원 규정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마) ID카드(학생증) 분실신고

(1) ID카드(학생증)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술정보원과 은행에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ID카드(학생증)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6) 학술정보 서비스

가) 참고정보서비스

학술정보원에서는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학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술정보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이용방법 및 학술정보 활용교육을 시행하여 연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지정도서 서비스

학술정보원에서는 수업계획서에 수록된 주/부교재 중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러 명의 수강생들이 함께 이용하여야 하는 자료를 지정도서로 지정하여 짧은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도서는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 서비스 데스크,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 데스크 서가에 별도로 비치되어 있으며, 각 데스크에 문의 후 이용할 수 있다.

다) 문헌복사•상호대차 서비스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외 다른 기관에 문헌의 복사를 의뢰하여 FAX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복사한 자료를 입수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신촌 지역의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도서관 및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가 참여하고 있는 5개 대학 학술정보교류협의회 소속 도서관, 숙명여대 도서관 등과 자료 상호 대출 협약을 맺고 각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을 서로 대출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는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협정기관의 도서도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도서관에 없는 국외 자료는 세계 최대 학술 정보망인 미국의 OCLC, 독일의 Subito 및 일본 국회도서관 등과의 문헌복사와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외국 도서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제공하고 있다. 문헌복사 및 상호대차 신청 자료가 도착하면 신촌캠퍼스는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 서비스 데스크,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 데스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단행본 상호대차 비용 전액과 국외 상호대차 및 국내외 문헌복사에 드는 비용의 50%도 학술정보원에서 지원한다.

라) 자료구입신청 서비스

학술정보원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의 '자료구입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구입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도서가 학술정보원에 입수되면 신청자의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구입신청자료 도착 통보가 자동 발송된다. 자료구입신청을 통해 이용자들은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술정보원 장서 개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마) 우선정리요청 서비스

학술정보원에 입수되어 정리 중인 자료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우선정리요청이 있을 시 가능한 한 24시간 내에 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우선정리요청은 검색한 자료의 도서상태가 '정리중'일 때 '자료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리 완료 후에는 요청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일반 예약자료와 동일하게 예약 권한이 부여된다.

바) 신촌-국제캠퍼스 도서배송서비스

각 캠퍼스 도서관의 소장도서를 본인이 소속된 캠퍼스의 도서관으로 배송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검색결과에서 소장정보 화면의 예약 컬럼에 빨간색의 “캠퍼스 대출” 아이콘이 나타나는 도서의 경우 캠퍼스 도서배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48시간 이내이다. 배송도서 수령장소는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의 인문자료실 서비스 데스크 및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의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이다. 단, 국제캠퍼스의 신간도서, 강의도서, RC추천도서 등은 도서 배송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사) 장애인을 위한 One stop 서비스

서가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학술정보원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서 열람하고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전용 One stop 서비스를 신촌캠퍼스는 중앙도서관 1층 출입관리 데스크에서,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 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는 신촌캠퍼스에는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과 4층 과학기술자료실 내 장애학생열람실과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5층의 Research Commons에 있으며,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6층 장애학생 열람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내 6층 장애학생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데스크에서 사전 등록 후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아) BookSNS ‘Yonbook’ 서비스

학술정보원은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로 모바일 BookSNS 앱인 Yonbook을 개발하여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Yonbook’에서는 개인 대출 기록을 확인하고, 대출중인 자료를 간편하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대출한 자료에 서평을 작성하여 개인 독서 기록을 정리할 수 있으며, 나만의 컬렉션 구성을 통해 개인 연구자료를 관리하거나 교수의 경우 강의자료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다. 도서 반납 예정일, 도서관 공지사항 등 각종 도서관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 동문 서비스

동문회 평생회비 납부 동문들에게 도서대출 및 소장자료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문들은 7책/15일의 기한으로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복사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고도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논문 등의 학술정보원 소장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차) 타 도서관 이용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http://library.yonsei.ac.kr)에서 '타도서관 열람의뢰서'를 출력하여 학생증과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학술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협정"에 따라 이화여대, 서강대와 홍익대는 학부생부터,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는 대학원생에 한해서 열람의뢰서 없이 우리 대학의 학생증만으로 자유롭게 해당 대학의 도서관 출입과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다.

특별히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학술자원 공동활용 및 ICT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2018.5.)에 따라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을 제외한 고려대학교의 모든 도서관(안암/세종)의 시설 및 자료를 해당 신분(교원/학부/대학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자원 교외접속(e-book 포함), 자료구입 신청, 상호대차, 원문복사 및 기타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한 시설의 이용에는 제한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도서관 이용증이 필요하며, 매 학기 선착순으로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전임교원은 제한 없음). 신청방법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상단의 'Services → 신청/예약 → 고려대학교 도서관 이용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분관 안내

1) 음악도서관

1992년에 개관한 음악도서관은 음악대학 신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악 관련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악보, CD, DVD 등 모든 음악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음악 전문 도서관이다. 소장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음악 감상석과 일반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다.

2) 법학도서관

2002년에 개관한 법학도서관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6층에 위치하고 있다. 법학 관련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도서, 학위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법학 유관 분야 및 로스쿨 특성화 분야의 다양한 장서와 UN 기탁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실 내에 자료열람석과 정보검색 PC석, 스터디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법학주제전문사서로부터 학술정보상담, 법학분야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등 전문적인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언더우드기념도서관

국제캠퍼스에 위치한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은 2013년 4월 개관하였으며, 최첨단 설비와 함께 Art Gallery, Creative Talks, 창의열람실, 사색소파 팡세 등 이용자의 창의성 함양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과 RC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8. 정보통신서비스 안내

연세대학교는 학내 구성원들이 교육, 연구, 행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깨어있는 IT캠퍼스 구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학사/행정정보서비스

▶ 학사정보서비스

연세포탈 학사정보 서비스	[URL] 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대학/대학원) / 고위자과정 - 학생 서비스 [학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학위, 의료원 의、치、간호] • 개인신상 정보 조회 및 변경 • 성적 정보 조회 • 휴복학 신청 및 결과조회 • 영어인증제 입력 및 조회 • 교육과정, 수강편람 및 강의시간표 조회 • 과제물 조회 • 수강신청 및 결과 조회 • 강의평가 • 교직 이수 신청 및 결과 조회 • 면담 신청 • 전공신청 및 결과 조회 • 학생활동 경력 조회 • 생리결석계 출력 • 캠퍼스내 복수전공 신청 및 결과 조회 • 캠퍼스간 소속변경 신청 및 결과 조회 • 파견프로그램 신청(ESP/VSP/SAP/GIP) 및 결과 조회 • 등록금 조회, 고지서 인쇄 및 등록 • 등록금 분납 신청 • 장학금 신청 및 결과 조회 • 졸업예비사정 및 졸업심사결과 조회, 졸업신청 및 결과 조회 등 • Y버스 예약 신청 • 기숙사 신청 - 교원 서비스 • 교육과정, 수강편람 및 강의 시간표 조회 • 수업계획서 등록 • 출석부 출력 • 강의 교과목 수강생 자료 생성 • 과제물 등록 • 성적평가 • 강의평가 결과 조회 등 - 직원 서비스 • 학적관리 • 휴복학관리 • 전공관리 • 교과관리 • 교직관리 • 수강관리 • 성적관리 • 강의평가 관리 • 학생면담관리 • 학생활동관리 • 대학원 입시 관리 • 방사선 종사자 안전관리 • 파견프로그램관리

	• 등록관리 • 장학관리 • 병사관리 • 논문심사관리 • 영어인증제관리 • 졸업관리 • 증명발급 관리 • 버스예약관리 • RA관리(원주) • 자원봉사 관리 • 학위가운 세탁·보관료 관리 • 기숙사 관리

▶ 행정정보서비스

그룹웨어 서비스	- 교직원 • 공문수발신, 전자결재, 외부행망 전자문서 유통 • SMS / FAX / 연세메신저 [URL] http://portal.yonsei.ac.kr -> 행정정보시스템 -> 그룹웨어(uDesk)
일반행정 서비스	- 교직원 • 인사관리 • 재무회계 • 예산관리 • 구매관리 • 시설관리 [URL] http://portal.yonsei.ac.kr -> 행정정보시스템 -> ERP 행정업무
기부금관리 서비스	- 교직원 • 약정관리 • 입금관리 • 영수증관리 [URL] https://donasys.yonsei.ac.kr/donasys
교원업적평가 서비스	- 교원 • 연구업적 • 교육업적 • 봉사업적 [URL] http://portal.yonsei.ac.kr -> 행정정보시스템 -> 교원업적평가

나. 인터넷 서비스

연세클라우드 메일 서비스	- 연세 클라우드 메일 서비스 • URL : http://mail.yonsei.ac.kr - Gmail 기반의 메일서비스, 무제한 사용용량 제공 • 사용안내 : http://ycm.yonsei.ac.kr • 문의처 : sysop@yonsei.ac.kr (교내 ☎ 6415)
인터넷북 서비스	- 다양한 문서(HWP, DOC, PDF 등)를 웹에 배포 가능한 전자책 형태로 변환하는 도구 서비스 • URL : http://ibook.yonsei.ac.kr (교내 ☎ 6415)
DNS 신청 서비스	- 교내 기관, 연구실 등의 서버에 Domain Name을 부여하는 서비스 • URL : http://portal.yonsei.ac.kr 접속 후 [대여종합서비스] → [DNS서비스 신청] • 문의처 : network@yonsei.ac.kr (교내 ☎ 3411)

IP-Address 신청 서비스	- IP-Address 서비스 • 신청 : http://portal.yonsei.ac.kr 접속 후 [대여종합서비스] → [IP Address 신청] • 문의처 : network@yonsei.ac.kr (교내 ☎ 3411)
무선인터넷 서비스	- 교내 공공장소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교직원, 학생 : 학사포탈 ID/패스워드 사용 • 이용안내 : http://yis.yonsei.ac.kr 접속 후 무선인터넷 참조 • 문의처 : 학술정보관 2층 ICU 라운지 IT HelpDesk(교내 ☎ 4971~3)

다. IT Help Desk 서비스 (IT민원 접수 / 처리)

IT 민원 처리 내용	- PC H/W 일반 민원 - 유/무선 네트워크 설정 및 사용안내 - 행정정보, 학사정보, 인터넷, 정보보안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기타 IT 관련 민원 처리 - 소프트웨어 대여 서비스 ※ 캠퍼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제품 MS Windows 및 MS Office (연구/행정/업무용 한정 계약) 한글 제품군 통계패키지 (SPSS / SAS) PC 바이러스 백신 (V3, 알약) Adobe제품군
서비스 이용 방법	- 방문상담 : 학술정보원 2층 IT HelpDesk - 홈페이지 QnA : http://yis.yonsei.ac.kr -> [안내/문의] - E-mail 문의 : helpdesk@yonsei.ac.kr - 전화상담 : ☎ 2123-4971~3

라. 정보보안 서비스

통합 보안관제	-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해킹 및 위/변조 사고 신고 -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개인PC 인터넷 차단 여부 확인 - 문의처 : security@yonsei.ac.kr (교내 ☎ 6418)
보안시스템 정책 요청	- 연구 및 업무처리 중 보안장비 정책 변경 요청 • 신청방법 : http://yis.yonsei.ac.kr 접속 후 [보안정책신청] - 문의처 : security@yonsei.ac.kr (교내 ☎ 6476)
개인정보	- 학내 연구 및 업무 활동 중 개인정보 침해 시 신고

침해신고	- 개인정보침해사고 처리 과정 • 학내 조치 가능한 경우 신고 접수 → 학내 조치 → 조치 결과 통보 • 학내 조치 불가능한 경우 신고 접수 → 상위 정부 기관에 신고 → 조치 결과 통보 - 개인정보보호담당관 : privacy@yonsei.ac.kr (교내 ☎ 8500)

마. 전화 서비스

전화안내 서비스	- 학교 기관의 전화안내 및 교직원의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 교외 : 1599-1885, 2123-2114 • 교내 : 114
전화서비스	- 행정기관 및 대학(원) 등 교내 기관에 구내전화 (IP전화, 디지털전화, CID전화) 및 KT일반전화 설치 서비스 - 신청 방법 : ERP행정정보서비스 접속 후 [시설/비품] → [수리요청] → [요청추가] → [수리유형-전화 및 네트워크] → [요청내용 입력] → 결재문서작성 - 문의처 : 백양관 N616호 (교내 ☎ 3712)
부가서비스	- 각종 통신 서비스 • 음성사서함 / ARS서비스 • 컬러링 서비스 • 팩스서버 서비스 • FAC (Forced Authorization Code) 이용 시외, 국제통화 서비스 - 이용방법 • 신청 : http://yis.yonsei.ac.kr 접속 후 [IT SERVICE] → [FAC]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인비로 사무실 제출 • FAC 사용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 : http://yis.yonsei.ac.kr 접속 후 [IT SERVICE] → [FAC] → 조회 및 영수증 출력 • 문의처 : 백양관 N616호 (교내 ☎ 3712)

바. 연세 전산망(YS-NET)

연세전산망(YS-NET)은 연세대학교 캠퍼스(의료원 및 원주캠퍼스 제외) 내에 설치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말이다.

유선 네트워크 서비스는 1989년 6개 건물을 FDDI 네트워크로 연동하여 서비스를 시작, 1994년 10개 건물로 확장 개통하였으며, 1999년에 622Mbps ATM Switch를 백본으로 구성

하였다. 2004년 10G 백본장비를 확장 구축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0G 백본장비로 구성하여 37개의 서브백본 영역과 34개의 분산 영역으로 네트워크 재구성 및 70여개 건물에 총 750여대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였다. 유선 인터넷 대역폭은 1993년 56kbps로 시작하여 2018년 총 5G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발전되었다.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는 2003년 KT와 무선인터넷(KT Nespot)임대 서비스를 300대 AP를 설치로 시작하였으며, 2006년 502대 AP로 확대 구축하였으며, 2011년 650대 AP로 확대 구축하였다. 2016년 LGU+와 약 2,500대 AP로 확대 구축하여 교내 전체 강의실 및 공용 공간, 주요 옥외지역에서도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 2만 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 대역폭은 2003년 56kbps로 시작하여 2018년 총 3.5G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발전되었다.

[연세 전산망(YS-NET) 신촌캠퍼스 현황]
- 백본영역 : 총 10개 건물에 40 Giga 장비 설치, 총 27개 건물에 10 Giga 장비 설치
- 분산영역 : 총 34개 건물에 1 Giga 장비 설치
- 단말영역 : 교내 약 70여개 건물에 총 750여개의 Giga 장비 설치
- 일반 사용자 : 100M~1Gbps dedicated (약 25,000 Port)
- 인터넷 연결 : 교육전산망(KREN) : 5Gbps
  무선인터넷(LGU+) : 3.5Gbps
- 기 타 연 결 : 미래네트워크연구시험망(KOREN) : 1Gbps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 : 1Gbps
- 무선네트워크 : 교내 약 60여개 건물에 약 2,700여개 무선 AP설치

9. 대학직장예비군연대

가. 창설배경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지방병무청 부대 편성인가 제1191호에 의하여 1981년 6월 18일 창설되었다.

나. 설치목적

1) 학문 전념의 기회를 증진
2) 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
3) 유사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동원태세 확립

다. 편성대상

1)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재입학, 편입학 학생만 편성 대상에 해당
   ※ 표준 재학기간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재학생(복수전공·부전공 포함), 재수강, 졸업(연기)유예자, 유급자, 논문과정 등록자, 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원격 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로 편성
3)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라. 신분상의 혜택 : 관련 법령에 의거한 방침일부 대상 (학생, 교수)

1) (재해)동원, 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보류
2) 교육훈련을 기본훈련 8시간으로 단축 시행
   ※ 비전임교수 및 일반직원은 방침일부 미적용 대상

마. 교육훈련

1)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지역 수임군부대와 협조하여 실시
2)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하여 소집
3) 예비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의거한 법규보류, 방침전면 대상자의 경우 훈련 면제

바. 훈련과목

안보교육, 사격, 목진지전투, 시가지전투 등 전술훈련

사. 신상 변동에 따른 신고

1) 예비역 학생의 복학, 휴학 등 학적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서 자동으로 전입 및 전출 조치
2) 재학 중 메일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예비군 홈페이지 및 학사포탈의 개인정보 수정

10. 학생군사교육단(ROTC)

가. 창설 배경

대학 요청으로 양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가 합의하여 제반 시설 및 교재 등을 준비함. 육본 관계관이 교육에 필요한 모든 여건 충족 여부를 실사하여 설치 승인 및 인가(법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5조(대통령령 13311호. 1991. 2. 20.)

나. 이력

1) 1961. 6. 1부 : 제107 학도 군사훈련단 창설(국 일명(육) 제27호)
2) 1971. 6. 26부 : 제107 학생군사교육단으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5682호)
3) 1990. 9. 1부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군단 창설(국 일명 24262-37호)

다. 임무

1) 행정·대외부총장 직속 기관으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교내 교육 / 입영 훈련) 시행
2) 장교 인력 모집·홍보 및 획득(학군<남. 여>)
3) 전시에 일반대 학생에게 군사교육 조언

라. 모집 및 선발

학군사관(ROTC) 후보생

1) 지원 시기 : 매년 3월
2)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 제대군인(군필자) 응시 연령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 연장됨
   - 연세대 1, 2학년 남·여학생
     ※ 1학년은 사전 예비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
   - 수학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 기간 5년에 졸업할 수 있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 입단 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지원 시점 직전 모든 학기까지의 평점이 C 학점 이상인 자. 다음 해 3월에 3학년으로 정상진학이 가능해야 함(5년제 학과 등의 경우 4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어야 함)

※ 사전 선발(1학년 선발자)은 대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음

3) 선발방법

가) 학군사관 60기(2학년 남·여학생)

- 1차 선발(선발 정원 200%)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수능 또는 내신 성적
- 2차 선발(선발 정원 150%) : 체력검정 + 면접 평가
- 최종 선발(선발 정원 + 예비 30%) : 신체검사, 신원 조사를 적용하여 종합성적순으로 선발

나) 학군사관 61기(1학년 남·여학생)

- 1차 선발(선발정원 200%) : 필기고사 + 수능 또는 내신 성적
- 2차 선발(선발정원 150%) : 체력검정 + 면접 평가
- 최종 선발(선발정원) :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적용하여 종합성적순으로 선발

구 분	계	1 차 선 발			2 차 선 발	
		필기고사	대학성적	수능·내신 (선택)	체력검정	면접 평가
60기	1,000	200	100	200	100	400
61기	900	200	-	200	100	400

4) 지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기간 : 3. 1.(금)~3. 31.(일)
- 인터넷 접수 방법 :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 “접수하기”

※육군학생군사학교(www.armyofficer.mil.kr) 홈페이지 학군사관 선발 팝업 이용

5) 최초 지원 시 학군단에 제출하는 서류 : 4. 1.(월), 17:00 한

가) 지원서 / 자기소개서 1부

※ 지원서 양식(육군학생군사학교 팝업)에 세부사항을 기록 후 제출

나) 고교 생활기록부 원본 1부 (고교 과목별 내신 성적, 출결 사항 확인)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표 각 1부
- 외국 고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와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다) 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 (확인용 성적증명서) ☞ 61기 응시자는 제외

- 성적표에는 전(全) 학년 포기학점(F 학점)이 포함된 이수학점, 평균 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편입생의 경우, 이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

라) 수능 성적 증명서 원본 1부(수능 성적 선택 시 제출)

-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시스템(KICE)」 출력물 제출

마) 증명사진(3×4cm, 컬러,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2매

- 지원서(1) : 직접 부착 후 제출 / 수험표(1) : 학군단 제출

바)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자필 서명)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군사관 선발 팝업 지원서 양식에 포함

6) 2차 합격자가 학군단에 추가 제출하는 서류 : 6. 19.(금), 17:00 한

가) 신원진술서 1부 : 자필 또는 전산작성 가능(반드시 본인 서명)

- 사진 부착 : 3×4cm, 컬러,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나) 자기소개서 1부 : 워드 또는 수기 작성 가능

- 구체적으로 작성(예 : 척추 수술, 인대파열 등 과거 병적 기록 상세히 기술)

다)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최초 제출 양식과 다름, 자필 서명)

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軍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각 1부

- 모든 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www.armyofficer.mil.kr) 내 '학군사관 선발 팝업' 혹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 훈련

1) 교육 훈련은 기초군사훈련, 교내교육, 전투지휘자훈련(3·4학년 중 1회 선택), 야전 지휘자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2) 기초군사훈련은 학군사관 후보생 생활의 조기 적응력을 배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학년으로 진학하는 1월 중 4주간 학생 군사학교(괴산)에 입영하여 실시
3) 교내 교육은 3~4학년 학기별 40시간씩 학군단에서 강의 위주 교육

바. ROTC 지원 상담 센터

- 위치: 신촌캠퍼스 학군단 (남문 쪽 대운동장 옆 건물)
- 전화: 02-2123-3677 (평일 08:00~17:00)

11. 체육활동

우리 대학교 체육의 전통은 오랜 역사와 찬란한 업적의 기반위에 세워져 있다. 특히 사학의 교육기관인 본 대학교의 체육에 대한 사명과 공로는 일제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못 크다. 과거 일제의 탄압 밑에서 이 학원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정신을 고무하는 항일운동의 방편으로 삼아왔었고, 해방 후에는 학교 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

헌하는 한편 민족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국의 체육인을 배출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가. 체육위원회의 설치

사립대학으로서의 체육에 대한 본 대학교의 사명과 지(知), 덕(德), 체(體)의 교육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지(知)를 담당하는 교무처, 덕(德)을 담당하는 학생처와 더불어 체(體)를 담당하는 체육부를 1962년 8월 17일자로 독립된 직제로 신설하여 본 대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의 뒷받침은 물론 주로 5개부 운동선수의 엘리트 체육 육성을 발전시켜 나아가 대학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독립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범위와 수행업무 등 부속기관으로서 위상이 걸맞지 않아 2004년 11월 체육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운동부의 관리

5개부 운동부는 체육위원회에서 관리하며 한국체육계의 지도자를 배출한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수선수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현재 5개부(연.고전종목)는 다음과 같다.

1) 축구부 2) 농구부 3) 야구부 4) 아이스하키부 5) 럭비부

단, 5개부와 기타부는 재학생이면 누구나 자기의 운동소질과 취미를 기르기 위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생처 동아리에서 모든 활동을 장려 관리하고 있으며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유도부 2) 태권도부 3) 펜싱부 4) 역도부 5) 테니스부
6) 조정부 7) 검도부 8) 빙상부 9) 승마부 10) 스킨.스쿠버부
11) 미식축구부 12) 스키부 13) 수영부 14) 산악부 15) 골프부

다. 체육위원회 활동에 있어서의 주의

1) 출전범위 : 우리 대학교 운동부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출전범위는 대학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대회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한국 대표선수 선발전에도 출전한다.
2) 선수의 자격 : 우리학교의 운동선수는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3) 운동연습 : 각 운동부의 운동연습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후부터 실시한다.

라. 체육행사

우리 대학교 체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체질향상과 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가지고 있다.

1) 연·고대 친선경기 : 한국의 대학 체육계에서 있어서 가장 오랜 전통과 깊은 의의를 가지고 개최되는 연.고대 친선경기는 두 대학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 및 연고자가 함께 모여 평소에 기른 정신, 기술, 학풍을 일반에게 공개 전시하면서 두 대학 친선

의 유대를 강화하는 행사로서 근래에 와서는 두 대학교 뿐 만 아니라 전국민 주시 하에 거의 서울시민의 행사와도 같이 거행되는 가장 큰 행사이다.

이 경기종목은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및 럭비의 5개 종목이며 참가선수의 자격은 (1) 등록된 재학생으로 (2) 본 대학의 운동단체의 선수로 이중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이라야 한다.

2) 국제친선경기 : 우리 대학교 체육위원회에서는 체육을 통하여 외국 학생과의 교류와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의 게이오(慶應) 대학과 축구, 빙구, 농구 교환경기를 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스포츠 교류 및 교환경기를 실시하고 있다.

3) 교내 체육대회 : 교내 체육대회는 총장배를 놓고 연세의 온 가족이 모여 각과별, 또는 각 단과대학별 대항으로 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연세의 기백을 과시하고 체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마. 수영장

수영장은 교양수업 및 전공수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잔여시간을 이용하여 학내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업과 건강증진을 위해 쾌적한 환경과 최고의 수질을 제공하고 있다. 수영장은 체육교육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풀장규격이 25×9m 4레인으로 되어 있다.

1) 자유 수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08:00 - 09:00
. 오후 17:00 - 18:30
※ 자유수영 시간은 교양수업 및 전공수업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입장료

구 분	일회 요금	월 정액권	비고
학 생	3,600원	55,000원	
교직원	4,800원	69,300원	

3) 접수방법 및 이용불가

. 교직원신분증 및 학생증으로 선충전하여 결제하거나 신용카드(BC)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는 불가함

. 퇴직교직원 및 졸업생은 이용불가

바. 연세체육회

연세체육회는 우리 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체육단체를 말하며, 우리 대학교에 체육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한국 체육의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연세체육회는 모교의 체육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적인 면의 협조와 아울러 제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 연세휘트니스센터

연세휘트니스센터는 스포츠과학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약 300여 평으로 유산소, 근력운동장비(머신/프리웨이트)를 세계 최고 휘트니스 회사인 Technogym, Life Fitness사의 기구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녀 샤워실 및 탈의실 시설을 갖추고 회원들에게 개인 락커, 일일 락커 및 수건을 제공합니다. 연세대학교 휘트니스는 회원들의 운동 목표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신시설과 최첨단 장비를 갖춰 안전하고 체계적인 최상의 운동환경을 제공합니다.

1) 교 육

매시간 전문 트레이너들이 근무하여 연세인들의 체지방 및 체중감량, 근력과 근지구력 증가효과를 목적으로 지도하며, 초보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상담과 체계적인 지도로 만족도 높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희망자에 한해 2회까지 교육가능하고,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예약 부탁드립니다.

2) 접수 및 등록

접수방법	매월 마지막 주 방문접수 (스포츠과학관 2층 휘트니스 센터) - 학생증, 교직원 신분증 지참 필수 -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 졸업생 이용불가 ** 현금 결제 및 무통장 입금 불가

3) 이용시간

	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
학기 중	07:00 ~ 22:00	08:00 ~ 17:00
방학	08:00 ~ 20:00	08:00 ~ 17:00

* 일요일, 공휴일: 휴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02-212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1) 설립목적 및 배경

생활체육의 보다 넓은 사회적인 발전과 폭넓은 정착을 위하여 198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체육청소년부 (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에 따라 국가 공인 3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체육관련학과 및 체육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필수 자격인 3급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실기 및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담당업무

* 체육지도자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부여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자질 향상 도모
* 기본적 소양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체육지도자 양성
* 생활체육활동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지도자 인적자원 확보
*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3)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학교 체육관 B107호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TEL : 02)2123-6582

12. 신앙활동

본 대학교는 기독교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고, 신앙생활과 그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위한 행사에 대해 학교 당국은 적극적인 후원과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게 교회활동의 기회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 목 실

교목실은 연세대학교 건학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연세대학교에 구현하기 위하여, 종교위원 및 전공별 신앙지도교수들과 더불어 각종 선교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기관이다. 채플, 강의, 상담, 기독학생 동아리 지도, 성경공부, 대학교회, 삼애교회 등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가. 교목실 주요 업무

1) 신촌/국제캠퍼스

가) 학부 채플

(1) 채플은 일반적으로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내외 강사가 초빙된다. 신촌캠퍼스에서는 화요일과 수요일 2, 3교시에 일반채플을, 수요일 5교시에는 UIC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영어채플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1학기부터 수요일 10교시에 기독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채플이 진행된다. 국제캠퍼스에서는 2014년도 2학기부터 화요일 2, 3교시는 영어채플로, 수요일 2, 3교시는 찬양채플로, 목요일 2, 3교시는 일반채플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

(2) 한 학기에 2~3회는 실험채플을 실시한다. 현재 실험채플은 무용, 음악, 연극, 뮤지컬과 같은 문화채플 및 대화채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형식을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3) 학부 공통기초 교과목 채플에 대한 학점화 전환 시행

- 2015학번부터 0.5학점화하여 재학중 2학점 이수(4Pass) 의무화
-“P”(Pass) 또는 “NP”(Non-Pass)로 평가
- 학기당 한 강좌만 수강신청 가능
- 재학 중 총 4회 Pass까지만 수강가능(편입생의 경우 총 2회)

나) 대학원 채플

(1) 일반대학원 채플(1학점)

2012-2학기부터 1학점 과목으로 개설하여 매주 수요일 12:00 루스채플 예배실에서 실시

(2) 특수/전문대학원 채플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은 매학기 1회 채플 실시

2) 원주캠퍼스

가) 원주캠퍼스 학부채플: 매주 수요일 2교시~4교시까지 정의관 대강당에서 교내ㆍ외 강사를 초빙하여 말씀을 전하며, 한 학기 3~4회는 문화채플로 진행한다.

나) 보건과학부 야간채플 : 보건과학부(야간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19시 백운관 121호에서 실시 (학기당 4회)

다)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채플 : 과학기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이천하이닉스)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 2회 실시 (중간.기말시험 기간 중 오전/오후 각1회)

라) 원주의과대학 학생채플 (장소: 루가홀)

매주 수요일 (11:30-12:20): 의예과, 간호학과 및 치위생학과
매주 수요일 (17:00-17:50): 간호학사학위특별과정

나. 선교프로그램

1) 신촌/국제캠퍼스

가) 언더우드기념사업회

언더우드기념사업회는 2000년 조직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설립자이자 한국 근대화 초기선교, 봉사 및 교육을 통해 국가 ·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언더우드박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언더우드선교상, 기념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음

나) 학원선교

점심나눔 식권지원, 연세아카펠라성가제, 기숙사 선교, 학생상담, 기독동아리 지도, 기독동아리 학원선교사역자 모임지원, 신입생 신앙 오리엔테이션, 학생 선교대회, 기도실 운영 등

다) 교직원 목회

교직원수양회, 연세직원캠프, 연세가족예배, 교수성서연구, 직원성서연구, 연세복음선교회, 신앙지도교수 워크숍, 교수중창단 지원 등

2) 원주캠퍼스 I

가) 학생상담 : 학교생활, 신앙문제, 종교 및 가치관 등 면담, 전화, 인터넷과 전자우편으로도 상담하고 있다. 특히 교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나) 기도실 및 대실운영 : 기도실은 원주생활관에 3실, 대학교회 3층에 1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수요찬양예배 : 학기 중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수요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목실 후원, 새노래로찬양단 주관)

라) 기독새내기맞이 오리엔테이션 :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독인 신입생을 맞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고 있다. (교목실 후원, 연세기독학생연합회 주관)

마) 신앙강화주간 : 1년에 1회, 교계의 저명한 강사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배울 수 있는 기간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특별신앙 집회를 갖는다.

바) 기독문화주간 : 원주캠퍼스 교내 일원에서 교직원 및 각종 기독 단체, 각 학과 기도모임 등이 모여 문화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목실 후원, 연세기독학생연합회 주관)

사) 교회음악경연대회 : 1년에 1회, 선교단체, 학과 기도모임이외에도 교내 많은 학생

들이 참가하고 있는 대회로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교목실 후원, 연세기독학생연합회 주관)

아) ‘Leadership 훈련’ 수련회 : 매년 2회(방학 중)에 걸쳐, 각 기독단체들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Leadership'을 이해 개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기독학생 연합회’(연기연) 후원 : 교내의 다양한 기독 동아리 연합체인 ‘연세기독학생연합회’가 학원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격려, 협력한다. 연합예배, 연합기도회를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다.

차) 기독학생 동아리 및 단체 지원 : 중앙동아리 새노래로 찬양단을 비롯한 선교단체 등 각 기독학생들의 신앙 지도 및 활동지원 및 선교단체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카) 원주생활관 교목파견 : 각종 상담 및 예배모임(입사예배, 퇴사예배), 각종 유익한 행사를 진행함(학사별 나눔방 운영, 생활관 문화탐방, 외국인 학생 간담회 등)

타) 대실운영 : 기독단체와 교내 각부서들의 예배, 소모임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소예배실을 연세대학교 공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관하고 있다.

파) 선교위원회 운영 : 교내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 교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단체의 선교활동을 금합니다.
(허용 선교단체 : CCC, DFC, IVF, JDM, JOY, CMF, 네비게이토, 인터콥, 이상 8개)

3) 원주캠퍼스 II (원주의과대학)

가) 신앙강화주간 부흥회

1년에 1회 신앙강화주간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앙성장을 돕고 있다.

나) 해외의료선교

(1) 해외의료선교 : 연 1회 해외의료선교를 통해 신앙훈련 및 의료선교를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머레이모임: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원주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 학기에 2회 선교사, 선교학자들을 초청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간으로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 외국인 유학생 목회

학기 중 2회 외국인 유학생과의 간담회, 여가활동 등을 통해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상담한다.

라) 정기적으로 기독동아리 임원 및 간사 간담회를 갖고, 기독인 새내기 나눔터를 운영한다.

다. 기독교 교과목

1) 학부

가) 공통기초 교과목

(1) 기독교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통기초(필수) 과목으로「기독교와 현대

사회」,「기독교와 세계문화」,「성서와 기독교」 중 한 과목(3학점)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2) '기독교의 이해' 과목은 채플과 더불어 연세설립정신을 함양하는 두 기둥으로서, 선교정책 과목이라 할 수 있다.

(3) 원주캠퍼스는「기독교와 현대사회」,「성서와 기독교」,「기독교 역사와 문화」,「기독교와 과학」4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학교양 교과목:「기독교윤리와 사회적 책임」

2) 대학원(공통)

가) 현대사회와 기독교

나) 기독교와 문화

라. 종교위원회

종교위원회는 우리대학교의 창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에 관한 일들을 협의, 자문하는 기구로서, 각 대학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들로 구성되며, 교목실은 연중 업무사항을 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마. 대학교회

1) 신촌캠퍼스 대학교회(http://church.yonsei.ac.kr)

1931년 연희전문학교 시절 초교파적 성격의 교회로 시작된 대학교회는 루스채플에 위치하고있다. 연세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 학생과 졸업생,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매주일 오전 11시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 오후 2시 대학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수요일 오후 5시 수요중보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대학교회는 학원선교를 주력하여 국제캠퍼스를 대학교회에 통합, 이전 국제캠퍼스 대학교회의 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6월에는 생활협동조합과 동문회, 동문기업이 참여하는 아나바다 자선바자회를 통해 학원선교를 위한 목적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목실에서 운영하는 점심 나눔 프로젝트에 매학기 1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10명의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학원선교의 일환으로 연세기독학생연합회(연기연), 통일한마당, 선교사 자녀모임(YMK) 등에 정기적인 후원(수련회비, 매달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선교 차원에서는 미혼모 자립시설인 애란원을, 국외선교 차원에서는 방글라데시 환자들의 수술비 지원과 함께 필리핀 선교사 두 분을 지원하고 있다.

(☎ 02-2123-7360~1)

2) 국제캠퍼스 대학교회

2013년도 10월부터는 새롭게 완공된 크리스틴채플(C.S. Kang Chapel)에서 영어와 한글이 탄력적으로 혼용되는 젊고 참신한 예배를 드리다가, 2017년 신촌캠퍼스 대학교회와 통합되어 '대학교회 대학부(국제)'가 되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매주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으며, 예배 후 점심, 친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한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크리스틴채플. (☎ 032-749-2801)

3) 원주캠퍼스 I (장소 : 대학교회 대예배실)

원주캠퍼스 대학교회는 1981년 4월 17일 금요대학생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 2001년부터 정의관 대강당에서 예배 드렸으나, 2009년 2월 대학교회가 준공되면서 대학교회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대학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를 표어로 대학교회를 통하여, 캠퍼스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기여하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

가) 주일예배 : 매주일 11:00-12:10

나)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 매주일 11:00-12:00

다) 주일열린예배 : 매주일 오후 2시에 대학교회 대예배실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뜨거운 찬양과 감동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 수요찬양예배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대학교회 대예배실

마) 아침기도회 : 학기 중 매일(월~금) 7:00-7:30, 기도실

바) 대학교회 목장운동 모임 : 학기 중 매주일 15:00-16:00까지 대학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과 학생들의 신앙성장과 나눔을 위해 목장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사) 대학교회 동아리 및 단체 지원 : 대학교회의 예배를 섬기고 있는 한울림 찬양대, 에브라임 찬양단 외 각 기독학생들의 신앙 지도 및 활동을 지원한다.

아) 선교지원

- 연세나눔의 손 : 원주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 지원(강원도 공동 모금회)
- 선교사 지원 :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중앙아시아), 김기원(연변과기대)
- 학과기도모임지원, 학생단체 활동지원

4) 원주캠퍼스 II (장소 : 원주의과대학, 루가홀)

가) 주일예배 : 주일 오전 10시 50분 루가홀

나)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 주일 오전 10시

다) 성경공부반 : 월요성경강좌(매주 월 18시, 교목실)
화요성경공부(신앙독서연구모임)
대학부 모임(매주 일 12시 40분, 의학관 111-1호)

라) 대학교회 찬양팀 : 매주일 대학교회 예배 전

마) 기도실 운영 : 기숙사 2층, 의학관 지하 1층 두 군데에 위치하고 있다.

5) 삼애교회(http://samae.yonsei.ac.kr)

독립운동과 농촌운동에 헌신했던 고 배민수 목사님의 삼애정신(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일산 삼애 캠퍼스에 세워진 "숨과 쉼이 있는 숲속의 교회"인 삼애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삼애교회는 2006년에 창립되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로 160-30 (☎ 031-975-1885)

바. 교목실의 위치

1) 신촌캠퍼스의 교목실장실(105호)과 교목실(103호)은 루스채플에 위치하고 있다.
2) 국제캠퍼스의 교목실은 크리스틴채플(105호)에 위치하고 있다.
3) 의료원 캠퍼스의 원목실장실은 종합관 6층(644호)에, 원목실은 새병원 6층에 위치하고 있다.
4) 원주캠퍼스의 교목실장실(324호)과 교목실(328호)은 대학본부에 위치하고 있다.
5) 원주의대의 교목실은 영빈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13. 보건기관

우리대학교에서는 서울캠퍼스 건강센터, 국제캠퍼스 건강센터와 원주캠퍼스 건강관리센터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차원의 진료 및 건강관리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건강센터(신촌캠퍼스)

1) 위치 및 시설

가) 위치 : 학생회관 2층 (Tel 2123-3345 ~ 9, 6649)

나)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17:20 (점심시간 12:00-13:00)

진료접수 마감 09:00-16:50

다) 시설 : 소장실, 팀장실, 사무 및 접수실, 진찰실, 처치/주사실, 약국, 치과, 진단검사실, 안정실, 심전도 및 체지방측정실, 회의실

라) 홈페이지 : http://yuhsc.yonsei.ac.kr

2) 주요 업무

1차 예방진료로 내과적인 진찰 및 투약, 예방접종, 외상치료, 건강상담, 재학생건강검사, 진단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체지방검사, 면역증명서 발급, 질병휴학 확인서 발급, 진료의뢰서 발급(세브란스병원), 구강질환예방을 위한 구강검사 및 스케일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 진찰실

(1) 가정의학 전문의로 내과적인 질환 및 상담과 진찰을 하며,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시 세브란스병원으로 진료 의뢰한다.(진료의뢰서 발급)

(2) 진찰 후 약, 진단검사, 예방접종 및 약물 주사를 처방한다.

(3) 면역증명서 발급

외국대학으로의 교환학생 또는 유학 시 필요한 면역증명서 발급은 진찰 및 상담을 거쳐 발급이 가능하다.

(4) 질병휴학 확인서 발급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진단명,치료계획,1개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진단서에 입원중이거나 거동할수 없다는 내용 기재시 보호자 방문가능)

나) 약 국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및 구급약(내복약, 외용약) 제공한다.

다) 처치/주사실

외상처치와 예방접종 및 처방 약물 주사를 한다.

[A형간염, B형간염, 인플루엔자, Tdap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폐렴, 자궁경부암, 수막구균, 수두, MMR(홍역, 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라) 진단검사

진찰 후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적 진단을 요하는 경우, 연계된 외부기관에 검사 의뢰하며,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CBC검사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Diff검사, 당화혈색소(HbA1c)

(2) 생화학검사(간기능, 신장기능, 혈당, 지질, 통풍, 칼슘, 인, CPK, Fe, TIBC, CRP정량, Mg)

(3) 전해질검사(Na, K, Cl)

(4) 간염검사(A형, B형, C형, HBeAg/B형간염 항원 양성시 : 전염성검사)

(5) 갑상선기능, 수두, 홍역, 이하선염, 풍진

(6) 에이즈, 매독검사

(7) 암지표(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검사

(8) 혈액형검사

(9) 소변검사, 요배양검사
(10) 심전도(EKG) 및 체지방(Inbody)검사
(11) QUANTIFERON-TB Gold (결핵균 특이항원 IFN-r)검사

마) 치 과
구강보건예방교육 및 구강검사와 스케일링(치석제거)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바) 건강검사
보건비납부자에 한해 매년 학기 중 1회 씩 실시하며 무료로 제공한다.
신체계측, 혈압, 시력, 혈액검사(B형간염, 간기능, 혈당, 총콜레스테롤, CBC),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이 있다.

나. 건강센터(국제캠퍼스)

1) 위치 및 시설

가) 위치 : 국제캠퍼스 지혜관A 1층 (Tel : 032-749-2118~9)
월요일 - 금요일 09:00-17:20 (점심시간 12:00-13:00)
진료접수 마감 09:00-16:50
나) 시설 : 접수/처치실, 진찰실, 안정실

2) 주요 업무

내과적인 질환상담과 진찰, 투약, 외상처치 등을 제공하며, RC교육에 따른 응급상황 대비 응급 관리 체계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해 전담의사 1인과 간호사 1인이 근무하고 있다.

다. 건강관리센터(원주캠퍼스)

본 센터는 신촌캠퍼스 건강센터와 달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물적-인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의료기관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센터에서는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과 일반의약품 제공만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업무는 “건강공제회”(전화 033-760-5430)에서 담당합니다.
휴학관련 상담은 “교무부”(전화 033-760-2158)에서 담당합니다.

1) 위치, 업무시간, 홈페이지

가) 위 치 : 원주캠퍼스 학생회관 2층 212호(033-760-2641)
나) 업무시간 : 월~금, 09:00~17:20 (점심시간 12:00~13:00)
다) 학교의사 상담시간 : 학기중 주 2회, 별도공지
라)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yonseiwj.hcc

2) 인원구성

가) 센터장 : 물리치료학과 조상현 교수(재활의학전문의)

나) 학교의사 : 의학교육학과 예병일 교수

다) 직원 : 간호사 1명

3) 주요업무

가) 부서 페이스북을 통한 보건상식 계몽

나) 기초의료서비스: 건강상담, 상처치료, 일반의약품 제공, 시내 병-의원 안내

다) 의병(질병)휴학진단서 판정,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진료의뢰서 발행

※ 제외업무: 일반 병-의원 업무, 예방접종

4) 서비스 이용료

가) 학생, 교직원 모두 기본이용료 2,000원이 부과되며, 약품비 및 드레싱비용이 추가 됩니다.

나) 건강공제회원인 경우 약품비용 90%를 할인 받습니다.

5) 응급환자의 경우

가) 지체없이 시내 원주의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하기 바랍니다.

나) 단,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학관리료 및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센터 이용안내 참고)

6) 의병(질병)휴학을 위한 절차

휴학에 관한 일반문의는 아래 사이트를 읽은 후 학적과(033-760-2167)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http://www.yonsei.ac.kr/wj/support/college_admin2.jsp

가) 질병휴학 구비서류: 2차 진료기관(전문과목표기), 구체적 진단명, 치료계획, 5주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입원)가 기재된 “휴학용 진단서”

나) 기재사항이 부족한 진단서나 한의원-한방병원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음

다)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본 센터 학교의사와 상담 후 휴학여부 판정

라) 질병휴학은 학기말 시험 시작 일주일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7) 캠퍼스 주변 의원, 약국정보

가) 캠퍼스 내 3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및 위생용품을 판매함

나) 흥업사거리(4km 거리)에 의원 2개(평일: 오후7시, 토요일: 오후3시까지 운영), 약국 2개

다) 원주 이마트에 약국 1개,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근에 과목별 개인의원 10여개

14. 봉사활동

우리대학교 사회봉사는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학점인정 사회봉사과목, 지역사회 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등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고취하고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널리 전하고 있다.
글로벌사회공헌원 산하 사회참여센터에서는 사랑의 실천과 사회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연세공동체의 참여 극대화', '자원봉사를 통한 연세공동체의 사회적 영향력 극대화', '사회섬김 활동을 위한 재정 및 교육적 기반 안정화'로 사회봉사활동을 체계화·구체화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가. 주요업무

1) 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및 평가

우리대학교 봉사 프로그램의 특징은 독창성, 폭 넓은 사회적 영향력과 재정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탐색 프로그램(YDMC)과 교육소외지역의 교육캠프(연세희망원정대)를 들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월	봉사활동 프로그램
3월	서울시주관 동행프로젝트(동생행복도우미) 참가자 모집
	학생봉사팀장단(Volunteer Coordinator) 워크샵
	봉사동아리 신입회원 리쿠르팅
	1학기 사회봉사과목 오리엔테이션
	전공알리미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참가고교 선정
4월	해외봉사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공모전 응모(대사협)
	연세사회봉사상 예심 및 본심사
	봉사활동 기관 연계 및 자원봉사자 상담 및 Empowerment
5월	연세나눔문화축제 (버블버블나눔장터 등)
	한국장학재단 지식봉사사업 계획서 제출
6월	교육소외지역 중고등학생 교육캠프, 희망원정대 발대식
	사회봉사과목 연계활동 평가
	연세나눔백서 발간작업
7월	의료봉사활동(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케냐, 이디오피아 등) 하계 계절학기 사회봉사과목 오리엔테이션

월	봉사활동 프로그램
8월	농촌봉사활동
	연세-와세다학생 농촌봉사
	교육소외지역 교육캠프 활동
	에듀캠프
	하계 해외봉사활동(베트남)
	계절학기 사회봉사과목 연계활동 평가
9월	전공알리미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참가고교 선정
	2학기 사회봉사과목 오리엔테이션
	봉사 동아리 신입회원 리쿠르팅
10월	사회봉사과목 모니터링
	Change Agent(봉사동아리연합회) V-Forum 개최
11월	연탄배달자원봉사(서대문구 일대)
	2019학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12월	동계 사회봉사과목 OT
	동계 희망원정대(교육캠프) 발대식
	성탄절 이브 자원봉사 프로그램(인천 영흥도 해피타운)
1월	외부기관 연계 활동 봉사활동 기관 연계 및 자원봉사자 상담 및 Empowerment
2월	동계 해외봉사 활동(공학교육혁신센터)
	동계 계절학기 사회봉사과목 평가
	사회봉사과목 연계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2) 사회봉사과목 개설 및 지원

'사회봉사' 교과목은 학부 선택교양 '사회.윤리영역'에 개설되어 전교생이 학과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사전 기본교육, 8~15주(주당 2시간 이상, 총 30시간) 기간의 봉사활동, 기말평가교육을 거쳐 총 34시간 이상의 활동을 이행하면 학점을 부여받는다.

분반	교과목명	교수명
01	사회봉사(세브란스병원 자원봉사)	이숙자
02	사회봉사(자유선택 자원봉사활동)	남석인
03	사회봉사(희망원정대-선 봉사후 학점인정)	전흥재
04	사회봉사(동행프로젝트)	홍원표
05	사회봉사(한국어.한국문화를 통한 국제교류프로그램A)	유현경
06	사회봉사(한국어.한국문화를 통한 국제교류프로그램B)	김성조
07	사회봉사(함께나누는 세상A)	박진배
08	사회봉사(함께나누는 세상B)	김형관

분반	교과목명	교수명
09	사회봉사(함께나누는 세상C)	한인철
10	사회봉사(시각장애인 희망나눔교실)	나정은
11	사회봉사(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Peer-Mentoring Program)	유성은
12	사회봉사(드림 스터디 멘토링 "가람1004 봉사단)	정종훈
13	사회봉사(UIC 융합과학공학부 튜터링 프로그램)	김종학
14	사회봉사(드림 스터디 멘토링 "에델마을 봉사단")	정종훈
15	사회봉사(평화 만들기-위안부 사안과 관련하여)	정미현

3) 자원봉사 인증 관리

인증서 발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정기준에 맞춰 사회봉사 활동 내역을 검토하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구 분	봉사활동 시간	등급	발급 명의	비 고
자원봉사 인 증 서	100	백양	사회참여센터장	
	300	청송		
	500	자유		
	1,000	진리		
인증메달	1,000시간		총 장	자원봉사 1,000시간 인증메달

4) 학생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지원

사회참여센터에서는 'Change Agent(학생봉사동아리 연합회)' 및 교내 학생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멘토링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지속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NO	동아리명	활동분야	비 고
1	VC	봉사기획	
2	YDMC	전공탐색 봉사	
3	LIA	문화예술봉사	
4	IYC	외국인 학생 교류 및 지원	
5	Yonsei Global	외국인 학생 교류 및 지원	
6	연어알	사회봉사	
7	Mentors club	외국인 학생 교류 및 지원	
8	YNBLUE	교육봉사	
9	희망원정대 기획단	교육봉사	
10	게르니카	장애인권	
11	YRC	사회봉사	
12	세움	건축봉사	

NO	동아리명	활동분야	비 고
13	다솜	다문화가정 교육봉사	
14	로타렉트	사회봉사	
15	봉봉	플리마켓 봉사	
16	리듬오브호프	미디어봉사	
17	연그린	환경봉사	
18	헤이베리	사회봉사	
19	의청	의료봉사	
20	아우린DB	놀이봉사	

5) 외부자원 연계

사회참여센터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기관과 MOU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 기금을 유치해오고 있으며 베트남, 몽골, 네팔 등의 개발도상국 지역사회개발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국제적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6) 연세사회봉사상 및 홍보 업무

우리대학교는 교육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연세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봉사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활동을 격려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연세사회봉사상이 제정되었으며, 학교 창립기념일에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되어 시상하여 연세의 봉사정신을 증진하고 있다.

15. 학생건강공제회

가. 개 요

연세학생건강공제회는 학생들이 적은 비용 부담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특히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연세건강공제회는 199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학생직영의 연세학생건강공제회로 바뀌었다.

학생직영체제로 출범한 뒤에는 공제가능 의료기관을 전국의 모든 병원, 의원, 약국(2018년 9월 1일부터 약국공제 폐지)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시적으로 공제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휴학 및 교환학기 기간 동안에도 추가가입을 통하여 공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연세학생건강공제회 지정병원을 확보하여 운영해왔고, 교내 건강센터(원주: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건강공제회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관을 통한 사업 내용과 기구의 개괄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조직 및 기구

연세학생건강공제회는 법인격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비영리의료보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1) 이사회 및 이사

가) 이사회 - 공제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방침을 협의, 결정하는 운영기관으로 8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나) 이 사 - 공제회원인 학생대표 8인: 신촌학부생 대표 3인, 신촌대학원생 대표 2인, 원주학부생 대표 2인, 원주대학원생 대표 1인으로 한다.

- 건강공제회 이사장: 학부대표와 대학원 대표중 이사회가 호선하는 1인
- 건강공제회 부이사장: 신촌, 원주 대표 중 이사회가 호선하는 2인

2) 건강공제회 사무실

건강공제회의 사업을 담당하고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신촌 및 원주에 각각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또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상임이사 1인 총 4인으로 구성된 주요이사진은 사무실 업무에 참여한다.

다. 회원자격

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한 연세대학교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 본인만 해당된다.

라. 재 정

1) 공제회의 재정은 공제회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공제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2) 공제회비 납부

2013-1학기부터 선택납부로 변경되면서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시 공제회비를 선택해야만 가입가능하며 선택하지 못한 재학생과 휴학생은 추가가입을 통해 공제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대상자
선택납부	등록금 납부 기간 (자율경비 선택기간에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대상자
	건강공제회비 선택 후 등록금 고지서 발행하여 등록)	
추가가입	1학기: 3월 한 달 2학기: 9월 한 달 (추가 가입한 회비는 환불불가)	•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 할 때 건강공제회비 선택납부하지 않은 학생 (신입생, 편입생, 초과학기생 포함) • 선택납부 불가능한 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 각 대학, 대학원 미등록 휴학생 • 각 대학,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반환 휴학생 (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 제외) • 각 대학, 대학원 교환, 방문, GIP, SAP 학생 (Only Outgoing Exchange Student)
※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이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전액 환불되기 때문에 추가가입 필요 ※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 선택 납부했던 학생 중 등록금일부반환휴학생이거나 등록금 전액반환휴학생중 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생의 경우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추가가입 필요 없이 해당학기동안 공제회원 자격이 계속 유지됨 ※ 추가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기별 공지사항 참조		

마. 공제급여기준

외래	공제급여요율
의원 (1차)	급여본인부담금의 50%
병원 (2차)	급여본인부담금의 40%
종합병원 (3차종합)	급여본인부담금의 30%
상급종합병원 (3차전문)	급여본인부담금의 20%
입원	공제급여요율
모든 진료기관	급여본인부담금의 30%

1) 공제는 국민건강보험 처리 되는 급여본인부담 부분만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개정·고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2) 영수증 제출 시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표시된 형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3) 공제급여는 급여본인부담금의 공제급여요율만큼 계산되며, 실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의료급여 2종,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단, 일반환

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 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외래, 입원 공제급여요율에 준하여 공제된다.

5)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일 경우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본인부담금, 초과하면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공제된다.

6) 한 학기 공제급여 한도는 외래, 입원 통합 100만원으로 한다.

7) 장제급여는 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학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명의 통장사본)

8) 영수증은 직전학기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해당학기 진료 분은 최대 다음 학기 이내에만 접수 가능)

9) 예약진료비는 공제급여에서 제외한다.

10) 공제급여지급제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비급여 대상 항목과 공제회에서 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제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비급여 대상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과 같고, 교통사고·폭력·자해 등 지불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때,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의약품비, 기타 이사회에서 사정한 경우가 해당된다.)

바. 건강(관리)센터 이용료 지원

건강(관리)센터 이용할 때 발생한 진료, 조제, 검사, 처치료 등은 센터를 이용 할 때 우선 90% 할인을 적용하고 나머지 10%를 학생이 센터에 지불한다. 추후 할인된 금액은 월별로 센터에서 공제회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스케일링비용(원주 스케일링 진료 폐지됨)은 센터에 100% 지불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회에 접수하여 공제받는다. 그 외 일부 비급여 약품 및 검사료는 공제회원이어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사. 공제 신청 시 준비사항 및 접수 방법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급여(보험), 비급여(비보험) 구분 형식, 진료일, 진료과 기재(팩스, 복사본 불가)

2) 연세대학교 학생증(혹은 재학, 휴학증명서)

3) 우리은행 계좌번호(학생 본인 명의, 방문접수 시 통장사본 필요 없음, 계좌기재)

4)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신규 우편접수자인 경우 필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구분	캠퍼스	장 소	연락처
방문접수	신촌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호	02-2123-3350, 3352
	원주	원주캠퍼스 학생회관 212-1호 (원주의과대학은 학생회 사무실 앞 접수함 비치)	033-760-5430
우편접수	신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207동 학생회관 206호 학생건강공제회	
	원주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212-1호 학생건강공제회	

아. 외국인 유학생 지정병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학생은 지정병원을 이용하고(다른 병원 공제불가), 학생증을 제시한 후 발급받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공제회에 접수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구분	병원	연락처	비고
신촌	세란병원	02-737-0181	외래, 입원 보험수가 적용가능 (본인부담 100%)
	동신병원	02-396-9161	
	신촌연세병원	02-337-7582	
	김성전이비인후과	02-324-9127	
국제	나사렛국제병원	032-899-9999	외래, 입원 보험수가 적용가능 (본인부담 100%)
원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33-741-0114	외래, 입원 보험수가 적용가능 (본인부담 100%)

자. 학생건강공제회 장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 http://web.yonsei.ac.kr/health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

신촌사무실 : 학생회관 206호 / 02-2123-3350, 3352

원주사무실: 학생회관 212-1호 / 033-760-5430

16. 총동문회

가. 모교 지원 사업

1) 모교 창립 백주년 기념사업 후원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는 1985년 모교 창립 1백주년을 맞이하여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1백억 원 모금하여 백주년기념관과 알렌관 건립, <연세백년사> 출간 등 1백주년 기념사업을 후원했다.

가) 백주년기념관 건립

백주년기념관은 모교 창립 백주년을 기념하고 영원한 연세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문, 교직원, 사회유지, 학부모, 재학생 등 많은 분들의 뜻과 정성으로 세워졌다. 1988년 2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우아하고 현대적인 건물로서 박물관과 콘서트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알렌관 건립

국내 최초 의료기관인 광혜원을 설립한 알렌 박사를 기념하는 이 건물은 기존의 영빈관 건물을 철거한 후 1987년 4월 개관했다.

2) 백낙준 박사 동상 건립

총동문회는 모교 초대 총장인 용재 백낙준 박사의 학덕과 은공을 기리고, 그 유업을 받들기 위해 연세인의 정성을 모아 용재 동상을 건립했다. 동상 건립의 총 공사비는 1억2천여만 원이며, 1987년 5월 봉헌했다.

3) 종합관 재건 지원

1996년 한총련 사태로 인해 모교 종합관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을 때 총동문회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 개인이나 각 지회를 통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기업체 등 사회 각처에서 참여하여 총 50여억 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4) 노천극장 확장

모든 연세인의 꿈과 낭만, 추억이 어려 있는 노천극장이 재학생 수에 비해 너무 협소하고 노후해 총동문회에서는 1996년 노천극장 확장사업을 추진했다. 1999년 5월8일 봉헌된 노천극장은 총 공사비 70억 원 중 20억 원을 특별 기금과 함께 1구좌당 20만원씩 동문들로부터 모았으며, 나머지는 동문회관 운영수익금과 특별기부금으로 충당했다. 기금을 내주신 동문들에 대해서는 이름과 학과, 입학년도를 좌석(화강암)에 새겨 영원히 모교에 남게 했다.

5) 장학재단 설립

총동문회 숙원 사업이며 제22대 총동문회 중점 추진 사항 중 하나인 재단법인 연세동문장학회가 2001년 2월6일 설립됐다. 연세동문장학회에서는 모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명문대로 도약하기 위해 모교에서 최소한 3학기를 수료한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평량평균이 3.75(4.3만점)이상인 학생 중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기초학문 전공자를 우선함)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록금은 물론 매월 교재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총동문회에서는 보다 많은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6) 총학생회, 응원단 및 연고전 지원(5개 운동부)

총학생회와 응원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젊음과 패기로 연세가족임을 배우는 연고전에서의 필승을 위해 총동문회는 매년 총학생회와 5개 운동부, 응원단, 소나기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연고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양일간 열띤 응원을 펼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고전 폐막식 후 학생회관에서 연고전 기념 만찬을 개최하고 있다.

나. 동문 서비스 사업

1) 동문회관 건립(동문사랑방 및 소회의실 운영)

연세동문들의 사랑방인 연세동문회관은 1993년 5월 모교 창립 108주년 기념일에 준공됐다. 동문회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의 석조 건물로 동문들의 성금 42억2천5백만 원을 비롯해 총 72억2천5백만 원으로 지어졌다. 동문들의 각종 소모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동문사랑방과 소회의실이 동문들에게 항상 열려있다.

2) 동문회보 제작 및 발송

1932년 창간된 동문회보는 모교와 총동문회의 소식을 전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교류 매체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해마다 지면 혁신을 통해 국내 대학 동문회보를 선도해온 「연세동문회보」는 매월 1일 주소지가 확인된 모든 동문들에게 직장 또는 자택으로 개별 우송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모바일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3) 모바일 동문 ID카드 발급

총동문회는 동문회비를 납부한 동문들에게 각종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동문 ID카드」를 모바일로 발급하고 있다. ID카드를 소지한 동문은 동문회관 주차장의 무료 이용과 세브란스 건강검진센터 할인 혜택, 동문협조기관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모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4) 동문 포털 사이트 구축

1998년 대학 동문회 중 최초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총동문회는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동문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참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해왔다. 2018년 11월에는 다양한 다비이스에서 접속 가능한 '사용자 중심 반응형 웹'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5) 동문 의료 서비스 시행

총동문회에서는 국내 최고 의료 기관인 모교 의료원과 협력을 통해 2006년 1월1일부터 동문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있다.

동문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들은 건강검진료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6) 중앙도서관 도서 대출 및 복사 서비스 시행

총동문회는 모교 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평생회비를 납부한 동문들에게 도서 대출 및 소장 자료 복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문들은 1회 최대 3권의 도서를 15일간 대출할 수 있으며, 학교를 찾을 수 없는 동문들은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 논문 등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 총동문회 행사

1) 새해인사의 밤

총동문회는 매년 1월 둘째주 화요일 모든 연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설계하고, 동문들의 단합과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결집력을 공고히 하는 「연세동문 새해인사의 밤」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에 연세를 빛낸 동문들에게 각종 상을 수여한다.

2) 동문의 날

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은 온 연세인들이 가족과 함께 추억의 캠퍼스를 찾아 함께 어우러지는 「연세 동문의 날」이다. 총동문회에서는 매년 동문의 날과 모교 창립을 기념하여 음악회와 연극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2005년에는 연세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마술피리」를 공연했다. 또한, 2010년에는 연세창립 125주년을 기념하여 무악오페라에서 「라보엠」을, 극예술연구회에서 「피가로의 결혼」을 공연했다. 2015년에도 연세창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무악오페라에서 「피가로의 결혼」을 공연했다. 공연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대거 출연했다.

3) 원로동문 초청 모임

총동문회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연세를 빛냈던 원로 동문들을 초청하는 「원로동문 초청 모임」을 기획하여 1년에 1회씩 모교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원주 캠퍼스와 연세우유를 방문했으며, 최신 의료 시설을 확충하여 아시아 최고 병

원으로 도약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건강강좌, 명사 특강, 송도캠퍼스 방문,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원로 동문 초청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4)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총동문회는 동문간의 우의와 친선을 통한 총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가을에 「연세사랑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하는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와 기타 동창회, 총동문회 부회장단, 분과위원장, 상임이사 및 이사, 모교 교직원 등이 참가하여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운동도 함께 열고 있다.

5) 고위공직자 동문 취임 축하연

총동문회는 모교와 공동으로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동문들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학생활동 및 장학복지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 258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 / 261
학생회관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규 / 263
장학금지급규정 / 266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 271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세칙 / 279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 281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 283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 285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일: 2017.02.16
제정일: 1985.03.21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학생회라 함은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반 학생회를 말한다.
②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학생회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4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학생회)
학생회의 장의 선출 및 그 운영은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 (단체 자격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11장 및 총학생 회칙 제2조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것
2. 소속단체의 설립 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30명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질 것
3. 단체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4. 설립 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5.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을 것

제5조 (단체 등록)
① 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신규 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발기인(회원) 명단 1부
5.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1부
6. 예산안 1부

② 단체로서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재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회원명단 1부
5. 단체의 총회 회의록 1부
6.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7. 최근 1년간 결산서 1부
8.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9. 예산안 1부

제6조 (단체의 승인)
제5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단체는 그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상위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복지처장이 승인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

제7조 (단체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다. 다만,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단체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 (단체 재정)
① 단체의 운영 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복지처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체의 재정은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0조 (단체의 승인 취소)
단체가 본교의 건학이념 또는 단체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학생 교외활동 안전지도)
학생복지처장은 학생회 및 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교외 활동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학생 교외활동 안전지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집회의 개최 및 간행물)

학생회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주관하여 간행하는 인쇄물은 학칙 제58조에 따라 개최 또는 간행되어야 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등)

① 이 규정의 개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정류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학생지도 관련 중요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연세의 향연 개최 구비서류)
<삭제 2017.02.16.>

제15조 (봉사활동)
<삭제 2017.02.16.>

제16조 (단체의 자격상실)
<제10조로 이동 및 개정 2017.02.16.>

제17조 (본 규정의 개폐)
<제13조로 이동 및 개정 2017.02.16.>

부 칙

(1) 이 규정이 정하는 설립요건에 미흡한 현존 단체는 이 규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2) <제13조로 통합 2017.02.16.>
(3)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5항)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

제정일: 2017.02.16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 및 지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외활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대학 내 건전한 학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소속 학생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현장실습, 수업 및 연구와 관련된 외부 활동은 담당부서별 관련 규정류에 따른다.
③ 교내의 집단활동은 본교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활동"이란 동아리, 학생회, 학과, 대학, 본부 행정부서의 주관으로 지도교수 또는 행사승인자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이 동행하여, 대학캠퍼스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학생들을 소집하여 행하는 활동(OT, MT, 수련회, 체육대회, 다양한 행사 등)을 말한다.
2. "인권침해행위"란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행사 승인, 결과 보고)
① 동아리는 지도교수, 학과 및 대학 소속의 학생단체는 학과장 또는 학장, 기타 행사는 행정부서의 기관장으로부터 교외활동에 대한 행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교외활동 시작 1주일 전까지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점검계획과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교외활동 신청서"에 따라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이하 '학생지원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학생지원팀은 안전사고예방계획을 심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교외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학생지원팀에 본교가 가입 중인 보험 보상적용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확인하고, 보상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상한도액이 참여인원 대비 부족할 경우 별

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행위 예방)

①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행사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인권침해행위예방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행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생지원팀에서는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안전사고예방과 인권침해행위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 (사고처리)

①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선 처리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 소속 기관장과 학생지원팀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다.

② 학생지원팀은 제1항의 사고 사실을 학교본부에 보고하고 그 경중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에 사고 발생 상황을 보고한다.

③ 인권침해행위의 처리는 행사주관부서와 인권침해 관련 부서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류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개폐)

이 세칙의 개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학생회관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일: 2018.01.17
제정일: 1977.09.12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생회관내 복지시설 중 학생복지처장의 관할하에 있는 특정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생회관내 다음의 복지시설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1. 음악감상실
2. 푸른샘
3. 무악극장
4. 합창연습실
5. 학생회의실
6. 합주연습실

제3조 (운영의 기본방향)
① 이 시설이 학생들이 개인적인 취미활동 또는 단체적인 과외활동의 중심지가 되게 한다.
② 이 시설의 혜택이 전교생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
③ 이 시설이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 상호간의 대화의 장소로서 연세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터전이 되게 한다.
④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제4조 (운영주체)
제3조의 기본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사무 및 방침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제5조 (관리 운영의 위임)
학생복지처장은 복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취향을 조화있게 규합하기 위하여 적당한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하 "담당 단체"라 한다)에게 일상적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시간)
복지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이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에는 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용도변경)
각종 복지시설의 기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비품관리 및 인수인계)
① 각종 복지시설의 기재 또는 비품을 고의로 파손할 때에는 변상조치 한다.
② 관리, 운영의 인수인계는 반드시 학생복지처장의 승인하에 행해져야 한다.

제9조 (음악감상실의 관리)
① 학생복지처장이 지명하는 담당 단체가 음악감상실의 관리, 운영을 맡으며, 음악감상실 내의 모든 비품과 기재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② 진행 프로그램은 매주 초 감상실 내에 게시한다.
③ 담당 단체는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주 1회 지도교수와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음악감상실의 이용)
① 담당 단체는 감상실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학생들에게는 퇴장을 명한다.
② 감상실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을 일체 불허한다.
③ 감상실 내에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담당 단체의 지시와 진행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푸른샘의 관리)
① 푸른샘의 관리ㆍ운영은 학생복지처장이 지명하는 담당 단체에서 진행한다.
② 푸른샘 담당 단체는 푸른샘 실내 정리와 비품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담당 단체는 월초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운영계획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담당 단체는 월말에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푸른샘의 이용)
① 푸른샘을 이용하려는 학생단체는 푸른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생복지처장으로부터 장소 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푸른샘 장소 예약은 사용일로부터 1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담당 단체는 푸른샘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학생들에게 퇴장을 명한다.

제13조 (무악극장의 관리)
① 무악극장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관리하고, 학생복지처장이 지명하는 담당 단체가 운영을 맡는다.
②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단체에 한하여 무악극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담당 단체는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무악극장의 이용)

① 무악극장을 이용하려는 학생단체는 무악극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생복지처장으로부터 장소 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무악극장 장소 예약은 사용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합창·합주연습실의 관리)
① 합창ㆍ합주연습실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한다.
②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단체에 한하여 합창·합주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합창·합주연습실의 이용)
① 합창ㆍ합주연습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연세대학교 공간대관시스템(이하 '공간대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접 속하여 대관을 신청하고 장소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8.01.17.>
②피아노의 외부 대여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제17조 (학생회의실의 관리)
① 학생회의실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한다.
②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단체에 한하여 학생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학생회의실의 이용)
① 학생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공간대관시스템 (이하 '공간대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대관을 신청하고 장소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2018.01.17.>
② 피아노의 외부 대여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부 칙

(1) <삭제 2012.04.10>
(2) <삭제 2012.04.10>
(3) (시행) 이 내규는 197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 이 개정 내규(제4조, 제7조,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신설,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3항)는 199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전면개정)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 항)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급규정

개정일: 2013.03.11
제정일: 1977.08.31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장학취업팀(02-2123-212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대학교 각 대학원,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원주(매지, 일산)캠퍼스의 장학금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조 (사무관장)
본 대학교의 장학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무는 대외협력처장이 관장한다.
2. 예산배정에 관한 사무는 기획실장이 관장한다.
3.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장이 관장한다.
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학생복지처장이 관장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장학금 지급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장학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위원회는 기획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장학취업팀장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대학에서 선임한 부학장 1인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
3. 간사는 장학취업팀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장학위원회는 장학금과 관련한 기본정책, 예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 2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업무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3장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제6조 (지급대상)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2.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3. 본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단,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국가유공자 및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5. 삭제
6.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7. 우수한 체육선수
8.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 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9. 기타 학생복지처장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자격의 제한)

① 휴학생,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장학금 성격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해서는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11>
② 별도의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하는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 재입학
 3. 징계(유기정학 이상)
 4. 삭제

5. 장학금 신청서류상 허위사실의 기재
6. 학칙 위반

제9조 (장학금 배정 통보)
학생복지처장은 매학년도마다 장학금 배정 종목과 액수 및 수혜자격 조건을 명시한 장학금 배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02.28>

제10조 (추천절차)
① 각 대학장은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장학금 지급시안의 배정 종목과 액수를 결정하고 각 학과장은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대학을 제외한 각 기관은 기관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기관장은 선정된 지급대상자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한다.

제11조 (추천기준)
각 기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
2. 경제적 사정
3. 장학생 수의 학년간 균형

제11조의 2 (장학생 교체추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교체 추천서를 접수받아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을 교체한다.
1. 장학금 지급규정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위반
2. 타 장학금 수혜
3. 휴학
4. 본인의 포기

제12조 (지급결정)
① 학생복지처장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 중복추천 여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포기한 장학금의 이후 학기로의 이월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장학금 지급규정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위반
2. 타장학금 수혜
3. 휴학

4. 본인의 포기
[본항 신설 2013.3.11]

제14조 (지급기준액)
①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11>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국가장학금 포함) 장학금이 동일한 학생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경우, 장학금의 합계는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등록금(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생활비, 교재비,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상금, 기숙사비 및 각종 경비지원 등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신설 2013.3.11>

제15조 (지급방법)
학생복지처장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처리
2. 등록 후 :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

제16조 ()
<삭제 2013.3.11>

제17조 (기금관리)
기탁된 장학기금은 지체 없이 본 대학교 명의의 장학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8조 ()
<삭제>
제19조 ()
<삭제>

제20조 ()
<삭제>

제21조 (지급결과의 보고)
학생복지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
<삭제>

제4장 보칙

제23조 (규정개폐)
이 규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개폐된다.

제24조 (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2) 종전에 시행하던 규정(1966년 2월 21일)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이 규정은 197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8호, 제7조, 제10조, 제11조)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호)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20조, 제22조)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호)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 삭제)은 199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호 가목, 제10조)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4호, 제7조 제2호, 제13조, 제14조)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호)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 제1호, 제13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4호, 제7조 제2호, 제8조 제2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호, 제7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호,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제6조 제3호, 제7조 제1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면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신설), 제14조 제2항(신설), 제16조(삭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개정일: 2016.06.18
제정일: 1977.09.08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장학취업팀(02-2123-212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학생복지처장이 장학금 지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일정표 작성 등)
매학기 말에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사무 일정표를 작성 및 공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장학금 배정안 통보)
매 학년도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학금 배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12.31>

1. 장학생 선정기준
2. 장학금 지급 기준액
3. 장학금 배정표
4. 기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급결과 보고)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결과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통계조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한다.

제2장 교내 장학금

제5조 (대학배정장학금)

① 대학배정장학금은 전년도 대학별 평균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각 대학에 배정한다. <개정 2011.12.31>
②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자 중 각 대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진리장학금 또는 자유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07.06>
③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이상인 자에게 진리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등록금 전액, 반액 또는 1/3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④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이상인 자에게 자유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등으로 한다.<개정 2011.12.31>

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인 자에게 대학배정장학금을 지급하며, 해당학생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12.07.06]

⑥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자유장학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평가 기준은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의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3.06.05.>

제5조의 2 (연세장학금)

①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자 중 일정 소득분위 이하인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40이상인 자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단, 8학기(5년제인 경우 10학기) 해당하는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받지 아니하며, 장애학생과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의 성적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3.06.05, 본조 신설 2012.07.06.>

②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유형) 신청자 중 소득분위 판정 결과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 및 교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3.06.05.>

③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의 C학점 경고제 적용 대상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06.18., 신설 2014.7.7.>

④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4.7.7, 신설 2013.06.05.>

제6조 (연세특별장학금(입학성적우수장학금))

① 매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표된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기간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② 2014학년도 입학자 부터는 매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50이상인 자(외국인전형을 통한 입학생은 10학점 이상 이수, 평량평균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본항 신설 2011.02.25>

③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12.31, 2013.06.05, 본항 신설2011.02.25>

④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한국어능력 4급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2013.06.05, 본항 신설 2011.02.25>

⑤ <삭제 2013.12.31, 신설 2013.06.05.>

제7조 (연세복지장학금)

① 본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7.06>

② 정년·명예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퇴직 당시에 재적 중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성적평가 기준은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의 평량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④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6.06.18.>

제8조 (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졸업시(계절학기 포함)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6.05.>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외손 포함)에게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반액 및 교재비를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6.05.>

④ 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지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1학기는 4월 말일, 2학기는 9월 말일까지 국가보훈처 및 통일부에 보고한다.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계절학기수강시 3학점 수강료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본항 신설 2011.12.31>

제9조 (근로장학금)

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 이상인 재적생으로서 학생복지처장이 선발하여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한 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개정 2011.12.31>

② 근로장학생은 배정된 부서에서 학기중에 120시간의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 배정된 당해학기 근로장학생 정원내에서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1.02.25>

③ 근로장학생을 배정받은 부서는 근로학생이 60시간 근무 완료시 장학담당 부서에 근무평가를 제출하고 장학금 지급을 요청한다. 단, 필요한 경우 120시간 근무 완료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근무평가는 A, B, C, F의 4단계로 하며, 근무평가에서 1회 이상 F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근로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⑤ <삭제 2016.06.18.>
⑥ <삭제 2016.06.18.>

제9조의 2 (근로장학금(각 부서))
교내 각 부서 예산으로 교내 행정기관에서 일정시간 근로한 재적생에게 각 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4.7.7]

제10조 (우수선수장학금)
① 우수한 체육선수 중 체육위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체육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봉사장학금)
①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재적생 중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06.18., 2013.06.05, 2011.12.31.>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개정 2011.12.31, 본항 신설 2011.02.25>
③ 이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봉사장학금 지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06.18.>

제12조 (국가고시장학금)
① 재적 중 국가고시(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사법시험,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중 국가고시지원센터 소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고시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합격증 사본을 국가고시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2011.12.31.>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개정 2011.12.31.>

제13조 (평화장학금)
① 대학언론사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 신문방송편집인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 이상인 자에게 신문방송편집인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신설 2014.7.7.>
제14조 (신학장학금)
<삭제 2016.06.22.>

제15조 (연세한마음장학금)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입학 당시 연세한마음전형에 합격하고 매 학기 가계경제상황이 차상위계층 이하로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과 교재비를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06.18., 2013.06.05.>
②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누적3회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06.05.>
③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성적평가 기준은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의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④ 이 장학금의 지급조건 중 소득분위는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판정 결과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8.>

제16조 (연세독수리장학금)
① 정시모집최초합격 성적우수자로서 매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50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누적2회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06.05.>
③ 2011학년도부터는 연세독수리장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관련 장학재원은 수시 및 정시선발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세특별장학금으로 통합한다. <본항 신설 2011.02.25>
④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누계 평량평균(계절학기 포함)이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06.05.>

제17조 (VSP장학금)
① VSP(Visiting Student Program, 방문학생프로그램)를 통해 파견되는 학생 중 국제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등록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의2 (GIP장학금)
① GIP(Global Internship Program, 글로벌인턴십프로그램)를 통해 TWC(The Washington Center)로 파견되는 학생 중 국제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등록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TWC 매칭펀드의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제18조 (신문고장학금)
① 장학신문고제도를 이용한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학업성적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05, 2011.12.31.>

제19조 (자유창의장학금)
<본조삭제 2016.1.17.>

제20조 (연세비전장학금)

① 학교비전 및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중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학업성적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05, 2011.12.31.>

제20조의 2 (외국인 전형 장학금)

① 매학년도 신입생 외국인 전형 선발요강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표된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기간에 관한 방침에 따라 선발된 자로서 매학기 이수학점이 1~2학년은 10학점 이상, 3~4학년은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01.14., 2013.12.31>

②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누적3회(2학기 지원대상자는 1회, 3학기 지원대상자는 2회)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12.31, 2013.06.05.>

③ 외국인전형으로 입학(또는 합격)한 자 중 한국어능력 4급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는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나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누적횟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5.01.14., 2013.06.05.>

④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누계 평량평균(계절학기 포함)이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06.05.>

[본조 신설 2011.02.25]

제20조의 3 (연세우수학생 프로그램 장학금)
연세우수학생 프로그램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기간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은「연세우수학생 프로그램 내규」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1.02.25]

제20조의 4 (국고지원대응장학금)
국고지원장학금을 대응하는 교비재원장학금은 해당 국고지원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2.07.06]

제20조의 5 (기타장학금(각 부서))
교내 각 부서 예산으로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각 부서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재적생에게 교재비, 상금, 경비지원, 기숙사비, 어학지원비, 봉사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4.7.7]

제21조 (기금장학금)

①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기탁자가 지급대상 기관을 지정한 기금은 해당 기관에 배정하여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는다.
2. 각 기관 공동기금은 직전학기 기관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에 배정하고 그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②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본항 신설 2011.12.31.>

제3장 교외 장학금

제22조 (국고지원장학금)

① 제8조(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제2항 및 제3항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국가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기부금장학금)

① 교외인사나 단체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교외인사나 단체가 대상기관 및 인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교외인사나 단체가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별 교외장학생의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복지처장이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② 교외 장학단체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부 칙

(1) (개정)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행) 이 내규는 197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198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2호)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제9조 7호)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내규(제2조 5호, 제5조 1호, 3호, 4호, 제8조, 제9조 7호 8호, 제12조, 제14조, 제16조 삭제)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내규(제2조 1호, 8호, 9호, 제9조의 2 신설)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내규(제2조 8호, 9호, 제8조 2호, 제9조 2호)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내규(제2조 7호, 8호, 9호, 10호, 11호, 제8조 3호,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내규(제2조 2호, 4호)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내규(제2조 1호)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내규(제2조 제7호)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내규(제2조 제7호)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내규(제2조 제7호)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 내규(제2조 제4호)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내규(제2조 제1호 및 제7호)는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 내규(제2조 제3호, 제4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8조, 제11조, 제12조)는 200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8호, 제9호, 제4조 제10호, 제8조, 제1호, 제2호, 제4호)는 200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호, 제6호, 제12호, 제13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3조)는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1조)는 200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전문 개정)는 200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제9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신설, 제16조 제3항 신설, 제20조의 2 신설, 제20조의 3 신설)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8조 제5항 신설,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2항, 제5항(신설), 제5조의2 신설, 제7조 제1항, 제20조의4 신설)는 2012년 7월 7일 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6항 신설,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내지 제3항 신설,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제7조 제3항 신설, 제8조 제1항, 제3항, 제9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설,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는 201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5항, 제16조 제4항, 제20조의2 제4항은 2014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파견자부터 적용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20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개정전의 내규에 의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의 2 제3항(신설), 제9조의 2(신설), 제13조 제2항(신설), 제20조의 5(신설))는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0조의 2 제1항, 제3항)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9조 삭제)는 2016년 1월 6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3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의2 제3항, 제7조 제4항 신설, 제9조 제5항 내지 제6항 삭제, 제11조 제1항, 제3항 신설, 제14조 삭제, 제15조 제1항, 제4항 신설)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본교의 학생단체나 학생이 정기, 부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간행물의 분류)
간행물을 발간하는 주체의 종류에 따라 학생간행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교단위의 학생간행물
2. 대학단위의 학생간행물
3. 학과단위의 학생간행물
4. 동아리단위의 학생간행물
5. 개인단위의 학생간행물

제 3 조(전교단위의 학생간행물) ① 전교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 추천원(학생처 소정양식)에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든 원고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의 사전지도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은 지불원인이 생겼을 때 학생처장의 결재로 집행된다.

제 4 조(대학단위의 학생간행물) ① 대학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 추천원(학생처 소정양식)에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예산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소속 대학 학생지도 담당교수를 그 지도교수로 한다.

③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와 대학장의 사전지도를 거쳐서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은 지불원인이 생겼을 때 소속 대학장의 승인과 학생복지처장의 결재로 집행된다.

제 5 조(학과단위의 학생간행물) ① 학과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 추천원(학생처 소정양식)에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예산서 및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소속 학과장을 그 지도교수로 한다.

③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의 사전지도를 거쳐서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은 지불원인이 생겼을 때 지도교수의 승인과 소속 대학장의 결재로 집행된다.

제 6 조(동아리 단위의 학생간행물)① 동아리 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 추천원(학생복지처 소정양식)에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예산서 및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당해 동아리 지도교수를 그 지도교수로 한다.

③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의 사전지도를 거쳐서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은 지불원인이 생겼을 때 지도교수의 허가와 감독하에 집행된다.

제 7 조(개인 단위의 학생간행물)

본교 재학생에게 배포할 것을 목적으로 학생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담지도교수를 거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발간허가)

학생단체의 간행물 발간 추천원은 학생지도위원회 출판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

제 9 조(인쇄소의 지정)

학생간행물의 발간이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은 인쇄소를 지정한다.

제 10 조(편집, 인쇄의 지도)

간행물의 편집과 인쇄과정은 간행물별 지도교수가 각각 책임지고 지도한다.

인쇄부수는 소속 학생수를 참작하여 지도교수가 적절히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배포)

모든 학생간행물은 배포 전에 지도교수와 학생복지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유보)

이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출판분과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개정)

이 시행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출판분과위원회의 결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시행)

이 시행세칙은 197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개정일: 2016.08.18
제정일: 2000.12.29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옥외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물이란 교육·연구 또는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의 게시물을 말한다.

제3조 (게시범위)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8.18.>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 등
2.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주관의 행사로서 단과대학(원) 규모 이상의 행사
3. 본교 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이에 준하는 행사
4. 본교의 주요 공지사항 등 <개정 2016.8.18.>

② 기타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행사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각호의 행사
2. 본교 학생단체(재연 동문회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3. 본교의 허가를 받은 외부 단체의 게시물 <개정 2016.8.18.>
4. 기타 학생복지처장의 허가를 받은 게시물

제4조 (검인)
① 모든 홍보물은 검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검인된 홍보물에는 반드시 게시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홍보물 검인에 관한 사항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이 담당한다. 단, 종교관련 홍보물은 교목실 선교지원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8.,2010.7.9>

제5조 (게시물의 제한)
① 현수막은 1매에 한하여 교내에 설치된 공용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② 기타 게시물은 45cm*65cm 이내의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10매까지, 외부 단체의 경우 5매까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게시판에 2매 이상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게시기간 및 철거)

①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전체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게시기간이 종료된 게시물은 행사 주관 단체에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진 철거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총무처는 해당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때 철거된 홍보물은 반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8.>

제7조 (보호 및 책임)

① 학생복지처의 검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훼손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총무처는 이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③ 이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단체는 1년간 홍보물 게시를 할 수 없다.

제8조 (예외)

① 학교 창립 행사 및 연고전 관련 행사의 홍보물은 제5조 및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8.18.>

② 기타 학생복지처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 세칙]은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호,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목,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조항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개정일: 2017.02.16
제정일: 1977.11.01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은 별도 구성한다. <개정 2014.01.28>
② 원주캠퍼스,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은 본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를 위임받아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1.28.>
③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고 학생지원팀장이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목실장, 상담센터소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각 대학 부학장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전면개정 2008. 4. 14.]

제3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부학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4. 14.>
1.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회 및 학생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시행세칙)
학생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학생복지처장이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생복지처장은 필요에 따라서 학생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해당위원회 출석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면개정 2008. 4. 14.]

제8조 (회의록)

학생복지처장은 모든 회의의 종료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며, 차기 회의시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전면개정 2008. 4. 14.]

제9조 (규정의 개폐 등)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전면개정 2008. 4. 14.]

부 칙

(1) <제9조로 이동 2017.02.16. >

(2) <제9조로 이동 2017.02.16.>

(3) (시행) 이 내규는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제1항)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제2조 제1항)는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2017.05.23
제정일: 1977.10.18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하여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대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에 따르되 학업성적, 출결상황 및 미등록 등의 교무행정상의 이유가 포상 또는 징계사유가 될 경우에는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 제7조 제1항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지도행위(훈계, 교육이수나 봉사명령, 기숙사 퇴사 등)는 각 단과대학이나 기관의 내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4.>

제3조 (포상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경우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
4.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경우
[본조개정 2017.05.23.]

제4조 (포상의 요청)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대학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05.23.>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과(부)장 의견서 1부

제5조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교의 입교정신을 위배한 경우
2.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저지른

경우
3. 타 학생에게 학생지도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로 수업 또는 학사행정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
5. 교직원에게 폭행, 폭언, 협박, 욕설을 한 경우
6.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조개정 2017.05.23.]

제6조 (징계의 요청)

제5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대학장이나 학생복지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5.23.>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 진술서 1부 <개정 2017.05.23.>
3.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의견서 1부

제7조 (징계의 구분)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계에 회부된 학생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제1항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봉사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못한다.<개정 2017.05.23.>

③ 봉사명령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학생복지처장이 정한다.

제8조 (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학생이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 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이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처벌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에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본조개정 2017.05.23.]

제9조 (심의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포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1. 학생복지처장은 제4조에 의하여 포상 발의된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1. 학생복지처장은 제6조에 의하여 징계 발의된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학생복지처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해당학생에게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한다. 다만, 2회 이상 소환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도교수나 학과(부)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청취 할 수 있다.
3.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학생지도위원회 규정」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도, 제적 징계의 경우 총장 결재를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4.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05.23.]

제10조 (징계의 해제)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으로부터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학장을 경유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되면,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05.23.>

제11조 (통보)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이 포상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지도교수, 학과(부)장, 학장, 교무처장 및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한다.<개정 2017.05.23.>

제12조 (시행세칙의 개폐 등)

①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결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7.05.23.]

부 칙

(1) <제12조로 이동>

(2) <제12조로 이동>

(3)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7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6조, 제9조)은 199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

11조)은 199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은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2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부칙(1), 부칙(2))은 2017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의 학생지도위원회로의 통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록

연세대학교 학칙 / 290
학사에 대한 내규 / 335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347
1) 복수전공 시행세칙 / 347
2) 학사편입학 시행세칙 / 348
3) 재입학 시행세칙 / 349
4) 부전공제 시행세칙 / 350
5) 소속변경 시행세칙 / 351
6)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 353
7) 재수강 시행세칙 / 355
8)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 356
9) 일반편입학 시행세칙 / 360
10) 국내대학 교환학생에 대한 시행세칙 / 361
11) 연계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 363
12) 성적평가 시행세칙 / 364
13) 입학 전 학점취득에 관한 시행세칙 / 365
14)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 / 366
15) 2중 및 다중전공 운영내규 / 373
16) 전공배정에 관한 내규 / 373
17)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377
18)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에 관한내규 / 381
19)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 383
20)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 384
21)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 385
22) 의예과에 관한 내규 / 386
23) 원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세칙 / 388
24) 우등생 표창에 관한 내규 / 390
25) 계절제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391
26) 원주캠퍼스 소속변경에 관한 내규 / 392
27) 영어인증제 시행세칙 / 393
28)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396
2018학년도 재적생 현황 / 399

연세대학교 학칙

개정일: 2019.04.22
제정일: 1956.00.00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학생정원

제2조 (교육조직)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원주의과대학, RC융합대학,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4.22., 2018.08.28., 2018.02.21., 2014.11.07., 2011.05.17, 2011.04.13, 2010.4.6, 2009.1.16.>

제3조 (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시스템계열, 신학계열, 사회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치·간계열,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약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의 모집단위를 두고, 원주캠퍼스는 자율융합계열,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디지털헬스케어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의 모집단위를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 2015.05.07., 2014.7.22, 2013.11.12, 2013.07.11,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4.6, 2008.7.15>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이하고, 각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와 같이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 <별표개정 2017.05.23., 2016.11.11., 별표개정 2016.05.04., 2016.03.04., 2015.11.3., 2015.5.7., 2014.7.22, 2013.12.23, 2013.11.12, 2013.07.11, 2012.07.03, 2012.05.08, 2011.12.09,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8.17, 2010.4.6, 2009.11.12, 2009.4.2, 2009.1.16, 2008.7.15, 2008.4.14>

③ 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12.>

※ 상기 제2조 및 제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2조 (교육조직)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원주의과대학,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08.28., 2018.02.21., 2014.11.07., 2011.05.17, 2011.04.13, 2010.4.6, 2009.1.16. >

제3조 (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시스템계열, 신학계열, 사회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치·간계열,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약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의 모집단위를 두고, 원주캠퍼스는 국어국문학과, 인문과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응용과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보건계열, 인문·사회계열, 이·공학계열, 글로벌엘리트학부, 의학·간호계열의 모집단위를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

다. <개정 2015.05.07., 2014.7.22, 2013.11.12, 2013.07.11,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4.6, 2008.7.15>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이하고, 각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와 같이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 <별표개정 2019.02.26., 2017.05.23., 2016.11.11., 별표개정 2016.05.04., 2016.03.04., 2015.11.3., 2015.5.7., 2014.7.22, 2013.12.23, 2013.11.12, 2013.07.11, 2012.07.03, 2012.05.08, 2011.12.09,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8.17, 2010.4.6, 2009.11.12, 2009.4.2, 2009.1.16, 2008.7.15, 2008.4.14>
③ 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12.>

제3조의 2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05.07.>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 (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학부대학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4년(8학기)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내의 건축학(5년제)교육과정은 수업연한을 5년(10학기)으로 하고, 의예과·치의예과·야간 간호학과와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의 야간 3학년 편입생은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② 학칙 제51조의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고 재학 기간의 성적이 평량평균 3.75 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두 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치의학과 및 건축공학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교육과정(10학기) 재적생은 이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3.11.12, 2010.12.10>
③ 학칙 제51조의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고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 통합)연계과정을 신청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킨 학생은 수업연한을 두 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3.07.11>
④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학생은 두 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으며, 그 요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2010.12.10>

제5조 (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학부대학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5년(15학기), 의예과·치의예과의 재학연한은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3.02.>

②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 혹은 자원 퇴학 전 재적하였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03.02.>
④ 재학연한 내에 각 대학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⑤ 학부대학의 재학기간은 1년(2학기)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11>
⑥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재학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1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1.3., 신설 2008.4.14>

제4장 학년과 학기

제6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방학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제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수업과 휴업

제8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 2 (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의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의 3분의 2를 소속대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1.여름방학
2.겨울방학
3.일요일

4.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5.국정공휴일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8조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2주의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9.1.16, 2008.8.1>

③ 임시휴업 및 임시휴업 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정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6장 입 학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편입학, 재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입학은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09>

제11조 (입학자격)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2. 전항 이외의 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자.<개정 2008.8.1>
3. 기타 법령 또한 교육부장관이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자.<개정 2008.8.1>

제12조 (지원 절차)

① 각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 원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②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13.>

제14조 (입학허가)

①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해당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장은 다음 각호의 전형에 대하여 제청권을 입시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필요시 학장은 제청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11.13.>
1.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각 전형
2. 정원내 일반편입학
3.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전형
4. 외국인전형

제14조의 2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본조 신설 2017.11.13.>
①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불합격처리한다.
② 전항의 사항이 입학허가 후에 발견된 때에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15조 (입학허가자 구비 서류 등)
①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외에 본 대학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삭제〉
③ 보증인이 사망 또는 그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편입학)
① 1,2학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8.4.14>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약학대학 약학과는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입학정원이 따로 있으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기초·소양교육을 2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하는 학년은 전공교육 4년의 제1학년으로 한정한다.<신설 2010.12.10>
⑤ 약학대학 약학과 편입학 자격은 본 대학교 재적생에게도 부여하며 소속변경(전과, 모집단위 이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10>
⑥ 약학대학 약학과로 편입학한 본 대학교 재적생의 재학연한, 재학기간, 재입학, 휴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횟수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10>

제18조 <본조 삭제 2017.11.13>

제19조 (학사편입학)

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3학년에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04.22.>

제20조 (입학정원외 입학)
입학정원외 입학은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입학요강에 따른다.

제21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재입학은 퇴학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만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③ 재입학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칙 제65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22조 (모집 세칙)
그 밖의 학생 모집에 관한 세칙은 필요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장 소속변경

제23조 (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허용한다. 다만, 보건행정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및 캠퍼스간, 주·야간 소속변경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개정 2019.04.22., 2015.05.07.>
② 일반학부(계열·학과) 학생의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이나 예·체능계열 입학자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4.22., 2015.05.07., 2010.12.10>
③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제2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23조 (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허용한다. 다만,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및 캠퍼스간, 주·야간 소속변경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개정 2015.05.07.> ② 일반학부(계열·학과) 학생의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이나 예·체능계열 입학자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5.07., 2010.12.10>

③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
<삭제>

제25조 (소속변경 절차)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에 이수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4>

제26조 (소속변경시험)
소속변경 지원자에 대하여는 학력 및 면접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27조 (소속변경의 허가)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 (소속변경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학생은 전입한 학부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9조 (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5.03.02.>
②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학기를 넘지 못하고,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2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15.03.02.>
② 본교 재적자 중 국가고시(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전항의 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해야할 경우 연수원 교육 기간만큼 휴학연한의 연장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한이 만료된 학생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2.09>
④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5.04.,본항 신설 2012.12.5>

⑤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1.>

제31조 (입대휴학)
병역(지원 입대 포함)으로 말미암아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 (복학의 시기)
휴학생의 복학은 개강전 3주에서 개강 후 1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다.

제33조 (복학의 절차)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자원 퇴학)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개정 2015.03.02.>

제35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학력 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한 자
3.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1.28.>
4. 국내 타 대학에 재적 중인 자
5.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본인 사망시

제9장 교과와 이수

제36조 (교과과정)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 교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은 교양기초, 대학교양, 기초교육으로 나누며, 전공 교과목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나눈다. <개정 2019.01.28., 2010.3.11>

② 공과대학장은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관하는 공학교육 인증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인증 프로그램 또는 인증과 비인증의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37조 (학점)

① 교과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 단위로 한다. 1학점의 이수 단위를 1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체육, 기타 대학이 특별히 정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1학점이 된다.

② 교양기초 및 대학교양 교과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1.28., 2010.3.11>

③ 개별연구(Individual Study)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별연구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의 2 (학점인정범위)

재학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의 범위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8조 (과정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하되,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및 원주의과대학 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약학대학 약학과는 151학점 이상으로 한다. 의예과, 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6학점 이상으로 하며, 캠퍼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건축공학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교육과정은 16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2010.12.10, 2010.4.6, 2010.3.11, 2008.4.14>

제39조 (교직과정)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한다.

제40조 (부전공,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① 학생은 학부 또는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학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연계전공)

②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해당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전공 학과 또는 학부 졸업 전, 복수 전공이수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④ 글로벌인재학부 학생이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전공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글로벌엘리트학부 학생이 글로벌엘리트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8.06.01., 신설 2015.03.02.>

⑤ 다중전공 및 연계전공은 계열과 캠퍼스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캠퍼스간 다중전

공 및 연계전공의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⑥ 부전공·복수전공·다중전공·연계전공·글로벌인재학부 및 글로벌엘리트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에 필요한 절차 및 전공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6.01, 2015.03.01.>

제40조의 2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① 전공별로 필요에 따라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의 3 (Honor 프로그램)

① 원주캠퍼스 학생은 원주캠퍼스에서 개설한 Honor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원주캠퍼스 Honor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의4(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 <신설 2018.06.01.>

① 원주캠퍼스 학생은 원주캠퍼스에서 개설한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원주캠퍼스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 (수업)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42조 (수강과 이수)

①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해당전공 책임교수 또는 학과장(학부대학 학생은 담당 학사지도사(Academic Advisor))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수 결과 과락된 과목이 필수과목일 때에는 이를 재수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택 과목일 때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과목이수 및 과목철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 1학년은 20학점까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9.04.22., 2010.12.10>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와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9.04.22., 2010.12.10>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3, 4학년(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며 총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⑤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RC융합대학, 의예과와 치의예과,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4.22., 2008.4.14>

⑥ 본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범위 및 취득 가능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본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소정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자는 입학 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대상자 및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8.4.14>

※ 상기 제4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은 20학점까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0.12.10>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와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0.12.10>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3, 4학년(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며 총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⑤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의예과와 치의예과,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4.14>

⑥ 본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학범위 및 취득 가능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본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소정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자는 입학 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대상자 및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8.4.14>

제44조 (출석의무)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개정 2012.12.5>

제45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O, A-, B+, C+, CO, C-, D+, DO, D-, F의 13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평점	평어
A^+	4.3	수
A^O	4.0	
A^-	3.7	
B^+	3.3	우
B^O	3.0	
B^-	2.7	
C^+	2.3	양
C^O	2.0	
C	1.7	
D^+	1.3	가
D^O	1.0	
D^-	0.7	
F	0	낙

② 학점이 없는 과목은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다만, 학점이 있는 과목이라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P” 또는 “NP”로 평가할 수 있다.

제46조 (성적취소)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진급)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1학년 수료 졸업학점의 1/4이상
제2학년 수료 졸업학점의 2/4이상
제3학년 수료 졸업학점의 3/4이상

제48조 (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성적불량 제적 후 재입학자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위 1항에 불구하고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의무연수기간(정규 1~4급) 중에 있는 자는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성적불량제적 적용 학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4.14>

③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운동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의 성적불량제적 적용 요건은 따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2.12.5>

제49조 (편입학생 학점인정)

편입학 학생에게는 전적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50조 (졸업논문 등)

① 각 대학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졸업논문(또는 졸업시험, 졸업설계, 졸업연주 등)의 심사판정을 거쳐 졸업을 인정받고 별표Ⅱ로 정한 학사학위를 받는다.<별표개정 2016.11.11., 별표 개정 2016.03.04., 2015.11.3., 2015.5.7., 2014.7.22., 2013.12.23, 2012.07.03, 2011.12.09, 2010.9.14, 2010.8.17, 2010.8.17, 2010.4.6, 2008.4.14>

② 졸업논문의 작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 (졸업의 요건)

졸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년(8학기) 이상(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5년(10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다만 조기 졸업자는 제외함.
2.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3. 필수이수지정 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교양 및 전공 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개정 2010.3.11>
4. 각 학생별로 지정된 영어능력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개정 2010.3.11>
5. <삭제 2010.3.11>
6. 채플에서 4개학기 이상 “P”(급)를 받은 자.
7. 8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위 1~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신청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는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학사편입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개정 2019.01.28., 2010.3.11, 2008.4.14>
8.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은 영어인증제, 원주캠퍼스 소속 학생은 졸업인증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각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
9.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 과목 이상 수

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28.>

제52조 (조기졸업)
학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해당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0.12.10>

제53조 (졸업의 시기)
①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한다.
② <삭제>

제54조 (졸업취소)
졸업생으로서 학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한다.

제54조의2 (학사학위수료) ① 제5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수료신청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을 원하는 학사학위수료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사학위수료자의 재학연한은 재학과 학사학위수료 기간을 포함하며,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경우 졸업생으로 변경한다.
<조신설 2019.01.28.>

제10장 특별학생 등

제55조 (정의, 입학 자격 및 절차)
① 외국 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이하"특별학생"이라 한다)가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처에 입학 원서, 성적 증명서 및 추천서 등 소정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학생의 입학 전형은 서류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학과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56조 (수업연한과 교과)
① 특별 학생의 수학 연한은 1년 이내이며 그 교육은 해당 대학의 학부 혹은 학과가 담당한다.
②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 (학칙의 적용)
특별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제57조의 2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3.>

제11장 학생활동

제58조 (학생활동)
학생은 본 대학교의 입교 정신에 따라 덕성을 기르고 교칙을 준수하며 전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닦아야 한다.

제59조 ()
<삭제>

제60조 (총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되,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휴학생은 총학생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총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삭제>

제61조 ()
<삭제>

제62조 (학생 지도)
학생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3조 (학업 및 업무 방해 행위의 금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64조 (포상)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 (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성행이 불량한 자
2. 학업을 방해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삭제>
③ <삭제>

제13장 등록금

제66조 (등록금 납부 의무)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등록금의 책정)
① 등록금은 수업의 특성 및 학점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입학금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에게 부과하며, 등록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67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3.11.]

제68조 ()
<삭제>

제69조 (등록금의 대체 및 반환)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70조 ()
<삭제>

제70조의 2 (시행세칙)
등록금의 납부와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장 장학금

제71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 학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 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3.11>

제72조 (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각 대학장이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3조 (지급중지)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때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74조 (지급 세부사항)

① 장학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연세우수학생육성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의 장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직제 및 교원의 임면 · 재임용

제75조 (직제)

본 대학교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75조의 2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관한 사항은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6장 교무위원회

제76조 (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에 교무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둔다.

제77조 (구성)

① 본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원주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본부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미래전략실장, 교목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학술정보원장, 대외협력처장, 국제처장, 원주의료원장 등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3.8.2, 2012.12.5, 2010.12.10, 2009.1.16., 2008.4.14., 2018.3.14>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등을 교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2.5>

제78조 (의장)

본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총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79조 (기능)

본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대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장 교수회

제80조 (교수회)

학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및 대학(원)에 교수회를 둘 수 있다.

제81조 (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12.05.08>

제82조 (교수회 소집)
대학교 교수회는 총장이, 각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3조 (교수회 소집과 개회)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4조 (교수회 기능)
교수회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각 부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84조의 2 (교수평의회)
전체 교수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수평의회를 둘 수 있다. 교수평의회 회칙 및 관련 내규는 정관 및 학칙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장 대학원과 석사, 박사 학위

제85조 (대학원)
각 대학원 학칙과 석사, 박사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장 <삭제>

제86조 ()
<삭제>

제86조의 2 ()
<삭제>

제87조 ()
<삭제>

제88조 ()
<삭제>

제88조의 2 ()
<삭제>

제19장의 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88조의 3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02.03>

②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장의 3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학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① 제88조4에 따라 과학기술융합대학에 반도체시스템공학부를 둔다. <개정 2019.04.22., 2013.12.23, 2010.12.10>

② <삭제 2010.12.10>

※ 상기 제88조의5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① 제88조4에 따라 과학기술대학에 반도체시스템공학부를 둔다. <개정 2013.12.23, 2010.12.10> ② <삭제 2010.12.10>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육과정은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정한다.[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2.23>
② 대학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그 밖에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10.12]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입학정원 및 전공은 별표I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12.23>
② 산업체 부담금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③ 등록금은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④ <삭제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23>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 변경에 관한 특별 통고가 없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개정 2013.12.23>
②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개정 2013.12.23>
③ 입학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부담금 등은 계약 체결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20장 각종 부설 연구 기관

제89조 (지속성국가과제 연구소, 대학교 부설 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지속성국가과제 연구소를 둔다. 나노의학연구단<신설 2019.04.22.>

②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설연구원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을 둔다. 국학연구원, 동서문제연구원, 언어정보연구원, 국가관리연구원, 구강악안면경조직연구센터,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인문학연구원, 공학교육혁신센터, 패턴집적형능동폴리머소재센터, 신경과학기술융합연구단, 법학연구원, 무인기용터빈기술특화연구센터,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세브란스병원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업단, 간경변증임상연구센터,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연구개발단, 융합신약연구센터, 생기능성유기분자연구단, 무한내마모연구단, 심혈관질환제품유효성평가센터, 이승만연구원, 글로벌융합기술원, 은하진화연구센터, 건축구조헬스케어연구단, 첨단전자물성계산연구단, 기후변화적응형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자연과학연구원, 생명시스템연구원, 그린솔라잉크연구센터, 심장.혈관ICT기술연구센터, 통일연구원, 항공전략연구원, 차세대융복합에너지물질특화연구센터, 미래융합연구원,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원인연구센터, 중국연구원, 농림축산식품미생물유전체전략연구사업단, 방재안전연구원, 응용해석 및 계산센터, 초정밀 광 기계기술 연구센터, 변형 제어 고성능 전자 소자 연구단, 세포사멸 연구단, 나노의학연구단, 헬스IT산업화지원센터, 당 수식화 네트워크 연구센터, 미각연구센터,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복지국가연구센터,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프론티어연구원,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반데르발스 물질 연구센터,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 미래정부연구센터, 디지털 사회 연구센터, 만성난치질환 시스템의학 연구센터, 비가역적 기후변화 연구센터, 고압광물물리화학연구단, 다차원소재연구단, 인공공감각소재디스커버리연구단, 소셜오믹스연구센터 <개정 2019.04.22., 2019.02.26., 2018.02.21., 2017.05.23., 2016.05.04., 2016.03.08., 2014.11.7, 2011.12.09, 2011.05.17, 2010.12.10, 2010.8.17, 2010.4.6, 2009.11.12, 2009.9.8, 2009.5.19, 2009.1.16, 2008.7.15., 2008.4.14.,>

③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대학간 연구소를 둔다. 교육연구소, 공공문제연구소, 근대한국학연구소, 인지과학연구소, 미디어아트연구소, 지식정보화연구소, 개인식별연구소,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젠더연구소, 방송통신정책연구소, 바른ICT연구소, 비아이티 마이크로팹 연구소, 우주생명과학연구소 <개정 2019.02.26., 2016.05.04., 2016.03.04., 2014.11.7., 2010.8.17, 2010.4.6, 2009.5.19, 2008.4.14,>

④ 대학교 부설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0조 (대학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학술 연구를 위하여 각 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설 연구소를 둔다.
문과대학에 인간행동연구소, 상경대학에 경제연구소,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경영대학에 경영연구소, 공과대학에 산업기술연구소, 철강연구소,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 공학연구원, 생명시스템대학에 프로테옴연구소, 신과대학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사회과학대학에 사회과학연구소,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음악대학에 음악연구소, 생활과학대학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교육과학대학에 융합체육과학선도연구소, 학부대학에 교양교육연구소, 언더우드국제대학에 베리타스연구소, 의과대학에 환경공해연구소,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열대의학연구소, 산업보건연구소, 심혈관연구소, 유전과학연구소, 소화기병연구소, 내분비연구소, 장기이식연구소, 뇌연구소, 시기능개발연구소, 희귀난치성신경근육재활연구소, 비뇨의과학연구소, 면역질환연구소, 재활의학연구소, 알레르기연구소, 방사선의과학연구소, 인체조직복원연구소, 세균내성연구소, 의학행동과학연구소, 피부생물학연구소, 에이즈연구소, 마취통증의학연구소, 척추신경연구소, 기도점액연구소, 관절경·관절연구소, 각막이상증연구소, 의학사연구소, 연세의료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메디컬융합연구소, 혈관대사연구소, 뇌전증연구소, 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 신장질환연구소,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 치과대학에 구강과학연구소,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두개안면기형연구소, 치주조직재생연구소, 구강종양연구소, 간호대학에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 약학대학에 종합약학연구소, 보건대학원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국제학대학원에 현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연구소, 정보대학원에 IT정책전략연구소, 글로벌창의융합대학에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과학기술융합대학에 기초과학연구소,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원주의과대학에 직업및환경의학연구소, 모발및코스메틱의학연구소, 유전체코호트연구소, 미토콘드리아연구소, 재생의학연구소, 청각재활연구소, 자동차의과학연구소 <개정 2019.04.22., 2019.02.26., 2018.02.21., 2017.05.23., 2016.03.04., 2015.11.3., 2011.12.09, 2011.05.17, 2010.8.17, 2009.11.12, 2009.9.8, 2009.5.19, 2009.1.16, 2008.7.15, 2008.4.14., 2014.11.7.>

② 각 대학 부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제90조 제1항 내용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 문구를 적용함

인문예술대학에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과학기술대학에 기초과학연구소, 보건과학대학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제21장 공개강좌

제90조의 2 (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개강좌 및 연구소 개설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0조의 3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① 본 대학교에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운영에 의거 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장 학칙개정절차

제90조의 4 (학칙개정절차)

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조정된 내용을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개정한다.<개정 2012.02.03, 2008.08.01>

제23장 부 칙

제91조 (시행일)

이 학칙은 서기 195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 당시 제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3학년 재학자	165학점 이상
제4학년 재학자	170학점 이상

제92조 (위임 규정)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93조 ()

①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5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 시행시 현재로 구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는 본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 해당 학년에 편입한다. 본 개정 학칙 시행시 현재로 세브란스 간호학교 제 2,3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그 희망에 따라 본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해당 학년에 편입한다.

② 본 개정 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59년 5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63년 4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학칙은 196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개정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개정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⑪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⑫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69년 12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⑬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⑮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⑯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⑰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⑱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⑲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와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61조의 규정은 197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1972학년도 이전의 입학생 및 의학계 학생에 대해서는 본 학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⑳ 이 학칙은 197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3년 7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학칙은 197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 학칙(제64조:졸업논문, 제101조:암센터 삭제)은 197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 학칙은 197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7년 10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8년 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30)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9년 7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및 제62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6조, 제68조, 제71조)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6조, 제68조, 제71조)은 198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16조, 제54조, 제62조, 제64조, 제106조)은 198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16조, 제54조, 제62조를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5) 이 개정 학칙(제62조)은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6)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4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1983.12.30) 부칙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21조 제③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9) 이 개정 학칙(제29조 제2항)은 198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40) 이 개정 학칙(제21조 ①②③항)은 198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1)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2조, 95조)은 198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43조 제1항 단서 규정은 8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2항, 제51조 제5호)은 1986년 제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4) 이 개정 학칙(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95조 제1항)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50조 제1항, 제95조 제1항)은 198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개정 학칙(제82조, 제92조)은 인가일(1987년 4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 학칙(제75조)은 198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4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8.29) 부칙③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친 자는 학칙 제3조, 제2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9) 이 개정 학칙(제3조, 제5조, 제17조 ①항, 제19조 ②항, 제21조 ②항, 제23조 ①항, 제30조, 제40조,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53조 ①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93조)은 1988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 조치) 1981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의학과, 치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3조, 제17조 ①항, 제19조 ②항, 제21조 ①항, 제23조 ①항, 제52조, 제53조 ①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8조 ①항, 제89조, 제90조 ①항)은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0조)은 198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0조 ①)은 198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은 199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5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51조 ③항)은 1990년 5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③항의 변경규정은 199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조 제 ①항)은 199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은 199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8조 ①항, 제90조 ①항)은 199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조, 제3조, 제3조의 별표Ⅰ, 제50조의 별표Ⅱ)은 199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도서관학과 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 1991학년도부터 도서관학과 학생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학과 명칭 변경 학과의 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의 요업공학과 학생은 세라믹공학과 학생으로, 의용공학과 학생은 의용전자공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5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90조)은 199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13조)은 199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1)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

는 경우에는 제21조 제 1,2,3,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2) (입학 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6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3조, 제3조의 별표Ⅰ, 제77조, 제90조 1항)은 199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50조 제1항 별표Ⅱ의 변경된 수여학위명(환경과학과, 의용전자공학과)은 199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6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1조 ③항 삭제 후 ④항은 ③항으로 조정, 제35조 4호 변경, 제87조 용인.광주병원 삽입)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5)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조 특허법무대학원 신설, 제3조 별표Ⅰ 산업시스템공학과.원주 간호학과 신설 및 식품생물공학과.생물자원공학과로 명칭 변경, 제11조, 제13조 1항, 제18조, 제20조, 제77조 섭외부총장 삽입, 제88조 사회교육원 신설)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994학년도부터 식품공학과 학생은 식품생물공학과 학생으로, 낙농학과 학생은 생물자원공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66)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43조 ④항 신설, 현 ④항은 ⑤항으로 조정, 제55조 ①항, 제56조 ①항 변경, 제77조 연세전산원장 삽입, 제89조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신호처리연구센터 신설, 제90조 건축과학기술연구소,신장질환연구소,시기능개발연구소,근육병재활연구소,기초의학연구소 신설, 제21장 공개강좌 제90조의 2 ①,②항 신설, 제21장 부칙을 제 22장으로 조정)은 199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67)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37조 중 교련 삭제, 제77조 섭외부총장을 대외부총장으로 변경)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995년 3월 1일부터 전산과학과 학생은 컴퓨터과학과 학생으로, 사회사업학과 학생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의생활학과 학생은 의류환경학과 학생으로, 주생활학과 학생은 주거환경학과 학생으로, 원주 생물학과 학생은 생명과학과 학생으로, 산업보건학과 학생은 산업환경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6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및 기계·설계·산업공학부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신과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전파공학과,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및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6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 1996년 3월 1일부터 이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한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2. 1996년 3월 1일부터 보건과학대학 환경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한 보건과학대학 환경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7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중 제4조②항, 제2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②항, 제48조, 제51조 2·3·4호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7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4조②항, 제2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②항, 제48조, 제51조 2·3·4호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72)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1항은 '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1997년 3월 1일부터 문과대학 인문학부는 인문학부와 유럽어문학부로,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세라믹공학과는 재료공학부로, 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과와 사회체육과는 체육계열로, 원주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문리대학 인문과학부와 자연과학부, 경법대학 경법학부,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로 변경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보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1997년 3월1일부터 공과대학 식품생물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수여학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원주 보건과학대학 산업환경학과의 수여학위명을 1996학년도 제2학기부터 보건학사에서 이학사로 변경한다.

(7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인가일(1997.7.30)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이과대학 지질학과 및 지질학전공 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과 및 지구시스템과학전공 과정에 각각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7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0조의 3 신설)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7조의2, 제43조, 제48조는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제43조 제4항은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7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3조 제4항, 제77조)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7) (시행일) 이 개정 학칙(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의2)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①항, 제5조 ①,⑤항, 제23조 ①항,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①항, 제43조 ①항, 제47조, 제51조 2호,3호)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0조, 제77조, 제86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7조의2, 제43조는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86조, 제89조)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의 공학대학원 명칭변경은 200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하고, 신설인가된 연합신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은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8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90조의2)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89조, 제90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조, 제8조의2,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51조, 제71조, 제74조, 제89조, 제90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1조 제7호 신설)은 2002학년도 신입생과 2004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86) (1)(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조, 제5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40조의2,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별표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재학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축공학 전공내의 건축학(설계)과정에 재학 중인 자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에 의하여 15학기로 본다.
(87)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의2, 제86조, 제88조의3, 제89조, 제90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1. 2005학년도 입학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9) (1)(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의2, 제38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 제51조, 제86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언더우드국제학부는 2006학년도 신입생을 최초로 선발한다.
(90)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10조, 제75조의2, 별표I과 별표II의 컴퓨터.정보 공학부 소속 전공 순서 변경 건)는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별표I, 별표II의 정원감축, 모집단위 변경)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의 모집단위는 종전 학칙에 따른다.
(9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0조에서 입학정원외 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시요강에 따르도록 함, 제86조에서 보건진료소를 건강센터로 직제명을 변경하고 생활관 및 방사선안전관리센터를 추가, 제86조의 2를 신설하여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경영대학원 부속 상담경영원,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영상대학원 부속 영상제작센터,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기독상담센터)을 명시, 제87조에서 인천세브란스병원을 삭제하고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을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으로 직제명을 조정, 제88조의2에서 생활관을 삭제,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직장예비군연대를 추가, 제89조에 병원경영연구소를 의료.복지연구소로 직제명 변경, 제90조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차세대디스플레이.소자연구소, 관절경.관절연구소를 추가, 가정간호.호스피스연구소를 간호정책연구소에 흡수 통합)은 2005년 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93)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II,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6조 제2

항 내지 제4항, 제38조, 제4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 제51조, 제86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4) (시행일)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0조, 별표I, 별표II의 정원감축 및 모집단위 변경)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5) (시행일)이 개정학칙(제23조 제1항, 제47조)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90조의2 제2항 개정, 제40조의2 제2항, 제59조, 제19장 삭제, 제44조의2항, 제19장의3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0조 제4항, 제61항 삭제, 제65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8)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Ⅰ,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0조 제1항)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99)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Ⅱ)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00)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제90조 제1항) 각종부설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01)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6항, 제38조, 제43조 제5항과 제7항, 제48조 제1항과 제2항, 제51조 제7호, 제77조)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2)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 별표2,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9조 제2항, 제11조, 제90조의 4)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4)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77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5)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51조 제8호)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6)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07)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8)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9) 이 개정학칙(제5조 제5항, 제21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1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1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0) 이 개정학칙은(제2조,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의 별표1과 별표2, 제38조,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의한 약학대학의 설립일은 2011년 2월 1일로 하되 학생모집, 교수채용 등 대학 설립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는 약학대학설립준비위원회가 담당하고, 제38조에 의한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수료학점 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11) 이 개정학칙은(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2)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 별표2)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13) 이 개정학칙(제4조 제2항 및 제4항, 제17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제52조, 제77조, 제88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88조의6 내지 제88조의11, 제89조 제1항)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14)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5)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1)은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6)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과 별표2, 제10조, 제30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17) 이 개정학칙(제88조의3 제1항, 제90조의4)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8)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1 테크노아트학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9) 이 개정학칙 제3조 제2항 별표1 입학정원(의예과 및 치의예과 증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전임강사 명칭 폐지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0)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거환경학과의 실내건축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 현재 주거환경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실내건축학과 학생으로 본다.
(121) 제2조 중 법과대학은 2017학년도까지만 조직과 명칭을 유지한다.(교육과학기술부 공문 대학원제도과-1927, 2012. 5. 8.)
(12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0조 제4항 신설, 제44조 제2항 제2호 개정, 제48조 제3항 신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7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은 201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23)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4조 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Ⅰ과 별표Ⅱ는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4)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조 제1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항 신설 및 제4조 제2항, 제38조, 별표Ⅰ개정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5) 이 개정학칙(제19장의 3 전면개정, 별표I의1을 별표I의2로 번호변경 후 개정, 별표II의2 신설)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6) 이 개정학칙(제30조 제5항 및 제67조의2 신설)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7)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Ⅰ 및 별표 Ⅱ 개정)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전공명칭 변경건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
(1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4년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
(129) 이 개정 학칙(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4조 개정, 제40조 제4항 신설, 기존 제4항 및 제5항 항번호 변경, 제6항 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3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3조의2 신설)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3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I · 별표II, 제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제2항) 중 서울캠퍼스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원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모집단위 독립 및 글로벌엘리트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원주캠퍼스 보건과학과(야간)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하고, 디지털아트전공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졸업생에게까지 소급적용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가. 학사에 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나. 소속변경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다.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라.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마.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1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정보산업공학과 및 컴퓨터·정보공학부에서 산업공학과 및 컴퓨터·산업공학부로의 명칭변경건과 스포츠레저학과 및 체육학사에서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및 스포츠산업학사로의 명칭변경건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5조 제6항 변경, 제10장 장명 변경 및 제57조의2 신설, 제90조 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13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6년 3월 4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별표II 변경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중 글로벌인재학부 전공명 및 학위명 변경·신설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문화·통상 전공은 2015, 2016학년도 입학생만 적용한다.

(135)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I 중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사회과학부 및 융합과학공학부 학위명 신설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30조 제4항 및 제89조 제1항, 제2항 개정사항은 2016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및 학위명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전공 선택을 하지 않은 재학생도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을 제1전공으로 할 수 있다.

(137)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에서 의공학부 의료시스템전공 및 Bio융합전공을 의공학부 의료시스템공학전공 및 바이오융합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2017년 3월 1일 현재 재적생부터 적용하고, 모집단위 및 학부로서의 응용과학부를 폐지하고 모집단위 및 학과명을 패키징학과로 변경하는 것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토목·환경공학전공에서 건설환경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90조 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

(13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4조 제2항 신설, 제14조의 2 신설, 제18조 삭제)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40)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부칙 제121호에 따라 법과대학이 폐지되는 2018학년도 이후에도 종전의 법과대학에 재적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 등 학사관리는 2018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다.

(14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에서 법과대학 삭제, 별표II 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에서 성악과 입학정원 1명 감축 및 관현악과 입학정원 1명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한국문화전공을 문화·미디어전공으로 개편하는 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학년도 신입생까지 한국문화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전공 선택을 하지 않은 재학생도 문화·미디어전공을 제1전공으로 할 수 있다.

4. 서울캠퍼스 의예과 입학정원 110명 중 33명은 정원내 학사편입으로 선발하는 것은 2019학년도까지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1항 및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2) (시행일) 이 학칙개정(제77조 제1항 미래전략실장 반영 및 기획실장 명칭변경)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3) 1. (시행일) 이 학칙개정(제40조 ⑤항 내지 ⑦항은 2016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신설학칙(제40조의4)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되, 이 개정 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대학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학칙 개정일 기준 글로벌인재학부 재적생은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소속 전공으로 졸업함).

2.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중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학부 졸업신청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제51조 제9호 개정, 제54조의2 신설)은 2019년 2월 졸업 신청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글로벌인재학부 바이오생활공학전공·응용정보공학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2019학년도 신입생은 신설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고, 2015 ~ 2018학년도 입학생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음).

4. 기타 자구수정(제35조 제3호 및 제51조 제7호 개정)은 2019.01.28(총장결재일)부터 시행한다.

(14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8년 2월 26일부

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별표I, 별표II 변경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4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19조 제2항 삭제, 제89조 및 제90조 개정은 2019년 0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II 응용통계학과 학위명 변경은 2019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학칙 원주캠퍼스 학사구조 전면 개편(제2조, 제3조 1항, 제3조 2항의 별표I, 별표Ⅰ의2 , 별표II, 별표Ⅱ의2, 제23조 제1항~제2항, 제43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88조의5 제1항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

2019학년도 입학정원

대학	모집단위 /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입학정원
문과대학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45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2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73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30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	33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30
		사학과	사학과	45
		철학과	철학과	35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30
		심리학과	심리학과	37
	소계			390
상경대학	상경계열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177
		응용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58
	소계			235
경영대학	경영계열	경영학과	경영학과	274
	소계			274
이과대학	이학계열	수학과	수학과	37
		물리학과	물리학과	33
		화학과	화학과	45
		지구시스템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32
		천문우주학과	천문우주학과	28
		대기과학과	대기과학과	28
	소계			203

대학	모집단위 /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입학정원
공과대학	공학계열	화공생명공학부	화공생명공학전공	85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187
		건축공학과	건축학(5년제)	38
			건축공학(4년제)	37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	35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75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121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102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38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66
		글로벌융합공학부	IT융합공학전공	20
	소계			804
생명시스템대학	생명시스템계열	시스템생물학과	시스템생물학과	29
		생화학과	생화학과	27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54
	소계			110
신과대학	신학계열	신학과	신학과	47
	소계			47
사회과학대학	사회계열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81
		행정학과	행정학과	79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27
		사회학과	사회학과	39
		문화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14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홍보영상학과	44
	소계			284
음악대학	예·체능계열	교회음악과	교회음악과	17
		성악과	성악과	24
		피아노과	피아노과	20
		관현악과	관현악과	40
		작곡과	작곡과	19
	소계			120

대학	모집단위 /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입학정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계열	의류환경학과	의류환경학과	27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26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26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족학과	27
		생활디자인학과	생활디자인학과	26
	소계			132
교육과학대학	교육과학계열	교육학부	교육학전공	54
	예·체능계열	체육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46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43
	소계			143
의과대학	의·치·간 계열	의예과※	의예과	110
			의학과	[110]
	소계			110[110]
치과대학	의·치·간 계열	치의예과※	치의예과	60
			치의학과	[60]
	소계			60[60]
간호대학	의·치·간 계열	간호학과	간호학과	73
			간호학과{야간특별과정}	{80}
	소계			73{80}
언더우드 국제대학	언더우드계열	언더우드학부	비교문학과문화전공	169
			경제학전공	
			국제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생명과학공학전공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아시아학전공	173
			문화디자인경영전공	
			정보·인터랙션디자인전공	
			창의기술경영전공	
			사회정의리더십전공	
			계량위험관리전공	
			과학기술정책전공	
			지속개발협력전공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융합과학공학부	나노과학공학전공	80
			에너지환경융합전공	
			바이오융합전공	
	소계			422

대학	모집단위 /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입학정원
약학대학	약학계열	약학과	약학과	30
	소계			30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국제통상전공	10
			문화·미디어전공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바이오생활공학전공	
			응용정보공학전공	
		글로벌기초교육학부		-
	소계			10
서울캠퍼스 합계				3,447 {80}[170]

※ 서울캠퍼스 2019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10명 중 33명은 정원내 학사편입으로 선발함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
인문예술대학 (원주)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전공	36
		인문과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12
			역사문화학전공	
			철학전공	
	디자인계열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76
			시각디자인학전공	
			디지털아트전공	
	소계			224
정경대학 (원주)	사회계열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165
			글로벌행정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61
	소계			326
과학기술대학 (원주)	이학계열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152
			물리학전공	
			화학및의화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전공	74
			응용생명과학전공	
		패키징학과	패키징학과	28
	공학계열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69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
			정보통신공학전공	
	소계			323
보건과학대학(원주)	공학계열	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76
			친환경에너지공학전공	
		의공학부	의료시스템공학전공	75
			바이오융합공학전공	
	보건계열	보건행정학과		46
		임상병리학과		46
		물리치료학과		37
		작업치료학과		37
		방사선학과		36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분자진단과학전공	{80}
			재활보건학전공	
			과학수사학전공	
	소계			353{80}
동아시아국제학부	인문·사회계열	EAST ASIA International College (EIC)	East Asian Politics and Culture	55 (이.공학계열은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East Asian Economy and Business	
	이·공학계열		Biomedical Science	
			Bio-health Engineering	
	소계			55
글로벌 엘리트학부	인문·사회계열	글로벌 엘리트학부	한국문화.경영전공	5
	소계			5
원주의과대학	의학·간호계열	의예과		93
		의학과		[93]
		간호학과		50
		치위생학과		37
		간호학과{야간특별과정}		{80}
	소계			180 {80}[93]
원주캠퍼스 합계				1,466 {160}[93]
총계				4,913 {240}[263]

별표 | 의2. 원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정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과 · 전공	편입학정원
과학기술대학	공학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	{60}
			산업공학전공	
소계				{60}

별표 II

학과별 수여 학위 종별표

대학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학위명
문과대학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독어독문학과		문학사
		불어불문학과		문학사
		노어노문학과		문학사
		사학과 (한국사,동양사,서양사)		문학사
		철학과		문학사
		문헌정보학과		문학사
		심리학과		문학사
상경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경제학사
		응용통계학과		통계학사
경영대학	경영계열	경영학과		경영학사
이과대학	이학계열	수학과		이학사
		물리학과		이학사
		화학과		이학사
		지구시스템과학과		이학사
		천문우주학과		이학사
		대기과학과		이학사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화공생명공학전공		공학사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공학사
	건축·도시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5년제)	건축학사
			건축공학(4년제)	공학사
		도시공학전공		공학사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공학사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공학사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공학사
	컴퓨터·산업공학부	산업공학전공		공학사
		컴퓨터과학전공		공학사
	글로벌융합공학부	IT융합공학전공		공학사
생명시스템대학	생명시스템계열	시스템생물학과		이학사
		생화학과		이학사
		생명공학과		공학사

대학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학위명
신과대학	신학계열	신학과	신학사
사회과학대학	사회계열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행정학과	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사회학과	문학사
		문화인류학과	문학사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홍보영상학과	언론학사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음악학사
		성악과	음악학사
		피아노과	음악학사
		관현악과	음악학사
		작곡과	음악학사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계열	의류환경학과	이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실내건축학과	이학사
		아동·가족학과	이학사
		생활디자인학과	이학사
교육과학대학	교육학부	교육학전공	문학사
		체육교육학과	체육학사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사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사
치과대학		치의학과	치의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대학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학위명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비교문학과문화전공	문학사
		경제학전공	경제학사
		국제학전공	정치학사
		정치외교학전공	정치학사
		생명과학공학전공	이학사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아시아학전공	문학사
		문화디자인경영전공	이학사
		정보·인터랙션디자인전공	이학사
		창의기술경영전공	이학사
		사회정의리더십전공	정치학사
		계량위험관리전공	경제학사
		과학기술정책전공	행정학사
		지속개발협력전공	국제학사
	융합과학공학부	나노과학공학전공	공학사
		에너지환경융합전공	공학사
		바이오융합전공	공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국제통상전공	국제통상학사
		문화·미디어전공	문학사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문학사
		바이오생활공학전공	공학사
		응용정보공학전공	공학사
인문예술대학 (원주)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학사
		영어영문학전공	문학사
		역사문화학전공	문학사
		철학전공	문학사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디자인학사
		시각디자인학전공	디자인학사
		디지털아트학전공	디자인학사
정경대학 (원주)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경제학사
		행정학전공	행정학사
		국제관계학전공	정치학사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경영정보학전공	경영학사

대학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학위명
과학기술대학 (원주)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이학사
		물리학전공	이학사
		화학및의화학전공	이학사
		정보통계학전공	이학사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전공	이학사
		응용생명과학전공	이학사
		패키징학과	이학사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사
보건과학대학 (원주)	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공학사
		친환경에너지공학전공	공학사
	의공학부	의료시스템공학전공	공학사
		바이오융합공학전공	공학사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사
		방사선학과	방사선학사
	보건과학부 (특별학사학위과정)	분자진단과학전공	보건학사
		재활보건학전공	보건학사
		과학수사학전공	이학사
동아시아국제학부	EAST ASIA International College(EIC)	East Asian Politics and Culture	Bachelor of Arts in International Studies
		East Asian Economy and Business	Bachelor of Arts in International Studies
		Biomedical Science	Bachelor of Science
		Bio-health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연계전공	연계학사

별표 II 의2.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수여학위

대학	전공	학위명
과학기술대학	반도체공학전공	공학사
	산업공학전공	공학사

학사에 대한 내규

개정일: 2018.05.14
제정일: 1990.08.08

담당부서: 교무처 - 학사지원팀(02-2123-208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기등록

제2조 (학기등록) 본 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매학기 초에 설정한 기간 안에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16.10.05.>

제3장 수강신청

제3조 (신청요령) ① 학생은 해당전공 소속 학과장(학부대학 학생은 담당 Academic Advisor)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수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교양과 전공과목별로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③ 수강신청 내용은 본인 책임하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④ 재수강은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⑤ 1회 또는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학사상담을 받은 후 소정양식인 학사경고자 상담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2018. 05. 14>

제4조 (신청학점) ① 재학 중인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매학기 18 또는 19학점까지

수강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ㆍ박사통합)연계과정을 이수하는 3, 4학년 학생과 글로벌융합공학부 및 약학대학생은 매학기 24학점(대학원과목 포함)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단, 채플, 사회봉사과목, RA리더십, RC자기주도활동, 주니어세미나 과목은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4.26., 2014.12.29., 2011.01.20.>

② 의, 치의예과 학생은 각 학과 내규에 따른다.

③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은 입학 후 3학기까지 한국어능력에 따라 학기당 최대이수학점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단, 외국어로 진행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 20, 2014. 9. 1>

1. 한국어 능력에 따른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개정 2011.04.01., 2011.01.20., 2014.09.01.>
   ㆍ1급 수료: 학기당 3학점, 한국어학당 연수 의무
   ㆍ2급 수료: 학기당 6학점, 한국어학당 연수 의무
   ㆍ3급 수료: 학기당 9학점, 한국어학당 연수 의무
   ㆍ4급 수료: 학기당 12학점, 한국어학당 연수 선택 가능
   ㆍ5급 수료: 일반학생과 동일
2. <삭제 2011.04.01.>
3. 의ㆍ치의예과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한국어능력에 관계없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
4. 한국어능력은 한국어학당 정규과정 등급 기준에 따른다. <본호 신설 2011.04.01>
5. 글로벌인재학부 학생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수강 신청 학점 제한에 관한 사항은 글로벌인재학부장이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본호 신설 2014.12.29.>

제5조 (기초교양과목 우선) 1학년 학생은 공통기초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제6조 (제2외국어) <삭제>

제7조 (능력별 학점취득 및 초과신청) ① 직전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 초과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글로벌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 학생 및 의예·치의예과 학생은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1.01.20, 2010. 1. 21>

②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이 미달일 경우 학점초과신청원 제출자에 한하여 최대수강신청 학점에 1학점 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학사에 관한 내규 제9조 ④항에 따라 공통기초 및 필수교양과목 이수를 면제받은 1학년 학생은 당해학기에 면제과목에 상응하는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제8조 (우등생 제한) 15학점 미달 신청자는 우등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 학생은 18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이수과목

제9조 (교양과목) ① 교양과목은 공통기초, 필수교양 및 선택교양으로 구분하고 지정된 학년 학기에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 1. 21>

② 교양영역에서 공통기초 12학점, 필수교양 24학점 등 36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집단위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도의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10 . 1. 21>

③ <삭제 2010. 1. 21>

④ 1학년 중 공통기초 및 필수교양 교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총 10학점 이내에서 학점 취득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성적을 부여하고 해당과목에 대한 수강의무를 면제한다. 특별시험의 운영 및 면제기준에 대해서는 총장이 매 학년도마다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 1. 21>

제10조 (공통기초) 공통기초 교과목은 채플, 글쓰기, 영어, 기독교의 이해의 영역으로 구분하며, 채플 4학기(편입생은 2학기) 2학점, 글쓰기 3학점, 영어 4학점 및 기독교의 이해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0. 1. 21>

제11조 (필수교양) ① 필수교양 교과목은 문학과예술, 인간과역사, 언어와표현, 가치와윤리, 국가와사회공동체, 지역사회와세계, 논리와수리, 자연과우주, 생명과환경, 소프트웨어의 10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이 중 8영역(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6., 2010. 1. 21>

② 학과별로 필요한 경우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필수교양영역에서 특정한 영역 또는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③ 학과별로 필요한 경우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전공분야 기초과목 중 2과목(6학점)을 필수교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글로벌인재학부 또는 체육특기자의 경우 글로벌인재학부장이 총장 및 교무처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2015.8.6., 2017.8.24>

④ 위 ①항의 필수교양 영역과목 이외에 기숙형교육(Residential Education)에서 필수과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01.20>

제12조 <삭제 2010. 1. 21>

제13조 <삭제 2010. 1. 21>

제14조 <삭제 2010. 1. 21>

제15조 (전공 교과목) 전공 이수학점은 단일전공자의 경우 48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교육과정)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2중·다중전공자의 전공학점은 각 36학점으로 하되, 외부기관 교육인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제16조 (기타) ① 교양 및 전공과목 외에 교직과목 및 평생교육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0. 1. 21>

② 계절제 수업과 2중전공 및 연계전공을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대학 소재지 캠퍼스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우리학교 입학 전 또는 1,2학년 재학 중에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소정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한하여 총 6학점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글로벌인재학부의 경우 글로벌인재학부장이 총장 및 교무처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6.>

④ 제11조 제4항의 기숙형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정된 기숙사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20>

제16조의 1 (학점대체) 제9조 제①항에서 규정한 교양과목의 학점대체에 관한 사항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0. 1. 21>

제5장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 수강과목철회

제17조 (확인 및 변경) ① 학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표 변경이나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전공 학과장(학부대학 학생은 담당 Academic Advisor)에게 수강신청에 대한 지도를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본인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학사포탈시스템에서 해당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수강철회 후 최소 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1, 2008. 11. 13.>

④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 제2항에 의한 학점초과신청이나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2008학년도 이전에 철회한 과목은 재수강하여도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개정 2008. 11. 13.>

제6장 시험 · 성적평가

제19조 (시험) ① 모든 교과목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

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다음의 원칙에 준하여 한다. 다만,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명 이상 수강강좌 :

A+ ┐
A0 ├ 35% 이내
A- ┘
B+ ┐
B0 ├ 35% 이내
B- ┘

20명 이하 수강강좌 :

A+ ┐
A0 ├ 40% 이내
A- ┘
B+ ┐
B0 ├ 50% 이내
B- ┘

②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다만, 체육특기자 입학생 중 운동부원(8학기까지) 및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원주의과대학ㆍ성적불량 제적후 재입학자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29>

제21조 (시험불응) ① 한 학기 두차례의 시험(중간, 학기말)중 그 한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불응 이유가 승인되면 한 차례의 시험성적의 80%를 인정받는다(시험불응원 양식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비치). <개정 2010. 1. 21>

② 시험불응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3차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와 건강센터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개정 2016.10.05., 2010. 1. 21>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진단서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증빙서류

③ 시험불응원은 해당시험(중간 또는 학기말) 개시 일주일전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 1 (성적제출)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6일 이내에 학사포탈시스템에 성적을 입력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5.>

② <삭제 2016.10.05.>

③ 성적산출시 출석점수를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성적평가표 결석수란의 결석수가 강의실시시간의 1/3 이상일 때는 학칙 제44조 “출석

의무"에 의거 성적이 'F'로 처리된다. <개정 2015.02.26.>

④ <삭제 2016.10.05.>

제22조의 2 (출석인정) 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부모: 5일
2. 조부모 및 외조부모: 2일
3. 형제자매: 1일 <개정 2012.11.29.>

② 조기취업 및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 온라인교육의 이수 또는 레포트 및 과제물의 제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15.>

③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에 대해서는 체육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7.06.15.>

제22조의 3 (휴강 및 보강) 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2.26.>

제23조 (성적확인) 제출된 성적평가표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결과로 담당교수는 교수 보관용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제24조 (성적정정)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는 기말고사 종료 후 4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② 총장은 전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24조의 2 (교과목의 재수강) ① 재수강의 신청은 제3조 제4항에 따른다.

②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 및 성적만 인정한다.

③ 위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증명서상의 평점계산(평량평균)에서 제외한다.

④ <삭제 2010. 1. 21>

⑤ 재수강의 범위와 재수강 시 성적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0. 1. 21>

제25조 (휴학자 및 자원퇴학자의 성적처리) ① (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2/3선 해당일 전에 입대 휴학(입대일 기준)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학기 2/3선 해당일부터 입대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199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9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개정 전 내규적용)

② (자원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자원퇴학한 학생의 경우에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단, 학기말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원퇴학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년 3월 1일 이후 자원퇴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징계받은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말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시험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험부정행위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하고 당해 교과목 시험 이후의 교과목은 모두 'W'로 처리한다.

제27조 (대학원 및 기타 교과목 성적처리) ① 대학원 개설 교과목의 성적은 평점환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삭제 2010 .1 .21>

제28조 (계절제 수업 성적처리) ①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 환산총점 및 평량평균에 포함한다.

② 휴학자도 계절제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휴학자의 성적처리는 재학생의 성적처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휴학자가 계절제수업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후 등록하여 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개정 2017.06.15.>

제29조 (평량평균의 계산) ① 학칙 제45조에 의한 성적 평량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그러나 수강과목을 철회한 교과목의 학점은 신청학점에서 제외함) <개정 2010. 1. 21>

② 성적의 평량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평점합계 2. 성적취득 교과목수

제30조 (학적부 정리) ① 제출된 성적은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최)우등생, 우수생, (최)우등졸업생 및 징계는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장 졸업의 요건

제31조 (등록학기 및 총 취득학점)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126학점 이상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약학대학은 151학점 이상, 건축학(5년제)교육과정의 경우, 5년(10학기)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166학점이상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학칙 제4조②항,③항, 17조, 19조, 20조에 의거하여 위탁학생으로 입학한 자는 제외) <개정 2014.2.12, 2011.01.20, 2010 .1. 21>

제32조 (교과목 이수의무) ① 교양과정에서 공통기초 12학점, 필수교양 24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수이수과목은 모집단위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10. 1. 21>

② 단일전공자의 경우 최소 48학점 이상, 2중(재학 중 캠퍼스 내 복수전공)/다중전공자의 경우 36학점의 전공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기관인증 등 필요한 경우 학

과(교육과정)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학과별로 심화전공 이수요건을 별도로 지정하여 희망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③ 모든 학생은 자신의 종별 및 영역의 구별없이 3000 및 4000단위 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예·치의예과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항 신설 2010. 2. 28>, <본항 삭제 2010. 1. 21>

④ ①,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세 우수학생 등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는 이수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채플) 채플에서 4개학기(학사편입, 군위탁생은 2학기) 이상 "P"(급)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 1 (원주캠퍼스 졸업인증) 원주캠퍼스(원주의과대학 제외) 학생은 "원주캠퍼스졸업인증제시행세칙"에 의한 졸업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4조 (부전공) 부전공을 원하는 경우 부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등록금 반환

제35조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에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접수기간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4.26.>

1. 질병휴학: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3차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와 건강센터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개정 2014.12.29., 2015.8.6.>
2. 임신·출산·육아: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가사: 별도 서류 없음 <개정 2012.11.29., 2010.1.21>
4. 창업: 1년 내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창업지원단장,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장이 날인한 창업실적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 <신설 2014.3.25.>
5. 창업준비: 창업지원단장,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장이 날인한 창업계획서 및 창업준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4.3.25.>

② 등록을 마친 후 학기 도중에 가사 등으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 출산, 천재지변 또는 법적조치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기말시험 시작 일주일 이전까지 휴학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987학년도 제2학기부터 개정 시행) <개정 2017.04.26, 2012.11.29, 2010. 1. 21, 2015.8.6.>

③ 신입생, 편입생, 학사편입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 등은 질병 또는 임신, 출산,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원주의과대학 간호학사 학위특별과정(야간)은 제외) <개정 2012.11.29., 2015.05.07., 2015.8.6., 2016.10.05.>

④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VSP) 기간 중에는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기초(당해학기 휴학신청 시작일로부터 학기수업일수 2/3선까지)에 일반휴학 후 입대

휴학이 승인된 경우에는 학칙 제30조(휴학기간)의 규정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창업 혹은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창업준비휴학은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3.25.>

⑦ 창업 혹은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의 허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3.25.>

제36조 (입대휴학) ①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발급일부터 입영일까지 입영통지서(소집통지)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일이 학기 2/3이선 이후인 경우에는 입영 일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학생도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복무단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와 성적증명서를 학생과에 제출하여 일반군사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대에 제출하면 군복무 단축을 받을 수 있다.

③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1년이 초과되면 복학 불가함)

④ 입대휴학은 휴학 접수일과 변동일(입영일) 중 앞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휴학 처리한다. 다만 학기 2/3선 이후 입대휴학자는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 처리한다. <개정 2010. 1. 21>

제37조 (복학) ①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4.26. >

② 입대휴학 후 복학신청시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04.26]

제38조 (자퇴) 질병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 21>

제39조 (등록금 반환) ① 삭제

② 휴학자(군입대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관계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조기졸업(1984. 3. 1 신설)

제40조 (정의) 학칙 제4조2항의 “수업연한을 두 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함은 학사학위 과정에서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한 경우 소정의 수업연한인 8학기에 달하기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제41조 (대상과 자격)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5학기 이수 이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② 조기졸업 대상자는 입학 후 6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취득한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이상(글로벌융합공학부 학생은 3.30이상)인 자라야 한다. 단, 대학원 교과

목 및 P(급)/NP(낙)과목은 평량평균 환산 시 제외한다. <개정 2011.01.20., 2010.01.21>

③ 의학·치의학·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소속 학생 및 학칙 제48조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2.12, 2011.01.20>

제10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42조 (학적부 정정) ①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정사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한다.

1.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본증명서 <개정 2010 .1. 21>
2. <삭제 2010. 1. 21>
3. 국적변경: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기타 국적 취득 또는 포기 사실증명서 <본호 신설 2010 .1. 21>

제11장 신체검사(삭제 2016.10.05., 신설 1980. 3. 1)

제43조 (신체검사)

[본조삭제 2016.10.05.]

부 칙

(1) 본 개정내규(전문 재정비 및 조문화)는 199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제39조(등록금 대체 및 반환)에 한하여는 1992학년도 입학한 학생(편입생, 복수전공생 등 포함)부터 적용,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제3조 제①항, 제③항, 제17조 제②항)는 199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내규(제22조 제②항)은 199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내규(제3조 ④항, 제24조 2 전항)는 199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내규(제4조1항, 제7조1、3항, 제9조, 제15조, 제16조2항, 제20조2항, 제28조2항, 제31조1항, 제32조, 제40조, 제41조1、2항)는 199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②항은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6) 본 개정내규(제20조 제①항)는 '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이 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7) 본 개정내규(제19조)는 '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 본 개정내규(제21조 ①항, 28조 ②항)는 '9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 ①항, 제20조 ②항, 제35조 ③항, 제41조 ②항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0)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①항, 제5조, 제6조 삭제, 제7조②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②항, 제18조①②항, 제24조의 2 ②④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①②항, 제38조)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1) 본 개정내규(제4조 ,제7조, 제8조, 제16조)는 200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20조 ①항은 2000년 3월 1일 부터 소급 적용한다.
(12) 본 개정내규(제33조 1)는 원주캠퍼스 2002학년도 신입생 및 2004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13) 본 개정내규(제7조, 제9조, 제12조, 제27조)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내규(제4조①항, 제9조②항, 제15조, 제31조, 제32조)는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5) 본 개정내규(제25조의2)는 2002년 3월 1일 이후 자원 퇴학자부터 적용한다.
(16) 이 개정내규(제3조 1항, 5항, 제4조 1항, 제7조 ①항, 제20조 2항, 제31조, 제35조 1항, 2항, 제37조, 제41조 2항)는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내규 제28조 1항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8) 이 개정내규(제35조③항)는 2005-1학기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내규(제3조⑤항, 제20조①항)는 2005-2학기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내규(제4조①항, 제7조①②항, 제15조, 제16조②, 제18조①⑤항, 제20조①②, 제22조 2①항, 제31조, 제32조①②③항, 제34조, 제41조②③항, 제42조①항)는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내규(제28조②항, 제41조②항)는 2007-1학기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내규(제39조①항 삭제, ②항)는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내규(제35조⑤항 신설)는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내규(제4조③항, 16조③항, 제36조①항 및 ④항)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내규(제18조 제3항 및 제5항)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중 제3조 제5항,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24조의 2 제5항,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36조 제4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41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2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6조의 1, 제24조의 2 제4항, 제27조 제2항, 제3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2조 제3항 신설)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항, 제11조 제4항 신설, 제16조 제4항 신설, 제31조, 제41조 제2항 및 제3항)는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삭제, 제4호 신설)는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0조 제2항, 제22조의 2 제1항,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31조, 제41조 제3항)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3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4조 제3항, 제4조 제3항 제1호)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4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5호 신설, 제9조 제2항, 제10조, 제3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1호)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2조의 1 제3항, 제22조의 3 신설)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5조 제3항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1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의 1, 제35조, 제43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11조, 제35조, 제37조)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2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제28조)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1조 제3항)는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5항)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1) 복수전공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복수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전공)를 복수전공 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학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종류 및 이수자격) 복수전공은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캠퍼스내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으로 구분한다.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은 학칙 제51조에 의거 본 대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하며, 전공별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9>

② 캠퍼스내 복수전공은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0. 1. 21>

③ 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4조 (신청 및 허가)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서를 받아 소정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과할 수도 있다.

제5조 (이수학점)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부(전공)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이밖에 학부(전공) 또는 학과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지정하여 추가로 이수시킬 수 있다.

제6조 (재학연한)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이수자는 최소 3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 및 복수전공의 통산 이수학기는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의학계열의 이수 연한은 의학계열 졸업예정자는 본과 2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일반학과 또는 학부 졸업예정자는 본과 1학년부터 수강하여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학계열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학연한은 재학연한의 1/2을 초과 할 수 없다.

제7조 (학위수여)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학칙 제50조에 따라 학사학위 증서를 복수전공이 수시 제1전공 학사학위 증서와 같이 수여한다.

제8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198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2조 ①항, 제5조, 제6조)은 1989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은 199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2조 ③항, 제3조 ③、④항, 제6조 ②、③항, 제7조)은 199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2조2항, 제3조1、2항, 제4조1항, 제5조1、2항, 제6조2항)은 1996학번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세칙(제4조)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세칙(제2조 ②,③항, 제6조 ①,④항)은 1999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시행세칙(7조)은 2003년 3월 복수전공 이수자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4조 ①항, 제5조 ①항, 제6조 ①,④항)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세칙(제3조 ②,③항)은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세칙(제3조 제2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2)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 개정)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 학사편입학 시행세칙

제1조 (신청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제2조 (학사편입 학과 또는 학부의 범위) 제1전공에 관계없이 어느 학과 또는 학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 (심사방법) 지원자에게는 필답고사, 서류평가 및 면접을 실시한다.

제4조 (이수학점 등록) 학사편입학자는 대학에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필수로 5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①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학과 또는 전공의 결정에 따라 기초과목을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③ 학사편입생은 캠퍼스내복수전공, 캠퍼스간복수전공, 졸업예정자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1>
④ <삭제 2010. 1. 21>

제5조 (등록) 최소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6학기를 초과 등록할 수 없다.

제6조 (채플) 학칙 제51조 ⑤항 및 제45조 ②항에 준하여 학사편입학자(타교출신자)는 최소 이수학기 4학기 중 2학기 이상 채플에 출석하여 급제(P)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198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6조)은 1989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 제4조1、2항)은 199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4조)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시행세칙(제4조 ③항)은 2000년 3월 1일이후 학사편입생부터 적용한다.
(6) 이 시행세칙(제4조 ③、④항)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4조 제3항, 제4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3) 재입학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21조에 의한 재입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칙 제35조 (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학칙 제35조 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3.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학생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제3조 (허가 및 절차) ①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한다.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와 청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앞면 증명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 28>

③ <삭제 2010. 1. 21>

④ 재입학 허가는 서류심사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속학과 심사후 총장이 허가한다.

⑤ 다만 편입학, 학사편입학, 소속변경, 성적불량, 자원퇴학, 학기초과 제적자는 일반전형 이후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허가 한다.<개정 2016.10.05., 2010. 1. 21, 2008. 10. 28>

제4조 (등록) ①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 수속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기초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전에 이수한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6학기(편입생은 최대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08. 10. 28>

제5조 (학사경고 적용) 해당학기 성적(재입학전)에 대한 경고사항은 유효하며, 학력부실(성적불량)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게 되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개정 2010. 1. 21>

부 칙

(1) 이 세칙(내규에서 세칙으로 재정비, 조문화 및 부분개정)은 199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2조 ①항 1호, ②항 삭제)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 및 제3조 ⑤항)은 1998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제2조)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2조 ①항 4호 신설)은 199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제2조 ①항 1호)은 2000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7) 이 개정시행세칙(제5조)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시행세칙(제2조①항 4호 신설)은 2000학년도 1학기 자원퇴학자부터 적용한다.
(9) 이 개정세칙(제2조 3, 4항 및 3조④,⑤)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세칙(제2조 1항 및 3조 5항)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세칙(제3조 2항, 5항 및 4조 2항 신설)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세칙(제3조③항 삭제, 제3조⑤항, 제5조)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5항)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부전공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부전공제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의 범위) 모든 학과 또는 전공을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또는 전공에 따라서는 부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학부의 학과 또는 전공은 해당 대학 및 학부 소속의 학생들만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10.05.>

제3조 (신청자격)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원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체능계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자격을 부여키 위해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4조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각 학과 또는 전공은 부전공과목을 12학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선수과목을 과할 수도 있으며, 예.체능학과 또는 전공의 경우 실기과목 이수의무를 과할 수도 있다.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한다.

⑤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학부 소속 학생의 부전공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 및 학부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6.10.05.>

제5조 (실험실습비)

<삭제 2016.10.05.>

제6조 (자격취득) ①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밟은 이로서 부전공의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이는 졸업 신청시 부전공을 신청한다.

② 부전공의 이수사정은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에서 하되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 세칙은 197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7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학칙 제40조를 적용한다.
(2) 이 시행세칙은 개정된 날('79. 6. 21)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4조1.2.4항, 제6조1.2항)은 199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4조②,⑤항)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 제5항, 제5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속변경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23조 ③항에 따라 소속변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변경 자격) 학칙 제23조에 의거 본 대학교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소속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입학자부터는 3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3학년까지 소속변경 할 수 있다.

제3조 (소속변경 허용범위) ① 본 대학교의 학부(전공)·계열·학과는 소속변경 할 수 있는 학부(전공)·계열·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는 2학년까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학부(전공)·계열·학과 학생의 예·체능계열, 의과·치과·간호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모든학과,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언더우드국제대학내에서의 소속변경은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5.07., 2014.12.29., 2012.02.14, 2011.01.20>

② 삭제

③ 의、치과대학(의예、치의예 포함)과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전공), 임상병리학과(전공), 재활학과(전공),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는 다른 대학(학과, 전공)으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한다.

④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배정자에 한하여 전공으로만 소속변경을 허용한다.

⑤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1, 2차 전공배정 후 입학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한하여 1, 2학년 제적생의 20% 내외로 선발 할 수 있으며 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2.06.19, 2008. 10. 28>

⑥ 캠퍼스내 소속변경은 당초입학생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10%이내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유전공 및 정원외는 정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 21>

⑦ 위 항에도 불구하고 타대학에서 글로벌인재학부로의 소속변경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초·중·고교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선발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또한, 글로벌인재학부에서 타대학으로의 소속변경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4조 (신청 및 허가) ①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에 이수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대학 심의위원회에서 소속변경 지원자격을 심의한다.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속 변경 지원 전까지 소속학과의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되, 지원자의 소속 학과 및 대학에서는 교무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의 소속변경 지원자격 제한을 둘 수 없다. <개정 2010. 1. 21>

② 전입하는 학부(전공)、계열、학과에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도 있다.

③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전공책임교수)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소속변경 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자는 전입한 학부(전공)、계열、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은 1998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②항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 이 시행세칙(제3조 ①、③항)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세칙(제2조 및 3조 ①, ②, ④ 신설)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제3조 ⑤항 신설)은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⑥항 신설, 제4조①항)은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세칙(제3조 ⑤항)은 200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6항, 제4조 제1항)은 2010학년부터 적용하되, 제4조 제1항의 교과목 이수요건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세칙(제3조 제5항)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 제3조 제7항(신설))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3조 제1항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6)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2중/다중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1>

제2조 (범위)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 또는 학부는 2중/다중전공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융합공학부 입학생은 캠퍼스내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01.20>

②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대학 및 학과(전공으)로 2중/다중 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1. 의학·치의학·간호학·약학·법학·건축학(5년제)·음악대학 모든학과·언더우드국제대학 모든학과·글로벌인재학부. 단, 언더우드국제대학내에서의 복수전공은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12.02.14, 2011.01.20>
2.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개정 2015.05.07.>

③ 교육학과 및 체육교육학과에 대한 2중/다중 전공은 정원의 결원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제3조 (입학년도별 허용 범위) ① 1996학년도 입학생은 동일 대학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원주(서울)캠퍼스 학생은 원주(서울)캠퍼스에 없는 전공을 서울(원주)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②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동일 계열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원주(서울)캠퍼스학생은 원주(서울)캠퍼스에 없는 전공을 서울(원주)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③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동일캠퍼스 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원주(서울)캠퍼스 학생은 원주(서울)캠퍼스에 없는 동일계열의 전공을 서울(원주)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④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이중 및 다중전공의 신청은 입학한 계열 내에서 전공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⑤ 원주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에서 2중 및 다중전공할 수 있는 학과 및 전공은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제7조 ②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본항 신설 2010. 1. 21>

⑥ 신촌-국제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신촌의 캠퍼스내 복수전공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다. <본항 신설 2011.01.20>

제4조 (전공 결정) ①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서울캠퍼스 학생은 2학년말에 전공을 정하고 3학년 1학기부터, 원주캠퍼스학생은 1학년말에 전공을 정하고 2학년 1학기 부터 해당 학과장의 지도를 받는다.

②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학기 또는 3학기 이수 후에 입학계열 내에서 전공을 신청한 후 전공별 진입승인에 따라 전공이 결정된다. 전공신청 및 승인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10. 1. 21>

④ 대학 또는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⑤ 원주캠퍼스 2002년도 이후 신입생의 전공 신청은 학부에 따라 1학년 말 또는 졸업하는 학기에 신청한다.(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참조)

제4조의 2 (캠퍼스 내 복수전공) ① 2중전공은 제1전공을 배정받은 자 또는 학과별 입학자 가운데 3학기 이수 후부터 졸업 직전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캠퍼스내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지원인원의 50%와 지원학과 정원의 30% 가운데 적은 수 이상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2전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계전공 시행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1.01.20>

2전공 신청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서류 및 면접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 실시 방법 및 반영비율은 학과별로 정할 수 있다. 예·체능계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공승인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1. 21]

제4조의 3 (다중전공) 제3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절차를 두지 않으며, 이수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전공을 승인한다.

[본조 신설 2010. 1. 21]

제4조의 4 (이중 및 다중전공 이수요건) ① 2중 및 다중전공자(연계전공자 포함)는 전공별로 최소 36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1.20>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필수교양과목 중 2과목(6학점) 이내에서 필수이수지정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1. 21]

제5조 (학위 수여) 2 이상의 전공분야에서 규정하는 전공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전공분야에서 규정하는 2중/다중전공이 표기된 학위를 받는다. 다만,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중 및 다중 전공으로 표기된 학위를 받을 수 없다.

제6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캠퍼스별 전공운영) 필요한 경우에는 캠퍼스별로 전공에 관한 사항을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3조 ③,④항, 제4조, 제5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1항)은 200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2조 ②항)은 2005학년도(2003학번)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제3조 ②항)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7)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3조 제5항 신설, 제4조 제3항,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세칙의 시행에 따라 “2중 및 다중전공 운영내규”는 폐지한다.

(8) 이 개정세칙 중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6항 신설, 제4조의 2 제3항은 2011학년

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4조의 4 제1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1호)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2항 제1호)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2조 제2항 제2호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7) 재수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 세칙은 학사에 관한 내규 제24조의 2에 따른 재수강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1>

제2조 (재수강 과목의 조건)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적으로 교과내용, 학정번호 및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명 및 교과내용이 동일한 경우, 학점수가 같거나 상향된 경우만 재수강처리가 가능하다.

③ 교과내용은 동일하나 학정번호 또는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개설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지정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처리된다. 그러나, 폐강된 과목이나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교과내용、학정번호、과목종별이 다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④ 학칙제45조②항에 의거하여 “P”,“NP”로 평가하는 과목은 재수강 처리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P”,“NP” 평가와 평점평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 1. 21>

제3조 (학점 및 성적인정) ①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② 평량평균 환산은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포함하되,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만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총 3회 이내에서만 재수강 할 수 있다. 단,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인 경우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이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제4조 (대상과목 및 취득성적) 재수강자에게는 A+의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2005학년도 내지 2012학년도 입학생은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만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제5조 (계절학기) 계절학기도 재수강이 가능하며, 계절학기에 수강한 과목도 일반학기에 재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성적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직전 학기 수강과목은 계절학기에 재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1>

제6조 (경고사항) 해당학기에 받은 성적(재수강처리전)에 대한 경고사항은 유효하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재수강제도가 제정된 1993년 11월 8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졸업생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2) 이 개정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3항, 4항)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4조)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세칙(제4조 단서조항)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2조④항, 제4조 및 제5조)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학년도 입학자는 총4회, 2006학년도 입학자는 총3회, 2007학년도 입학자는 총2회 이내에서 취득 성적에 관계없이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수강해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을 제한하지 않으며,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이 개정세칙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8) 이 개정세칙(제3조③항 신설, 제4조)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제7조 (캠퍼스별 전공운영)에 의거 원주캠퍼스(원주의과대학 제외)의 전공 및 다중(연계)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전공의 승인) ① 모든 학생은 입학당시의 모집단위내에서 제1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학부(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전공을 신청하여 해당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별표1참조)
③ 전공승인 시 학업계획서, 적성검사결과서, 특정과목성적, 면접과 전공에서 정한 자료와 자격요건 등을 제출받아 승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전공별 승인인원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3조 (2중및다중(연계)전공 시행 범위) 원주캠퍼스의 모든 학부(과)는 2중 및 다중전공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과학과(야간), 산업교육학부는 제외하며 동아시아국제학부는 언더우드국제대학만 허용한다.

제4조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승인) ① 제1전공(학부)을 결정한 학생 중 2학년 말부터 2중 및 다중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승인 인원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캠퍼스내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이수 범위) 모든 학생은 원주캠퍼스 내에서는 계열에 관계없이 2중 및 다중(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제6조 (캠퍼스간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이수범위) 원주캠퍼스와 서울캠퍼스간에 2중 및 다중(연계)전공을 할 경우, 원주(서울)캠퍼스 학생은 원주(서울)캠퍼스에 없는 학과 또는 전

공을 서울(원주)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별표2 참조) <별표 개정 2011.01.20>

제7조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취소)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취소원을 원주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과목 이수) ① 제1전공의 전공과목과 학부기초, 학부필수, 학부선택, 계열기초, 전공탐색 과목은 원주캠퍼스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②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승인자는 2중 및 다중(연계)전공에서 정한 최소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이수 시 두 전공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전공에서만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다른 전공에서는 중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2중 및 다중(연계)전공을 이수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미 이수한 학점은 졸업 학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학부기초, 학부필수, 학부선택, 계열기초, 전공탐색 과목을 서울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서울캠퍼스에서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으로 달리 정한 학부기초, 학부필수, 계열기초, 전공탐색 과목은 서울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9조 (보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세칙(제2조 ②항, 별표1, 제6조 별표2)은 2008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 (제6조 별표 2)은 2011학년도 1학기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부별 전공선택 학기표

대학	학부	제1전공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인문예술대학	인문과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디자인예술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정경대학	사회과학부.경영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자연과학부.응용과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생명과학기술학부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부.의공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보건행정학과.임상병리학과.물리치료학과.작업치료학과.방사선학과	선택안함	2학년 2학기 이후
동아시아국제학부	EAST ASIA International College (EIC)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UIC만 가능)

(별표 2)

원주↔서울캠퍼스간 2중(다중)전공이 가능한 학과 및 전공

원주캠퍼스	신촌캠퍼스		원주캠퍼스	신촌캠퍼스	
대학	대학	학과(전공)	대학	대학	학과(전공)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문과대학	중어중문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심리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노어노문학전공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전공 천문우주학전공 대기과학전공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산업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 전공 도시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전공
	신과대학	신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언론홍보영상학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 전공 의류환경 전공 식품영양 전공 실내건축 전공 생활디자인 전공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동아시아국제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아시아학부 테크노아트학부

연계전공이 가능한 전공

서울캠퍼스	한국 및 동아시아학(한국학),한국 및 동아시아학(일본학), 한국 및 동아시아학(중국학), 한국 및 동아시아학(동아시아학), 유럽지역학, 미국학, 디지털예술학, 외교통상학, 인지과학, 벤처학, 리더십. 비교문학, 문화비평학, 과학기술과사회
원주캠퍼스	벤처창업학, 국제통상학, 융합디자인학, 의료기기인허가, 의료산업, 금융

9) 일반편입학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편입학생의 학사운영과 학점인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편입학생 관리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세칙은 3학년 일반편입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 (학점인정 및 절차) ① 3학년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범위는 대학.학과별 졸업학점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1.20>

② 학점인정 절차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비치된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인정표"에 본 대학교 교과목으로 인정받아 성적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③ 교양과목(학점)의 인정은 교양과목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공과목(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 대학교의 전공이나 교양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지 못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범위 내에서 해당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선택으로 인정된다.

⑤ 학점인정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만 학점을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⑥ 전적대학의 성적이 "D"(본 대학교 기준) 이하인 성적은 인정할 수 없다.

제4조 (학사운영) ①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단, 약학과 학생은 예외로 한다.

② 부전공 또는 이중(다중)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은 할 수 있다. 단, 편입학생의 전적대학에서의 부전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채플) 3학년 일반편입학생은 2학기 이상 채플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수학기) 일반편입학생 중 5학기 편입학생은 6학기를 초과등록 할 수 없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②항)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2항)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1항)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0) 국내대학 교환학생에 대한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하며 원주캠퍼스를 포함한다)와 국내 타 대학교 간에 맺은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본교와 국내 타 대학교 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으로 수학하는 학생(이하 “교환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속대학”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중인 대학교를 말하며, “수학대학”은 학생이 학점교환 수학을 지원하는 대학교를 말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교 수학

제4조 (자격) 국내대학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현재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자. 다만, 계절학기에 교환대학에서의 학점이수는 휴학자도 가능함.
2.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다만, 수학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적용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절차) ① 교환학생 신청은 매 학기단위로 하며, 지원자는 “국내대학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사무실에 제출하여 한다.

② 정규학기 신청은 개강 1개월 이전, 계절제수업 신청은 수업개시 1개월반 이전 소정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선발절차) 대학장은 지원자 중 교환학생 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의 명단과 지원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는다. <개정 2010. 1. 21>

제7조 (정원)정 규학기 교환학생 정원은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로 하고, 계절제수업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수학기간) 정규학기 및 계절제수업의 학점교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제10조 1항)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제9조 (교과목 이수) ① 교환학생은 수학대학과 본교의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또한 수학대학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도 있다.

② 교직과목등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④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

제10조 (취득학점 범위) ①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의 범위는 졸업학점의 1/4까지이다.

② 학기당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정규학기에는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 계절제수업은 7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적용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강신청 및 변경) 수학대학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변경은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수학취소) 수학대학의 학점교환 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의 수강변경기간 이전에 "국내대학 교환학생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당해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본교에서 수강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제13조 (성적평가 및 인정) ①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수학대학 규정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②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4. 9. 1.>

제14조 (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제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하는 대학교에 납부한다.

제15조 (시설물의 이용) 교환학생은 수학대학의 도서관, 실험실습실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학칙 준수) 교환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학대학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17조 (기타) ①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규정 등에 따른다.

② 입대휴학자의 온라인강좌 수학과 관련한 사항은 교환대학과의 협정 및 온라인 강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본조개정 2017.06.15.]

제3장 타 대학교 학생의 본교 수학

제18조 (자격) 본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교 학생은 소속대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학신청) 소속대학은 교환학생의 명단과 관련서류를 정규학기 또는 계절제수업의 수강신청기간 10일전까지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학허가) 본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교환학생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제21조 (정원) 정규학기 교환학생 정원은 소속대학의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로 하고, 계절제수업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수학기간) 정규학기 및 계절제수업의 학점교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제23조 (교과목 이수) 교환학생은 본교의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24조 (취득학점 범위) 교환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정규학기에는 20학점까지, 계절제수업은 6학점까지이다.

제25조 (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 및 변경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6조 (수학취소) 본교의 학점교환 수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에 "교환학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성적처리) 성적은 본교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에 통보한다.

제28조 (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고, 계절제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하는 대학교에 납부한다. 단, 입대휴학자의 온라인강좌 수학에 따른 수강료와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강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7.06.15.>

제29조 (시설물의 이용) 교환학생은 본교의 도서관, 실험실습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제30조 (학칙 준수) 교환학생은 본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학생교류 정원 조정

제31조 (정원 조정) 본교와 수학대학은 수학한 학생의 총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상호 협의하에 학생교류 정원의 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변경세칙(제10조, 제13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2항)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은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1, 제10조②)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6조, 제12조)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3조 제2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7조, 제28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11) 연계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 40조에 따라 연계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및 전공인정)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 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의 2 (연계전공 일몰평가) 연계전공은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개설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연계전공에서 인정하는 과목중에서 전공기초를 포함하여 36학점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교과목을 연계전공과 전공, 교양 또는 학부대학과목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 21>

③ 연계전공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요청과 교무처장의 승인후 한시적으로 교양과목을 이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제4조 (전공이수승인) ① 연계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직전 학기까지 "연계전공 이수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연계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여야 하며, 매학기 수강지도를 받는다. <개정 2011.01.20>

② 연계전공의 이수사정은 각 전공책임교수가 하되 주전공이수 사정과 동일하게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전공이수승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학위수여) 각 연계전공분야에서 인정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이 표기된 학위를 받는다.

제6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1996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제 3조의 학부대학 개설과목은 교양과목으로 본다.

(3) 이 변경세칙(제4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1조)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의 2 신설, 제3조의 제2항 내지 제3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1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2) 성적평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 45조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 20조에 의한 성적평가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① 모든 강좌의 성적평가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20조 제1항에 따르되,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에 관한 내규 제2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01.20, 2010. 1. 21>

1. <삭제 2011.01.20>
2. <삭제 2011.01.20>

3. <삭제 2011.01.20>
4. 음악대학 전공실기 교과목
5.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6. 졸업논문, 졸업연주, 졸업실기 또는 그 이외 졸업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
7. <삭제 2011.01.20>
8. 공동연구 및 공동결과물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실험·실습 교과목
9. 한국어어학 교과목 <신설 2015.02.26.>

② 동일한 교과목을 2인 이상의 교수가 분반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여러 분반을 통합하여 성적평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상기①항 4,5,6,8호 및 ②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과는 강의시간표에 평가원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0.>

제3조 (심화전공과목등에 대한 평가) 수강인원 9명이내 소형강좌 제2조 제1항의 과목을 제외한 4000단위 과목 및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군사학 과목의 성적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수강인원이 40명 이내 강좌 : 담당교수 재량 평가
2. 수강인원이 41~60명인 강좌 : A성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
3. 61명 이상 수강강좌 : 상대평가

<개정 2011.01.20>

[본조 신설 2010. 1. 21]

부 칙

(1) 이 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2조① 단서조항)은 2005-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3조 신설)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3조)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9호 신설)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13) 입학 전 학점취득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3조 ⑥항의 입학 전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자격) ① 본 대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입학예정자 또는 고교재학 중 대학과목선이수과정 이수자는 총 6학점 이내(언더우드국제대학 학생은 9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에서 허용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1.01.20>

② 입학예정자 또는 대학과목선이수과정 이수자가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입학 전 취득 학점에 대한 성적처리) ① 입학 전 선이수과목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다만, 외부공인시험 및 본교 영어진단평가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성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6.10.05, 2011.01.20>

② 입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전공신청 승인 시 기준이 되는 과목인 경우, 입학 전 이수과목의 성적은 전공승인 시에도 반영한다. 단, 입학 전에 취득 성적은 학칙 제43조 ②항에 따른 학점초과신청 및 학칙 제48조의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이수학기 불인정) 입학 전에 수학한 학기는 학칙 제4조 ①항의 수업연한 및 학제 5조 ①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신입학생 과목 이수면제 특례) 입학 후 제적된 자가 학부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제적 전 C+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한 공통기초 및 필수교양과목에대하여 과목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때 이수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11.01.20.]

부 칙

(1)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3조③항 및 제4조)은 개정일(2004. 2. 2)로부터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①②항, 제3조①항)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3조, 제5조 신설)은 2011학년도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1항)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14)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 8호에 따라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자격)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외국어인증(필수)과 정보인증 혹은 산업실무역량인증(택1)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며, 각 분야별 졸업인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7.11, 2014.4.1>

제3조 (인증절차) ① 제2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3학년부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졸업인증 신청서를 외국어 인증은 국제교육원에, 정보인증은 사회교육개발원에, 산업실무역량인증은 창업교육센터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② 국제교육원, 사회교육개발원, 창업교육센터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매 학기말에 심사결과를 원주 교무처로 통보한다. <개정 2014.4.1>

제4조 (수료증 등의 수여) ① 학칙 제51조 1호 내지 6호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8호의 졸

업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수료증을 수여받은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교육원과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전체 또는 일부 면제한다.

①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개정 2015.05.07>

② 졸업인증제 위원회에서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면제한 자

제6조 (위원회) ① 졸업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원주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인문예술대학 영어영문학과장,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국제교육원장, 사회교육개발원장(이상 당연직 위원)과 원주교무처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교수로 구성한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2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3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 시행세칙(정보졸업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6조 2항)은 2002학년도 신입생과 2004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시행세칙(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정보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7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별표1(실무역량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신설)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실무역량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제5조 제1항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1. 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교양영어 4개 학기를 이수하고(단, 편입생은 면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외국어 졸업인증을 부여한다.

① 교양영어 4개 학기 평량평균을 A- 이상 취득한 자.

② 대학 입학 후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전공별로 외국어 졸업인증 요건으로 정한 다음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대학	학부 및 학과	TOEFL PBT (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New TEPS)	DELF (불)	ZDaF (독)	JPT (일)	JLPT (일)	HSK (중)	TOPIK
인문예술대학	모든 학부 및 학과 (영어영문학 제외)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4급 (외국인 중 선택자만 해당)
	영어영문학과	550 (79)	760	level6 140점	IM2	680 (374)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과학기술대학	모든 학부 및 학과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정경대학	경제학과 글로벌행정학과 법학과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국제관계학과 경영학부	550 (79)	760	level6 140점	IM2	680 (374)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보건과학대학	모든 학부 및 학과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대학	학부 및 학과	TOEFL PBT (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New TEPS)	DELF (불)	ZDaF (독)	JPT (일)	JLPT (일)	HSK (중)	TOPIK
글로벌엘리트학부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4급 (외국인 중 선택자만 해당
모든 편입생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A2	중급1 과정	500	N3	4급 195점 이상	

대 학	학부 및 학과	JPT (일)	JLPT (일)	HSK (중)	TORFL (러)	TOPIK (한국어)
동아시아국제학부		500	N3	4급 195점 이상	기본	4급 (외국인 중 선택자만 해당)

③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성적 B- 이상을 취득한 자(07학번 이후~)

*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외국어 교양과목표

과목명	학점
교양초급영어회화 / 교양중급영어회화 시사영어(1),(2) / TOEFL / TOEIC 고등영문법 / 교양초급영작문 / 교양중급영작문 일본어(1),(2) / 독일어(1),(2) / 불어(1),(2) / 중국어(1),(2) / 러시아어(1),(2) 초급 토플 리스닝 & 스피킹 / 중급 토플 리스닝 & 스피킹 / 인터뷰 & 프리젠테이션스킬 / 비지니스작문 / 기초 TOEIC SPEAKING	각 3학점

2.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소속된 전공/학과(부)에 부여된 등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하는 해당 대체인정강좌를 이수한 자에게 정보졸업인증을 부여한다.

(1) 자격증

① 소속된 전공/학과(학부)에 부여된 등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등급별 정보인증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	등급	시행기관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OCP-DBA OCP-Developer SCJP, SCJD, SCNA CCNA, CCIE, CCNP MCP 중 2개 MCSE MCDBA MCSD MCAD MCAP 중 2개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Oracle Oracle SUN Cisco Microsoft Microsoft Microsoft Microsoft Microsoft Microsoft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정보처리산업기사 e-TEST Professionals 1급 PCT 850이상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MCP 중 1개 ACA Adobe Dreamweaver CS3 ACA Adobe Flash CS3 ACA Adobe Photoshop CS3 Extended AutoCAD 2급 MOS 2007 Master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Microsoft Adobe Adobe Adobe 한국 ATC협회 Microsoft 대한상공회의소
e-TEST Professionals 2급 PCT 650점 이상 IPCT 1급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MOS 2007 중 2개 (단, Word Expert, Excel Expert, Access, Powerpoint, Outlook 중 택2)	3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교육 SW진흥센터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Microsoft

③ 등급별 전공/학과(부)는 다음과 같다

등급	대학	전공/학과(부)
1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2	과학기술대학	자연과학부 응용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정경대학	경영학부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임상병리학과, 보건행정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동아시아국제학부	Biomedial Science, Bio-health Engineering 트랙

등급	대학	전공/학과(부)
3	인문예술대학	인문과학부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	East Asian Politics and Culture, East Asian Economy and Business 트랙

④ 디자인예술학부 소속 학생은 다음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디자인예술학부 편입생 포함)

자격증	시행기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ACE	Adobe
Macromedia Flash Developer	Macromedia
Macromedia Dreamweaver Developer	Macromedia
AutoCAD 2급	한국ATC협회
ACA Adobe Dreamweaver CS3	Adobe
ACA Adobe Flash CS3	Adobe
ACA Adobe Photoshop CS3 Extended	Adobe

(2) 대체인정

① 자격증 취득에 의한 정보졸업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하는 대체인정강좌를 수료하면 정보졸업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대체인정강좌는 소속된 전공/학과(부)에 해당되는 등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대체인정강좌를 수료하여야 한다.

③ 등급별 대체인정강좌는 다음과 같다.

등급	대체인정강좌
1	- Visual C++, Visual C#, Visual Basic, C++, C#, Java, 정보처리기사, Oracle, Windows Server 중 1개 강좌 - MCP 과정 중 2개 강좌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1등급 강좌
2	- 웹프로그래밍홈페이지제작, 프레젠테이션 실무활용기술, Excel VBA, 엑셀 실무활용기술, SPSS, Photoshop, Illustrator, FLASH 중 1개 강좌 - MCP 과정 중 1개 강좌 - Excel,PowerpointAccess Word 중 2개 강좌
3	- Excel, Powerpoint, Access, Word 중 1개 강좌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3등급 강좌
디자인 예술학부	-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Indesign, After Effects, AutoCAD, 3D MAX, Rhino 3D, FLASH, MayaComplete, Web Design 중 1개 강좌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디자인학부 대체인정강좌

④ 대체인정강좌 수료를 위해서는 출석일수 7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평가시험에서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3. 실무역량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산업실무역량 인증 교과목 이수 및 프로그램 참여로 200포인트 이상을 취득할 경우 산업실무역량 인증을 부여한다.

① 교과목 이수로 120포인트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에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인증 교과목은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위원회 승인후 창업교육센터에서 별도 관리한다.

③ 인증 프로그램,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 산업실무역량 인증 프로그램 및 자격증

구분	항목		기준	포인트
진로취업 및 창업 특강	학생 경력관리시스템에 개설되는 진로취업 및 창업관련 특강과 프로그램 참여		1회	1
취업 및 창업캠프	1박2일		1회	10
	2박3일		1회	20
취.창업 활동	인턴/현장실습(4주 기준)		1회	30
	취·창업동아리		1학기	10
	창업(사업자등록)		대표자	80
	정부.지자체.기업 등 교외 창업재정지원 사업 선정		1,000만원 미만	40
			1,000만원 이상	70
수상실적	교외	A등급 대회(중앙 정부부처 및 100대 기업주관 대회 또는 총상금 2000만원 이상)	1위	150
			2위	100
			3위	70
			입상(장려)	50
		B등급 대회(광역지자체 및 1000대 기업주관 대회 또는 총상금 1천만원 이상)	1위	100
			2위	70
			3위	50
			입상	30
		C등급 대회(기초 지자체 및 중견기업 주관대회 또는 총상금 1000만원 미만)	1위	70
			2위	50
			3위	30
			입상	20
	교내	캠퍼스 전체	1위	50
			2위	30
			3위	20
			입상	10

구분	항목		기준	포인트
		대학/학부/학과	1위	20
			2위	10
			3위	5
			입상	3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1건	10
	특허 들록		1건	50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록		1건	30
연구프로젝트 참여	국가 연구과제 교수와 공동 수행(연구원 등록 후 참여율 100% 기준) ※증빙서류는 연구처 발행		6개월	50
자격증	1등급	-전공관련 기사 1급 등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상위 등급 취득자	1건	100
	2등급	-전공관련 산업기사 1급,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간등급과 등록민간자격의 최상위 등급 취득자	1건	70
	3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하위 등급과 등록민간자격의 중간 등급 취득자	1건	50

15) 2중 및 다중전공 운영내규<폐지 2010. 1. 21, 전공에 대한 시행세칙으로 통합>

16) 전공배정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광역화 모집 단위로 입학한 2000학번 이후 학부대학생의 전공신청 및 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전공배정의 주체) 학부대학생의 전공배정은 학부대학이 한다.

제3조 (전공신청 시기) 전공신청은 2학기 이수 후 또는 3학기 이수 후에 하고, 신청접수는 신청대상 학기 기말시험 기간 1주일 전부터 1주일 후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대학장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전공신청 방법) ① 제 1차 전공신청에서는 제 1지망부터 제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학계열의 경우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공학계열에 속한 모든 전공들에 대하여 지망 순위를 두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 2차 전공신청에서는 제 1지망부터 각 계열에 속해 있는 모든 전공들에 대하여 지망 순위를 두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3>

제5조 (전공승인 이후 변경 금지) 제 1차 또는 제 2차 전공신청에서 전공이 승인된 경우에는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전공신청 자격) ① 학부대학 교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신청 요건에 포함된 교과목에서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전공신청 학점으로 인정하며 평량평균 계산에서는 F학점의 성적(0점)을 반영한다.

제7조 (전공별 승인 정원) ① 전공승인은 학부대학 2학기 이상 재학생 수에 따른 전공별 정원의 12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점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기별 전공 정원 산출은 전공신청 해당 학기 일반휴학 마감일 현재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시기별 전공승인 비율은 각 전공이 정한 비율을 따른다[연세대학교 요람 학부대학 전공별 전공 신청요건 참조]. <개정 2011.06.13>

제8조 (1차 전공승인 정원 산출방법) ① 계열별 입학정원 대비 전공별 정원의 비율을 산출한다.

② 계열별 재학생 수를 산출한다.

③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①항에 따른 비율에 의해 전공별 정원을 산출한다(기준정원).

④ 삭제 <2011.06.13>

제9조 (2차 전공승인 정원 산출 방법) ① 학부대학 계열별 재학생 수에 1차 전공배정 학생 수를 더한 수를 산출한다.

② ①항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른 전공별 정원을 산출한다(기준정원).

③ 산출된 전공별 정원의 최대비율(100%-120%)에서 1차 전공배정 학생수를 감하여 실제 전공승인 정원을 산출한다.

제10조 (전공승인 기준) ①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들의 평량평균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② 평량평균이 같을 경우, 이수학점수에 상관없이 동점자는 모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 ⑤항 < 삭 제 >

⑥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성적을 반영한다.

⑦ 2003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한 그 이전 입학생은 계절학기를 통해서 취득한 성적은 평량평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⑧ 배정 정원의 50%를 1지망 지원자 중 평량평균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평량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1지망 지원자가 배정 정원 50%에 미달될 경우, 배정정원 중 1지망 지원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평량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제11조 (전공신청 시기를 초과한 학생의 전공 배정) ① 학부대학 재학기간은 4학기 이내에 전공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삭 제 >

③ 4학기 이수 후 전공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3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의 평량평균을 기준으로 전공을 배정한다.

④ 4학기 이수 후 전공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번의 각 전공별 2차 전공승인 시의 평량평균 하한선을 넘는 경우 해당 전공 진입을 승인한다. 단, 2003학년도부터 2006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2006학번 2차 전공승인시의 평량평균 하한선을 넘는 경우 전공 진입을 승인한다. 평량평균 하한선이란 지망순위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평량평균의 하한선

을 의미한다. <개정 2011.06.13>

제12조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전공배정) 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전공배정은 해당 학번의 각 전공별 2차 전공승인 시의 평량평균 하한선을 넘는 경우 해당 전공 진입을 승인한다. 단, 2003학년도부터 2006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2006학번 2차 전공승인시의 평량평균 하한선을 넘는 경우 전공 진입을 승인한다. <개정 2011.06.13>

② 복학하는 학생은 4학기 이내에 전공을 신청하여야 하고, 4학기를 초과하였을 경우 제11조의 전공신청 시기를 초과한 학생의 전공배정 방식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개정 2011.06.13>

제13조 (소속변경한 학생의 전공배정) ① 소속변경한 학생의 전공배정은 제 11조의 전공신청 시기를 초과한 학생의 전공배정 방식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② 소속변경한 학생의 전공신청 / 승인은 소속변경된 계열에 적용되는 전공신청 / 승인기준을 따른다. 다만,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활과학 계열은 일부 계열기초 교과목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속변경후 전공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3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과 소속변경 후 다음 한학기동안 이수한 교과목의 평량평균을 기준으로 전공을 배정한다.

제14조 (전공결정 입학생의 전공진입) 전공결정 입학생은 해당되는 전공신청 요건을 만족하면 전공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입한다.

제15조 (자유전공 입학생의 전공배정) ① 학부대학 교과목 중 지정된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전공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② 1학년 2학기를 이수한 후 전공신청 절차를 걸쳐 전공으로 진입한다.

③ 신청가능한 전공은 교육학부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열의 모든 전공이다.

④ 각 전공별 정원과 상관 없이 1지망 전공에 모두 배정한다.

[본조 신설 2011.06.13, 기존 15조는 제19조로 이동]

제16조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전공배정 및 진입) ① 학부대학 교과목 중 지정된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전공신청 및 진입 자격이 주어진다.

② 1학년 2학기를 이수한 후 전공결정 입학생은 승인 요건 충족시 자동으로 전공으로 진입하며, 전공미결정 입학생은 전공신청 절차를 걸쳐 전공으로 진입한다.

③ 전공별 정원산출과 승인 기준은 제7조 전공별 승인 정원, 제8조 1차 전공승인 정원 산출방법, 제10조 전공승인 기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1.06.13]

제17조 (외국인글로벌학부 입학생의 전공배정) ① 학부대학 교과목 중 공통기초 10학점을 이수해야 전공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② 1학년 2학기를 이수한 후 전공신청 절차를 거쳐 전공으로 진입한다.

③ 신청 가능한 전공은 글로벌융합공학부, 음악대학, 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언더우드국제대학, 의예과, 치의예과 및 간호학과를 제외한 서울캠퍼스에 개설된 모든 전공이다. <개정 2014.04.10.>

④ 각 전공의 학기별 정원은 해당 년도 전체 외국인글로벌학부 입학인원 중에서 각 학기별 외국인글로벌학부 입학인원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⑤ 외국인글로벌학부 학생에 대한 전공승인 인원은 전공별 정원의 5%(단 최소 2명) 이내

로 하되, 학년별 외국인글로벌학부 입학인원의 20% 이상을 동일전공으로 배정하지 않는다.(인원수에서 소수점이 나올 경우는 올림함). 단, 외국인글로벌학부 입학인원이 신청가능한 전공의 총정원 5%를 초과하면 재조정한다.

⑥ 지원학생수가 배정정원을 초과할 경우 공통기초과목 10학점의 성적순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취득학점수도 동일할 경우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량평균이 높은 학생을 배정한다.

⑦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성적을 반영한다.

⑧ 배정정원의 50%를 1지망 지원자 중 평량평균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평량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단 1지망 지원자가 배정 정원 50%에 미달될 경우, 배정정원 중 1지망 지원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평량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⑨ 복학생이나 전공신청 시기 초과학생의 전공배정은 해당 시기에 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⑩ 외국인글로벌학부의 전공신청은 매 학기(12월, 6월)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1.06.13]

제18조 (2012학년도 이후 자유전공입학생의 전공배정) ① 학부대학 교과목 중 지정된 16학점을 포함한 3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전공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② 1학년 2학기를 이수한 후 전공신청 절차를 걸쳐 전공으로 진입한다.

③ 신청 가능한 전공은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의 모든 전공이다. <개정 2014.04.10.>

④ 2012~2014학년도 입학생은 자유전공 입학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동일전공에 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0.>

⑤ 2015학년도 입학생은 자유전공 입학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동일전공에 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4.04.10.>

⑥ 지원학생수가 배정정원을 초과할 경우, 1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평량평균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단,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

⑦ 평량평균이 같을 경우, 총 이수학점 수가 많은 학생을 우선선발 한다.

⑧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성적을 반영한다.

⑨ 배정정원의 50%를 1지망 지원자 중 평량평균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평량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단, 1지망 지원자가 배정 정원 50%에 미달될 경우, 배정정원 중 1지망 지원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평량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⑩ 복학생이나 전공신청 시기 초과학생의 전공배정은 해당시기에 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⑪ 자유전공의 전공신청은 매년 12월에 1회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1.06.13]

제19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기존 제15조를 이동, 2011.06.13]

부 칙

(1) 이 내규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제 6조 ①항, 제 10조 ⑧항, 제 11조 ③항, 제 13조 신설, 제 13조(학칙의 준용)을 제 14조로 변경)는 200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 중 [제4조①항,②항, 제6조①항, 제7조①항, 제8조④항, 제9조③항, 제11조②항 삭제, 제11조③항, ④항, 제12조①항, 제13조①항,②항,③항, 제14조 신설, 제14조(학칙의 준용)를 제15조로 변경]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⑦항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 10조 ①항, ②항, 제 11조 ③항, ④항, ⑤항 삭제, 제 11조 ③항, 제 13조 ③항)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내규 중 제6조 제1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까지 적용하고, 제15조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제16조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제17조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제18조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2항, 제8조 제4항(삭제),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제15조를 제19조로 이동하는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내규 중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5항(신설)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7)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등록금 수납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입금의 책정) 납입금은 교육원가, 물가수준, 전 학년도 납입금 등을 고려하여 학기별로 책정한다.

제3조 (등록기간) 등록금은 수강신청, 휴·복학일정과 연동하여 학기 개시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한다. 이에 본 등록기간은 매 학기 개시 전 8일 이내, 추가등록기간은 수강변경기간 후 5일 이내 수납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전 60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개정2009. 7. 31.>

제4조 (등록고지) 등록정보는 교내홈페이지(http://portal.yonsei.ac.kr)와 학생 이메일로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하는 경우 우편고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

제5조 (분납제) ① 분납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분납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무·회계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계절학기와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는 분납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6. 1.>

② 분납을 승인 받은 학생은 각 차수별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각 차수별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 3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된다. <개정 2009. 6. 1.>

③ <삭제>

제6조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① “학기초과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9. 7. 31.>

1.학부 : 8개학기. 단, 공과대학 건축학교육과정은 10개학기, 2학년 편입생은 6개학기,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은 3개학기로 한다.

2. 일반대학원 : 4개학기.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6개학기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5개학기. 단, 해당 특수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에 따른다.

4. 전문대학원 : 4개학기. 단, 해당 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에 따른다.

② 학부 과정의 학기초과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 ~ 3학점 : 1/6 납부

2. 4학점 ~ 6학점 : 1/3 납부

3. 7학점 ~ 9학점 : 1/2 납부

4. 10학점 이상 : 전액 납부

5. 0학점(Pass/Non Pass 과목 수강자) : 별도 내규에 따름

③ 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의 학기초과자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 ~ 3학점 : 1/3 납부

2. 4학점 ~ 6학점 : 2/3 납부

3. 7학점 이상 : 전액 납부

4. 신청학점이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 12/100 납부 <개정 2014.3.20>

5. 일반대학원 연구과정생 : 1/2 납부

6.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생 : 전액 납부

④ 학기초과자 및 연구등록자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과목 확정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1, 2009. 7. 31, 2009. 6. 1.>

⑤ 학기초과자가 수강철회한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3.3.11>

제6조의 2 (공동학위 과정 등록금) 해외에서 정원 외로 입학하는 공동학위 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총액을 자금수입으로 감면액은 학비감면 장학금 등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 10. 30.>

제7조 <삭제, 제6조에 통합>

제8조 (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4.24.>

② 등록금 납부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4.4.24, 2013.3.11, 2008.10.30>

1.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미등록자 휴학기간 포함) : 전액 반환

2.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 5/6 반환

3.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 2/3 반환

4. 학기 개시후 61일 ~ 90일 : 1/2 반환

5. 학기 개시후 91일 이후 : 반환 없음

③ <삭제>

④ <삭제>

⑤ 분납이나 분납연기를 신청하고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 하거나 자원 퇴학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금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⑥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본 시행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08. 8. 1.>

⑧ 학칙 제3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미복학제적자와 본인 사망 시「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 제3의 2호와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한다. <개정 2014.4.24, 신설 2013.3.11>

⑨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입학자 중,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다는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3.11>

제9조 (등록업무의 분장) ① 학사지원팀은 학적변동자료를, 장학취업팀과 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은 장학금 수혜대상자 명단을 일괄 취합·확인하여 등록기간 7일전까지 재무·회계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② 등록금 책정은 예산팀에서, 등록금조회, 수납, 고지에 관한 업무는 재무·회계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9. 6. 1.>

③ 재무·회계팀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학부 및 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의 등록금 수납액을 점검한 후 집계표를 작성하여 기획실 예산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09. 6. 1.>

제10조 (등록제도 운영위원회) 등록금 수납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7. 31, 2009. 6. 1.>

1. 운영위원회는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총무처장(간사),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학술정보원장, 학부대학장, 대학원 부원장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기간, 고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등록업무의 변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11조 (입학금) ① 입학금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학자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입학금을 감면한다.

1. 학부 과정 입학자 중 학칙 제51조(졸업의 요건)에 의하여 졸업한 자가 재입학할 경

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2.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및 제3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 시행세칙에 따라 재입학 할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단,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약학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11>
3. 연구과정으로 입학한 자나 석사과정 졸업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상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11>
4. 대학원 졸업생 혹은 재적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타전공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5. 연구과정 수료자나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생이 타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6. 대학원 과정 입학자 중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자원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대학원 과정에 재입학한 경우(타전공포함)에는 입학금 1/2을 감면한다. <신설 2013.3.11>

③ 각 과정은 본교와 원주매지캠퍼스, 의료원과 원주일산캠퍼스를 모두 포함한다.

제12조 (특수교육대상자 학점등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과목 확정 후 재무·회계팀에서 별도의 등록고지서를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09. 6. 1, 2008. 10. 30.>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5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은 200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은 200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2조 신설)는 200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3항)은 2006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은 2007년 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학칙 개정 후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제6항)은 2008년 8월 2일 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의 2 신설, 제8조 제1항 및 제12조 개정)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는 2008학년도 2학기 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개정규정(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제9조 제3항, 제10조 및 제12조 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4항, 동조 제5항(신설), 제8조 제1항, 동조 제7항 및 제8항(신설),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동항 제6호(신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14) (경과규정) 다만, 제11조 제2항 제6호는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 제3항 제4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8항)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8)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7조의2에 의한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본교에서 승인한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하는 교환학생, 유학생, 또는 연수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환학생"은 교환협정에 의해 파견되는 학생,
2. "유학생"은 교환학생 자격이 아닌 방법으로 교무처장이 승인하여 파견되는 학생,
3. "연수생"은 교무처장이 승인한 외국대학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2장 본교학생의 외국대학교 수학

제4조 (교류대학 및 연수프로그램) ① 교류대학은 본교와 교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대학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요청으로 교무처장이 승인할 경우 교환대학에서 수학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② 해외 연수프로그램은 소속대학 지도교수와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 또는 우리대학 기관장이 추천하여 교무처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제5조 (지원자격) 외국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재학한 자(교환학생은 1년 이상 재학한자) 단, 졸업예정자(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함)는 제외 함. <개정 2010. 1. 21>
2. 학업성적이 3.00/4.00(4.30) 이상인자.(교환학생 및 1학기이상 외국대학 수학자에 한함)
3. 지원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응시한 토플(TOEFL)에서 아래 지정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교환학생 및 1학기이상 외국대학 수학자에 한함)
   - 자연, 예.체능계: PBT 520, CBT 190, iBT 68점 이상
   - 그 외 계열: PBT 550, CBT 213, iBT 79점 이상

<개정 2011.01.20>

4.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의예과 및 치의예과 4학기 학생은 진급심사 종료 전까지 학점인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후 1학기 일반휴학에 동의하는 학생에 한함. <개정 2010. 1. 21>

제6조 (지원절차 및 시기) ① 교환학생 지원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허락을 받아 국제처에 제출하며, 신청절차 및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허락을 받아 교무처 학적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입학허가서(연수허가서)
3. 수학계획서
4, 지도교수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정규학기의 경우 개시 3개월 전까지, 계절 학기의 경우 개시 2개월 전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제7조 (선발절차) ① 교환학생 선발은 국제처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0. 1. 21>

② 유학생과 연수생은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서 결정한다.

제8조 (수학기간) 수학기간은 최대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환학생인 경우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9조 (취득학점 및 학기의 인정) ① 교환학생, 유학생 또는 연수생이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학기이상 수학자는 졸업학점의 1/4 이내.
2. 1학기이상 수학자는 졸업학점의 1/8 이내.
3. 계절학기 이수자의 경우 7학점 이내.
4. 연수생의 경우 3학점 이내.

② 유학생 또는 연수생이 휴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교 등록 후 재학기간 중 파견된 유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학기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③ 교환학생, 유학생 또는 연수생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평량평균 환산에서 제외한다.

④ 삭제 <개정 2010. 1. 21>

제10조 (학점인정 절차) ① 교환학생 및 유학생은 수학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학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에 국제처(교환학생에 한함) 및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② 연수생은 연수프로그램 주관 기관장이 발급하는 연수사실 증명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에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1>

③ 교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학점취득인정원을 심사하여 학점인정을 승인한다.

제11조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외국대학 교환학생에 관한 내규는 폐기한다.
(3) 이 개정내규(내규명 변경 및 전면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내규(제4조 1항, 2항, 제5조 4호, 제6조 1항, 2항 제7조 2항, 제10조 1항, 2항)은 200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9조 1항, 2항)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제9조 2항 및 4항 신설)는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내규(제5조 1항)는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내규(제9조 1항 1호 및 2호)는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내규(제5조1호, 6호 신설, 제6조②③항, 제7조①항, 제9조4항, 제10조①②항)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내규(제5조 제3호)는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9)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의 2에 따라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범위)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은 본 대학교 대학/학부/학과에서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진입자격)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학년(4학기)을 수료하고 전체 평량평균이 3.3/4.3(3.0/4.0)이상이어야 하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입학 시 연세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되어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별도로 진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 (지도교수) ① 본 과정에 진입이 확정되면 학과장은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배정된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생에 준하는 학사 및 연구 지도를 시행한다.

제5조 (수강신청)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수학연한 이내에는 학기당 최대 24학점(대학원 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과목은 학기당 최대 6

학점, 총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 과목의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수료학점에 가산된다. <개정 2011.01.20>

제6조 (자격 상실)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에 진입한 후 졸업시까지 매학기 평량평균이 3.3/4.3(3.0/4.0)미만이 되면 본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대학원입학)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연계과정 학생은 전 학기 통산 성적의 평량평균이 3.3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의 (명칭변경, 제1조)은 2006-1학기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제7조)은 2007-1학기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세칙(제5조)은 2011학년도 1학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세칙(제7조)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단서)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7조 1항에 따라 국내외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현장실습이라 함은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현장 또는 관련 기관과 소정의 협약에 따라 최소 160시간 이상으로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의미한다.

② 삭제 <개정 2012.11.29.>

제3조 (현장실습 주관부서의 의무) ① 현장실습 학점인정 주관부서에서는 파견기관의 협약서 작성 또는 파견공문을 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육이 당초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기간) 삭제 <개정 2012.11.29.>

제5조 (신청자격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은 2학기 이상을 이수 완료한 재학생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개정 2012.11.29.>

③ 삭제 <개정 2012.11.29.>

④ 휴학생도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 교과를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교과를 이수할 수 없다.

제6조 (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1개월(최소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1.01.20>

③ 160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기간에 따라 전공.일반선택 학점으로 최대 15학점(4개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별 중도포기자의 학점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준한다.

기간	학기 개시 1/3선 전 중도해지자	학기 개시 1/3선 ~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개월 프로그램 인정학점	0	4	6	8	10
4개월 프로그램 인정학점	0	4	6	8	-

④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P 또는 NP로 하고,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나, 평량평균 환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산학협동현장실습이 시행된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인턴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자에겐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2) 이 개정세칙(제5조④항)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제6조③항)은 2007-1학기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제6조 제2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1조, 제2조②항 삭제, 제3조①항, ②항 신설, 제4조 삭제, 제5조①항, ②③항 삭제, ④⑤항, 제6조①②③항)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1)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내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이라 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비정치성 단체에서 최소 8주~15주, 30시간(계절학기는

5~8주, 30시간)이상 동안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자의 봉사정신 함양에 부합하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뜻한다.

② 봉사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여부는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제3조 (주관부서의 의무) 학점인정 사회봉사활동 주관부서에서는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육이 지도자로서의 봉사정신 함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수강신청) ① 정규학기는 수강신청 허용학점(최대학점)외로 학기별 1학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계절학기는 사회봉사학점을 수강신청 최대학점(7학점)에 포함한다.

② 수강신청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봉사활동 담당부서(또는 지도교수)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점인정 사회봉사는 학기 중 수강철회가 불가하다.

제5조 (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① 대학이 인정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완수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에 1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재학 중에 4회(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제수업에서는 휴학자도 학점인정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사회봉사 교과는 이수할 수 없다.

③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P 또는 NP로 하며,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신청하여 NP의 평가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당해 교과에 대한 이수의무가 부과된 학생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단일 활동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타 교과목(인턴십.현장실습 등)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제6조 (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사회봉사 학점인정제도를 시행한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이 시행세칙(제2조②항, 제4조①②③항, 제5조②⑤항)은 2006-1학기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5조 ②④⑤항)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2) 의예과에 관한 내규

제1장 의과대학 진학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6.11.30.>

제1조 (진학조건)
본과 진학 시 수료학점은 76학점, 재학기간 동안의 총 성적의 평량 평균 2.0 이상이며, 일정 성적 이상의 영어능력 시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소정의 사정을 거쳐 본과 진학 추천을 받는

다. <개정 2010. 4. 12>
① “삭제”
② 영어능력시험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라 함은 TOEFL 550점(CBT 213점; IBT 80점), TOEIC 750점, 혹은 TEPS 651점을 말한다. <개정 2009. 2. 27>
③ 영어능력시험 성적은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예과 재학중에 취득한 점수만을 인정한다.
④ 영어능력시험 성적은 예과 2학년 2학기 기말시험 전까지 예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만 한다.
⑤ <삭제 2010. 4. 12>

제2조 (재수강)
전공필수, 공통기초 및 필수교양 과목에 과락이 있는 학생은 재수강하여 이를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학기별 수강신청 규정은 제2장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0. 1. 21>

제3조 (재학연한)
의예과의 수학기간은 6학기(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내에 본과진학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제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학기(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2016.11.30.>
① 수학기간 중 군복무에 응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수속을 밟고 복교할 때 병적증명서(군 복무 필증)를 학교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학생
② 본교 부속병원 또는 건강센터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병 휴학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학기에 복교한 학생 <개정 2010. 1. 21>

제4조 (진학)
의예과의 진학에 관한 규정은 본교「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제2장 수강신청, 휴학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제5조 (수강신청)
각 학기마다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없다.

제6조 (능력취득학점)
의예과 학생은 본교 내규 중 능력별 학점취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6.11.30.>

제7조 (휴학및제적)
휴학 및 제적에 관한 규정은 본교「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8조 ()
삭제
제9조 ()

삭제

부 칙

(1) 개정된 본 내규는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의예과, 치의예과에 관한 내규”는 1968년 2월에 처음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그 후 1971년 3월, 1975년 3월 및 1977년 3월, 1981년 6월, 1984년 5월, 1991년 9월, 2004년도 10월에 개정되었다.
(3) 이 개정내규(제1조, 2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세칙(제1조 5항 신설)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내규 중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본문, 제1조 5항 삭제)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목변경, 제1장 제목변경, 제3조, 제4조, 제6조)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3) 원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88조의4에 따라 원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설치)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원주캠퍼스에 설치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ㆍ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1호에 의한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육과정)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 3학년 편입학(학사학위) 과정으로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정하고 과학기술대학내에 설치한다.

②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개설전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별표Ⅰ의 2.]와 같이 개설한다.

제4조(모집정원 및 선발)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모집정원은 [별표Ⅰ의 2.]와 같다.
②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학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제5조(전적대학 학점인정)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은 연세대학교 전공별 졸업학점의 2분에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교과과정)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교과과정은 따로 정한다.

제7조(전공이수)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학생은 학칙 제23조의 소속변경과 학칙 제40조의 부전공,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을 할 수 없다.
②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학생은 하이닉스 내 교육과정에서 개설된 과목만 수강할 수 있다.

제8조(졸업의 요건) ① 전공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
② 채플에서 2개 학기 이상 “P"(급)을 받아야 한다.
③「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의 적용을 면제한다.

제9조(재학연한)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등록금)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등록금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6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11조(학위수여)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의 2.]와 같다.

제12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운영 세칙은 2014학년도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Ⅰ의 2.]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정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과.전공	편입학정원
과학기술대학	공학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	{60}
			산업공학전공	
소계				{60}

[별표Ⅱ의 2.]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수여학위

대학	학과.전공	편입학정원
과학기술대학	반도체공학전공	공학사
	산업공학전공	공학사

24) 우등생 표창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64조의 포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우등생은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창한다.

① 최우등생 :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75/4.00, 4.00/4.30 이상으로서 대학별 학년별 상위 1%이내인 자.

② 우등생 :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50/4.00, 3.75/4.30 이상으로서 대학별 학년별상위 3% 이내인 자.

③ 우수생 :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50/4.00, 3.75/4.30 이상으로서 대학별 학년별상위 10% 이내인 자.

④ 최우등 졸업생 :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75/4.00, 4.00/4.30 이상으로서 대학별 상위 1% 이내인 자.

⑤ 우등 졸업생 :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50/4.00, 3.75/4.30 이상으로서 대학별 상위 3%이내인 자.

제3조 (동점자 처리 및 예외사항) 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0 만점자와 4.3만점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선발한다.

② 당초입학생이 아닌 일반편입생, 학사편입생, 군위탁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및 재입학자, 학사경고자, 수강철회자, 징계자, 소속변경자, 학기초과자는 위 제2조의 ④호 및 ⑤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약학대학 편입생은 제외되지 않는다. <개정 2015.8.6.>

③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99학번 포함 그 이전은 18학점)미만인 자 및 평점이 부여되지 않는 과목(Pass/Nonpass)을 이수하지 못한 자(NP), 수강철회자, 학기초과자는 제2조의 ①②③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12.29., 2011.01.20>

제4조 (대학별 선발 기준 예외사항) 학부대학은 대학별ㆍ계열별ㆍ학년별로, 의예과ㆍ치의예과는 각 학년별로 제2조의 ①②③호를 선발한다.

제5조 (시상시기) 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은 성적산출학기의 다음 학기에, 최우등 졸업생ㆍ우등 졸업생은 학위수여일에 시상한다. 단, 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중 졸업대상자의 시상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 (학적부 기재 등) 표창은 별지 서식의 상장을 수여하며, 학적부에 수상 사실을 기재한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 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항 4호)는 1984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내규(전면개정)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2조 3항)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3항)는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제3조 제3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내규(제3조 제3항, 제5조)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은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8)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25) 계절제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7조②항 및 제43조③항에 따라 계절제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계절제수업(이하 계절학기) 이라 함은 방학에 운영되는 정규학기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제3조 (수강자격) ① 서울(원주)캠퍼스 소속 학생 <개정 2017.04.26.>
② 국내교환협정대학 소속 학생
③ <삭제 2016.10.05., 개정 2011.01.20, 2010.01.21>

제4조 (신청학점) ① 서울(원주)캠퍼스 학생은 최대 7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0.05., 개정 2011.01.20>
③ 단, ①항에도 불구하고 채플, RA리더십, RC자기주도활동 과목은 최대 수강신청 학점의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2.29.>

제5조 (수강과목) ① 계절학기에는 서울캠퍼스, 원주캠퍼스, 국내교환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는 동일 캠퍼스에서만 수강이 가능하며, 캠퍼스 간 교차수강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강좌에 대한 교차수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③ 계절제 수업에 개설하는 사회봉사 과목은 졸업학기에 수강할 수 없다.<신설 2014.12.29.>

제6조 (학점인정) ① 계절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졸업학점 및 평량평균에 반영된다. 단, 2003학번 이전 학생이 이수한 계절학기과목은 취득학점만 인정되며 평량평균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② 졸업직전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당해년도 졸업사정에 반영된다. 단, 휴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정규학기에 등록하여 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신청이 가능하다.

제7조 (수강료)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책정되며, 국제하계·동계대학 개설과목 수강료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2.12.>

제8조 (미등록 수강취소) 계절학기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수

강취소 처리한다.

제9조 (수강철회) 계절학기는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0조 (등록취소) ①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수강변경, 등록 등 계절학기 수강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수강변경, 수강철회 및 등록취소를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으로 학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등록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

1. 기업체 인턴 또는 취업자
2. 군입대자
3. 수술,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5일 이상 결석이 불가피한 자

②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관련증빙(인턴은 인턴증명서, 취업은 재직증명서, 군입대는 입대영장, 질병은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을 첨부한 취소요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③ ①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개강전일까지 취소 : 등록금 전액
2. 개강후 1/3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2/3
3. 개강후 2/3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1/2

제11조 (재수강) 정규학기와 계절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교차 재수강이 가능하다. 재수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재수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2조 (국내교환대학 수강) 계절학기에도 국내교환대학에서 학점이수가 가능하다. 국내교환대학 학점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대학 교환학생에 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3조 (성적평가) 계절학기의 시험 및 성적평가는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제10조①②③항)은 200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젱세칙(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7조)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3항(신설), 제5조 제3항(신설))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1항)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6) 원주캠퍼스 소속변경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소속변경 시행세칙」제7조 (캠퍼스별 소속변경 운영)에 의거 원주캠퍼

스(원주의과대학 제외)의 소속변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변경 자격) 원주캠퍼스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소속변경 할 수 있다. 단 동아시아국제학부로의 소속변경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한다.

제3조 (소속변경 허용범위) ① 원주캠퍼스의 학부(전공).계열.학과는 소속변경 할 수 있는 학부(전공).계열.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는 2학년까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 단,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과(야간), 산업교육학부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서울캠퍼스의 규정에 따른다. 단, 원주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는 통합학부이므로 학부소속이라도 전공배정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③ 원주캠퍼스내 소속변경 승인인원은 따로 정한다.

④ 동아시아국제학부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신청 및 허가) ①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를 원주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학과에서 소속변경 자격을 심의한다. 이때 소속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전공학점 이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전입하는 학부(전공).계열.학과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구술시험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도 있다.

③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전공책임교수)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소속변경 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자는 전입한 학부(전공).계열.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7) 영어인증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제8호에 의한 영어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의 구분) 대학은 학생의 영어능력을 최고영예인증, 영예인증, 고급인증, 연세영어인증으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개정 2011.01.20>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생은 제2조에 정한 영어능력 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한다. 단, 교무처장이 정한 학생들에게는 안전망

프로그램을 충족한 경우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1.20>

② 2009학년도 신입생 중 영어인증을 신청하는 학생에게는 심사를 통하여 영어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6.1>

④ 영어인증요건 취득이 교과목 이수의무를 대체하지 못한다.

제4조 (진단평가 실시 및 이수과목 배정) ① 신입생 및 편입생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단평가에 응시하며,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된 영어과목을 1학년(편입생은 2학년 또는 3학년) 1학기 및 2학기에 나누어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진단평가 응시 또는 지정된 영어과목 수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단평가 실시일 전까지 학부대학 영어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영어공인시험에서 소정 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공식 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인증 기준) ① 영어인증의 요건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개정 2014.2.12, 2013.2.4, 2012.11.29, 2011.01.20, 2010.6.1>

② 외부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영어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학기의 학기 1/2선 전까지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학부대학사무실에 제출하여 영어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②항의 외부공인시험 성적이 영어 교과의 성적부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미 취득한 영어교과목의 성적은 변경할 수 없다.

④ 8학기까지 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9학기부터는 대학에서 지정한 영어교과목을 이수하여 영어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공인시험성적 제출로 인증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제6조 (인증 기록) ① 영어인증의 기록은 자격을 취득한 학생의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기록한다.

② 영어인증은 상위인증 내역만 기록한다.

제7조 (보칙)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원주캠퍼스 학생은 별도로 정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 (제3조 ③항 삭제, [별표1] 1))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별표 1)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제5조 별표 1)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세칙(제5조 별표 1)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제5조 별표 1)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 구분	인증 요건
연세영어 최고영예인증 Yonsei English High Honors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dvanced 이상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영어로 진행되는 교과목(교양·전공) 가운데 최소 5과목(15학점) 모두 B- 이상 취득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Honors 최소 3과목 A+ 취득
연세영어 영예인증 Yonsei English Honors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dvanced 이상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영어로 진행되는 교과목(교양·전공) 가운데 최소 5과목(15학점) 모두 B- 이상 취득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Honors 최소 2과목 A0 이상 취득
연세영어 고급인증 Yonsei English Advanced	아래 9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고급대학영어Ⅰ, Ⅱ 두 과목 모두 B- 이상 취득 -대학영어Ⅰ, Ⅱ 두 과목 모두 A0 이상 취득 -고급대학영어Ⅰ, B- 이상 & 대학영어Ⅱ, A0 이상 취득 -고급대학영어Ⅱ, B- 이상 & 대학영어Ⅰ, A0 이상 취득 -표준인증 취득 후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dvanced 최소 1과목 추가 이수(B- 이상 취득) -안전망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dvanced 최소 1과목 추가 이수(B- 이상 취득) -TOEFL iBT 통합점수 105 이상 (Writing, Speaking 각각 25 이상) -IELTS 전체 band score 8 이상 (Writing, Speaking 각각 7.5 이상) -편입생 및 캠퍼스간 소속변경생으로서 고급대학영어Ⅰ,Ⅱ 두 과목 모두 수강 면제를 받거나 학점 인정을 받음.
연세영어인증 Yonsei English Certification	-아래 8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고급대학영어 I, II 두 과목 모두 D- 이상 취득 -대학영어Ⅰ, Ⅱ 두 과목 모두 C- 이상 취득 -고급대학영어Ⅰ, D- 이상 & 대학영어Ⅱ, C- 이상 취득 -고급대학영어Ⅱ, D- 이상 & 대학영어Ⅰ, C- 이상 취득 -대학영어Ⅰ, Ⅱ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D+ 이하를 취득하였거나, 안전망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Intermediate 최소 1과목 추가 이수(C+ 이상 취득) -편입생 및 캠퍼스간 소속변경생으로서 대학영어 I, II 또는 대학영어 I, 고급대학영어 II 또는 대학영어 II, 고급대학영어 I로 학점 인정을 받음 -대학기본영어Ⅰ(Ⅱ) C+ 이상 & 대학영어Ⅱ(Ⅰ) A0 이상 취득 -대학기본영어Ⅰ(Ⅱ) C+ 이상 & 고급대학영어Ⅱ(Ⅰ) B- 이상 취득

인증 구분	인증 요건
안전망 프로그램* Safety Net Program	-아래 5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대학기본영어Ⅰ,Ⅱ 두 과목 모두 C+ 이상 취득 -졸업하는 학기까지 Safety Net 시험 통과(복수 응시 가능). 단, 시험대상자는 다음 ⓐ 또는 ⓑ로 한정함 ⓐ 대학기본영어Ⅰ, Ⅱ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C0~D- ⓑ 대학영어Ⅰ, Ⅱ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D+~D- -편입생 및 캠퍼스간 소속변경생으로서 자신의 영어진단평가결과(대학기본영어 이상)와 동등하거나 상위수준의 과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전적대학의 교과목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본교에서 수강하여 안전망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대학기본영어Ⅰ(Ⅱ) C+ 이상 & 대학영어Ⅱ(Ⅰ) C- 이상 취득 -대학기본영어Ⅰ(Ⅱ) C+ 이상 & 고급대학영어Ⅱ(Ⅰ) D- 이상 취득

28)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조 제3항에 의한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복수학위제”라 함은 본교와 교류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교류대학에서의 수학

제3조 (교류대학) 교류대학은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학기간 및 학적) ①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학하는 학생(이하“복수학위학생”이라 한다)의 수학학기는 교류대학에서 2학기 이상으로 한다.

② 교류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③ 수학기간 동안 소속대학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⑤ 조기졸업, 복수전공,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복수학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재학한 자
2. 학업성적이 3.0/4.3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
3. 지원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응시한 토플 성적에서 아래 지정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자연, 예체능계: CBT 190, iBT 68점 이상
   - 그 외 계열: CBT 213, iBT 79점 이상
4.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6조 (지원절차 및 시기) 복수학위 지원자는 개시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대학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토플 성적증명서
4. 학업계획서
5. 지도교수 추천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 (선발절차) 복수학위학생 선발은 소속대학이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 (파견시기 및 선발인원) ① 파견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② 선발인원은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9조 (등록) 복수학위학생은 매학기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학사관리) ① 복수학위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② 복수학위학생의 학사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속대학에서 관리한다.

제11조 (과정이수) 복수학위학생은 양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①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소속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으로 인정하되,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복수학위학생은 파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류대학 이수과목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을 소속학과의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집계열에 따라 학기당 18~19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④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되, 평량평균 환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복수학위의 중도포기) 복수학위학생으로 선발되어 중도 포기할 경우 복수학위 이수포기원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대한 내규를 적용한다.

제14조 (졸업요건) ① 복수학위학생은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복수학위학생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반드시 본교에 졸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위수여) 복수학위학생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각각의 학위를 취득한다.

제16조 (보칙)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제 규정 및 교류대학과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제3장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

제17조 (지원자격)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학생(이하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은 교류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①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등록)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등록금 납부는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20조 (취득학점 처리) ①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이 본교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본교 학칙 상의 졸업 학점의 1/2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③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학점처리 및 졸업사정은 본교 소속대학에서 관장한다.

제21조 (학사지도 및 관리) ①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교류대학교와 본교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도 본교 학생에 준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은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학위수여)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본교 학위를 취득한다.

제23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과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0조 제2항)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018학년도 재적생 현황

<기준일: 2018. 4. 1>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학부대학	인문계열	149	368	16	17	5	3	0	2	0	0	0	0	560	1	8	5	2	2	0	0	0	0	0	18	3	10	1	0	0	0	14	592
	이학계열	176	66	31	10	6	0	1	0	0	0	0	0	290	7	1	8	0	2	2	1	0	0	0	21	4	7	2	0	0	0	13	324
	공학계열	741	202	127	28	21	3	4	2	0	0	0	0	1,128	23	5	20	2	10	1	0	0	0	0	61	15	47	13	1	0	0	76	1,265
	생활과학계열	37	142	3	13	0	2	0	0	0	0	0	0	197	1	1	0	0	1	0	0	0	0	0	3	1	0	0	0	0	0	1	201
	상경계열	155	124	18	11	3	3	0	0	0	0	0	0	314	4	1	0	1	1	2	1	0	0	0	10	7	5	1	0	0	0	13	337
	경영계열	173	164	13	12	3	3	0	0	0	0	0	0	368	3	1	0	0	2	1	0	0	0	0	7	4	7	0	0	0	0	11	386
	사회과학계열	144	246	12	14	3	0	0	0	0	0	0	0	419	1	0	1	0	0	1	0	0	0	0	3	3	7	0	0	0	0	10	432
	생명시스템계열	74	76	10	5	2	4	0	0	0	0	0	0	171	5	0	0	2	3	1	1	0	0	0	12	0	2	3	0	0	0	5	188
	교육과학계열	13	47	1	2	0	1	0	0	0	0	0	0	64	0	0	3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67
	신학계열	27	23	0	0	0	0	0	0	0	0	0	0	50	0	1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1	52
	간호학전공	10	76	0	0	0	0	0	0	0	0	0	0	86	1	3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90
	소계	1,699	1,534	231	112	43	19	5	4	0	0	0	0	3,647	46	21	37	7	21	8	3	0	0	0	143	38	85	20	1	0	0	144	3,934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0	0	15	42	16	47	29	72	0	0	0	0	221	0	0	1	3	6	10	11	13	0	0	44	0	14	10	0	0	0	24	289
	중어중문학	0	0	15	25	15	41	19	51	0	0	0	0	166	0	0	1	2	8	13	4	13	0	0	41	0	9	10	1	0	0	20	227
	영어영문학	0	0	28	58	21	66	36	101	0	0	0	0	310	0	0	5	5	4	13	19	52	0	0	98	0	23	10	1	0	0	34	442
	사학	0	0	24	22	28	32	40	35	0	0	0	0	181	0	0	2	1	6	9	14	17	0	0	49	0	22	9	3	0	0	34	264
	철학	0	0	24	15	28	16	32	27	0	0	0	0	142	0	0	3	2	12	8	7	9	0	0	41	0	6	17	2	0	0	25	208
	문헌정보학	0	0	16	15	15	24	17	33	0	0	0	0	120	0	0	2	0	5	9	6	7	0	0	29	0	12	10	1	0	0	23	172
	심리학	0	0	12	34	24	50	23	44	0	0	0	0	187	0	0	4	2	9	9	9	20	0	0	53	0	13	16	1	0	0	30	270
	독어독문학	0	0	14	21	14	23	19	35	0	0	0	0	126	0	0	2	3	4	4	6	7	0	0	26	0	14	4	2	0	0	20	172
	불어불문학	0	0	11	23	10	22	13	55	0	0	0	0	134	0	0	0	4	2	10	5	22	0	0	43	0	6	4	1	0	0	11	188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노어노문학	0	0	7	22	16	22	26	26	0	0	0	0	119	0	0	1	1	4	6	5	11	0	0	28	0	11	10	1	0	0	22	169
	소계	0	0	166	277	187	343	254	479	0	0	0	0	1,706	0	0	21	23	60	91	86	171	0	0	452	0	130	100	13	0	0	243	2,401
상경대학	경제학과	0	0	128	82	164	101	203	140	0	0	0	0	818	0	0	21	1	58	25	82	74	0	0	261	0	122	64	14	0	0	200	1,279
	응용통계학과	0	0	44	26	46	33	75	47	0	0	0	0	271	0	0	4	2	18	12	14	23	0	0	73	0	39	25	3	0	0	67	411
	상경계열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계	0	0	172	108	210	134	279	187	0	0	0	0	1,090	0	0	25	3	76	37	96	97	0	0	334	0	161	89	17	0	0	267	1,691
경영대학	경영학과	0	0	176	178	207	180	311	230	0	0	0	0	1,282	0	0	27	8	104	70	151	114	0	0	474	0	134	85	11	0	0	230	1,986
	소계	0	0	176	178	207	180	311	230	0	0	0	0	1,282	0	0	27	8	104	70	151	114	0	0	474	0	134	85	11	0	0	230	1,986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수학	0	0	38	8	37	10	47	8	0	0	0	0	148	0	0	3	0	9	1	17	7	0	0	37	0	18	27	4	0	0	49	234
	물리학	0	0	39	2	22	3	39	2	0	0	0	0	107	0	0	8	0	12	0	9	1	0	0	30	0	14	13	12	0	0	39	176
	화학	0	0	23	32	34	16	40	32	0	0	0	0	177	0	0	2	7	8	10	10	9	0	0	46	0	7	22	5	0	0	34	257
	지구시스템과학	0	0	27	7	19	9	44	15	0	0	0	0	121	0	0	4	1	8	3	15	4	0	0	35	0	8	21	3	0	0	32	188
	천문우주학	0	0	18	0	24	8	37	9	0	0	0	0	96	0	0	4	1	7	3	7	3	0	0	25	0	6	9	8	0	0	23	144
	대기과학	0	0	16	11	21	11	32	12	0	0	0	0	103	0	0	2	0	3	2	5	13	0	0	25	0	9	14	1	0	0	24	152
	시스템생물학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천문대기과학과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계	0	0	161	60	157	57	241	79	0	0	0	0	755	0	0	23	9	47	19	63	37	0	0	198	0	62	106	33	0	0	201	1,154
공과대학	기계공학	0	0	106	10	146	8	181	13	0	0	0	0	464	0	0	13	2	30	2	41	8	0	0	96	0	114	73	14	0	0	201	761
	전기전자공학	0	0	170	17	162	29	243	20	0	0	0	0	641	0	0	15	1	34	7	63	8	0	0	128	0	134	132	24	0	0	290	1,059
	도시공학	0	0	25	6	28	13	35	10	0	0	0	0	117	0	0	3	0	12	1	20	7	0	0	43	0	14	16	2	0	0	32	192
	건축공학	0	0	18	11	44	12	56	11	0	0	0	0	152	0	0	0	0	7	3	27	4	0	0	41	0	19	20	1	0	0	40	233
	건축학(5년제)	0	0	19	18	27	14	20	12	29	23	0	0	162	0	0	4	1	13	1	7	3	9	3	41	0	8	20	2	2	0	32	235
	건축공학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	0	0	43	14	63	14	72	18	0	0	0	0	224	0	0	6	2	19	7	37	11	0	0	82	0	43	43	7	0	0	93	399
	세라믹공학	0	0	0	0	0	0	2	0	0	0	0	0	2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3
	신소재공학	0	0	67	19	89	22	108	24	0	0	0	0	329	0	0	4	2	19	7	33	14	0	0	79	0	47	81	18	0	0	146	554
	정보산업공학	0	0	9	2	35	11	48	18	0	0	0	0	123	0	0	0	0	6	3	20	2	0	0	31	0	33	25	5	0	0	63	217
	산업공학과	0	0	30	7	0	0	0	0	0	0	0	0	3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7
	컴퓨터과학	0	0	67	11	70	16	88	14	0	0	0	0	266	0	0	7	0	14	2	26	7	0	0	56	0	35	48	20	0	0	103	425
	화공생명공학	0	0	67	24	68	29	92	31	0	0	0	0	311	0	0	4	3	14	5	24	7	0	0	57	0	30	62	10	0	0	102	470
	IT융합공학	0	0	17	3	13	3	4	0	0	0	0	0	40	0	0	0	0	1	1	1	0	0	0	3	0	1	1	1	0	0	3	46
	소계	0	0	638	142	745	171	949	171	29	23	0	0	2,868	0	0	57	11	169	39	300	71	9	3	659	0	478	521	104	2	0	1,105	4,632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	0	0	17	14	20	15	26	20	0	0	0	0	112	0	0	2	1	3	8	11	7	0	0	32	0	5	9	7	0	0	21	165
	생화학	0	0	5	19	16	26	17	20	0	0	0	0	103	0	0	1	0	5	2	7	5	0	0	20	0	4	11	1	0	0	16	139
	생명공학	0	0	24	30	30	27	38	32	0	0	0	0	181	0	0	3	3	15	11	20	6	0	0	58	0	5	21	6	0	0	32	271
	소계	0	0	46	63	66	68	81	72	0	0	0	0	396	0	0	6	4	23	21	38	18	0	0	110	0	14	41	14	0	0	69	575
신과대학	신학과	0	0	37	20	28	24	25	31	0	0	0	0	165	0	0	2	5	8	6	8	10	0	0	39	0	12	13	4	0	0	29	233
	소계	0	0	37	20	28	24	25	31	0	0	0	0	165	0	0	2	5	8	6	8	10	0	0	39	0	12	13	4	0	0	29	233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	0	49	60	54	55	60	95	0	0	0	0	373	0	0	4	3	24	33	22	63	0	0	149	0	39	30	9	0	0	78	600
	행정학과	0	0	42	44	46	48	54	75	0	0	0	0	309	0	0	7	2	39	21	32	62	0	0	163	0	33	29	3	0	0	65	537
	신문방송학과	0	0	0	0	0	0	6	0	0	0	0	0	6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7
	언론홍보영상학	0	0	25	41	19	72	23	94	0	0	0	0	274	0	0	0	3	3	11	11	22	0	0	50	0	14	16	4	0	0	34	358
	사회복지학과	0	0	11	24	8	22	24	31	0	0	0	0	120	0	0	1	2	4	7	9	8	0	0	31	0	11	13	2	0	0	26	177
	사회학과	0	0	17	30	26	45	42	42	0	0	0	0	202	0	0	0	0	7	10	14	17	0	0	48	0	9	17	2	0	0	28	278
	문화인류학과	0	0	6	20	6	14	10	24	0	0	0	0	80	0	0	0	0	2	5	6	8	0	0	21	0	4	2	2	0	0	8	109
	소계	0	0	150	219	159	256	219	361	0	0	0	0	1,364	0	0	12	10	79	87	95	180	0	0	463	0	110	107	22	0	0	239	2,066
법과대학	법학과	0	0	0	0	0	0	3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소계	0	0	0	0	0	0	3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5	12	4	12	2	11	4	16	0	0	0	0	66	1	0	0	0	2	3	0	5	0	0	11	1	1	1	0	0	0	3	80
	성악과	14	12	15	12	17	13	21	20	0	0	0	0	124	0	0	2	1	5	1	2	1	0	0	12	2	3	6	1	0	0	12	148
	작곡과	5	14	1	17	8	9	3	18	0	0	0	0	75	1	0	1	3	5	11	3	4	0	0	28	0	2	2	0	0	0	4	107
	관현악과	14	29	16	25	14	24	15	34	0	0	0	0	171	0	1	2	2	4	3	4	0	0	0	16	1	11	5	0	0	0	17	204
	피아노과	6	14	6	20	4	16	17	17	0	0	0	0	100	0	0	0	0	0	0	3	1	0	0	4	0	0	1	4	0	0	5	109
	소계	44	81	42	86	45	73	60	105	0	0	0	0	536	2	1	5	6	16	18	12	11	0	0	71	4	17	15	5	0	0	41	648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	0	0	7	27	10	41	12	43	0	0	0	0	140	0	0	1	1	3	5	8	12	0	0	30	0	4	3	0	0	0	7	177
	식품영양	0	0	6	27	8	31	13	37	0	0	0	0	122	0	0	0	1	0	10	2	9	0	0	22	0	1	2	0	0	0	3	147
	아동·가족	0	0	2	28	7	21	7	44	0	0	0	0	109	0	0	1	1	3	14	3	8	0	0	30	0	4	5	0	0	0	9	148
	생활디자인	0	0	6	25	9	32	10	54	0	0	0	0	136	0	0	2	2	2	9	5	12	0	0	32	0	2	5	0	0	0	7	175
	실내건축학	0	0	19	17	7	24	14	27	0	0	0	0	108	0	0	1	0	4	7	5	5	0	0	22	0	9	6	0	0	0	15	145
	소계	0	0	40	124	41	149	56	205	0	0	0	0	615	0	0	5	5	12	45	23	46	0	0	136	0	20	21	0	0	0	41	792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0	0	18	49	24	38	25	71	0	0	0	0	225	0	0	2	3	3	11	7	20	0	0	46	0	13	10	0	0	0	23	294
	체육교육학과	35	14	43	13	37	2	67	13	0	0	0	0	224	0	1	4	2	5	2	20	4	0	0	38	0	23	9	2	0	0	34	296
	스포츠레저학과	0	0	12	1	39	5	52	12	0	0	0	0	121	0	0	5	0	8	4	21	1	0	0	39	1	25	7	3	0	0	36	196
	스포츠응용산업학과	47	4	36	5	0	0	0	0	0	0	0	0	92	0	1	3	0	0	0	0	0	0	0	4	2	0	0	0	0	0	2	98
	소계	82	18	109	68	100	45	144	96	0	0	0	0	662	0	2	14	5	16	17	48	25	0	0	127	3	61	26	5	0	0	95	884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62	178	6	12	8	7	1	1	0	0	0	0	275	7	7	3	3	3	0	0	0	0	0	23	2	9	1	0	0	0	12	310
	비교문학과문화	0	0	3	13	1	17	4	16	0	0	0	0	54	0	0	0	3	0	6	1	5	0	0	15	0	2	2	1	0	0	5	74
	경제학	0	0	50	77	37	63	35	51	0	0	0	0	313	0	0	5	4	11	11	16	21	0	0	68	0	20	20	3	0	0	43	424
	국제학	0	0	7	33	11	41	13	46	0	0	0	0	151	0	0	3	1	2	6	5	21	0	0	38	0	5	6	0	0	0	11	200
	생명과학공학	0	0	9	15	4	17	11	11	0	0	0	0	67	0	0	2	0	0	0	2	0	0	0	4	0	4	2	2	0	0	8	79
	정치외교학	0	0	6	24	5	20	8	30	0	0	0	0	93	0	0	1	1	3	5	7	9	0	0	26	0	3	3	2	0	0	8	127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언더우드국제대학	아시아학부	5	14	0	0	0	0	0	0	0	0	0	0	19	0	3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22
	테크노아트학부	0	1	2	1	1	1	0	0	0	0	0	0	6	0	0	0	1	0	1	0	0	0	0	2	0	1	0	0	0	0	1	9
	정보·인터랙션 디자인	0	0	3	10	2	18	4	16	0	0	0	0	53	0	0	0	3	1	5	3	4	0	0	16	0	5	2	0	0	0	7	76
	창의기술경영	0	0	10	27	8	27	12	19	0	0	0	0	103	0	0	1	2	4	7	6	2	0	0	22	0	5	5	3	0	0	13	138
	문화디자인경영	0	0	5	25	3	28	5	46	0	0	0	0	112	0	0	1	2	2	3	1	7	0	0	16	0	2	4	1	0	0	7	135
	아시아학	0	0	4	18	5	17	13	26	0	0	0	0	83	0	0	1	1	3	8	5	13	0	0	31	0	5	5	0	0	0	10	124
	융합과학공학부	51	42	8	7	2	3	0	0	0	0	0	0	113	3	4	5	1	0	0	0	0	0	0	13	4	1	0	0	0	0	5	131
	사회정의리더쉽	0	0	3	7	2	5	2	12	0	0	0	0	31	0	0	0	0	1	4	2	1	0	0	8	0	3	2	0	0	0	5	44
	계량위험관리	0	0	17	12	8	15	1	17	0	0	0	0	70	0	0	0	2	2	5	0	8	0	0	17	0	10	7	0	0	0	17	104
	과학기술정책	0	0	1	4	1	4	2	3	0	0	0	0	15	0	0	0	0	0	2	1	1	0	0	4	0	2	2	0	0	0	4	23
	지속개발협력	0	0	3	11	2	11	0	11	0	0	0	0	38	0	0	1	0	0	2	1	2	0	0	6	0	1	0	0	0	0	1	45
	나노과학공학	0	0	20	10	8	8	1	6	0	0	0	0	53	0	0	1	1	5	2	0	2	0	0	11	0	9	5	2	0	0	16	80
	에너지환경융합	0	0	5	1	5	6	6	4	0	0	0	0	27	0	0	1	0	2	0	2	0	0	0	5	0	10	5	1	0	0	16	48
	바이오융합	0	0	10	21	3	26	1	9	0	0	0	0	70	0	0	2	0	3	5	1	4	0	0	15	0	1	3	0	0	0	4	89
	융합인문사회계열	59	129	14	25	3	7	0	2	0	0	0	0	239	1	3	3	2	1	1	0	0	0	0	11	3	9	2	0	0	0	14	264
	소계	177	364	186	353	119	341	119	326	0	0	0	0	1,985	11	17	30	27	43	73	53	100	0	0	354	9	107	76	15	0	0	207	2,546
글로벌인재학부	글로벌인재학부	53	112	31	34	12	12	0	2	0	0	0	0	256	3	4	6	5	2	1	0	0	0	0	21	1	20	1	0	0	0	22	299
	한국문화·통상전공	0	0	3	1	1	9	4	9	0	0	0	0	27	0	0	0	0	0	6	1	1	0	0	8	0	1	1	0	0	0	2	37
	국제통상전공	0	0	12	19	27	35	10	22	0	0	0	0	125	0	0	3	0	0	6	1	3	0	0	13	0	24	8	0	0	0	32	170
	한국문화전공	0	0	0	4	7	25	1	10	0	0	0	0	47	0	0	0	1	1	4	0	1	0	0	7	0	2	0	0	0	0	2	56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0	0	1	6	3	7	1	3	0	0	0	0	2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소계	53	112	47	64	50	88	16	46	0	0	0	0	476	3	4	9	6	3	17	2	5	0	0	49	1	47	10	0	0	0	58	583
약학대학	약학과	0	0	0	0	19	19	23	13	11	26	26	15	152	0	0	0	0	0	0	0	0	0	1	1	0	0	2	2	2	0	6	159
	소계	0	0	0	0	19	19	23	13	11	26	26	15	152	0	0	0	0	0	0	0	0	0	1	1	0	0	2	2	2	0	6	159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신촌캠퍼스 합계		2,055	2,109	2,201	1,874	2,176	1,967	2,785	2,405	40	49	26	15	17,702	62	45	273	129	677	548	978	885	9	4	3,610	55	1,438	1,232	246	4	0	2,975	24,287
의과대학	의예과	95	24	71	15	0	0	0	0	0	0	0	0	205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206
	의학과	88	37	80	34	88	30	88	34	0	0	0	0	479	1	0	2	0	0	0	1	0	0	0	4	1	0	0	0	0	0	1	484
	소계	183	61	151	49	88	30	88	34	0	0	0	0	684	1	0	2	0	0	0	1	0	0	0	4	1	1	0	0	0	0	2	690
치과대학	치의예과	45	20	51	13	0	0	0	0	0	0	0	0	129	0	1	4	0	0	0	0	0	0	0	5	0	1	0	0	0	0	1	135
	치의학과	42	22	49	17	44	14	49	18	0	0	0	0	255	4	0	3	0	0	0	0	0	0	0	7	1	0	0	0	0	0	1	263
	소계	87	42	100	30	44	14	49	18	0	0	0	0	384	4	1	7	0	0	0	0	0	0	0	12	1	1	0	0	0	0	2	398
간호대학	간호학과	0	0	12	67	5	69	10	73	0	0	0	0	236	0	0	2	4	1	10	2	16	0	0	35	0	1	3	2	0	0	6	277
	간호학과(RN-BSN)	0	0	0	0	2	80	2	76	0	0	0	0	160	0	0	0	0	0	0	0	10	0	0	10	0	0	0	0	0	0	0	170
	소계	0	0	12	67	7	149	12	149	0	0	0	0	396	0	0	2	4	1	10	2	26	0	0	45	0	1	3	2	0	0	6	447
서울캠퍼스 합계		2,325	2,212	2,464	2,020	2,315	2,160	2,934	2,606	40	49	26	15	19,166	67	46	284	133	678	558	981	911	9	4	3,671	57	1,441	1,235	248	4	0	2,985	25,822
과학기술대학	자연과학부	105	61	4	2	9	3	2	0	0	0	0	0	186	13	1	6	2	1	3	1	0	0	0	27	11	10	6	0	0	0	27	240
	응용과학부	0	0	0	0	2	2	0	0	0	0	0	0	4	0	0	1	0	0	0	0	0	0	0	1	2	0	1	0	0	0	3	8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75	11	57	17	59	13	70	16	0	0	0	0	318	2	2	8	0	21	5	15	5	0	0	58	6	44	41	2	0	0	93	469
	수학	0	0	8	6	13	7	26	10	0	0	0	0	70	0	0	4	0	9	0	12	4	0	0	29	0	5	10	2	0	0	17	116
	물리학	0	0	27	8	26	7	25	15	0	0	0	0	108	0	0	6	0	11	1	11	5	0	0	34	0	9	21	6	0	0	36	178
	화학및의화학	0	0	27	24	26	21	33	29	0	0	0	0	160	0	0	7	4	17	16	6	10	0	0	60	0	14	24	3	0	0	41	261
	생명과학	0	0	0	0	21	11	31	32	0	0	0	0	95	0	0	0	0	10	7	6	7	0	0	30	0	1	12	3	0	0	16	141
	정보통계학	0	0	24	18	31	10	29	16	0	0	0	0	128	0	0	5	1	9	2	13	6	0	0	36	0	16	17	5	0	0	38	202
	패키징학	18	12	22	7	19	8	32	10	0	0	0	0	128	0	0	7	3	5	1	10	1	0	0	27	0	12	14	1	0	0	27	182
	컴퓨터공학	0	0	0	0	4	2	11	5	0	0	0	0	22	0	0	0	0	0	0	2	0	0	0	2	0	1	3	1	0	0	5	29
	정보통신공학	0	0	0	0	3	0	2	5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11
	생명과학기술학부	52	31	49	29	12	6	5	0	0	0	0	0	184	6	0	8	2	6	2	1	0	0	0	25	2	26	8	0	0	0	36	245
	응용생명과학	0	0	0	0	16	15	27	15	0	0	0	0	73	0	0	0	0	3	3	7	5	0	0	18	0	0	11	3	0	0	14	105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과학기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공학	0	0	0	0	8	3	0	0	0	0	0	0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	0	0	0	0	20	13	23	16	0	0	0	0	72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73
	소계	250	115	218	111	269	121	316	169	0	0	0	0	1,569	21	3	52	12	92	41	84	43	0	0	348	21	138	169	26	0	0	354	2,271
인문예술대학	인문과학부	54	65	1	2	2	1	0	0	0	0	0	0	125	8	2	4	0	1	0	0	0	0	0	15	7	0	0	0	0	0	7	147
	국어국문학	21	21	17	24	21	32	17	40	0	0	0	0	193	0	2	3	1	6	5	6	9	0	0	32	1	11	15	2	0	0	29	254
	영어영문학	0	0	16	33	18	34	30	38	0	0	0	0	169	0	0	3	2	9	10	15	25	0	0	64	0	14	11	5	0	0	30	263
	역사문화학	0	0	27	15	7	15	19	10	0	0	0	0	93	0	0	2	5	7	2	16	4	0	0	36	0	14	12	3	0	0	29	158
	철학	0	0	6	3	18	9	14	7	0	0	0	0	57	0	0	0	0	2	1	6	3	0	0	12	0	2	9	1	0	0	12	81
	산업디자인학	0	0	0	0	0	3	3	1	0	0	0	0	7	0	0	0	0	0	0	1	2	0	0	3	0	0	0	0	0	0	0	10
	시각디자인학	0	0	0	1	1	3	4	15	0	0	0	0	24	0	0	0	0	0	2	0	7	0	0	9	0	0	0	0	0	0	0	33
	디자인예술학부	36	49	36	64	30	57	27	54	0	0	0	0	353	1	1	7	9	8	23	13	16	0	0	78	2	24	14	5	0	0	45	476
	디지털아트학	0	0	0	1	1	0	2	1	0	0	0	0	5	0	0	0	0	0	0	3	2	0	0	5	0	0	0	1	0	0	1	11
	소계	111	135	103	143	98	154	116	166	0	0	0	0	1,026	9	5	19	17	33	43	60	68	0	0	254	10	65	61	17	0	0	153	1,433
정경대학	경제학	0	0	44	34	54	37	63	55	0	0	0	0	287	0	0	13	3	16	6	37	18	0	0	93	0	39	26	4	0	0	69	449
	경영학	0	0	131	59	122	55	220	67	0	0	0	0	654	0	0	16	4	63	21	112	34	0	0	250	0	85	77	15	0	0	177	1,081
	법학	0	0	0	0	0	0	3	0	0	0	0	0	3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4
	국제관계학	0	0	19	31	18	16	34	24	0	0	0	0	142	0	0	4	1	1	9	22	19	0	0	56	0	7	14	1	0	0	22	220
	경영정보학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2
	경영학부	124	80	0	0	10	9	0	0	0	0	0	0	223	15	7	1	0	1	0	0	0	0	0	24	16	3	3	0	0	0	22	269
	사회과학부	91	92	6	3	13	9	0	0	0	0	0	0	214	8	6	2	0	0	0	0	0	0	0	16	6	4	2	0	0	0	12	242
	글로벌행정학	0	0	15	27	26	30	43	43	0	0	0	0	184	0	0	4	1	12	14	20	26	0	0	77	0	24	22	2	0	0	48	309
	글로벌행정학 (국제개발트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215	172	215	154	243	156	364	189	0	0	0	0	1,708	23	13	40	9	93	50	193	97	0	0	518	22	162	144	22	0	0	350	2,576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14	41	21	36	22	38	36	33	0	0	0	0	241	0	0	2	2	3	5	7	18	0	0	37	1	11	18	2	0	0	32	310
	임상병리학과	15	41	21	40	18	32	22	32	0	0	0	0	221	0	2	2	3	9	8	2	12	0	0	38	1	8	21	1	0	0	31	290
	의용전자공학	0	0	0	0	0	0	2	1	0	0	0	0	3	0	0	0	0	0	0	1	1	0	0	2	0	0	0	0	0	0	0	5
	환경공학	0	0	0	0	0	0	2	1	0	0	0	0	3	0	0	0	0	0	0	3	0	0	0	3	0	0	0	0	0	0	0	6
	물리치료학과	25	18	29	22	36	29	25	26	0	0	0	0	210	1	1	7	0	6	6	4	9	0	0	34	0	16	20	1	0	0	37	281
	작업치료학과	18	27	8	31	16	31	17	25	0	0	0	0	173	0	1	5	1	3	14	1	1	0	0	26	0	12	8	1	0	0	21	220
	의료시스템공학	0	0	1	0	1	0	3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0	1	3	0	0	0	4	9
	바이오융합공학	0	0	0	0	2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방사선학과	28	14	23	15	36	15	33	16	0	0	0	0	180	2	0	4	1	15	0	5	3	0	0	30	2	10	24	0	0	0	36	246
	의공학부	62	25	50	20	60	27	63	36	0	0	0	0	343	4	1	10	1	18	9	14	15	0	0	72	6	45	47	3	0	0	101	516
	환경공학부	65	20	54	24	42	33	69	21	0	0	0	0	328	2	1	7	0	17	8	18	20	0	0	73	6	53	26	3	0	0	88	489
	보건과학부 분자진단과학전공	0	0	0	0	4	11	4	9	0	0	0	0	28	0	0	0	0	1	0	3	0	0	0	4	0	0	1	0	0	0	1	33
	보건과학부 재활보건학전공	0	0	0	0	14	10	7	5	0	0	0	0	36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37
	보건과학부 과학수사학전공	0	0	0	0	1	0	4	8	0	0	0	0	13	0	0	0	0	1	2	1	0	0	0	4	0	0	0	0	0	0	0	17
	친환경에너지공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227	186	207	188	252	226	287	213	0	0	0	0	1,786	9	6	37	8	73	52	59	79	0	0	323	16	156	169	11	0	0	352	2,461
동아시아국제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	25	34	22	27	17	34	26	25	0	0	0	0	210	4	0	3	3	4	2	4	8	0	0	28	3	14	9	0	0	0	26	264
	EAST ASIAN POLITICS AND CULTURE	0	0	1	0	1	0	0	0	0	0	0	0	2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3
	EAST ASIAN ECONOMY AND BUSINESS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계	25	34	23	27	18	34	27	25	0	0	0	0	213	4	0	3	3	4	2	5	8	0	0	29	3	14	9	0	0	0	26	268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글로벌 엘리트 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14	13	9	8	6	10	0	0	0	0	0	0	60	0	0	0	1	1	2	0	0	0	0	4	2	0	0	0	0	0	2	66
	소계	14	13	9	8	6	10	0	0	0	0	0	0	60	0	0	0	1	1	2	0	0	0	0	4	2	0	0	0	0	0	2	66
매지캠퍼스 합계		842	655	775	631	886	701	1,110	762	0	0	0	0	6,362	66	27	151	50	296	190	401	295	0	0	1,476	74	535	552	76	0	0	1,237	9,075
원주 의과 대학	의예과	73	26	61	45	0	0	0	0	0	0	0	0	205	0	0	1	1	0	0	0	0	0	0	2	0	0	0	0	0	0	0	207
	의학과	88	34	70	31	68	28	88	32	0	0	0	0	439	1	1	2	0	1	0	0	0	0	0	5	2	0	0	0	0	0	2	446
	간호학과	10	46	9	45	9	56	11	35	0	0	0	0	221	0	1	3	1	1	3	0	10	0	0	19	0	5	4	1	0	0	10	250
	치위생학과	4	37	4	36	9	36	3	33	0	0	0	0	162	0	0	0	1	2	6	3	13	0	0	25	0	2	9	0	0	0	11	198
	간호학과(RN-BSN)	0	0	0	0	6	30	6	18	0	0	0	0	6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61
	소계	175	143	144	157	92	150	108	118	0	0	0	0	1,087	1	2	6	3	4	9	3	24	0	0	52	2	7	13	1	0	0	23	1,162
원주캠퍼스 합계		1,017	798	919	788	978	851	1,218	880	0	0	0	0	7,449	67	29	157	53	300	199	404	319	0	0	1,528	76	542	565	77	0	0	1,260	10,237
합계		3,342	3,010	3,383	2,808	3,293	3,011	4,152	3,486	40	49	26	15	26,615	134	75	441	186	978	757	1,385	1,230	9	4	5,199	133	1,983	1,800	325	4	0	4,245	36,059